2025.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부처별 Ⅴ)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보 건 복 지 위 원 회

❖ 보건복지부 ····· 3

Ⅰ. 개 관 ····· 3

1. 결산 개요 ····· 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

Ⅱ. 사업별 검토 ····· 13

【일반회계】

<세 입> ····· 13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 13

<세 출> ····· 16

2. 예비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예비비 집행 및 운영상 부적정 문제 ···· 16
3.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25

4. 활동지원급여 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 관리 부실 부적정 ····· 28
5.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31
6.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반기 전액 교부 문제 ····· 36
7. 기초연금 지급: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39
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보다 면밀한 소요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 42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타 사업으로의 연례적 전용 지양 필요 등 ····· 45
10.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 지양 필요 ····· 50
1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 55
12.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전 절차 준수 노력 필요 ····· 59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 ····· 62
14.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사업: EMR 사용인증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65
15.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교부 부적정 ····· 69
16.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 근거법 개정에 따른 사업 통합 운영 검토 필요 ····· 72
17.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내역사업 간 과도한 예산 변경 지양 필요 ····· 76
18.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시 타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80

19.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ISP 수립 이후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국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 83
20.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추가 지원 적절성 문제 ····· 86
21. 과징금 및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 편성 법적 기준과 실제 예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89
2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개도국 개발협력(ODA)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 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97

23.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 필요 ····· 97
24.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10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 103

25.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 실제 수입·지출 규모를 반영한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 편성 필요 등 ····· 103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 108

26. 국가암검진 사업: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108

【기 타】

2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111

❖ 식품의약품안전처 ·····113

Ⅰ. 개 관 ····· 113

1. 결산 개요 ····· 11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17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18

Ⅱ. 사업별 검토 ····· 119

【일반회계】

<세 입> ····· 119

1. 과태료 및 가산금: 과태료 부과 사유 확대 등 제도적 변화를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 119

<세 출> ····· 123

2.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스마트 HACCP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 123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 복리후생 관련 지출 재검토 필요 ····· 128
4.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 130
5.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 ····· 133
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국고 반납 필요 ····· 138
7.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사업: 예산 비목간 변경 절차 준수 필요 ····· 141
8. 송무업무지원 사업: 소송 패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143
9.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 승인 절차 준수 필요 ····· 146

10.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입대체경비 집행 개선 필요 ····· 150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154

❖ 질병관리청 ·····155

Ⅰ. 개 관 ····· 155

1. 결산 개요 ····· 155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159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60

Ⅱ. 사업별 검토 ····· 161

【일반회계】

<세 입> ····· 161

1. 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세입 계상 필요 ····· 161

<세 출> ····· 165

2.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성있는 예산 편성·집행을 통한 조정의 최소화 필요 ····· 165
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지출원인행위 준칙 준수 필요 등 ···· 168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한 교부 필요 ····· 172
5.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 시험연구비로의 일괄 편성 지양 필요 ····· 175
6.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 부적절 ····· 180
7.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비목 변경시 사전절차 이행 필요 등 ····· 183
8. 통합정책소통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연초 전용 부적절 ····· 187

【응급의료기금】

<지 출> ····· 191

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행정편의적인 비목의 운영 지양 필요 등 ····· 191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 197

10. 국가결핵예방 사업: 국산 BCG백신 개발 난항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등 ····· 197

11.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사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 201

12. 암역학조사 사업: 예산 편성·집행 방식 변경 검토 필요 ····· 205

【기 타】

1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208

환 경 노 동 위 원 회

❖ 환 경 부 ·····211

Ⅰ. 개 관 ····· 211

1. 결산 개요 ····· 21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21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7

Ⅱ. 사업별 검토 ····· 219

【총 괄】

1. 환경부 R&D: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 219
2.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한국환경공단 장기 미정산 금액의 조속한 정산 필요 ····· 222

【일반회계】

<세 출> ····· 226

3.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26
4.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30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입> ····· 234

5. 법정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234

<세 출> ····· 238

6.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지상 사외배관의 안전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 238
7.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시험연구비로 행정소송착수금 집행 부적정 ····· 241
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 필요 ····· 244
9.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ODA): 협력국과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 248
10. 지질공원사업: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51
11.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254
12. 국토생태네트워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 258
13.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시험연구비로 상시·지속적인 인력 운용 부적정 등 ····· 262
14.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6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 271

15.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등 ····· 271
16. 전기차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등 ····· 2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284

17.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자의 선정 기준 정비 필요 ····· 284

18.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한 내 준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88

【한강수계관리기금】

<지 출> ····· 292

19.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 292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296

❖ 기 상 청 ·····298

Ⅰ. 개 관 ····· 298

1. 결산 개요 ····· 29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0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02

Ⅱ. 사업별 검토 ····· 303

【총 괄】

1. 기상청 R&D: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비 실적보고 기간 준수를 위한 관리 필요 등 ····· 303

【일반회계】

<세 출> ····· 309

2.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 309
3.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장비 도입과 관련한 정보보안 강화 필요 등 ····· 312
4.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전 협의를 통한 부지 확보 수립 계획 필요 ····· 316
5. 기상산업육성: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 저하 등 기상감정 제도 운영 미흡 ····· 319
6.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상전문인력의 국제기상분야 취업률 미흡 ····· 322
7.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당초 계획과 다른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부진 ····· 325

【기 타】 ·····328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328

❖ 고용노동부 ·····329

Ⅰ. 개 관 ····· 329

1. 결산 개요 ····· 32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334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36

Ⅱ. 사업별 검토 ····· 337

【일반회계】

<세 출> ····· 337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 337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대상 변경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편성 필요 ···· 342
3.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등 ····· 346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계정)】

<지 출> ····· 351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보조사업연장 평가 반영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개선 필요 등 ····· 351
5.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부적정 ····· 357
6.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연례적인 대부한도액 변경의 적정성 검토 필요등 ····· 359
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필요 ····· 364
8. 대체인력뱅크: 알선취업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368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지 출> ····· 371

9.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관리 및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필요 ····· 371

1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원구조 개편 검토 필요 ····· 377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 382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관리 필요 ····· 382

12. 생활안정자금(융자): 다양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 필요 ····· 386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 389

13. 신용보증대위변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등 ····· 38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 입> ····· 395

14. 고용주부담금: 실질적인 위험예방조치에 상응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운영 필요 ····· 395

<지 출> ····· 398

15.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398

16.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의 주기적인 점검 필요 ····· 400

17.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403
18. 안전보건교육 및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 노력 필요 ····· 406
19.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평균 승인 처리기간 증가 개선 필요 등 ····· 409
20. 산재병원지원: 경영성과 개선 및 노후의료장비 개선 노력 필요 ····· 414

【임금채권보장기금】

<수 입> ····· 420
21. 법정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검토 필요 ····· 420
22. 기타경상이전수입: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 424

<지 출> ····· 427
23.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의 연령별 차등 적정성 검토 필요 ····· 427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 431
24. 장애인고용기금: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431

【기후대응기금】

<지 출> ····· 436
25.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적극적인 수요발굴 노력 필요 ····· 436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44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 국토교통부 ·····443

Ⅰ. 개 관 ····· 443

1. 결산 개요 ····· 44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448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0

Ⅱ. 사업별검토 ····· 452

【총 괄】

1. 국토교통부 소관 집행부진 사업 분석 ····· 452
2. 국가철도공단: 원인행위 없는 출연금의 이월 및 재이월 부적정 ····· 462
3.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금 사업의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 ····· 467

【일반회계】

<세 출> ····· 471

4. 주거급여 지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검토 필요 ····· 471
5. 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조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 476
6. 주택공시가격조사: 조사·산정 수수료 요율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 479
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환경부와의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검토 필요 ····· 482

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 486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환불 대상자에 지원한 보증료 환수 필요 등 ····· 490
10.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선로사용료의 예산 반영 필요 ····· 493
11.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 496
12. 철도사고조사 : 연례적인 국외교육여비 내역변경 개선 필요 ····· 500
13.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법적 근거가 미흡한 차입 부적정 ····· 502
14.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 서울시 등 지자체 추진사업과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505
15.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 사업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의 비목 전환 검토 필요 ····· 508
16. 건설교통신기술 지정: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적극 활용 필요 ····· 511
17. 자동차안전도 평가: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한 시험차 매각 대금의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 514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입> ····· 517

18. 법정부담금: 도로안전시설물 손괴 원인자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 517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 520

19.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항공안전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520

20.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평가 결과 '미흡' 등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 523
21.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조류 충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목표치 설정 필요 ····· 5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529
22.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과도한 변경 지양 필요 ····· 529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수 입> ····· 533
23. 기타민간이자수입: 기금 조성-운용금리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조정 체계 개선 필요 ····· 533

<지 출> ····· 536
24.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고금리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적정 ····· 536
25. 통합공공임대 융자·출자: 주거안정과 손익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 539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 입> ····· 542
26.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542

【기 타】

2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45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7

Ⅰ. 개 관 ····· 547

1. 결산 개요 ····· 547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51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52

Ⅱ. 사업별 검토 ····· 55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 553

1.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이월규정 준수 필요 ····· 553

2.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에 따른 잉여금 처리 규정 보완 필요 ····· 556

3.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자체와의 재원분담 필요 ····· 559

4.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연말에 집중된 예산집행 부적정 ····· 562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566

❖ 새만금개발청 ·····568

Ⅰ. 개 관 ····· 568

1. 결산 개요 ····· 568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72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73

Ⅱ. 사업별 검토 ····· 574

【일반회계】

<세 입> ····· 574

1. 토지대여료: 미납 사용료 회수 실적 제고 필요 ····· 574

<세 출> ····· 577

2. 기본경비: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비 최소화 필요 ····· 577

3.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당초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 ····· 581

4.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이차전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조정 검토 필요 ····· 584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 587

여 성 가 족 위 원 회

❖ 여성가족부 ·····591

Ⅰ. 개 관 ····· 591

1. 결산 개요 ····· 59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 596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597

Ⅱ. 사업별 검토 ····· 598

【총 괄】

1.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 598

【일반회계】

<세 입> ····· 601

2.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수납률 제고 필요 ····· 601

<세 출> ····· 604

3.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등 ····· 604

4.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편성 필요 ····· 612

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616
6. 양육비이행 지원사업: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구상권 청구업무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 6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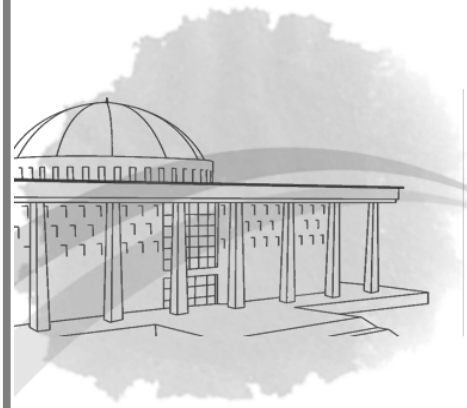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세 출> ····· 624

7.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립 대상 선정 시 재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 624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628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조 9,706억 7,400만원(17.3%)이 많은 108조 3,44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조 4,264억 1,800만원(16.6%)이 증가됨.[1)]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573,403	573,403	1,180,496	607,093	1,057,628	1,057,628	1,126,096	68,468	△54,400
기 금	84,530,291	84,530,291	91,737,551	7,207,260	91,316,163	91,316,163	107,218,369	15,902,206	15,480,818
총수입	85,103,694	85,103,694	92,918,047	7,814,353	92,373,791	92,373,791	108,344,465	15,970,674	15,426,418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2조 1,838억 4,800만원(△1.8%)이 적은 120조 6,639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조 7,010억 5,400만원(8.7%)이 증가됨.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8,144,706	68,144,706	67,117,671	△1,027,035	74,179,358	74,179,358	72,180,135	△1,999,223	5,062,464
기 금	41,038,252	41,038,252	43,845,265	2,807,013	48,198,563	48,668,481	48,483,856	△184,625	4,638,591
총지출	109,182,958	109,182,958	110,962,937	1,779,979	122,377,921	122,847,839	120,663,991	△2,183,848	9,701,054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2,061억 600만원으로, 1조 7,045억 7,3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2,861억 8,300만원이 수납(수납률 75.5%)되고 4,172억 7,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11억 1,500만원이 불납결손 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943,949	943,949	-	943,949	1,417,599	1,040,003	376,537	1,05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75	775	-	775	2,451	2,445	6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775	775	-	775	2,451	2,445	6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878	31	791	56
- 투자계정	-	-	-	-	878	31	791	5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7,038	67,038	-	67,038	88,663	51,400	37,262	-
- 지역지원계정	67,038	67,038	-	67,038	66,299	40,291	26,009	-
- 지역자율계정	-	-	-	-	22,203	10,960	11,243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133	133	0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	-	-	28	17	11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61,024	61,024	-	61,024	62,196	61,974	222	-
- 손익계정	53,101	53,101	-	53,101	53,665	53,443	222	-
- 자본계정	7,923	7,923	-	7,923	8,532	8,532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48,786	48,786	-	48,786	49,374	48,260	1,114	-
- 손익계정	47,564	47,564	-	47,564	48,004	46,891	1,114	-
- 자본계정	1,222	1,222	-	1,222	1,370	1,37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8,639	18,639	-	18,639	17,714	17,577	137	-
- 손익계정	17,580	17,580	-	17,580	16,755	16,618	137	-
- 자본계정	1,059	1,059	-	1,059	958	958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6,261	26,261	-	26,261	27,006	26,284	722	-
- 손익계정	24,795	24,795	-	24,795	25,585	24,863	722	-
- 자본계정	1,466	1,466	-	1,466	1,421	1,421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1,451	21,451	-	21,451	20,502	20,191	311	-
- 손익계정	19,946	19,946	-	19,946	18,852	18,541	311	-
- 자본계정	1,505	1,505	-	1,505	1,650	1,650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8,183	18,183	-	18,183	18,190	18,017	173	-
- 손익계정	15,404	15,404	-	15,404	14,406	14,234	173	-
- 자본계정	2,779	2,779	-	2,779	3,784	3,784	-	-
합 계	1,206,106	1,206,106	-	1,206,106	1,704,573	1,286,183	417,275	1,115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3조 7,578억 2,300만원으로, 72조 5,947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114억 5,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1,516억 3,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2,628,824	72,628,824	23,422	△1,043,512	200,398	71,809,132	70,678,927	5,827	1,124,3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770,342	1,770,342	353	△23,323	-	1,747,371	1,737,423	994	8,955
- 지역지원계정	1,203,258	1,203,258	353	△21,323	-	1,182,287	1,172,339	994	8,955
- 지역자율계정	552,362	552,362	-	△2,000	-	550,362	550,362	-	-
-세종특별자치시계정	2,948	2,948	-	-	-	2,948	2,948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774	11,774	-	-	-	11,774	11,774	-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재활원)	61,024	61,024	821	3,147	-	64,992	54,662	3,049	7,281
- 손익계정	53,101	53,101	281	3,147	-	56,529	52,844	344	3,341
- 자본계정	7,923	7,923	540	-	-	8,463	1,818	2,705	3,94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정신건강센터)	48,786	48,786	414	994	-	50,194	47,441	397	2,357
- 손익계정	47,564	47,564	300	994	-	48,858	46,248	397	2,213
- 자본계정	1,222	1,222	114	-	-	1,336	1,192	-	14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공주병원)	18,639	18,639	-	26	-	18,665	16,323	108	2,234
- 손익계정	17,580	17,580	-	26	-	17,606	15,494	0	2,112
- 자본계정	1,059	1,059	-	-	-	1,059	829	108	12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나주병원)	26,261	26,261	39	130	-	26,430	23,987	174	2,269
- 손익계정	24,795	24,795	-	130	-	24,925	22,681	-	2,244
- 자본계정	1,466	1,466	39	-	-	1,505	1,306	174	2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부곡병원)	21,451	21,451	363	80	-	21,893	20,053	214	1,626
- 손익계정	19,946	19,946	-	80	-	20,026	18,532	19	1,474
- 자본계정	1,505	1,505	363	-	-	1,868	1,521	195	15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립춘천병원)	18,183	18,183	962	-	-	19,145	15,918	688	2,538
- 손익계정	15,404	15,404	-	-	-	15,404	13,070	-	2,334
- 자본계정	2,779	2,779	962	-	-	3,741	2,848	688	204
합 계	74,593,510	74,593,510	26,374	△1,062,459	200,398	73,757,823	72,594,734	11,451	1,151,638

주) 총계 기준

*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24.6.27.)에 따라 교육부로 이관된 영·유아 보육 관련 이체예산 1조 668억 3,600만원 및 초과지출 승인금액 43억 7,700만원 등 포함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71조 9,656억 6,700만원으로, 221조 924억 7,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20조 8,492억 7,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었으며, 2,427억 8,000만원이 미수납되고 4억 1,7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국민연금기금	166,745,869	166,745,869	215,554,205	215,518,382	35,412	412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4,558,131	4,745,402	4,544,447	200,950	6
응급의료기금	661,667	661,667	792,868	786,448	6,419	-
합 계	171,965,667	171,965,667	221,092,475	220,849,278	242,780	41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71조 9,762억 6,900만원으로, 220조 8,492억 7,800만원이 지출(집행률 128.4%)되고 183억 5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81억 9,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민연금기금	166,745,869	166,745,869	7,953	166,753,822	215,518,382	15,985	151,857
국민건강증진기금	4,558,131	4,558,131	2,254	4,560,385	4,544,447	1,685	136,781
응급의료기금	661,667	661,667	395	662,062	786,448	634	9,554
합 계	171,965,667	171,965,667	10,602	171,976,269	220,849,278	18,305	298,192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보건복지부 자산은 전년 대비 177조 6,034억 5,400만원이 증가한 1,218조 9,939억 5,8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68조 2,268억 3,600만원 증가되고 투자자산이 109조 3,933억 8,4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조 4,019억 2,200만원 증가된 7조 3,356억 6,000만원으로 유동부채 1조 621억 8,6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76조 2,015억 3,200만원이 증가된 1,211조 6,582억 9,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75조 892억 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조 5,204억 4,2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34조 6,033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조 2,382억 9,800만원 감소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218,993,958	1,041,390,504	177,603,454	17.1
		유동자산	347,910,959	279,684,123	68,226,836	24.4
		투자자산	867,102,572	757,709,188	109,393,384	14.4
		일반유형자산	3,217,709	3,202,064	15,645	0.5
		무형자산	105,445	128,340	△22,895	△17.8
		기타비유동자산	657,273	666,791	△9,518	△1.4
	부 채		7,335,660	5,933,738	1,401,922	23.6
		유동부채	2,019,842	957,656	1,062,186	110.9
		장기차입부채	5,055,747	4,711,198	344,549	7.3
		장기충당부채	51,735	52,179	△444	△0.9
		기타비유동부채	208,337	212,706	△4,369	△2.1
	순자산		1,211,658,298	1,035,456,766	176,201,532	17.0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75,089,285	69,568,843	5,520,442	7.9
	재정운영순원가		37,549,663	44,845,779	△7,296,116	△16.3
	재정운영결과		34,603,377	41,841,675	△7,238,298	△17.3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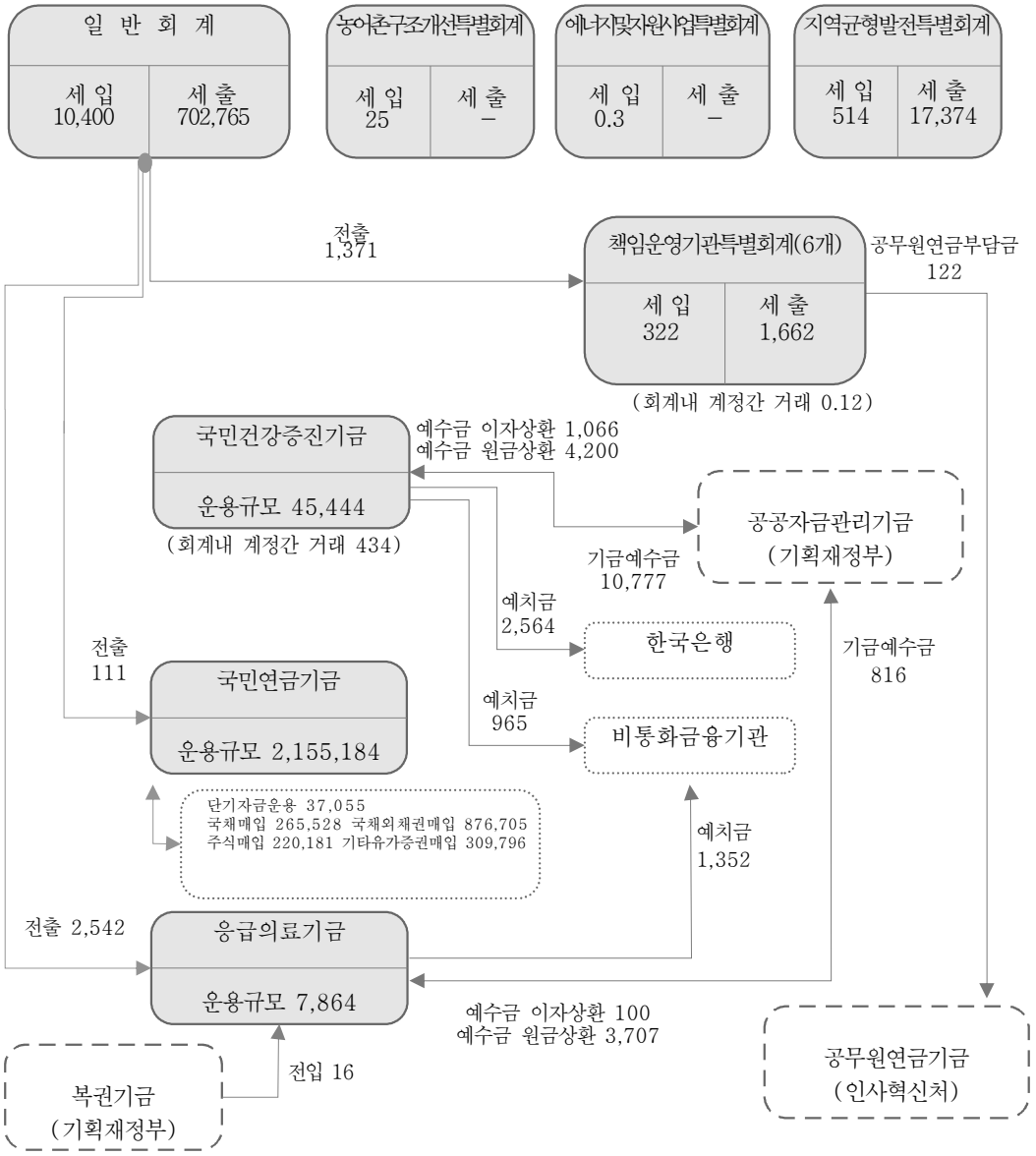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1,371억원, 국민연금기금으로 111억원, 응급의료기금으로 2,542억원이 각각 전출되었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22억원이 전출되었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조 777억원이 예수되었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4,200억원, 이자 1,066억원이 상환되었음. 또한 복권기금에서 응급의료기금으로 16억원이 전입되었으며, 응급의료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3,707억원, 이자 100억원이 상환되었음.

[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과성과 합리성 제고, 원활한 필수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체계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의 건강생활 보장,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발전가능 사회 구현 등을 주요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총 483개의 세부사업에서 아동·노인·장애인·저소득층 지원, 국민의 평생건강 지원, 의료보장 확대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집행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수입 측면에서는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률이 저조하고, 미집행된 보조금이 반납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비목에서 2023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금이 지속적으로 징수되고 있지 않는 등 수입 예산 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지출 측면에서는 첫째, 의정갈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항목간 변경이 발생하는 등 집행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예비비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기존 사업과 기능적 유사성을 보이는 구조로 인해 신청 유인이 낮아 실집행률이 저조하고, 집행부진으로 발생한 여유재원을 다른 사업 재원으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셋째,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현재 제주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적 타당성은 있다고 보이나, 사업 진행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차례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사업진행 상황을 고려한 단계적인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임.

넷째,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법정 의무지출 사업임에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이를 지양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연례적으로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용 예산이 대부분 불용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저해

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ISP 수립 재원이 편성되지 않았음에도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더하여 ISP 수립 이후 시스템 구축 역시 예비비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를 통해 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없이 예산이 편성되는 경우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사전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불용시켜야 함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아홉째,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내역사업간 과도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집행과정에서 예산 변경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열째,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인데, 국회 심의 단계에서 ISP 미수립 등의 사유로 감액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시 적정 사업계획 및 사업비 도출 전 예산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사업은 매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미지급금은 국가가 암검진 수행 의료기관에 대한 채무상환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해 미지급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구성되며, 2024년도 징수결정액 1조 2,803억 7,700만원 중 9,933억 700만원이 수납(수납률 77.6%)되고 2,870억 7,000만원이 미수납됨.[2)]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예치이자 수입 등으로 구성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492억 1,100만원 중 350억 2,400만원이 수납(수납률 71.2%)되고 141억 8,700만원이 미수납됨.[3)]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 이전수입	903,336	903,336	1,280,377	993,307	-	287,070	77.6	1,240,534
기타재산 이자수입	12,312	12,312	49,211	35,024	-	14,187	71.2	15,14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70%대에 머물러 미수납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수납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등의 집행 단계에서 실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의 사전적 조치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두 비목의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도 수납률은 77.6%로 전년도 대비 소폭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여전히 70%대로 저조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

[2021~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474,516	474,516	474,516	1,120,275	760,852	160.3	67.9	359,424	-
2022	474,500	474,500	474,500	1,284,044	933,437	196.7	72.7	350,607	-
2023	474,504	474,504	474,504	1,545,536	1,066,247	224.7	69.0	479,288	-
2024	903,336	903,336	903,336	1,280,377	993,307	110.0	77.6	287,070	-

자료: 보건복지부

[2021~2024년 기타재산이전수입의 예산액 대비 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9,823	9,823	9,823	28,119	9,332	95.0	33.2	18,787	
2022	9,792	9,792	9,792	28,129	22,872	233.6	81.3	5,257	-
2023	9,792	9,792	9,792	32,397	20,623	210.6	63.7	11,774	-
2024	12,312	12,312	12,312	49,211	35,024	284.5	71.2	14,187	-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별로 추경 편성 시기가 상이하고, 편성 누락 등의 사유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지 않아 수납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매월 납부 독촉·분할납부 안내 강화, 분기별 10억원 이상 미반납액 집중관리 도입, 미반납 사유·납부계획 점검 강화 등을 통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개선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러한 사후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한 수납 독려 조치만으로는 구조적인 한계

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바,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보조금 교부 단계에서부터 실제 집행 가능성, 사업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과다하게 교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사전적 조치를 병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조금의 반납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국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같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측면은 있으나, 여전히 연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두 비목 모두 2024년 이전에 수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현재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

[기타경상이전수입 및 기타재산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미수납액		건수
기타경상이전수입	2024년 이전 발생	31,442	212
	2024년 발생	255,505	1,000
기타재산이전수입	2024년 이전 발생	350	113
	2024년 발생	13,837	731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을 별도로 계리하고 집행 완료 후에는 잔액 및 이자수입을 국고에 반납해야 하며,[4]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은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상당기간 국고 결손으로 귀결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이전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수납 독려와 안내를 통해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고, 수납의 적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는 보조사업 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과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 출〉

2. 예비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예비비 집행 및 운영상 부적정 문제

가. 개 요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 4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으며, 같은 해 2월 6일 「의사인력 확대 방안」을 통해 2025년부터 의대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5)]

이후 의료계의 총파업 선언 및 전공의 사직 등 의정 갈등이 본격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음.[6)]

2024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5개 세부사업에 일반예비비 2,003억 9,8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이 중 1,976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6%)되고 1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6억 2,000만원이 불용됨.

[2024년 보건복지부 예비비 배정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 예비비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7011-312)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66	75	-	4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 (7011-313)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634	605	-	17

5) 2031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 확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5년 의대 모집인원은 1,509명 확대한 4,567명으로 확정하였음(2024.5.24.).

6) 두 차례의 비상진료대책(2024.2.19., 2.28.) 발표와 함께 보건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2.23.)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였음.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배정사유	배정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정책기반 구축 (7033-304) (통합 및 전략홍보)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9,000	8,998	-	2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189,066	186,839	26	2,202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4333-450)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 대체인력,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1,632	1,135	101	396
	소 계		200,398	197,652	127	2,620
합 계			200,398	197,652	127	2,620

자료: 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비총액)’ 사업은 의사집단행동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경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직책수행경비, 자산취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에 예비비 7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 중 6억 8,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2,000만원이 불용됨.[7)]

[2024년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비총액) 사업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구분	편성 내역	집행 내역
총액	○ 6,600만원 - 특근매식비 : 6,000만원 - 기타운영비 : 100만원 - 직책수행경비 : 500만원	○ 7,500만원 - 특근매식비 : 5,100만원 - 기타운영비 : 400만원 - 직책수행경비 : 2,000만원
비총액	○ 6억 3,400만원 - 일반수용비 : 1억 300만원 - 임차료 : 5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1억원 - 국내여비 : 1억 4,500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8,100만원 - 자산취득비 : 2억원	○ 6억 500만원 - 일반수용비 : 1억 2,900만원 - 공공요금및제세 : 200만원 - 임차료 : 3,400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 7,700만원 - 국내여비 : 8,500만원 - 관서업무추진비 : 7,800만원 - 자산취득비 : 2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7) 일반회계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7011-312)(중앙사고수습본부)
일반회계 -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비총액)(7011-313)(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기반 구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내 교육·정책 홍보 및 조직 관리 등 부내 업무 총괄 지원을 위한 경비로, 2024년도 의료개혁 홍보 및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예비비 9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이 중 89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됨.[8)]

[2024년 정책기반 구축 사업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내역사업명	편성 내역	집행 내역
통합 및 전략 홍보	○ 90억원 - 의료개혁 홍보 : 68억 9,0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1억 1,000만원	○ 89억 9,800만원 - 의료개혁 홍보 : 87억 6,9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억 2,9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필수의료 붕괴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진료 대체인력에 대한 파견근무수당 등 지급,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 등 의료기관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이 배정되었음.[9)]

[2024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내역사업	구분	편성 내역	집행 내역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수당	본예산 (예비비)	○ 59억 4,500만원(457명분) - 인건비 38억 8,800만원(특별활동지원비 27억 4,200만원, 초과근무수당 11억 4,600만원) - 국내여비 20억 5,700만원	○ 268억 9,100만원 * 공보의 2,024명, 군의관 3,068명 - 인건비 : 133억 9,200만원 - 여비 : 134억 9,900만원
	1회 추경 (예비비)	○ 53억 7,300만원(413명분) - 인건비 35억 1,400만원(특별활동지원비 24억 7,800만원, 초과근무수당 10억 3,600만원) - 국내여비 18억 5,900만원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	본예산 (예비비)	○ 198억원 * 기준단가 : 의사 최대 1,800만원/월, 간호사 최대 400만원/월	○ 1,134억 2,200만원 - 민간경상보조 : 197억 9,9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936억 2,300만원
	1회 추경 (예비비)	○ 180억 3,000만원 * 기준단가 : 의사 최대 1,800만원/월, 간호사 최대 400만원/월	

8) 일반회계 - 정책기반 구축(7033-304)

9) 일반회계 -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2740-312)(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 (당직수당)	본예산 (예비비)	ㅇ 382억 5,000만원 - 전문의 256억 5,000만원 - 간호사 126억원 * 상급종합병원 47개소(총 49,655병상)의 전문의(총 14,207명), 간호사가 당직함에 따른 당직 수당 지급	ㅇ 1,996억 5,600백만원 - 민간경상보조 : 381억 5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1,615억 5,000만원
	1회 추경 (예비비)	ㅇ 382억 8,000만원 - 의사 325억 8,000만원 - 간호사 등 56억 7,000만원 - 위탁사업비 3,000만원 * 인건비 지원 신청 서류 검토, 예산 집행 및 정산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위탁 비용	
전문의 등 인건비 (휴일·야간 수당)	본예산 (예비비)	ㅇ 393억 4,100만원 - 의사 336억 9,600만원 - 간호사 56억 4,500만원	ㅇ 190억 7,800만원 - 민간경상보조 : 145억 2,8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 : 45억 5,0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본예산 (예비비)	ㅇ 11억 8,900백만원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8억 600만원 ②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3억 8,300만원	ㅇ 26억 5,900만원 - 1차 소요예산 : 11억 8,900만원 ①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8억 600만원 ②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3억 8,300만원 - 2차 소요예산 : 14억 7,100만원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 9억 2,000만원 ②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 5억 5,100만원 * 일부 기관 신청 금액 변동
	1회 추경 (예비비)	ㅇ 16억 3,300만원 ①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억 2,000만원 ②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7억 1,300만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전원협력 체계 구축	본예산 (예비비)	ㅇ 67억 5,000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 전담인력 인센티브 5,357천원/일 × 30일	ㅇ 48억 4,600만원 -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 × 전담인력 인센티브 1,282,011원/일 × 90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의 진료협력 강화	본예산 (예비비)	ㅇ 39억 5,800만원 - 상급종합병원 10억 5,800만원 - 종합병원 9억원 - 정책지원금* 20억원 *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ㅇ 55억 1,400만원 - 상급종합병원 : 23억 9,000만원(38개소×평균 6,300만원) - 센터 확장이전 : 31억 2,400만원(157개소×평균 2,000만원)

병원간 전원시 이송처치료 지원	본예산 (예비비)	ㅇ 5억 1,500만원 - 이송처치료 지원: 165,000원* x 3,000건 (1개월) = 495,000,000원 - 민간위탁 운영비: 2,000만원	ㅇ 6억 6,000만원 - 이송처치료 지원: 165,000원* x 약 3,757건 = 6억 2,000만원 *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75,000원×2 + 부가요금 15,000원 - 민간위탁 운영비: 4,000만원
	1회 추경 (예비비)	ㅇ 4억 9,500만원 - (평균) 165,000원* × 3,000건(1개월)	
의대정원 증원 소송 대응	1회 추경 (예비비)	ㅇ 15억 4,900만원 - 의대정원 증원 소송 관련 외부대리인 선임비 등 : 13억 6,500만원 - 국내여비 : 2,600만원 - 기간제 계약직 변호사 인건비 및 추가 업무수당 등 : 1억 2,800만원 - 사업추진비 : 3,000만원	ㅇ 6억 7,600만원 - 변호사 추가업무 수당: 4,100만원(7명×1백만원×6개월) - 소송 외부대리인 선임비용 등: 6억 400만원(대리인선임 착수금 평균 3.82백만원×158건) - 국내여비: 200만원 - 사업추진비: 2,800만원
대체인력 민간병원 파견근무 배상책임 보험료	1회 추경 (예비비)	ㅇ 10억 2,900만원 - 배상책임보험료 : 457명 × 2,249천원	ㅇ 10억원
시니어의사 활용지원	1회 추경 (예비비)	ㅇ 13억 9,000만원 -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12억 8,000만원 · 80명×16백만원×100%(보조율) -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	ㅇ 13억 9,000만원 - 시니어의사 채용원금 12억 8,000만원 · 80명×1,600만원×100%(보조율) - 시니어의사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	1회 추경 (예비비)	ㅇ 55억원 - 비상진료 의료인력 인건비 50억원 - 교육비·위탁사업비 5억원	ㅇ 54억 8,200만원 - 비상진료 의료인력 수당지급 : 49억 8,300만원(15,709명 차등지급) - 교육지원 : 4억 9,900만원
암환자 진료협력 지원	1회 추경 (예비비)	◦ 4,000만원 - 인건비 1,500만원 -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등 2,500만원	ㅇ 3,900만원 - 인건비 1,500만원 - 콜센터 시스템 운영비 등 2,4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은 의료개혁 4대 패키지 발표('24.2.1) 후속조치로 의료개혁과제 논의·추진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24.4.25) 및 의료개혁추진단이 발족함에 따라 이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배정된 예비비 16억 3,200만원 중 11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69.5%)되고, 3억 9,600만원이 불용됨.

[2024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편성 내역	집행 내역
ㅇ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 : 16억 3,200만원 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200만원 ② 운영비: 11억 8,100만원 ③ 여비 - 국내여비 4,400만원, 국외여비 2,000만원 ④ 업무추진비: 2,900만원 ⑤ 직무수행경비: 1,600만원 ⑥ 일반연구비: 3억원	ㅇ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추진단 운영 사업 : 11억 3,500만원 ①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300만원 ② 운영비: 8억 5,400만원 ③ 여비 - 국내여비 5,300만원 ④ 업무추진비: 2,900만원 ⑤ 직무수행경비: 1,600만원 ⑥ 일반연구비 -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1억 3,200만원* - 미용의료 실태파악 및 해외사례 분석 연구 4,000만원 * 용역기간 미도래(24.9.2~25.5.31)로 선금 1억 3,200만원 지급 완료, 잔금 1억 100만원 이월

자료: 보건복지부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편성 대비 초과지출 소요가 시급하게 발생하는 경우, 이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입 및 세출예산에 예산 총액의 일부를 계상하는 것을 의미함.

예비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총액을 확정한 후「국가재정법」제51조에 따라 집행되는데,[10] 동법 제52조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결산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11]

이와 같이 예비비는 그 성격상 긴급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된 이후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국회의 사전 통제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관리체계의 실효적 작동 여부가 예비비 제도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으로 볼 수 있음.

---

10) ① 예비비 사용 신청(각 중앙관서의 장→기획재정부장관), ②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 작성(기획재정부장관), ③ 국무회의 심의, ④ 대통령 승인

11)「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검토의견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므로,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항목 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다음 신청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심사한 후 예비비사용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되여야 하며, 다른 사업이나 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12)]

그러나 이번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초기 예비비 추계와 실제 소요액 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잘못된 수요예측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관련 법률 및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나타나고 있음.

①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기본경비(총액) 사업은 수습본부가 2024년 2월에 출범함에 따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총액) 6,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기타운영비와 직책수행경비의 경우 미흡한 예산 추계로 인해 집행액이 편성액보다 크게 증가하였음.

[2024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사업(총액-기타운영비, 직책수행경비) 집행 내역]

구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기타 운영비 (210-16)	○ 1,350천원 - 중수본 전임팀(5팀) : 90천원×5개팀×3개월=1,350천원	○ 4,050천원 - (4-5월) 5팀, 900천원 지급 - (6월) 4팀, 360천원 지급 - (7월) 4팀, 360천원 지급 - (8월) 6팀, 810천원 지급 - (9월) 2팀, 180천원 지급 - (10-11월) 5팀, 900천원 지급 - (12월) 6팀, 540천원 지급

12) 이·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효율적인 재해복구 지원, 국제관계 등 대외여건 변경 등에 한하여 항목간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편성내역	집행내역
직책수행경비 (250-02)	○ 5,400천원 - 1,800천원(전임 5명) × 3개월 = 5,400천원	○ 19,712천원 - (4-5월) 7명, 4,200천원 지급 - (6-7월) 6명, 3,300천원 지급 - (8월) 7명, 2,482천원 지급 - (9-11월) 12명, 6,236천원 지급 - (12월) 11명, 3,494천원 지급

자료: 보건복지부

②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2024년 3월 7일 및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동 사업에 예비비 1,890억 6,600만원을 배정받았는데, 부실한 사업계획과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예비비 배정 직후 예산 대비 15% 수준인 278억 9,400만원의 변경이 발생되었음.

[2024년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세목조정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7.5.)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6,0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110-04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파견수당(인건비)' 부족으로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에서 전용
전용 (2024.7.5.)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3,50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220-01	'대체인력(공보의·군의관) 파견수당(여비)' 부족으로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에서 전용
세목변경 (2024.7.3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18,250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2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당직수당)'의 건강보험공단 사업위탁을 위해 '전문의 등 인건비(휴일·야간수당)', '전원협력체계 구축'에서 세목변경
세목변경 (2024.7.31.)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1	144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2740-312)	320-02	'비상진료 의료인력 지원(당직수당)'의 건강보험공단 사업위탁을 위해 같은 내역사업에서 세목변경

자료: 보건복지부

③ 정책기반 구축 사업 내 통합 및 전략홍보 사업은 의료개혁 홍보를 위해 일반수용비로 68억 9,000만원,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일반용역비 21억 1,000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일반용역비 중 89.1%인 18억 8,100만원을 홍보비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통합 및 전략홍보 예비비 편성·집행 세부내역]

편성 세부내역	집행 세부내역
- 의료개혁 홍보 : 68억 9,0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1억 1,000만원	- 의료개혁 홍보 : 87억 6,900만원 - 의료개혁 콘텐츠 제작 : 2억 2,9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사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기치 못한 의사집단행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히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비상진료체계 운영의 장기화 및 이에 따른 대국민 홍보 필요성 강화로 인해 예산 추계와 실제 집행액간 차이가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비비 항목간의 과도한 변경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 그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하고, 원칙적으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이에 향후 긴급한 소요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비비 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비비 편성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예측 가능한 지출 소요를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예비비 항목 간 과도한 예산 변경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3.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보조사업 수행 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4억원 중 14억원이 집행(집행률 58.3%)되고, 10억원이 불용됨.[13)]

[2024년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48,565	48,565	-	-	48,565	44,760	-	3,805	49,058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2,400	2,400	-	-	2,400	1,400	-	1,000	1,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아동보호 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므로, 관련 예산 편성시 지자체의 설치 수요 및 부지 확보 등 사업 수행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복지부는 2021년 수립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 방안에 따라 2024년까지 매년 10개씩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14)] 2025년 5월 말 현재 100개소가 설치되었음.[15)]

---

13) 일반회계-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1339-301)(인구아동정책관)

14)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목표 : 2021년 77개소→2025년 120개소 목표

15) 과거에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업무 등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였으나, 「아동복지법」개정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도별 확충 현황을 보면, 2024년에는 전년 대비 10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6개소만이 설치되어, 2024년 말 목표인 108개소 대비 98개소에 그치는 등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2020년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5.
아동보호 전문기관	69	77	85	92	98	100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기관 설치 지연으로 인해 지자체의 실집행 내역 역시 부진한 상황인데, 2023년의 경우 1개소, 2024년에는 5개소 기관 설치 예산이 불용되는 등 지자체의 설치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16] 지자체는 낮은 설치 단가로 인한 건물 확보의 어려움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지방비 추경 반영 등으로 인한 설치 추진 지연을 실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치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2022년	4,200	4,200	3,190	3,190	-	3,190	1,509	1,607	372	36.0
2023년	2,400	2,400	2,100	2,100	1,607	3,707	2,079	1,470	158	37.5
2024년	2,400	2,400	1,400	1,400	1,470	2,870	1,994	576	300	38.0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지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 수행 여건 충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지 위한 기본 원칙임.[17]

로 2020년 10월부터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업무 등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기관 업무에서 제외됨.

16)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의 경우 낮은 신규설치 단가,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 등을 사유로 지자체 설치수요가 감소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자체 계획에 따라 매년 일률적으로 10개소 신규설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에 대한 면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 불용 사례가 발생하였음.[18)]

이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과다 불용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 예산 편성 시 지자체의 사업추진 여건과 수요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관련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17)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는 지자체자본보조금(330-03)으로 부동산 매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와 시설 리모델링 등을 위한 공사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18)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을 제고하고자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부터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임.

4. 활동지원급여 사업: 부정수급 현황 자료 관리 부실 부적정

가. 개 요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1,915억 1,100만원 중 2조 1,912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억 5,400만원이 불용됨.[19)]

[2024년도 활동지원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애인활동지원	2,284,604	2,284,604	-	△3,796	2,280,808	2,280,510	43	255	2,532,323
활동지원급여	2,213,224	2,213,224	-	△21,713	2,191,511	2,191,257	-	254	2,457,9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활동지원급여 사업 집행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정수급 현황 자료의 경우 2022년~2023년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정비로 인해 해당 기간의 부정수급 적발 실적 전체가 시스템에서 누락되거나 지자체 담당자의 누락·오기, 환수액 미반영 등으로 전체 부정수급 추세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지자체 등에 대한 교육 강화 등 데이터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활동지원급여 사업은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서비스가 대부분 수급자의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특성상 현장 점검 등 실시간 관리가 어려운 구조임.

이로 인해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이 담합할 경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우처 결제가 가능해지므로, 이에 따른 부정수급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

19) 일반회계-장애인활동지원(1535-304)(장애인정책국)

고 있음.[20]

그럼에도 최근 65세 장기요양전환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으로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활동보조인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부정수급 발생 가능성 역시 높아질 우려가 있음.

[2020년 이후 지원 확대 현황]

구분	지원 확대 내용
2020년	65세 장기요양전환자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행
2022년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월 한도액 산정특례 지속 지원
2023년	가산급여 대상자 자격 기준 완화
2024년	65세 미만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2020~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 규모]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 대상자(명)	113,952	126,175	137,829	150,302	160,343
이용자(명)	93,115	102,575	110,658	120,877	129,998
활동보조인(명)	84,854	95,046	103,378	112,570	121,661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관련 데이터의 관리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부정수급 현황 자료는 전적으로 지자체 담당자가 입력하고 있어 일부 담당자의 자료 누락 또는 변동 사항 인지 부족 등으로 인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료와 지자체에 직접 확인한 자료간 부정수급 적발 건수 및 금액 현황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2022년~2023년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 정비로 인해 해당 기간의 부정수급 적발 실적 전체가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등 전체 부정수급 추세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로 인해 통계의 신뢰도 역시 저하되고 있음.

20) 「바우처시간 허위 입력 지원급여 편취 장애인·활동지원인, 벌금형」(뉴스1, 2025.5.7.) 등

[지자체 제출 및 e나라도움 추출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현황 비교]

(단위: 건, 백만원, '24.12월 기준)

구분		부정수급 적발 건	부정수급 환수 건	부정수급 적발액	부정수급 환수액
2020년	지자체 제출	572	558	1,597	1,317
	e나라도움 추출	695		1,610	1,163
2021년	지자체 제출	755	744	2,153	1,653
	e나라도움 추출	596		1,481	1,226
2022년	지자체 제출	785	768	2,192	1,910
	e나라도움 추출	-		-	-
2023년	지자체 제출	560	551	4,487	3,522
	e나라도움 추출	-		-	-
2024년	지자체 제출	420	408	1,834	1,726
	e나라도움 추출	57		736	400

주 1) 지자체 제출 자료 기준일: '24.12월, e나라도움 추출 기준일: '24.9월

2) e나라도움 시스템 정비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은 회계연도 구분 없이 각 사업연도에 적발한 적발건수 및 적발금액 기준으로 추출되며, 2024년은 24년 회계연도 예산을 기준으로 적발한 적발건수 및 적발금액 기준으로 추출됨

3) '22~'23년은 e나라도움 시스템 정비과정에서 누락으로 추출되는 자료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부정수급 적발·환수실적 입력이 기존 내역사업 단위(복지부 입력)에서 보조사업 단위(지자체 입력)로 전환됨에 따라 지자체의 건수·금액·환수 실적 등의 자료 입력 누락으로 부정수급 현황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21]

그러나 바우처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음성적 부정수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의 확보가 필수적임.

즉 관련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누락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사업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아울러 부정확한 데이터는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환류 체계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인 점을 감안하여,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반영된 부정수급 적발·환수 실적 관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수시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는 등 데이터의 정합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22]

21) e나라도움 상 '22년~'23년 부정수급 현황 누락, 그 외 지자체 담당자의 누락·오기, 소송으로 인한 변동, 환수액 미반영 등으로 오차 발생 가능. 다만, 적발·환수 실적 관리에 대해 구체화한 내용을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반영하였으며, 부정수급 현황을 정확히 관리하고 지침 개정사항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겠다는 입장임.

5.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집행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특성 및 복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584억 7,000만원 중 3,566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3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4억 300만원이 불용됨.[23)]

[2024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발달장애인 지원	357,738	357,738	732	-	358,470	356,687	380	1,403	427,853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17,563	17,563	-	-	17,563	17,563	-	-	25,394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14,192	14,192	-	-	14,192	14,192	-	-	17,782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40,484	40,484	-	△4,932	35,552	35,552	-	-	43,9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5억 6,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관

22)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에서 반기별로 부정수급 현황을 정확하게 e나라도움시스템에 입력하도록 「2025년 활동지원사업 지침」에 반영하였다는 설명임.

23) 일반회계-발달장애인 지원(1535-309)(장애인정책국)

등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1억 9,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

내역사업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55억 5,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 사항]

구분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 1:1 지원
이용대상	신청자격	■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		
	선정기준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 ■ 가정내보호체계 점수가 ‘5점 이상’인 자로 통합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가족과 분리된 별도의 주거지원·야간돌봄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된 자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80점 이상인 자	■ 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 ’24.9.19.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대상자 선정기준 한시 적용 (7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80점 미만)
서비스	내용	■ 낮활동 + 주거서비스	■ 낮활동 서비스(개별형)	■ 낮활동 서비스(그룹형)
		■ (공통)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의미있는 낮활동		
		■ 편안하고 안전한 밤생활	-	
	제공시간	■ (주간) 09:00~17:00 ■ (야간) 17:00~09:00 * 금요일은 20시까지 운영, 원가정복귀 * 주말·공휴일은 휴무	■ (주간) 10:00~17:00 * 주말·공휴일은 휴무	■ (주간) 09:00~18:00 - 일 최대 8시간 - 월 최대 176시간 * 주말·공휴일은 휴무
지원규모	대상자수	■ 340명	■ 500명	■ 1,500명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은 2024년 기준 실집행률이 26.5%에 불과할 정도로 집행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주간활동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기능 및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의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24시간 개별 1:1,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사업의 예산액은 총 722억 3,900만원이나, 지자체 단계의 실집행액은 191억 4,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6.5%에 불과함.

동 사업 지원율 역시 계획 인원 2,340명 중 1,390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루어져 59.4% 수준에 머무르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2025년도 역시 5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20.0%에 그치고 있음.

[2024~2025년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명, %)

구 분		예산집행					지원인원		
		예산액 (A)	교부액	실집행액 (B)	불용액	실집행률 (B/A)	계획[1] (a)	실적[2] (b)	지원율 (b/a)
2024	24시간 개별 1:1	17,563	17,563	8,305	-	47.3	340	214	62.9
	주간 개별 1:1	14,192	14,192	6,277	-	44.2	500	360	72
	주간 그룹 1:1	40,484	35,552	4,566	-	11.3	1,500	816	54.4
	합 계	72,239	67,307	19,148	-	26.5	2,340	1,390	59.4
2025 (5.31 기준)	24시간 개별 1:1	25,051	14,613	5,643	-	22.2	340	256	75.3
	주간 개별 1:1	17,482	10,198	4,855	-	27.3	500	396	79.2
	주간 그룹 1:1	41,671	24,302	6,377	-	14.5	1,500	1,061	70.7
	합 계	84,204	49,113	16,875	-	20.0	2,340	1,713	73.2

주 1) 예산 편성상 인원
2) 지원기관 등에서 최대 수용가능 인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환경 적응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한 도전적 행동 등으로 높은 돌봄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 종사자 채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계획대비 지원실적이 부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24)25)]

그러나 집행부진은 보건복지부에서 밝힌 공급적인 측면 외에도 수요적인 면에서도

24)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지원인원 실적(최중증발달장애인 최대 수용가능 인원)이 예산상 지원가능 인원보다 적다는 점에서 돌봄 종사자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음.

25)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전문수당 및 돌봄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였음.

<2025년도 제2회 추경 최중증 발달장애인 사업 증액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증액 내역
24시간 개별 1:1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5→15만원), 운영비 증액(+600만원)
주간 개별 1:1	
주간 그룹 1:1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단가 인상(24,930원 → 28,254원)

자료: 보건복지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기존 사업과 기능 및 대상 측면에서 일부 중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도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1인 집중지원 대상이 되거나 우선 선정 대상으로 이미 고려되고 있고,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전체 이용인원의 20% 이상 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주간활동서비스 등 다른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 받는 경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동 사업이 기존 사업과 기능적 중복성을 보이는 구조로 인해 서비스 신청 유인이 낮을 수 있다고 보임.[26)]

한편 이와 같이 집행부진으로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예산이 다른 사업의 부족분 충당에 활용될 수 있는데, 실제 동 사업 예산이 다른 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었음.[27)]

---

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④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센터)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⑦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⑨「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⑩「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전공과 포함)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⑪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합돌봄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자료: 보건복지부

27)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룹 1:1 지원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액 404억 8,400만원 중 49억 3,200만원(12.2%)이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사업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해 사용되었음.

[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내역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10.15.)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1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4,145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
내역변경 (2024.10.15.)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1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787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지원	지자체 경상보조	대상자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이는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예산 소요에 비해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28)]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과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간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수요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등 제도적·구조적 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 사업이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29)]

28)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결과적으로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실집행은 저조하였으나,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특성상 민감성이 높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서비스 신청 속도가 빠르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으며, 제도 초기의 실집행률은 낮았으나 점차 증가하여 안정화되었다는 입장임.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연도별 실집행률〉

○ (주간활동) ('20) 56.4% → ('21) 46.6% → ('22) 58.5% → ('23) 79.4% → ('24) 95.9%
○ (방과후활동) ('20) 18.4% → ('21) 25.4% → ('22) 39.5% → ('23) 70.1% → ('24) 87.5%

29)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2회 추경을 통해 통합돌봄서비스 단가를 인상하여 주간활동서비스 등 기존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과 차별화하는 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임.

*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 24,930원→28,254원(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50%→170%)으로 인상

6.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반기 전액 교부 문제

가. 개 요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제주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해소를 위해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을 신축하여 제주시 거주 장애인의 시설서비스 수요를 충족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5,0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30]

[2024년도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8,732	28,732	-	-	28,732	26,369		2,363	28,655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1,750	1,750	-	-	1,750	1,75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현재 제주시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정원은 358명(10개소)이나, 입소대기자는 359명에 달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확충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4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음.

[2024년도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추진 경과]

(’23. 12.)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국비 확정
(’24. 02.)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
(’24. 05.)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17.5억)
(’24. 05.) 장애인거주시설 신축사업 지방비 확보(17.5억)
(’24. 06.) 건축 실시설계 용역 계약
(’24. 11.) 건축 실시설계 용역 완료
(’25. 01.) 사전 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25. 02.) 공사 계약 및 착수

자료: 보건복지부

30) 일반회계-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1536-300)(장애인정책국)

나. 검토의견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국고보조금의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2024년도 상반기 1차례에 전액 교부하여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된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은 총예산 17억 5,000만원이 지자체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4,2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2.4%에 불과하여 현저히 저조한 수준임.

[2024년도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백만원,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1,750	1,750	1,750	1,750	-	1,750	42	1,750	42	1,708	-	2.4

그런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세부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연내 집행 가능성과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비록 동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해당연도 내에 보조금이 전액 교부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동 지침의 취지가 실제 집행가능성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불용 또는 이월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보조금을 분할 교부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됨.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보조금 교부 신청 당시 해당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인·허가 등 사전 절차의 진행 여부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4년 5월 21일 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교부하였음.[31]

31)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교부(2024.5.21.) 이후 지방비 편성시기 및 각종 인·허가, 사전절차 이행 등으로 인해 지자체 단계에서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도 제주 공립형 장애인거주시설 신축 사업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지자체 자본보조 (330-03)	교부액	-	1,750	-	-
	실집행액	-	-	-	42
	실집행 누적액	-	-	-	42

자료: 보건복지부

이로 인해 교부된 예산의 대부분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지자체 단계에서 이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이는 상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교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는 보조금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여부,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사업추진 상황을 보다 면밀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은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여부, 사전 행정절차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사업내용, 절차 등 추진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예산을 2개년 이상 기간으로 분할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기초연금 지급: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득인정액 조건을 만족하는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9조 9,990억 500만원 중 19조 6,084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04억 4,100만원이 불용됨.[32)]

[2024년도 기초연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초연금 지급	20,201,456	20,201,456	35	△202,486	19,999,005	19,608,485	80	390,441	21,421,91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지급의무 및 규모가 확정되는 대표적인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은 기초연금의 수급권자 범위 등에 대해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자로 명시하고 있음.[33)]

나. 검토의견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은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으로, 이·전용을 통해 재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성격의 예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면밀히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동 사업비를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32) 일반회계-기초연금 지급(2131-300)(연금정책관)

33) 「기초연금법」
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①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최근 3년간 기초연금 사업의 결산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연금 사업 예산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의 경우 이·전용 금액이 본예산 대비 1.0%에 불과하나 그 금액은 2,024억 8,6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기초연금 사업 이·전용 사유]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1)]	이·전용 등	불용액	이·전용 사유(예시)
2022	16,289,504	△106,478	621	- 엘리엇, 메이슨의 본안 심리 등 중재절차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충당 - 코로나19 대응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부족분 -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부족분 충당
2023	18,530,432	△9,786	330,582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용 및 행정비용 부족분 등 - 노인의 날 기념, 100세 어르신 증정 장수지팡이 지급대상자 증가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 23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 부족분
2024	20,201,456	△202,486	390,441	-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 -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 - 경로당 식사 제공 단계적 확대 및 냉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충당 - 공보의 파견수당 등 의료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대응 - 엘리엇 소송 관련 영국법원 기각 결정에 따른 정부 배상금 지급

주 1) 추경 예산액

자료: 「2024회계연도 결산 공통요구자료 Ⅱ-1」 발췌(보건복지부, 2025. 3.)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예산 불용액 규모가 이·전용 요청 금액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전용을 실시하더라도 기초연금 급여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법정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으로 재량지출에 비해 지출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더욱 중요시 된다는 점에서 이·전용 등을 통한 다른 사업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음.[34)]

34) 2025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심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부부감액 비율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예산안 중 500억 감액 의견에 대해 기초연금은 법적 의무지출인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감액이 어려움을 설명한 바 있음.

<제418회(정기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소위원회, 2024.11.20.>
보건복지부제2차관 박민수 우리 부는 정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부부 감액비율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예산이 조금 남는다 이런 이유로 해서 감액 요청을 하셨는데요. 우선 예

또한 법령상 그 집행 용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동 사업비를 다른 사업의 부족 재원을 보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예산의 본질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법정 의무지출 예산이 이·전용 등으로 인해 부족해질 경우 예비비 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재원을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재정 소요를 초래하게 됨.

보건복지부의 설명대로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전용 등의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여유 재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기초연금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수급자의 규모나 적정 소요 등에 대한 기초적인 추계 자체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예산 편성시 보다 정밀하게 예산 소요를 파악·편성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편성 및 법정 의무지출 재원을 이·전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년에 보면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이 1,000억 내외로 남았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20조에 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은 비율로 따지면 0.5% 수준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타 사업에 비해서 정확도 있게 예산을 수립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정도 여력이나 이런 것들은 신청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무지출인 점을 감안해서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8.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보다 면밀한 소요 추계를 통한 예산 편성·집행 필요

가. 개 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63억 6,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35)]

[2024년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노인단체 지원	88,418	88,418	-	6,360	94,778	94,775	-	3	95,709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80,003	80,003	-	6,360	86,363	86,363	-	-	87,47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전국 경로당 6.9만여개소에 대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2008년 지방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한시적 국고지원을 결정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경로당 지원현황('25년 예산 기준)]

구분	냉방비	난방비	양곡비	운영비
지원주체	국고 50%(서울 20%), 지방비 50%(서울 80%) * 지방교부세법 개정(’ 14년)에 따라 ’ 15년부터 특별교부세 미교부			지방비 100%
지원내용 (296만원/年)	33만원 (월 16.5만원 ×2개월)	200만원 (월 40만원 ×5개월)	62.8만원 (정부양곡 20kg (52,340원) × 12포)	공과금, 식사보조비, 물품구입비, 생활용품비 등 * 지자체마다 상이

자료: 보건복지부

35) 일반회계-노인단체 지원(2133-301)(노인정책관)

나. 검토의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매년 연도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한 증액 집행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방식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지출 증가 요인이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과정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매년 지원 개소 수 증가와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예산 부족 우려로 반복적으로 전용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매년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68,396	68,396	-	4,041	72,437	67,145	-	5,292
2023	71,508	71,508	-	4,815	76,323	70,362	-	5,961
2024	80,003	80,003	-	6,360	86,363	80,436	-	5,927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역시 경로당 식사제공의 단계적 확대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추가지원,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인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부족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노인일자리 지원 등 다른 사업 예산에서 전용을 실시하였음.[36)]

[최근 4년간 지원개소 수 및 지원단가 추이]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예산	684억원	715억원(31억원↑)	800억원(85억원↑)	875억원(75억원↑)
예산 편성시 개소수	65,642개소 (서울 3,412, 지방 62,230)	65,642개소 (서울 3,412, 지방 62,230)	68,456개소 (서울 3,445, 지방 65,031)	71,222개소 (서울 3,654, 지방 67,568)
냉방비(월) (7~8월)	10만원	11.5만원(1.5만원↑)	16.5만원 (5만원↑)	16.5만원 (전년 동)
난방비(월) (1~3, 11~12월)	32만원	37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	40만원 (전년 동)
양곡비(포당)	8포 (20Kg 포당 43,870원)	8포 (20Kg 포당 52,340원, 8,470원↑)	8포 (전년 동)	12포 (전년 동)

자료: 보건복지부

36) **(식사 확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경로당 식사 제공 주 3.4→5일로 단계적 확대 추진(5월~)
(미등록경로당)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미등록경로당(1,676개소)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냉방비) 여름철 폭염 및 전기료 인상 등에 대비하여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 1만원 인상(16.5→17.5만원)

이와 같은 예산 변경은 물가 상승과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 폭염일수 증가 등 이상기후를 포함한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냉·난방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도 중 계획 변경을 통해 불가피한 추가 소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2022년 냉·난방비 지원단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22.7.8,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3년과 2024년 냉방비 인상은 각각 「혹서기 대비 하절기 취약계층 대책」('23.6.18,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24.5.30, 제4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인상되었음.[37)]

그러나 이와 같이 정부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하여 증액 집행하는 방식은 국회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 내용과 다르게 집행되는 것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한 집행 방식으로 볼 수 있음.

특히 동 사업의 경우 2022~2023년에는 불용액이 전용금액보다 더 많이 발생해왔는데, 2024년에도 역시 전용된 예산의 93.2%가 불용되는 등 불필요한 전용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예산집행 관리 역시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예산의 전용은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변동을 주는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 최소한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도, 이와 같이 전용액 중 상당 부분이 불용되는 것은 전용 결정 이전 단계에서 소요 추계가 충분히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물가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예측하고, 이를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예산이 연도 중 불필요한 전용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7) 냉방비의 경우 '22년 월 10만 원 → 월 11.5만원, '23년 월 11.5만원 → 7월 12.5만원, 8월 22.5만원, '24년 월 16.5만원 → 월 17.5만원로 지원단가가 인상되었음.
난방비의 경우 ' 22년 월 32만원, 5개월간→월 32만원(3개월) + 월 37만원(2개월, 11 ~ 12월)로 인상되었음.

9.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타 사업으로의 연례적 전용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211억 8,400만원 중 2조 211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고 8,000만원이 불용됨.[38)]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026,370	2,026,370	14	△5,200	2,021,184	2,021,104	-	80	2,184,68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보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39)] 지원 유형은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민간형으로 구분되며 2022년 말 기준 전국 1,300개 수행기관이 기관당 평균 585개의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음.[40)]

---

38) 일반회계-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2139-302)(노인정책관)

39) 「노인복지법」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0) 노인복지관(279개)·대한노인회(205개)·노인일자리지원기관(203개)·지자체(138개) 등

[2024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유형별 지원 내용]

유 형		내 용	대상	사업량 (천개)	월평균 시간	보수/지원내역 (활동개월)
계				1,098		
공익 활동형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사회참여활동 (老老케어·보육시설 봉사, 공공의료 복지시설 등)	기초연금 수급자 등	692	30 (3시간, 10일)	월 29만 원 (11개월)
사회 서비스형		경력과 역량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 제공 (교육 시설 학습 보조 지원, 공공행정 업무지원 등)	65세 이상 (일부 60세)	156	60 (3시간, 20일)	월 76.1만 원 (10개월)
	선도모델	외부자원(인적·물적)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60세 이상	10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상이	
	아이돌봄 시범사업	경력과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를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생 위기 극복 일자리	60세 이상	5	60	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수준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실버 카페 등)	60세 이상	64	참여노인 1인당 연 267만원 내외 사업비 지원	
	취업 알선형	관련 직종 업무능력 보유자를 수요처로 연계 (청소・경비 등)		99	알선 수행기관에 15만원 (또는 5만원) 사업비 지원	
	시니어 인턴십	기업 인턴(3개월) 후 계속 고용 유도 목적 인건비 지원 (산업 안전・전기・조선업 등)		70	6개월간 기업에 최대 270만원 지원	
	고령자 친화기업	노인 다수 고용기업 설립·우수 고용기업 지원		2	최대 3억원 이내 보조금 민간 기업에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기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동 사업 예산을 다른 사업 부족분 충당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일자리 제공 확대라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예산에서 매년 이・전용에 따른 감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40억 4,100만원, 2023년 37억원 및 2024년 5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감액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 등 다른 사업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전용 재원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이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타 사업을 위한 전용 재원 기능을 일부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임.

[최근 3년간 이·전용 등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20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320-01	4,041	노인단체 지원 (2133-301)	330-01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한 재원 일부 전용
2023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320-01	3,700	노인단체 지원 (2133-302)	330-01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재원 일부 전용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2139-302)	320-01	5,200	노인단체 지원 (2133-302)	330-01	경로당 식사확대, 미등록 경로당 지원 등에 따른 예산 부족분 전용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사업의 연도별 실적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도 83만 6,000명에서 2024년 107만 3,000명으로 지원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단가와 예산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최근 4년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목표 및 실적]

(단위 : 천명,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3.
목표	820	845	883	1,030	1,098
실적	836	881	925	1,073	974
달성도	102.0	104.3	104.7	104.2	88.7

자료: 보건복지부

또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서비스 사업으로서 대기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 수요 측면에서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별 대기수요]

(단위 : 명)

구분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사회 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일자리(A)	762,296	158,580	10,669	61,913	100,097	69,719	2,624
지원자(B)	828,196	210,260	-	70,045	-	-	-
대기자(B-A)	65,900	51,680	-	8,132	-	-	-

주 1) 일자리(A)는 누적참여자 기준
2) 지원자(B)관련 취업알선형, 선도모델,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기관)에서 참여자 개별 선발하여 지원자 현황 수집 불가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 대기자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가용예산을 일자리 제공 확대 등 사업 목표 달성에 활용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전용 재원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지양될 필요가 있으므로, 보건복지부는 향후 증가하는 수요와 사업 목표에 맞춰 편성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따라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재참여율이 높지 않고, 중도포기율은 전체 사업 유형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고 소득 안정성은 낮은 점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재참여율 및 중도포기율을 살펴보면, 재참여율은 공익형에 비해 낮은 반면, 중도포기율은 전체 사업 유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유형별 재참여율 및 중도포기율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	시장형	시니어 인턴십
일자리수	762,296	158,580	10,669	61,913	69,719
재참여자수(비율)	603,178(79.1%)	93,994(59.3%)	-	42,798(69.1%)	-
중도포기자수(비율)	92,340(12.1%)	15,172(9.6%)	807(7.5%)	10,857(17.5%)	3,136(4.5%)

주 1) 일자리수는 누적참여자 기준이며, 재참여율 및 중도포기율은 일자리수 대비 비율로 산정
2) 재참여자수는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참여자 수
3) 고령자친화기업은 기업(기관)에서 참여자 별도 관리로 중도포기 현황 수집 불가, 취업알선형은 해당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른 유형에 비해 평균 연령(71.1세 < 공익형 78.1세)이 낮고, 민간・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재취업하는 비율(12%)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임.[41]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장형 일자리 사업의 경우 소규모 매장 운영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 운영하며,[42] 상품・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 수익을 통해 참여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음.

즉 다른 유형에 비해 수익의 불확실성이 크고 소득 안정성은 낮은 특성으로 인해 사업 참여자의 소득 편차와 직무 부담감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재참여율 저하 및 중도포기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사업단의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질적 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동 사업단의 일자리 재참여율 및 중도포기율을 개선하는 등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43]

41) 중도포기사유가 '취업'에 해당하는 비율 : 공익형 7.5%, 사서형 10.8%, 시장형 12%

42) 공산품 제작, 반찬 및 도시락 제조・판매, 실버카페 운영 등

43) 보건복지부는 성장지원컨설팅(사업모델・기술・디자인・판로 지원 등)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가 정상화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하겠다는 입장임.

10.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전용 및 예비비 배정을 통한 신규 시스템 구축 지양 필요

가. 개 요

‘통합지원정보시스템구축’ 사업은 노쇠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내도록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2,400만원 중 2억 8,800만원이 이월되고, 3,600만원이 불용됨.[44)]

[2024년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6,880	6,880	-	264	7,144	7,144	288	44	7,130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	-	-	324	324	-	288	36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 예산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024.3.26.)에 따라 통합지원 절차의 체계적 운영, 유관 기관 및 시스템간 정보를 손쉽게 연계하는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에 전액 집행되었음.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획]

일 자	주요 내용	세부 내용
1단계('25.8~'26.3월)	지자체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자체 통합지원 절차별 기능개발 (신청→조사→판정→지원계획→서비스의뢰→모니터링) - 건보공단(지사) 신청 연계 - 전문기관 조사 의뢰-결과 수신 (건보공단, 연금공단) - 서비스 의뢰 대상 사업 연계 - 서비스 자원 및 대상자 관리

44) 일반회계-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2631-336)(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일 자	주요 내용	세부 내용
2단계('26.7~'27.7월)	기능 개선 및 연계 체계 강화	- 보건소 대상자의뢰 연계 - 희망이음 통합지원절차 기능보강 - 장애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지원계획 수립지원 연계 - 서비스 의뢰 대상 사업 연계 확대 - 서비스 제공과정의 정보공유

주) ISP 산출물 기준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전용 증액을 통해 ISP를 수립한 후, 예비비 배정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는 2026년 법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전용 증액과 예비비를 통한 시스템 구축은 사업 예산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 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제정에 따라 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체계적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11월 전용 증액을 통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비용 3억 2,400만원을 확보하였음.[45]

[ISP 수립 재원 마련을 위한 전용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1.1.)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2639-307)	민간경상보조 (320-01)	100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631-336)	일반 연구비 (260-01)	「돌봄통합지원법」 제정('24.3.)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ISP 수립비
	지역사회 보건복지 연계 재가 서비스 체계 구축 (2631-336)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60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2640-304)	민간경상보조 (320-01)	164			
	합계		324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ISP 수립의 선행이 필수적인

45) ISP 수립 기간: 2024.12.~2025.5.

데, 관련 법 제정 당시 ISP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였다는 입장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임.

[2024년 ISP 수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수행기간
	예산액	결산액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ISP 수립	(본예산) - (전용) 324	(이월) 288 (불용) 36	2024.12.30~ 2025.5.29.

자료: 보건복지부

첫째, 「국가재정법」 제46조제3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와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는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상 전용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신규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46)47)]

둘째,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전용을 통한 ISP 수립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48)] 연말 전용 등으로 인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49)]

---

46)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 ~ ⑥ (생 략)

47) 다만,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역사회보건·복지 연계재가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예산에 반영되어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시스템 구축 역시 「국가재정법」에 부합하게 추진되었다는 입장임.

48)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ISP 수립은 국회 확정 예산이 아니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통해 전용된 예산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49)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35

보건복지부는 동법 제정일이 2024년 3월 26일로, 같은해 예산안에 ISP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는 없었으며,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ISP를 추진하는 경우 ISP 완료 후 시스템 구축예산 반영,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고려시 2026년 3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입장임.

또한 보건복지부는 부내 전용 예산 마련 및 재정당국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승인 후 즉시 조달청 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25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추진하기에는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용 증액이 연말에 이루어진 점, 전용 증액한 예산 중 88.2%인 2억 8,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편성 가능성 등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임.

특히 연말 전용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은 그 시급성이 충분히 전제되지 않는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으로 보임.

한편 보건복지부는 ISP 수립을 위한 예산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데 이어 2025년 시스템 구축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채 예비비 44억 7,200만원을 배정('25.5.29.)받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국가재정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불요·불급한 소요에 충당하여 집행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비비 배정 현황]

(단위: 백만원)

배정일	금액	내 역
2025.5.29.	4,472	■ 돌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비(소프트웨어 개발, 감리, 사업관리위탁, 개인정보영향평가, 부대비 등)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정부안 편성시 BPR·ISP 미수립으로 정부안에 미반영되어 2025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시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증액 논의가 있었으나 미반영된 상황에서, 시스템 구축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ISP가 완료되는 시점('25.5월말)에 즉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비비로 시스템구축비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ISP 수립 비용을 전용을 통해 충당한 상황에 더하여 예비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시스템 구축 소요예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우회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민주적 통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지양해야 할 행태라고 볼 수 있음.[50]

상술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는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 재원을 확보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를 활용한 사업 추진은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임.

50)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 ISP 결과 동 사업은 1단계에 68억원, 2단계 81억원 등 총 149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ISP결과에 따른 단계별 소요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계	**6,784**	**8,073**	**14,857**
소프트웨어 개발비	5,409	6,485	11,894
시스템 감리비	407	456	863
사업관리 위탁(PMO)	664	772	1,436
개인정보영향평가	240	288	528
부대비(조달수수료 등)	64	72	136

자료: 보건복지부

11.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보조사업 집행관리 강화를 통한 연례적 이월 및 실집행부진 개선 필요

가. 개 요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기능보강 지원을 통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 강화 및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1억원 중 60억 3,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0%)되고 6,200만원이 불용됨.[51]

[2024년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6,100	6,100	-	-	6,100	6,038	-	62	6,7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52]

2025년 4월 현재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총 30개소이고, 그 중 중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전문진료센터는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음.

---

51) 일반회계-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2740-307)(공공보건정책관)

5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보건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진료 분야별로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공공전문진료센터(이하 “공공전문진료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아니한 전문진료
2. 국민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전문진료
3. 지역별 공급의 차이가 커서 국가가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전문진료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24년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현황]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인하대	분당서울대	강원대	충남대 충북대	전남대 전북대	칠곡경북대 양산부산대	제주대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으로 인해 연례적인 대규모 이월 및 실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센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필수의료에 속하나 건강보험수가가 낮아 만성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및 장비 개선 등 기능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국고보조율 50%)로 지원함으로써 필수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있음.

그런데 2024년도의 경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1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교부된 예산의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30.4%에 그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측면이 있음.

[2021~2024년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

('24.12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대상기관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A)								
2021	어린이 공공전문 진료센터	2,000	2,000	2,000	2,000	-	2,000	1,819	2,000	180	91.0
2022		1,787	1,787	1,787	1,787	2,000	3,787	1,665	3,263	122	93.2
2023		1,000	1,000	999	999	3,263	4,262	691	1,442		69.1
2024		6,100	6,100	6,038	6,038	1,442	7,480	1,857	4,068		30.4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 문제는 각 센터별 사업 추진 현황 및 절차별 소요기간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임.

보건복지부 역시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에게 보조금 예산이 교부된 후 각 수행기관별로 장비계획 승인, 장비 입찰 공고 및 업체 선정,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음.[53)]

그러나 이와 같은 민간보조사업은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각 센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것은 실집행 부진으로 이어져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2024년도 대상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국비)	
		교부일	교부액		승인일	이월액
강원대학교병원	집행 완료	'24.5.30. '24.6.24.	66	63	-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비) 장비 납품 완료 (시설) 공사 계약 완료	'24.5.30. '24.6.24.	974	190	'24.12.30.	784
삼성서울병원	(장비) 장비 입고 완료, 검수 후 집행 예정	'24.5.30. '24.6.24.	156	-	'24.12.30.	156
서울대학교병원	집행 완료	'24.5.30. '24.6.24.	268	208	-	-
서울아산병원	(시설) 복지부 시설 심의 중	'24.5.30. '24.6.24.	177	-	'24.12.30.	177
세브란스병원	(장비) 장비 발주 및 계약 완료	'24.5.30. '24.6.24.	361	-	'24.12.30.	361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시설) 시설 공사 완료 후 집행 중	'24.8.2. '24.9.11.	66	38	'24.12.30.	28
인하대학교병원	집행 완료	'24.5.30. '24.6.24.	777	715	-	-
전남대학교병원	(시설) 공사 및 집행 완료 (장비) 장비 구매 완료	'24.5.30. '24.6.24.	275	64	'24.12.30.	168
전북대학교병원	(시설) 복지부 시설 심의 완료 (장비) 복지부 장비 심의 완료	'24.5.30. '24.6.24.	289	-	'24.12.30.	289

53) 특히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의 경우 전공의 파업에 따른 병원의 비상경영체제로 인해 병원 전체의 시설·장비 지출이 보류되면서 어린이 센터의 장비 구매 및 시설 계획 내부 심의 등 절차가 지연된데 따른 것으로 설명함.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2024년 사업 추진 현황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국비)	
		교부일	교부액		승인일	이월액
제주대학교병원	(시설) 리모델링 완공 (장비) 장비 계약 완료	'24.8.2. '24.9.11.	900	579	'24.12.30.	191
충북대학교병원	(시설) 계획 설계 진행 중 (장비) 복지부 장비 심의 완료	'24.5.30. '24.6.24.	900	-	'24.12.30.	900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시설) 기본설계 진행 중	'24.5.30. '24.6.24.	831	-	'24.12.30.	831

주) 2024년 12월 말 기준 작성, 충남대학교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특히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민간보조금의 미집행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 심의 중에 있는 센터의 예산에 대해서도 이월을 승인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도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음.

결국 이와 같은 보조금 집행 관리의 부실은 보조금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업 목적 달성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한편, 보조금 이월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 준수 노력 필요

가. 개 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은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R&D 추진을 통해 팬데믹, 초고령사회 진입, 필수의료 위기 등 국가 보건의료 난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95억원 중 285억 2,000만원이 집행(집행률 57.6%)되고 209억 8,000만원이 불용됨.[54]

[2024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49,500	49,500	-	-	49,500	28,520	-	20,980	63,1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당초 보건복지부는 총 사업비 1조 9,314억원(국비 1조 8,834억원, 민간 480억원)을 2024년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투입하여 ① 5대 임무 중심 혁신적 R&D를 추진하고, ②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반조성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2024년 49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다만 동 사업은 2024년 4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총 사업비가 7,686억원 감소한 1조 1,628억원(사업기간 9년)으로 확정됨.[55]

[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 사업 적정 사업비 검토 결과]

(단위: 억원, 년)

구분	정부안(A)	적정성 검토 결과(B)	증감(B-A)
국비	18,834	9,918	△8,916
기관부담(민자)	480	1,710	1,230
총 사업비	19,314	11,628	△7,686
사업기간	10	9	△1

자료: 보건복지부

54) 일반회계-한국형 ARPA-H 프로젝트(R&D)(3031-557)(보건산업정책국)

55)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기간: 2023. 8. ~ 2024. 4.

나. 검토의견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시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 전에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불용이 발생하는 등 예산의 비효율적 편성·집행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대규모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정부는 동 사업에 대해 시급성이 인정되고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결정하였음.[56][57]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통해 동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국가 재정 운용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

56) 현행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5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9. (생 략)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조사수행기관·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국가 재정의 운용 주체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가 예산 편성 시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업 시작 전인 2023년 말 까지 전체 사업계획 및 총 사업비, 연차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관리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으나, 결국 동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확정(2023. 12.) 이후에 적정성 검토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2024년도에 편성된 495억원의 예산 중 57.6%만이 집행되었음.

이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일지라도 적정성 검토 결과가 예산 편성 시점에 반영되지 않는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적정성 검토 전 예산 편성은 사업 수행 중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자칫 매몰비용 발생 등으로 인해 사업의 성과와 정책적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임.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과제수 및 예산액 조정 현황]

(단위: 개, 억원)

구분	당초 계획('24~'33)		적정성 검토결과('24~'32)	
	과제수	예산액	과제수	예산액
임무 1~4	48	8,640	40	7,200
임무 5	16	8,000	10	1,800
기반 1(신속지원)	10	500	-	-
기반 2(국제협력)	-	363	-	13.5
운영비(기획평가비)	-	1,331	-	904.7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가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신규 추진시 「국가재정법」에 따른 사전절차를 완료한 후에 적정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의 부적정 사용

가. 개 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은 정부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건비, 사업비 등 기관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64억 8,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됨.[58]

[2024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운영	36,480	36,480	-	-	36,480	36,480	-	-	38,62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원칙적으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여야 함에도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하므로, 향후 낙찰차액 집행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을 출연금 형태로 지원받고 있는데, 2024년 정보화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25억 6,700만원 중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일부인 5,586만 2,000원을 다른 사업비 부족분으로 사용하였음.

대표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실적보고’ 사업의 경우 2,396만 7,000원을 외주용역사업 및 조사분석에 집행하였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사업에서는 2,070만원을 수선유지비로 사용하였음.[59]

58) 일반회계-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운영(3032-300)(보건산업정책국)

[202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부적정 사용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예산액	계약 체결액	낙찰 차액	낙찰차액 사용 현황
국제의료사업 활성화 정책 지원 및 전략 수립		16,116	13,000	3,116	사업비 활용 (외주용역사업비, 조사분석비)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및 실적보고		123,967	100,000	23,967	사업비 활용 (외주용역사업비, 조사분석비)
국제의료정보 포털 운영		37,643	35,000	2,643	사업비 활용 (유인물비)
한국의료 이용 종합지원		18,500	18,500	-	-
외국 의료인 국내연수 수행		20,000	19,600	400	사업비 활용 (홍보비)
전사적 홍보 체계 구축 및 소통채널 기능 강화		3,000	2,800	200	사업비 활용 (유인물비)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수준 고도화 및 정보보호 실천문화		18,500	17,500	1,000	사업비 활용 (임차료)
인재육성 및 인재관리 체계 고도화		57,000	55,000	2,000	사업비 활용 (기타비용 납부)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운영	내부통합정보시스템 통합로그인 메신저 연동 개발	7,646	7,500	146	사업비 활용 (유민물비)
	내부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및 스마트 업무 자동화(RPA) 구축	133,000	131,600	1,400	사업비 활용 (조달수수료 납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2,070,000	2,049,300	20,700	사업비 활용 (수선유지비)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 컨설팅	62,000	61,710	290	사업비 활용 (조달수수료 납부)
계		2,567,372	2,511,510	55,862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 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하되, 다만 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59) 이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업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낙찰차액을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감리비, 조달수수료, 디지털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의 부족분의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60]

이러한 지침의 취지에 따라 동 진흥원의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역시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여야 함에도 예외적인 집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정한 집행으로 볼 수 있음.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사후관리 미흡으로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의 발생을 초래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출연금의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0)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86

14.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사업: EMR 사용인증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사업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을 정하고, 적합성 검·인증을 통하여 표준제품의 개발·사용을 유도하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상호호환성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 품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4,3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됨.[61]

[2024년도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자의무기록시스템 (EMR) 인증 관리운영	1,643	1,643	-	-	1,643	1,643	-	-	1,64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인증기준 및 제도 관리·개선, EMR인증 확산 운영, 심사인력 양성 및 신청기관 교육, 의료기관 EMR표준화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민간보조사업(320-02)으로 수행하고 있음.

[2024년도 각 내역사업별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인증기준 및 제도 관리개선	200	200	200	200	-	200	194	200	194	-	6	97.0
EMR 인증 확산·운영	354	354	354	354	-	354	345	354	345	-	9	97.5

61) 일반회계-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관리운영(3033-504)(첨단의료지원관)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심사인력 양성 및 신청기관 교육	289	289	289	289	-	289	278	289	278	-	11	96
의료기관 EMR 표준화 지원	800	800	800	800	-	800	788	800	788	-	12	98.5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EMR 사용인증 참여율이 11%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데, 이는 EMR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인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EMR(전자의무기록,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EMR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인증인 ‘제품인증’과 실제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사용인증’으로 구분됨.[62)63)]

이러한 EMR 시스템 인증은 ① 기능성, ② 상호운용성, ③ 보안성 등 3개 부분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 기준을 충족하여 인증받은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보다 표준화된 진료 기능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62) EMR이란 환자의 주된 증상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및 의견 등이 상세히 기록되고 이를 작성한 의료인의 전자서명이 함께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의미함.

63) EMR 시스템 인증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약 1년 5개월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추진되었음.
- ‘제품인증’은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것임.
- ‘사용인증’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임.

[EMR 시스템 인증기준]

인증기준		내용
기능성	27개	환자 안전 및 진료에 관한 기본기능 * 환자 및 처방정보 관리, 진단·검사 등 임상정보 관리, 임상의사결정 지원 기능 등
상호 운용성	20개	진료 연속성을 위해, 시스템 간 의료정보 상호교류에 필요한 기본 기능 * 의료기관 정보공유(환자 동의, 진료의뢰·회송 등), 건강정보고속도로 정보연계 및 전송보안, 예방접종 및 감염병 신고 등 공공기관 신고정보 전송 등
보안성	12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능 * 전자서명, 접근관리, 암호화, 백업 등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3만 6,234개의 의료기관 중 82%가 제품인증을 받은 EMR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실제 인증된 제품 사용에 대해 사용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단 11%에 그치고 있음.

[인증 EMR 도입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24.12월 기준)

구분	합계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전체 의료기관	36,234	47	330	1,380	34,477
인증 EMR도입 의료기관	29,728 (82%)	47 (100%)	257 (78%)	947 (69%)	28,477 (83%)
사용인증 획득 의료기관	4,052 (11%)	47 (100%)	167 (51%)	50 (4%)	3,788 (11%)

주) 2024.12월 심평원 청구자료 기준(치과, 정신, 요양, 한방병원, 보건기관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EMR 인증이 「의료법」에 따라 자율인증제로 운영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낮은 인지도와 인증심사에 따른 업무부담 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64)65)]

64)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에는 EMR 시스템 인증에 대한 권고 규정만 있으며, 사용인증은 별도의 규정이 없음.

65) 보건복지부는 병원급보다 의원급 사용인증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의원급은 의원급 EMR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대형 EMR 업체를 통해 사용인증 신청을 받아 단기간 내 많은 의원 모집이 가능했으나, 병원급의 경우 소규모 EMR 업체들이 각각 병원 EMR을 만드는 상황이라 의원급과 같이 EMR 업체를 통해 대규모 신청자 모집이 어려운 점 때문에 사용인증율이 저조하다는 설명임.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의료기관 심사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인증 지표 통폐합(30개→16개) 및 신청서류 간소화 등 2주기 인증제를 시행('25.1월)하였으나, 법적 근거 및 제도의 실효성 부족,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등으로 여전히 사용인증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음.[66]

그러나 EMR 시스템 인증제도의 한 축인 사용인증은 단순히 인증 제품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제 임상에서 기능변경 없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진료품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이러한 사용인증의 긍정적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표준화된 의료데이터의 생성 및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안전 강화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 EMR 인증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의료기관에 대한 참여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6) 보건복지부는 표준화된 임상데이터의 생성을 위해서는 표준적용 필수화 등 인증기준 개편이 필요하므로, 인증기준 내 선택사항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을 필수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인증기준 개편을 검토중이라는 설명임.

15.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교부 부적정

가. 개 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신약개발부터 기초·응용개발·임상시험·품목 인허가 등 바이오 제약 전분야에 걸친 전문가를 양성하는 NIBRT 교육을 국내에 제공하는 것으로,[67] 2024년도 예산현액 72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68]

[2024년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제약산업 육성·지원	32,691	32,691		9	32,700	32,693	-	7	40,456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7,200	7,200	-	-	7,200	7,200	-	-	7,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한 후 교부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 관리에 있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교부 후 진흥원이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고, 민간자본보조금은 보건복지부가 보조사업자와의 매칭을 통해 직접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69]

---

67) 아일랜드 국립바이오 공정교육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68) 일반회계-제약산업 육성·지원(3039-300)(보건산업정책국)

69) 동 사업은 복지부와 산업부의 공동 수행 사업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2020~2025년간 총 619억 6,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복지부에서 306억, 산업부에서 313억원을 부담할

2024년도 민간자본보조금은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연세대 송도 캠퍼스)에 입고될 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액 교부되었으나,[70] 2024년 12월 말 기준 35억원 전액이 보조사업자 단계에서 이월되었음.

[2024년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주체	보건복지부			보조사업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민간경상보조)	3,700	3,700	3,700	3,700	-	3,700	3,494	3,700	3,494	-	206	94.4
연세대학교 (민간자본보조)	3,500	3,500	3,500	3,500	-	3,500	-	3,500	-	3,500	-	0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장비 납품 및 설치 공간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의 건축 일정 계획 연기에 따라 장비 구매 및 장비 입고 절차가 지연되었고,[71] 민간보조사업자의 매칭자금 사용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전액 이월했다는 설명임.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 따르면,[72] 보조금 교부시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계획이며, 2024년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은 15억원임.

70)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란 바이오 공정 개발 연구 수행을 위한 공정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는 현장형 제약바이오 생산공정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71) 당초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는 202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3월 완공으로 변경되어 사업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연장됨.

7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국고보조금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전제로 교부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사업 진행상황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은 채 1차 교부 이후 약 1개월 뒤인 7~8월에 걸쳐 보조금 잔액을 전액 교부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73] 국고보조금의 불필요한 이월이나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한국형 NIBRT 프로그램 운영 사업 민간자본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교부요청일	교부일	교부금액	비고
1차 교부	2024.06.20.	2024.06.20.	2,250	-
2차 교부	2024.07.26.	2024.07.29.	125	착오 교부로 인한 3차 교부 진행
3차 교부	-	2024.08.14.	1,125	-
계			3,500	

자료: 보건복지부

73) 특히 2차 교부 시점은 사업 지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고 보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보건복지부는 1차 보조금 교부 이후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및 최종결과 확인 등 집행 가능성 검토 후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최종 교부를 진행하였다는 입장임.

16.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 근거법 개정에 따른 사업 통합 운영 검토 필요

가. 개 요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은 한의약 정책수립 및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 생산을 위해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6,600만원 중 3억 5,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1,200만원이 불용됨.[74)]

[2024년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366	366	-	-	366	354	-	12	3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 사업은「한의약 육성법」개정으로 실태조사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업무가 되었으며, 현재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예산이 운영지원 항목을 통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고유사업이 된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예산 체계의 일관성과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짝수년도)와 한약소비실태조사(홀수년도)로 분리되어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데, 2024년에는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음.

74) 일반회계-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3233-311)(한의약정책관)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	한약소비 실태조사
조사 방법	조사원 방문면접, 유치조사(설문지 전달 후 회수), 팩스/이메일 등	
조사 대상	■ 일반국민(19세 이상)·전국 성인 남녀 5,000명 ■ 한방의료 이용자(19세 이상)·외래환자 1,000명, 입원환자 1,000명	■ 한방의료서비스 부문 한약소비 기관·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 2,000개소 ■ 조제·판매 부문 한약소비 기관·한약사 및 한약조제 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방 1,000개소
조사 항목	한방의료이용 경험 및 치료질환, 인식, 타인추천 의향, 정책 활용 현황 등	의료기관의 일반 특성, 운영 및 경영 현황, 한약 처방 현황, 탕전실 이용 현황, 인식 등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해당 실태조사는 한의약 분야 국가통계로서 정책 기반 마련에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조사이며, 진흥원은 데이터의 수집·관리·제공 등 실태조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음.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조사 개요]

구분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한국한의약진흥원
역할	정책 수립, 총괄, 감독, 후속 조치(정책 반영, 제도개선)	실태조사 실무, 현장 조사, 자료 분석, 데이터 제공(활용·확산)
권한	조사 기준 및 방향 결정, 위탁	조사 수행, 결과 보고

자료: 보건복지부

동 사업은 실태조사 성격을 고려하여 2024년까지는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으나,[75] 2024년 2월「한의약 육성법」제13조의 개정으로 '통계의 조사·분석·제공' 업무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법정 고유업무로 포함되면서, 2025년부터는 예산 비목이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전환되었음.[76]

75) 2024년의 경우 사업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한국갤럽(3억 2,500만원)과 진흥원(4,100만원)이 공동 수행하였음.

76)「한의약 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① ~ ④ (생 략)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1의2. 한의약 관련 데이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및 통계의 조사 · 연구 · 수집 · 분석과 활용 · 제공

그러나「한의약 육성법」제13조에서는 진흥원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77]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미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세부사업을 통해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78][79]

[2024년도 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인건비	7,025	7,025	-	-	-	7,025	7,025 [6,508]	7,025	7,025 [6,508]	-	-
- 민간경상보조	7,025	7,025	-	-	-	7,025	7,025 [6,508]	7,025	7,025 [6,508]	-	-
· 관리운영비	1,977	1,977	-	-	-	1,977	1,977 [1,974]	1,977	1,977 [1,974]	-	-
- 민간경상보조	1,977	1,977	-	-	-	1,977	1,977 [1,974]	1,977	1,977 [1,974]	-	-
· 고유사업비	3,958	3,958	-	-	-	3,958	3,958 [3,770]	3,958	3,958 [3,756]	-	-
- 민간경상보조	3,268	3,268	-	-	-	3,268	3,268 [3,085]	3,268	3,268 [3,071]	-	-
- 민간자본보조	690	690	-	-	-	690	690 [685]	690	690 [685]	-	-
합 계	12,960	12,960	-	-	-	12,960	12,960 [12,252]	12,960	12,960 [12,238]	-	-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이 고유업무 수행에 대한 예산이 이미 운영지원 항목을 통해 편성·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또 다른 고유사업 경비를 별도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이중 지원

---

2. ~ 9. (생 략)

77)「한의약 육성법」
제13조(한국한의약진흥원)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78) 일반회계-한국한의약진흥원 운영지원(3234-310)(한의약정책관)

79)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홈페이지 운영,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및 관리 등 진흥원 고유사업 수행을 위해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예산 편성의 정합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정책 수립 및 총괄을 수행하고 있고, 실무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구조이므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근거법 개정으로 실태조사가 법정 고유업무에 포함되었고,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태조사를 위한 경비를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기보다는 고유사업비 지원 예산과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 구조의 합리성과 정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17.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내역사업 간 과도한 예산 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노후화된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설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0억 600만원 중 118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됨.[80)]

[2024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12,685	12,685	-	△679	12,006	11,862	-	144	10,545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994	1,994	-	2,939	4,933	4,933	-	-	4,006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7,391	7,391	-	△3,618	3,777	3,629	-	144	5,038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3,300	3,300	-	-	3,300	3,300	-	-	1,5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입소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경개선을 통해 요양·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증개축, 개보수, 기타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9억 3,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및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정신재활시설의 신축, 증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7,700만원 중 36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 일반회계-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3245-300)(정신건강정책관)

96.1%)되고, 1억 4,400만원이 불용됨.

내역사업인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은 낙후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 기준 및 치료환경 개선으로 감염병 예방과 정신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억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

나. 검토의견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내 내역사업간 과도한 예산 변경은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수립이 미흡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집행과정에서 예산 변경이 최소한의 규모로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②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③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등 3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서 내역사업별로 편성 및 집행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2024년도 동 사업의 내역사업별 예산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예산 73억 9,100만원의 48.9%인 36억 1,800만원이 전용 및 내역사업 간 변경으로 감액되었고, 감액된 예산 중 29억 3,900만원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변경·집행되었음.

[2024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8.)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967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1차선정 결과 반영)
내역변경 ('24.2.6.)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1,672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재심의 결과 반영)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7.12.)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200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2차 결과 반영)
내역변경 ('24.10.24.)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100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역변경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3차 결과 반영)
전용 ('24.11.8.)	정신건강증진 시설 확충 (3345-330)	330-03	679	정신의료 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300-0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신청 등 수요량 증가에 따른 전용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지자체의 관심 저조, 동 시설 관련 부정적 인식 등으로 수요가 적은 반면,[81] 상대적으로 정신요양시설의 수요는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내역사업간 예산 변경은 유사 목적 간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일정 부분 필요한 측면이 있음.

그러나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등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집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82] 이번 사례처럼 특정 내역사업의 예산이 당초 대비 147.4% 증액된 것은 과도한 변경으로 볼 수 있음.

특히 이와 같은 과도한 예산 변경 행위는 당초 국회의 예산 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역사업간 변경은 기본적인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신중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또한 상기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는 회계연도 초기부터 내역사업 간 예산 변경을 실시하였는데,[83] 이는 예산 편성 당시부터 사업 수요예측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81) 정신재활시설 개소수: 2018년 348개 → 2024년 상반기 360개, 미설치 시군구 100개

82) 「예산 편성지침」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내역사업 단위로 구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교부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중앙관서 내역사업 단위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내역사업 단위로 관리되고 있음

이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로 인해 결국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83)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업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1차 선정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때에 맞춰 실시하고, 이후 집행잔액을 고려하여 사업 수요 조사 후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2024년 정신재활시설·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1차 '23.9. / 2차 '24.7. / 3차 '24.10. 선정 실시

18.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시 타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자 심리지원에 더해 지진, 사고 등 각종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따른 종합적 심리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의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액 2억 100만원이 전액 이・전용(감)되었음.[84]

[2024년도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4,874	4,874	3,805	△201	8,478	8,478	-	-	849
경북권역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201	201	-	△201	-	-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현재 영남권역트라우마센터가 경남 부곡(경남부곡 국립정신병원)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영남권역이 광범위함에 따라 별도로 경북권역을 담당할 수 있는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

[2024년도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인건비: 2억 100만원(정신건강전문요원 10명 x 4,000만원x 50%)

84) 일반회계-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3245-323)(정신건강정책관)

나. 검토의견

경북권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2024년 신규편성되었으나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와의 중복성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신규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간 유사성·중복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을 전액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비춰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동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포항시 행정관할 상 경북권 관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기존 영남권 트라우마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 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2024년도 편성 예산 2억 100만원 전액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충당을 위해 집행하였음.[85)]

[2024년도 경북권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사업 이·전용 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0.7.)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3345-323)	330-01	201	정신의료서비스 및 당사자 지원 (3345-302)	330-01	마약류 중독자 급증 및 치료보호 수요량 증가로 치료비 예산 부족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마약 투약자 증가에 비례한 치료보호 이용자 증가로 치료보호 비용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동 사업 예산을 내역변경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임.

첫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24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통해 동 사업의 경우 이미 영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설치·운영중에 있는 점, 경북권에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폐지를 권고하였음.

이는 동 사업 추진 초기 보건복지부의 기존 사업과의 유사성 및 중복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85)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안 편성시 정부안에 포함되어 제출되었음.

둘째, 내역변경을 포함한 예산간 변경은 「국가재정법」 상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라는 점에서 사업간 유사성, 시급성과 불가피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 후 최소한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불용 처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에도, 이를 전액 다른 사업 재원으로 활용한 것은 「국가재정법」 및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음.

19.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ISP 수립 이후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 및 국회 심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 필요

가. 개 요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원활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을 보강하고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85억 5,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됨.[86]

[2024년도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47,249	47,249	-	-	47,249	47,249	-	-	30,709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18,550	18,550	-	-	18,550	18,550	-	-	4,98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사회서비스 바우처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2억 5,000만원과 사업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서비스・급여 제공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168억원 및 우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상금 5억원 등 총 185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4년도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포상금(310-03) : 5억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180억 5,000만원
- 기존 사회서비스바우처 시스템 기능 보강: 12억 5,000만원
- 서비스・급여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68억원

자료: 보건복지부

86) 일반회계-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3345-332)(정신건강정책관)

나. 검토의견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은 국회 심의 단계에서 ISP 미수립 등의 사유로 국회가 감액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취지대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하는 한편, 신규 정보화 사업 구축 추진시 ISP 수립 및 용역결과에 따라 적정 예산을 편성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정보화 사업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완료 이후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87]

동 사업 역시 정보화사업으로 ISP 수립 이후 예산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나, 보건복지부는 2025년부터 신규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ISP 수립 없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보화 사업비 24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88]

[2024년도 바우처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정부 제출 예산안 세부내역]

○ 포상금(310-03) : 10억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42억 5,000만원 - 기존 사회서비스바우처 시스템 기능 보강: 3억원 - 서비스·급여 제공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39억 5,0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국회는 동 사업 예산 중 67억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중 기존 시스템 기능보강 및 신규시스템 구축·운영 예산에서 62억원을 감액하였으며,[89] 세부적으로는 신규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경비 중 개발비에서 62억원을 감액하였음.

국회 심의 단계에서 ISP 미수립 등의 사유로 국회가 감액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90] 특히 신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실집행률은

87)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IS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수립 완료 이전에 추진이 가능하나, 이는 ISP 중간산출물 검토를 요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8) 동 정보화 사업의 ISP 는 2023년 예산에서 전용하여 추진하였으며, 2024년 9월 수립됨.

89) 나머지 5억원은 포상금(310-03)에서 감액함.

90) 당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는 신규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비(128억원)에 대해 과다 책정 및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음.

28.1%에 불과한 상황임.

[2024년 바우처시스템 보강 및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주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현액	집행액 (C)			
바우처시스템 보강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250	1,250	1,250	1,250	-	1,250	711	1,250	711	403	136	56.9
신규 전달체계 구축・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16,800	16,800	16,800	16,800	-	16,800	4,715	16,800	4,715	8,238	3,847	28.1

자료: 보건복지부

이와 같은 집행결과는 ISP와 같은 사전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흠결로 인해 사업계획이 미흡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적정 사업계획・사업비가 도출되기 전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적정 수준의 예산보다 과다 편성되어 결국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사례라 볼 수 있음.

[ISP 수립 전·후 사업규모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ISP 수립 전(A)	ISP 수립 후(B)	차이(B-A)
전산개발	6,600	4,091	△2,509
전산장비	7,100	5,823	△1,277
계	**13,700**	**9,914**	**△3,786**

자료: 보건복지부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ISP 수립결과에 따른 적정 사업계획・사업비를 도출한 이후에 신규 정보화시스템 구축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0.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추가 지원 적절성 문제

가. 개 요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은 국가시험의 전문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의사 등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2억 2,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91]

[2024년도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시험원 운영	6,350	6,350	-	873	7,223	7,223	-	-	6,43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은 위탁계약 상 결손 보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응시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계약 변경 등의 절차 없이 실기시험 시행을 위한 위탁사업비를 국가시험원에 추가 지원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위탁사업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보건복지부는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 수가 급감(예상 3,256명 → 실제 364명, 최초 접수 기준)함에 따라 17억 9,300만원의 국가시험원 응시수수료 수입결손이 발생하게 되자 내역변경을 통해 8억 7,300만원을 확보하여 이를 제89회 의사 실기시험 시행에 지원하였음.

91) 일반회계-국가시험원 운영(4331-301)(보건의료정책관)

[2024년 국가시험원 운영 사업 내역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024.9.27.)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4331-300)	320-01	873	국가시험원 운영 (4331-301)	320-02	제89회 의사 실기시험 시행 지원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9조에 따라 국가시험원에 대한 국가시험관리 예산 보조가 가능하고,[92] 국가시험원은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가시험 시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임.

[2024년도 국가시험원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			지출			예산 부족액 (C-C′)
정상(A) [3,256명]	변동(B) [364명]	수입 결손분 (A-B=C)	정상(A′) [3,256명]	변동(B′) [364명]	지출 절감분 (A′-B′=C′)	
2,251	458	1,793	2,397	1,477	920	873

자료: 보건복지부

실제로 의사 실기시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이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93] 대규모 수입 결손으로 시험의 정상적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은 존재했다고 보임.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부는「의료법」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이라는 방식으로 국가시험관리 예산을 보조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의 경우 당사자간 계약을 통해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계약상 추가 지원 규정 또는 계약변경 등의 조치 없이 재차 민간위탁비를 추가

92)「의료법」
제9조(국가시험 등) ①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3) 국시원은 26개 직종의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시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음
* 재정구조('23년 결산기준): 응시수수료(72.3%), 국고(17.1%), 기타(10.6%)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보임.

구체적으로, 통상 민간위탁사업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게 설정되는 구조인데, 이미 위탁사업비가 지급된 상황에서 법령이나 계약서에 결손 보전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수수료 수입 감소를 이유로 위탁사업비의 추가 지원을 실시한 것은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94]

특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95] '의사 실기시험 시행'은 위탁계약 상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범위 내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계약내용의 변경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됨.[96]

설령 보건복지부의 설명과 같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건복지부는 추가 지원 과정에서 위탁계약 변경 절차 조차 이행하지 않은 채 예산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이는 절차적으로도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97] 계약관련 법령 준수 등 위탁사업 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9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관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근거, 민간수탁기관, 위탁기간 등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전보장 · 외교 · 국방 등 민간위탁사무의 성질상 공개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9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 제조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 · 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96) 「복지부-국가시험원 위탁계약서」
제2조(위탁내용) "갑"은 다음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사업을 "을"에게 위탁한다.
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2.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신청접수 및 교부
3. 면허신고시스템 운영
4.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하는 보건의료인국가시험 관련 업무 등

97)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결손으로 인해 수입·지출 구조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하였고, 국고지원 확대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수입계획 조정의 일환으로 승인하였다는 설명임.

21. 과징금 및 재난적의료비 사업: 예산 편성 법적 기준과 실제 예산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과징금’ 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요양급여 적용정지 등에 갈음하여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567억 6,500만원 중 101억 600만원이 수납(수납률 17.8%)되고, 466억 5,900만원이 미수납됨.[98]

[2024년도 과징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징금	26,129	26,129	56,765	10,106	-	46,659	17.8	22,52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은 소득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이용 접근성 향상 및 국민건강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9억 8,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99]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재난적의료비 지원	16,984	16,984	-	-	16,984	16,984	-	-	14,639

98) 일반회계-과징금(56-565)(건강보험정책국)

99) 일반회계-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4931-307)(필수의료지원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모든 질환에 대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가구 연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80%를 연간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징금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회계 외에도 복권기금과 건강보험재정을 재원으로 하고 있음.[100]

[2024년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별 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984	16,984	-	-	-	16,984	16,984	-	-
복권기금	68,451	85,769	-	-	-	85,769	85,768	-	1
건강보험재정	48,057	57,857	-	-	-	57,857	57,472	-	385
계	133,492	160,610	-	-	-	160,610	160,224	-	386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일반회계)은 예상치인 과징금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는데,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여 실제 징수액 기반의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기준액과 예산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일부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01]

100) 복권기금+일반회계 64%, 건보재정 36%로 구성

10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 ·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과징금 예상수입액의 65%에 해당하는 169억 8,400만원을 해당 사업의 재원으로 편성·집행하였음.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 '24년도 과징금 예상수입액(261억 2,900만원) × 65% = 169억 8,4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그런데 현행 법률은 명시적으로 '징수한' 과징금을 기준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실제 징수액이 아닌 예상치인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하고 있어 법적 기준과 예산 편성 기준 금액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

예를 들어, 법적 기준에 따를 경우 2024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편성액은 실제 적용할 수 있는 2022년도 과징금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법적 기준 금액인 146억 8,700만원 보다 22억 9,700만원을 초과하여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과징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 처분이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약제를 요양급여에서 적용 정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에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12개월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1.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6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약제가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제2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5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2. 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④ ~ ⑦ (생 략)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제47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자금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금의 지원
3.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법정 기준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편성 내역]

(단위:백만원)

2022년 과징금 수납액	법적 지원규모(A)	2024년 실제 편성 예산액(B)	차이(B-A)
22,595	14,687	16,984	2,297

보건복지부는 예산편성 시점에 징수액이 확정되지 않고 수납률의 변동성으로 인해 사업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임.[102)]

과징금 세입예산액의 경우 최근 5년간 과징금 평균 결산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실제 징수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어 사업 예산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예산 편성 방식은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음.[103)]

다만 과징금은 연례적으로 실제 징수액이 세입예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납률이 저조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세입예산액을 기준으로 한 예산 편성 방식은 현행 법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과의 불일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법적 정합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최근 4년간 과징금 결산 내역]

(단위: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6,129	26,129	-	26,129	46,809	2,798	10.7	6.0	43,977	34
2022	26,129	26,129	-	26,129	58,197	22,595	86.5	38.8	35,293	308
2023	26,129	26,129	-	26,129	54,207	15,116	57.9	27.9	39,091	-
2024	26,129	26,129	-	26,129	56,765	10,106	38.7	17.8	46,659	-
2025	22,522	22,522	-	22,522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속되고 있는 수납률 저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보이는데, 과징금 수납률을 실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실제 징수액 기반의 예산 편성이

102)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건보료 예상수입액) 등 다른 사업에서도 예상징수액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설명임.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 및 「노인장기요양기본법」 제58조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103) 다만, 이는 2025년부터의 산출근거이며, 2024년까지는 당해연도 징수예상액과 과년도 징수예상액을 근거로 과징금 예산액을 편성하였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현행 법률 기준과 예산 편성 방식간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104]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수납률 향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현행 법적 기준과의 괴리를 해소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4)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과징금 수납실적 증진 방안에 대해 2023년 결산 예결위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어 건보공단과 협업하여 체납기관 현장 실태점검, 지방세 등 과세정보 활용한 강제징수 절차 진행 등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라는 입장임.

2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및 개도국 개발협력(ODA) 사업: 출연금 집행잔액을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수행하는 북한, 재외동포, 외국인, 해외긴급구호 등의 보건의료지원사업과 재단의 운영비 등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1억 7,0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됨.[105]

‘개도국 개발협력사업(ODA)’ 은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보건의료 사업, 다국가 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 현액 522억 1,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06]

[2024년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12,170	12,170	-	-	12,170	12,170	-	-	12,218
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	52,217	52,217	-	-	52,217	52,217	-	-	60,80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정부 출연금과 개도국 개발협력 사업(ODA) 출연금, 후원금 및 이자수익 등의 수입을 바탕으로 기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집행하고 있음.

105) 일반회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7035-305)(국제협력관)

106) 일반회계-개도국개발협력사업(ODA)(7035-306)(국제협력관)

나. 검토의견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동 재단에서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전년도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주요 수입원은 대부분 ‘개도국 개발협력(ODA)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출연금과 전년도 사업비의 집행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연도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상당한 수준의 전년도 이월액(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으로부터의 이월액의 경우 2022년으로부터의 이월액 대비 감소한 측면은 있으나 그 규모가 151억 6,200만원으로 정부 출연금 총액의 23.5%에 해당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후원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사업비 중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을 자체수입으로 계상하여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연평균 207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과 9억 2,500만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였음.

[2022~2024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계획)	’22년 수납실적	’23년 예산 (계획)	’23년 수납실적	’24년 예산 (계획)	’24년 수납실적
정부지원금 계	**56,451,000**	**56,451,000**	**50,357,000**	**50,357,000**	**64,387,000**	**64,387,000**
- 출연금[1]	47,411,000	47,411,000	50,217,000	50,217,000	64,387,000	64,387,000
・개도국 개발협력사업 (ODA)	36,338,000	36,338,000	37,954,000	37,954,000	52,217,000	52,217,000
・한국국제보건의료 재단지원사업	11,073,000	11,073,000	12,263,000	12,263,000	12,170,000	12,170,000
- 보조금	9,040,000	9,040,000	140,000	140,000	-	-
- 위탁사업비	-	-	-	-	-	-
- 기타	-	-	-	-	-	-
자체수입 계	**21,746,141**	**24,165,230**	**26,255,288**	**28,791,192**	**15,162,762**	**17,034,978**

(단위: 천원)

구 분	'22년 예산 (계획)	'22년 수납실적	'23년 예산 (계획)	'23년 수납실적	'24년 예산 (계획)	'24년 수납실적
- 이자수익 등[2]	38,100	1,411,469	-	826,188	-	537,719
- 이월금[3]	20,783,041	20,783,041	26,255,288	26,255,288	15,162,762	15,162,762
- 후원금	925,000	1,970,720	-	1,709,716	-	1,334,497

주 1) 정부예산 확정액
2) 당해연도 이자수익 등 발생액
3)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동 재단에 출연된 출연금은 대부분 사업출연금으로 이는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실제 집행가능한 액수보다 많은 출연금 예산이 편성·교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을 편성하여 동 재단에 출연금이 유보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동 재단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출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나,[107] 원칙적으로 출연금 중 반납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남은 금액을 잉여금으로 보아 이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함.

이와 같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자수익이 재단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경우 국회 차원에서 출연 사업의 적정 규모를 평가하기 어려워지게 되어 국회의 예산 심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향후 보건복지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예산 교부시 예산 집행상황과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을 교부하는 한편, 전년도 잉여금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108]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12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해로 이월하여야 한다.

108)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2025년 예산 편성시 2024년도 사업별 실집행률을 고려하여 일부사업을 자체 감액 편성하였다는 입장임.
* 2025년 주요 감액사업 : 해외긴급구호 △0.8억원('24년 실집행률 84.3%), 의료자원지원 △3.7억원('24년 실집행률 49.1%) 등 총 4.5억원 감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23.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한 사업추진 지연 방지 필요

가. 개　요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화장수요 충족을 위한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설 장사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11억 3,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09]

[2024년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장사시설 설치	44,843	44,843	-	-	44,843	44,840	-	3	25,271
공설 장사시설 설치	41,175	41,175	-	△38	41,137	41,137	-	-	21,7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다년도 신증축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및 집단민원 해소 여부 등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인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의 지자체 단계 실집행률은 매년 높지 않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110] 2024년의 경우 예산현액 411억 3,700만원 중 실집행

10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장사시설 설치(2140-300)(노인정책관)

액은 295억 3,800만원으로 실집행률이 71.8%에 그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억, %)

구분	예산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B)
	본예산(A)	추경·예비비 (순증, B)	합계(A+B)		
2020년	420	2	422	319	75.6
2021년	525	-	525	210	39.9
2022년	665	-	365	246	67.3
2023년	486	-	482	356	73.9
2024년	411	-	411	295	71.8

자료: 보건복지부

실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자체의 사전계획 미흡으로 인한 각종 심의 보완 요청, 설계변경 등 행정적·절차적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년도 신증축 사업은 각종 심의 및 영향평가, 계획 승인, 주민 민원 등 복잡하고 장기적인 사전절차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계획이 미흡한 경우 착공 지연이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111]

[2024년도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 실집행 저조 사유]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명	국고 보조금	집행액	집행율	지연사유
인천	-	- 봉안당 신축	1,000	-	0.0	각종 심의 보완 요청 등 추가 소요기간 발생
대전	-	- 봉안당 신축	2,500	261	10.4	공사 중 암석 발생으로 공사기간 추가 소요
강원	춘천	- 화장로 교체 6기, 증설1기	2,347	1,558	66.4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소요기간 발생
	횡성군	- 산분장지 조성 600㎡	42	15	35.7	시도 내 변경내시(사업포기 등)에 따른 예산배정(6월)으로 사업기간 부족
		- 산분장 추모시설 200㎡	210	75	35.7	

110) 지자체 보조율 70%(개보수는 50%)

111) 도시계획시설인가, 환경·교통·재해 등 영향평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등

(단위: 백만원, %)

지자체		사업명	국고 보조금	집행액	집행율	지연사유
충북	옥천	- 봉안당 신축	800	332	41.5	건설사업관리용역 추진에 따라 공사 착공 지연
충남	보령	- 봉안당 신축	1,810	37	2.0	각종 계약 진행기간 추가 소요
	서산	- 봉안당 신축	1,000	38	3.8	시공사 채권 압류에 따른 공정 부진
전북	부안	- 자연장지 조성	1,462	920	62.9	분묘 연고자 개장 지연 등에 따른 기간 소요
전남	신안	- 봉안당 신축	1,365	224	16.4	건물구조 등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기간 추가
	완도	- 수목장림 조성	127	57	44.9	소나무 재선충 방재 및 동절기 한파로 공사기간 연장
경북	구미	- 화장로 개보수 5기	100	61	61.0	부품제작 및 조달청 계약 체결 지연
경남	김해	- 자연장지 조성	630	179	28.4	지하수 공사 등 추가 소요기간 발생
제주	서귀포	- 자연장지 조성	1,190	231	19.4	전년도 12월 예산확정으로 지방비 확보 등 소요기간 필요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망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장사시설의 적기 확충은 공공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는 바, 사전행정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결국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사업의 적시성 확보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계획 수립 및 이행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은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보다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보조금을 편성한 후 이를 전액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사업단계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연차별 예산 편성 및 교부를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함으로써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4.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입원병동, 외래진료시설에 대한 신·증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57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12]

[2024년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193,955	193,955	142	-	194,097	193,347	79	671	76,363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49,748	49,748	-	6,020	55,768	55,768	-	-	62,72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일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연도내 집행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지방의료원의 2차 급성기 진료 강화를 위한 신·증축(병동 확충), 리모델링, 부대시설 확충(기숙사, 장례식장, 주차장) 및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수행되고 있음.[113]

11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2743-300)(공공보건정책관)

113) 지방의료원 신·증축의 경우, 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60%(’22～’24년 간 한시적용) 지원

2024년 지자체(13개)의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액 557억 6,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292억 5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849억 7,300만원 중 498억 2,900만원이 실집행되고 296억 400만원은 이월되어 실집행률은 59%에 불과함.

[2024년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서울				978	891	1,869	790	768	3	42
부산				344	1,000	1,344	344	-	-	26
대구				5,108	12	5,120	1,486	3,696	3	29
인천				1,153	320	1,473	756	646	41	51
경기				900	526	1,426	387	900	-	27
강원				15,615	10,945	26,560	12,296	12,600	3	46
충북				243	36	279	26	242	-	9
충남	55,768	55,768	55,768	10,658	3,392	14,050	12,293	2,100	203	87
전북				3,104	146	3,250	2,203	1,018	29	68
전남				1,585	230	1,815	299	1,392	12	16
경북				7,172	2,684	9,856	4,407	5,196	17	45
경남				95	2,963	3,058	95	0	-	3
제주				8,813	6,060	14,873	14,447	1,046	13	97
지자체 합계				**55,768**	**29,205**	**84,973**	**49,829**	**29,604**	**324**	**59**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건축공사 사전절차 이행 및 공사지연 발생, 입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상당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 편성 시 전년도 집행실적, 지자체 내 전년도 이월액, 사업 추진단계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당해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동 지침은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도 조사·설계 및 보상·공사 등의 주요단계를 나누어 당해연도 집행에 필요한 소요만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편성함으로써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특히 보조금의 집행 관리 측면에서도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집행가능성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내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는 것은 보조금 집행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14]

114) 보건복지부는 실집행률 등을 반영한 예산 편성・보조금 교부, 정례 집행점검 등을 통해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중이며,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조기선정, 지자체 대상 업무지원(건축설계・법제도 지침 배포 및 교육, 인허가 관련 협의 시기 사전 안내 등)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　출〉

25.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 실제 수입·지출 규모를 반영한 수입대체경비 사업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국가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외부로부터 받은 연구사업, 물리치료, 간호 등 관련학과 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과 지역사회중심의 재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3억 7,100만원 중 31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8%)되고 2,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5,200만원이 불용됨.[115)]

[2024년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 (수입대체경비)	224	224	-	3,147	3,371	3,197	22	152	226

주 1) 이·전용 등: 초과수입금 직접지출액
2)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국립재활원은 연례적으로 세입 예산액에 비해 세출 예산액을 과소편성함으로써 세입 예산액의 초과 수입분 보다 많은 규모의 초과지출승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행 관행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수입예산의 초과분보다 과다하게 승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입·지출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현재

1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1851-651)(국립재활원)

의 예산 편성·집행 관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임상실습, 전문교육 및 수탁연구 사업 운영 등으로 발생한 수입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로 초과지출 할 수 있으며, 해당 수입액은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목에 계상됨.

최근 5년간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초과수납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2024년 수입대체경비수입은 32억 8,100만원으로 예산액 5억 2,400만원 대비 27억 5,700만원(626.1%)이 초과수납되었음.

[최근 4년간 '수입대체경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본예산	추경(A)					
2021	298	298	298	2,508	2,508	841.6	100.0
2022	406	406	406	2,854	2,854	703.0	100.0
2023	514	514	514	3,630	3,630	706.2	100.0
2024	524	524	524	3,281	3,281	626.1	100.0

자료: 보건복지부

반면 세출예산 대비 초과지출 승인액은 31억 4,700만원으로 그 비율(초과지출비율)이 1,404.9%에 달하고 있는데, 이처럼 국립재활원은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액에 비해 세출예산액을 과소편성함으로써 세입 예산액의 초과 수입분보다 많은 규모의 초과지출승인을 실시하였음.

[최근 4년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초과수입 승인	예산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C/A)	집행률(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298	298	20	2,453	2,771	2,520 [2,520]	845.6	90.9	-	251
2022	301	301	-	2,850	3,151	2,723 [2,723]	904.7	86.4	117	310
2023	297	297	117	3,738	4,153	3,688 [3,688]	1,241.8	88.8	-	465
2024	224	224	-	3,147	3,371	3,197 [3,197]	1,427.2	94.8	22	152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이와 같이 예산 과소계상으로 초과수납을 유발하고 그 초과수납액보다 많은 액수의 초과지출을 승인하는 집행 관행은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수입예산의 초과

분보다 과다하게 승인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수입대체경비 운영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립재활원은 연례적으로 예산편성액 대비 과다한 초과수납액과 초과지출 승인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세입·세출예산이 과소하게 편성된 점에서 기인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실제 수입·지출 소요와 예산액 간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중앙관서의 장의 초과지출 승인을 통해 비교적 쉽게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부처의 예산증액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임.

그러나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승인·집행 방식은 「국가재정법」 제53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그 운영 규모가 과도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립재활원은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입·지출을 과소하게 계상하는 현재의 예산 편성·집행 관행을 지양하고 실제 수입·지출 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이러한 초과지출의 과다 승인에 대하여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요구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국립재활원,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공주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은 초과수납된 금액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채택한 바 있음.

둘째,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용임금을 제외한 인건비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으로 집행할 수 없으므로, 이를 재원으로 외부수탁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채용한 공무직 근로자의 급여를 충당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입대체경비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립재활원은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 31억 4,700만원에 대해 지출을 승인함으로써 예산현액 33억 7,100만원 중 31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예산액 대비 1,427.2%가 증가한 것임.

[2024년도 국립재활원 연구, 교육 및 실습(수입대체경비) 사업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초과지출편성	예산현액	총 집행액
임상실습	31	-	31	22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	116	-	116	43
재활연구소 및 병원부 외부수탁사업	77	3,147	3,224	3,132주)
총계	224	3,147	3,371	3,197

주) 본예산(7,400만원) + 초과지출(30억 5,800만원) 집행액 = 31억 3,20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은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일용직 임금 및 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에는 초과수입으로 지출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음.[116]

그런데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는 외부수탁 연구과제 업무를 위해 채용된 공무직근로자의 인건비를 초과수입으로 집행하였는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상용임금(110-03) 비목으로 편성·집행해야 하므로, 이는 부적절한 집행 사례로 볼 수 있음.

[2024년도 수입대체경비 외부수탁사업별 초과수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 연구과제명	초과지출 편성액 (세출)	인건비성 경비	경상적 경비	자산 취득비	초과지출 총집행액 (세출)
총계	**3,147**	**700**	**1,922.3**	**435.7**	**3,058**
불완전 척수손상환자에서 보행기능향상을 위한 하지재활로봇 연구	52	9	20	7	36
운동패턴이 반영된 뇌졸중 디지털트윈 기반 예후예측 정밀의료 구현	62	30	26	6	62

116)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65
5. 수입대체경비
가.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에 따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 일용임금 및 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

사업명 / 연구과제명	초과지출 편성액 (세출)	인건비성 경비	경상적 경비	자산 취득비	초과지출 총집행액 (세출)
뇌질환 환자의 상지기능 개선을 위한 재택기반 비대면 재활의료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연구	143	21	122	-	143
환자 중증도별 개별화가 가능한 착용형 경량 상지재활 로봇 시스템 및 환자중심 비대면 자가재활 플랫폼 개발	87	57	16	-	73
음성언어 AI기반 말 언어장애 디지털 치료제 개발 및 상용화	35	-	21	-	21
공공의료 기관 대상 뇌졸중 환자의 언어 및 인지 재활을 위한 AI기반 디지털 헬스 도입 및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	70	2.4	59.9	7.7	70
뇌졸중 후 구음장애 및 언어장애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진단 치료기기 개발	28	-	28	-	28
해양치유 자원 효능/표준화 기술 개발 및 해양치유자원 생애주기 안전관리방안	85	5.6	77.4	-	83
산림치유자원 활용 보건의료 융합 산림치유(숲태교) 표준모델 개발 및 실증	100	14	86	-	100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 운영과제	1,065	292	730	39	1,061
수요자 중심 돌봄로봇 및 서비스 실증 연구개발	1,231	252	604	375	1,231
질환별 한의 임상데이터 수집연구_뇌혈관질환 후유증	5	-	5	-	5
2024년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과정 (캄보디아 재활) 위탁운영	184	17	127	1	145

자료: 국립재활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립재활원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경우 외부수탁연구사업의 계약기간 및 연구비 규모가 과제별·연도별로 상이함에 따라 초과수입·지출 발생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워 이를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사유는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예산 과소편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행위를 정당화하기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임.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수입대체경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들의 최소 수입·지출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등 현실적인 규모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대체경비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 범위 내에서 엄격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26. 국가암검진 사업: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국가암검진’ 사업은 국가 암건진 사업을 통해 암 조기 발견을 유도하고자 암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423억 2,4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17]

[2024년도 국가암검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암관리	69,484	69,484	-	69,484	69,334	-	150	83,570
국가암검진	42,324	42,324	-	42,324	42,324	-	-	42,044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암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 1위로 2022년 기준 암으로 인한 사망자는 8만 3,378명으로 전체 사망원인의 22.4%를 차지하며, 연간 약 24만 7,000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음.[118]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의 암 예방·치료 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1999년 국가암검진 사업 시작 이후 정부는 지속적으로 검진대상 암종 및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있음.[119]

---

117) 국민건강증진기금-국가암관리(2756-301)(공공보건정책관)

118) 「2024년도 국가 암검진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참고

119) 검진대상: 3종('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6종('03년 간암, '04년 대장암, '19년 폐암 추가)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99년)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20% 포함('02년)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30%로 확대('03년) →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로 확대('05년)

[국가암검진 사업 개요]

ㅇ (암종) 6대암(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폐암) ㅇ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6대암의 국가암검진 비용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50%)의 국가암검진 비용(위암, 유방암,간암, 폐암) 중 자부담비 10% 전액 지원. 단,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

자료: 보건복지부

나. 검토의견

국가암검진 국비보조 사업에서 연례적으로 예산부족을 이유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가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지급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암관리법」제11조에 근거하여 수행되고 있는데,[120]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동 사업에서 연례적·지속적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미지급금이란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의미함.

동 사업의 미지급금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230억 300만원, 2023년 305억 6,000만원, 2024년 420억 8,500만원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20)「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암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암의 종류 · 검진주기, 연령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 암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 검진주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암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검진을 받는 사람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예산 또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이하 “국민건강증진기금”이라 한다)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미지급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암검진 국비보조	16,754	17,221	23,003	30,560	42,085

자료: 보건복지부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소요금액의 증가 대비 예산이 과소편성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이러한 미지급금은 통상 다음 연도에 예산을 배정받아 지급하는데, 이와 같이 차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해소하는 방식은 다시 차년도 신규 지급 소요 대비 가용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특히 동 사업은 지자체에서 교부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는 구조인데,[121] 미지급금 발생은 국가가 암검진을 수행한 의료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채무상환을 지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122] 향후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추계에 근거하여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121) (보조율) 국비 50%, 지방비 50% (단, 서울은 국비 30%, 지방비 70%)

12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기　타】

2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대해 시정요구 143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2건·제도개선 12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2	124	3	143
예비비	-	-	-	-	-	-	-
합계	-	-	-	22	124	3	143

보건복지부는 시정요구사항 143건에 대해 116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1.1%)하고 2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43	116	81.1	27
예비비	-	-	-	-
합계	143	116	81.1	27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보건복지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보건복지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4) 정부는 부처와 산하기관이 자체 회의장을 우선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회의장을 임차하도록 하여 예산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5) 정부는 자살, 우울 등 정신건강 관련 정부 사업을 체계화하여 대상자 및 서비스 중복 등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을 방지한다.
	(44)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을 지속한다.
	(45)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를 겸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집 원장에게 2023년도 수준에 해당하는 겸직 수당(교사겸직원장 지원비)을 2024년에 한하여 지원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29)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30) 보건복지부는 실제 상병수당 도입 과정에서 재원·대상 및 도덕적 해이 등 예상되는 논란과 갈등사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2025년도 본예산	(30) 보건복지부는 5·18 보상법 개정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된 5·18 훈방자에 대해서도 의료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다.
	(31)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시설 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민간기피시설 대상인 우선위탁 비중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32) 보건복지부는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일차 의료를 적극 강화해가며, 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시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5억 4,200만원(△6.8%)이 적은 350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4,500만원(△3.2%)이 감소됨.[1)]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38,707	38,707	36,185	△2,522	37,582	37,582	35,040	△2,542	△1,145
총수입	38,707	38,707	36,185	△2,522	37,582	37,582	35,040	△2,542	△1,145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69억 1,100만원(2.4%)이 적은 7,013억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억 8,500만원(5.1%)이 증가됨.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76,510	676,510	667,519	△8,991	718,215	718,215	701,304	△16,911	33,785
총지출	676,510	676,510	667,519	△8,991	718,215	718,215	701,304	△16,911	33,78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75억 8,200만원으로, 이 중 398억 8,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350억 4,000만원이 수납(수납률 87.9%)되고, 40억 4,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억 9,700만원이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7,564	37,564	-	37,564	39,760	34,914	4,048	79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8	18	-	18	18	18	-	-
- 구조개선사업계정	18	18	-	18	18	18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	-	108	108	-	-
- 지역지원계정	-	-	-	-	105	105	-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2	2	-	-
합 계	37,582	37,582	-	37,582	39,885	35,040	4,048	79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225억 6,500만원으로, 이 중 7,013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1%)되고 35억 3,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77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초과지출	예비비				
일반회계	714,374	714,374	3,604	794 △794	745	-	718,724	697,463	3,539	17,7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841	3,841	-	-	-	-	3,841	3,841	-	-
- 지역지원계정	3,730	3,730	-	-	-	-	3,730	3,730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11	111	-	-	-	-	111	111	-	-
합 계	718,215	718,215	3,604	794 △794	745	-	722,565	701,304	3,539	17,722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산은 전년 대비 33억 6,000만원이 증가된 2,946억 6,0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2억 7,600만원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이 25억 1,900만원, 무형자산이 17억 7,200만원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7,900만원 감소된 7억 2,100만원으로 장기차입부채가 7,800만원 감소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4억 3,800만원이 증가된 2,939억 3,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4,45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2억 500만원 증가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798억 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1억 5,300만원 증가되었음.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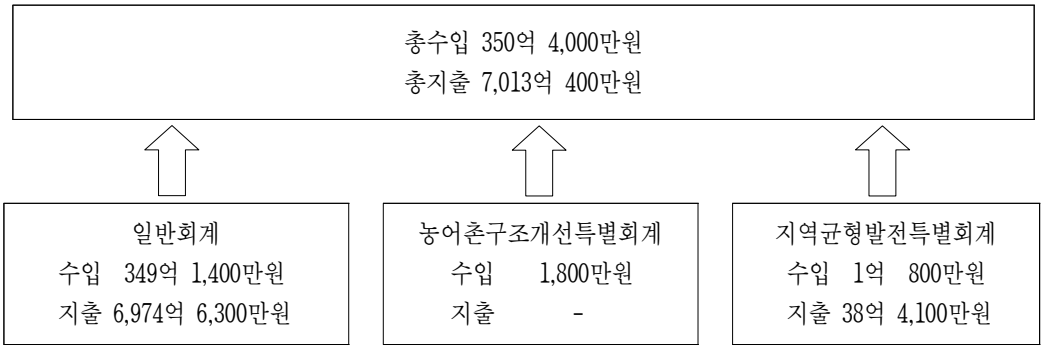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94,660	291,300	3,360	1.2
		유동자산	10,210	13,486	△3,276	△24.3
		투자자산	2,890	1,330	1,560	117.3
		일반유형자산	248,466	245,947	2,519	1.0
		무형자산	26,682	24,910	1,772	7.1
		기타비유동자산	6,412	5,628	784	13.9
	부 채		721	800	△79	△9.9
		유동부채	451	433	18	4.2
		장기차입부채	270	348	△78	△22.4
		장기충당부채	-	19	△19	△100.0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93,939	290,501	3,438	1.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445,128	422,923	22,205	5.3
	재정운영순원가		679,880	652,727	27,153	4.2
	재정운영결과		679,880	652,727	27,153	4.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결산은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2024회계연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과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안전에 신뢰를 더하는 과학’, ‘기대를 현실로 만드는 현장’, ‘안전의 시너지를 높이는 협력’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반회계는 11개 프로그램과 116개 세부사업에서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및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 등을 수행하고, 특별회계는 1개 프로그램과 2개 세부사업을 통해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예산 집행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및 가산금 세입예산 편성시 개별 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 확대 등을 면밀하게 고려하여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여전히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둘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전문기관으로서의 설립, 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속히 보조금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은 마약류 관련 대국민 예방 교육 실적이 청소년 대상군에서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 집행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음.

넷째,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사업은 예산 비목간 변경시 관련 내부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등 예산 집행과정에서 투명성과 적절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은 수입대체경비의 경우 수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계성과 적정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초과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수입대체경비로 징수 후 초과지출 승인을 한 행위는 부적절하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과태료 및 가산금: 과태료 부과 사유 확대 등 제도적 변화를 고려한 세입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과태료’ 는 식품의약품 등의 식품의약분야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부과 징수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7억 200만원 중 12억 4,400만원이 수납(수납률 46.0%)되고 14억 3,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000만원이 불납결손됨.[2)]

‘가산금’ 은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여 추가 징수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2억 2,800만원 중 1,200만원이 수납(수납률 5.3%)되고, 2억 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900만원이 불납결손됨.[3)]

[2024년도 과태료 및 가산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과태료	426	426	2,702	1,244	1,438	20	46.0	520
가산금	6	6	228	12	207	9	5.3	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 - 과태료(56-563)(운영지원과)

3) 일반회계 - 가산금(58-581)(운영지원과)

나.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태료 및 가산금의 경우 개별법률에서 부과하는 의무 확대 등으로 인하여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를 면밀하게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및 가산금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연도별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입추세를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을 과소계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24년 과태료의 경우 예산액은 4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2억 4,400만원이 수납되었고, 가산금은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1,200만원이 수납되었음.

[최근 5년간 과태료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370	1,060	345	93.2	698	18
2021	370	1,081	371	100.2	703	7
2022	370	1,427	562	152.0	864	1
2023	377	1,680	627	166.3	1,050	2
2024	426	2,702	1,244	292.0	1,438	2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5년간 가산금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6	129	4	66.7	119	7
2021	6	177	5	90.7	167	4
2022	6	174	1	21.4	172	1
2023	6	202	6	100.0	195	1
2024	6	228	12	200.0	207	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수입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연례적인 과소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규모의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수납실적 외에도 여건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과태료 부과의 주요원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화장품법」 등 개별법률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육 의무 미이수로 인한 처분인데, 법률 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의무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 부과 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면, 2016년 이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한 교육 의무만 있었으나, 2022년부터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원료 목록 보고의무(제5조제6항),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교육의무(제5조제7항) 및 책임판매관리자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40조) 등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4)5)]

[최근 3년간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징수 결정액]

(단위: 백만원)

연도	징수결정액	교육 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징수결정액	전년 대비 증가액
2022	1,427	926	-
2023	1,680	1,177	251
2024	2,702	1,718	54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이 법률 개정 등 관련 제도 변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액 역시 증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6)]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입예산 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납추이, 제도적 변화, 납부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세입예산액을 보다 정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과태료 및 가산금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동 비목들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역할 외에도 유사사례 재발이라는 예방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

4) 시행일: 2022. 2. 18.

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료목록 미보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의 경우 0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미이수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127건임.

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과징금 및 가산금 세입예산안 편성시 과징금은 최근 3년간 결산 평균액을 근거로, 가산금은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세입을 계상함.

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의 경우 46.0%로 전년(37.3%) 대비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에 대해 5년 이상 장기 체납자가 많고(67%), 장기 체납자 중 다수가 식품 수입·판매업자 등 소규모 영세업자로, 폐업 및 소재불명인 경우가 많아 수납이 어려운 상황이나, 수납률 제고를 위해 교육미이수 등 과태료 다수 부과 분야에 대한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동 비목들은 식품의약안전 분야 여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납률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세 출>

2.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스마트 HACCP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가. 개 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은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전(全)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스마트 HACCP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억 2,000만원 중 10억 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100만원이 불용됨.[7)]

[2024년도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HACCP제도 활성화	6,520	6,520	-	20 △20	6,520	6,488	-	32	6,268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1,000	1,000	-	20	1,020	1,009	-	11	9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스마트 HACCP은 식품제조 공장에 IoT 등 기술을 활용, 식품 안전 정보를 디지털화하고,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등 HACCP 관련 데이터 수집·관리·분석을 총망라한 디지털 기반 HACCP 종합 관리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2020년에 최초 도입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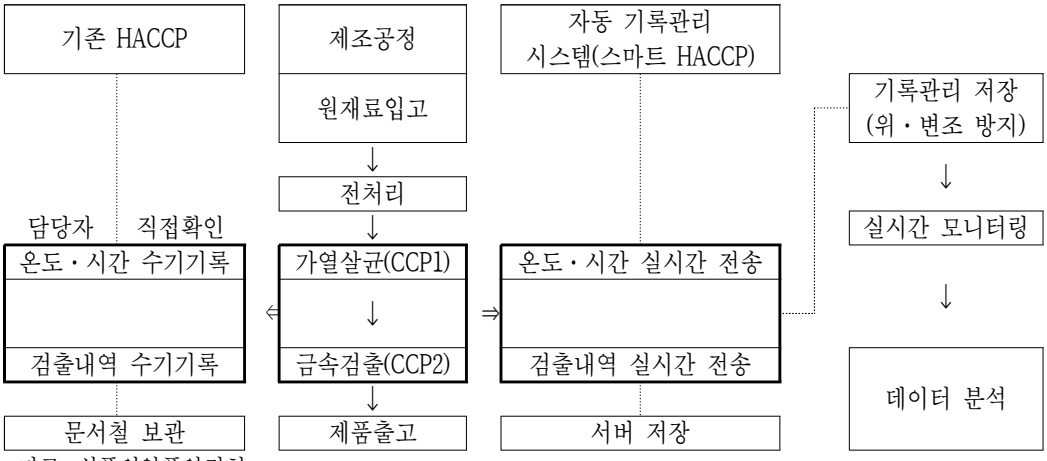
스마트 HACCP은 HACCP 운영 관련 각종 기록을 자동화·전산화함으로써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관리 및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8)]

---

7) 일반회계-HACCP제도 활성화(1032-300)(식품안전정책국)

8) 중요관리점(CCP): 식품의 위해요소 제어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 공정

[기존 HACCP과 스마트 HACCP 주요 내용 비교]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나. 검토의견

스마트 HACCP을 도입한 등록업체가 전체 HACCP 인증업체 대비 2.1%에 불과하고, 신규 등록업체 수 및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한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스마트 HACCP 도입을 실효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3월 스마트 HACCP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후,[9]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스마트 HACCP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및 소규모업체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등에 총 108억 1,700만원을 투입하였음.[10]

---

9)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고시)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4.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 · 관리 및 확인 ·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 ·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하며, 이 시스템을 적용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스마트해썹"이라 한다.
제11조의2(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등) ①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 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스마트 HACCP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칭(국고 50%, 업체 50%)하여 지원하는 '스마트 HACCP 구축・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46개 업체가 스마트 HACCP을 도입한 바 있음.

[스마트 HACCP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2		2023		2024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HACCP제도 활성화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개발	1,000	960	1,000	965	1,000	982
	스마트 HACCP 구축 보급 지원	800	800	-	-	-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스마트 HACCP 운영)		2,433	2,424	2,433	2,415	2,283	2,271
합 계		4,233	4,184	3,433	3,380	3,283	3,25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2024년 12월 말 기준 스마트 HACCP 등록업체는 452개소로 전체 HACCP 인증업체 21,180개소 대비 2.1%에 불과한 상황인데, 2024년 스마트 HACCP 신규 등록업체 수가 전년 대비 오히려 감소하는 등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2020~2024년 스마트 HACCP 업종별 등록 현황]

(단위: 개소)

구분		HACCP 인증업체	스마트 HACCP 등록 현황(누적)				
			2020	2021	2022	2023	2024
식품	식품제조가공업	10,866	24	62	122	178	229
	건강기능식품제조업	19	-	-	3	4	4
	기타(기타식품판매업 등)	245	-	-	-	4	6
	소계	**11,130**	**24**	**62**	**125**	**186**	**239**
축산물	식육가공업	2,793	11	16	28	45	62
	유가공업	403	4	8	14	22	25
	알가공업	221	-	-	3	5	6
	식육포장처리업	4,111	18	30	56	78	102
	식육판매업	546	-	-	-	6	6
	식육즉석판매가공업	54	-	-	-	1	1
	식용란 (선별포장업, 수집판매업)	1,671	-	-	-	3	11
	기타	251	-	-	-	-	-
	소계	**10,050**	**33**	**54**	**101**	**160**	**213**
합계		**21,180**	**57**	**116**	**226**	**346**	**452**
신규 등록업체 수			-	59	110	120	106

주) 2024.12.31.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업체가 보다 쉽게 스마트 HACCP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식품 유형별 선도모델을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함으로써 동 제도를 확산하고자 하고 있으나,[11] 2024년 말 기준 빵류는 11개소, 김치류는 7개소 등 극소수의 업체만 이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스마트 HACCP 선도모델 범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신청 현황]

(단위: 개소)

연도	빵류	김치류	과자류
2021	-	-	-
2022	3	-	-
2023	20	2	
2024	11	7	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마트 HACCP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자율 등록(권고) 사항인 반면, 범용 프로그램과 공정 설비간 연동을 위한 전송·관리 비용 등 초기 구축 비용 및 유지비용이 발생함에도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있음.[12]

현재 스마트 HACCP 등록업체에 제공되는 우대조치는 ①정기 조사평가 면제(자체평가 전환), ②스마트 HACCP 심벌 사용, ③연장심사시 HACCP 관리 가점 부여 등에 한정되어 있음.[13]

그러나 이러한 우대조치조차도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부 사업자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스마트 HACCP 저변 확대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상황임.[14]

---

1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유형별 선두기업을 대상으로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후발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용 프로그램을 개발·보급(무상)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1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데이터 연계 및 전송·관리를 위한 구축비용으로 약 2,000만원~4,000만원이 발생하고, 유지비용으로 연간 약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설명임.

13)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조사·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⑥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에 대해서는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우대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하여 별표 8 나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

더욱이 스마트 HACCP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도입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구축 및 유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스마트 HACCP은 기존의 수기 기반 HACCP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는데,[15]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식품안전사고의 예방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HACCP의 도입은 식품안전관리 수준의 실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이러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확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해 사업자가 제도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수하고 자발적으로 도입할 만큼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가피한 사유로 CCP 100% 적용이 어려운 사업자를 위해 CCP 60% 이상 등록한 경우까지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기존 100% 적용을 통해 우대조치를 받고 있는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안전성 담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5) 스마트 HACCP은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자의 부주의, 데이터 미기록 및 위·변조 등의 문제를 예방함으로써 식품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음.

3.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 복리후생 관련 지출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은 의약품안전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해 인건비 및 기본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6억 5,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6)]

[2024년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의약품 안전관리원 지원	13,658	13,658	-	-	13,658	13,658	-	-	21,09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 대한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매년 임직원에게 연간 1인당 15만원의 범위에서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음에도 퇴직 등으로 발생한 복리후생비 잔액을 활용하여 재직 임직원에게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씩 매년 1,50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음.

16) 일반회계-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2032-302)(의약품안전국)

[최근 5년간 임직원 건강관리용품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매목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편성 예산	-	-	-	-	-	10만원 이내 / 1인
집행 예산	-	-	5,200	15,800	16,5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대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임직원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건강관리용품 구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17]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는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 관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기타공공기관이므로 해당 지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리후생제도 운영 기준에 부합하도록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국가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맞춤형 복지점수로 재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퇴직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적으로 임직원을 위해 건강관리용품을 구입·지급하는 것은 제도운영의 적정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 시정이 필요함.

17)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공공기관의 복리후생제도) ①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퇴직금, 임직원 자녀의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의 지급, 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②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동일 복리후생 항목(다만, 출산축하금은 제외)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하여 지출할 수 없다.

4.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가. 개 요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천연물의약품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천연물안전관리원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4억 6,9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18)]

[2024년도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	4,986	4,986	-	△1	4,985	4,976	-	9	4,100
천연물안전 관리원 구축	4,469	4,469	-	-	4,469	4,469	-	-	3,57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천연물안전관리원은 국내 최초로 한약 등에 대한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관리원의 설립·기능 및 운영 등을 위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속히 보조금 등 예산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취지는 국내 최초 한약 등 품질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함으로써 한약 분야 품질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 관리원을 식약처 산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계획이며, 공사 완료 후 인건비·기본운영비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임.[19)]

18) 일반회계-천연물의약품 안전관리(2031-301)(바이오생약국)

[천연물안전관리원 수행 역할]

Science (과학적 기술개발)	▸ (약리기반연구) 약리기전 및 유효성분 기반 신규 품질평가 연구 ▸ (성분 분석) 위해성 성분 분석 및 최첨단 시험법 개발 ▸ (안전성 평가) 위해물질 등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
Support (생산 등 제품화 지원)	▸ (전주기 품질관리) 원료부터 제품까지 생산 등 전주기 제품화 지원 ▸ (규제 상담) 국내·외 허가심사 상담 및 규제 정보 등 제공 ▸ (규제외교) 일본 등해외 규제당국간 협력 및 규제조화
Synergy (시설, 인력, 협력)	▸ (시설·인프라 구축) 연구, 시험실 등 지역내 인프라 지원 ▸ (인력양성) 한약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교육 프로그램 마련 ▸ (유관기관 협력) 업체간 품질관리 협력체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현행 「약사법」에서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기능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인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민간보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에 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음.[20)]

특히 국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2021·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조속히 천연물안전관리원의 설립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한 바가 있으므로, 국회의 시정의결 이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그럼에도 현재까지 동 관리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곧 개원을 앞두고 있는 동 관리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으로 설립하고 국고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원의 설립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21)]

둘째,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사업은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으나 싱크홀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 우려에 따라 사업이 순연되고 있으므로, 동 관리원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동 구축 사업은 설계공모절차 지연, 공사 계약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일정 대비 사업이 지속적으로 순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 완료 예정이었던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까지로 연장되었음.

19) 다만, 2025년 예산에는 천연물안전관리원 운영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편성되지 않음.

2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3.5., p100)

21) 동 관리원의 설립·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음(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449호, 2024.11.11.).

[천연물안전관리원 설립 개요]

- 설립목적 : 국내 최초 한약 등 품질관리 지원 전문기관 설립 - 공사기간 : 2023.6 ~ 2025.4.(예정) - 사업수행자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　　치 :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2762-6번지(부산대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내) - 사업규모 : 부지 3,686.97㎡, 건축면적 1,780.09㎡, 연면적 5,315㎡(지하1층, 지상3층)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와 같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싱크홀 발생 우려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현장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도로 굴착 및 토목공사 등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기간이 다시 2025년 12월까지로 추가 연장되었음.[22)]

그러나 동 사업은 국내 최초로 한약 등의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업 목적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해당 관리원을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2) 도로함몰(싱크홀) 우려에 따라 도로굴착방식 변경(횡단굴착→보도면 평행굴착) 및 토목공사(외부도로, 주차장 등) 전 연약지반 보강

5.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 교육 사업의 실적 부진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대국민 예방교육’ 사업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과 관리를 지원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수행하며, 2024년 예산현액 47억 5,2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됨.[23)]

[2024년도 대국민예방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15,933	15,933	-	-	15,933	15,929	-	4	16,456
대국민 예방교육	4,752	4,752	-	-	4,752	4,752	-	-	5,52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대국민 예방교육의 계획 대비 실적은 전체적으로 목표 대비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선정 목표 인원이 과소한 측면이 있고, 중등을 제외한 유아·초등·고등 대상군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육의 실효성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정 교육 인원 재설정 및 교육 전달 방식 등 동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마약퇴치운동본부의 대국민 예방교육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교육인원(목표인원 및 실적인원) 모두 전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3) 일반회계-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2231-302)(마약안전기획관)

[대국민 예방교육 내역사업 예·결산 및 교육 목표 달성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건)

연도	예산	결산	교육 목표인원	
			목표인원	건수(인원)
2022년	260	260	208,497	5,644(365,601)
2023년	260	260	310,377	8,750(691,785)
2024년	4,752	4,752	2,020,000	32,206(2,283,182)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에 따르면, 교육대상 중 청소년(유아・초등・중등・고등)의 경우 현장 강의와 체험형 교육 등을, 성인은 현장 강의와 온라인 교육을 위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교육 대상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보임.

우선, 성인 교육대상의 경우 교육대상 수가 4,30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목표인원은 6만 5,000명에 불과하여, 전체 대상 규모에 비해 목표 인원이 다소 과소하게 책정된 측면이 있음.[24]

[각 교육대상별 교육 실적 현황]

(단위: 명, %)

교육대상			교육대상 수 (KOSIS)	목표인원(명)[1] (A)	교육인원(명) (B)	목표대비 실적 (B/A)
청소년	현장교육	유아	498,604	124,650	62,588	50.2
		초등	2,495,005	623,750	502,122	80.5
		중등	1,332,850	333,210	376,430	112.9
		고등	1,304,325	326,080	283,527	86.9
		체험형[2]	-	547,310	365,987	134.2
		취약계층[3]	-		47,103	
	온라인		-		321,348	
성인	일반, 군인, 전문인력[4]		43,856,756	65,000	324,077	498.5

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방교육의 경우 청소년・학생 등 미래 세대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대부분이 청소년 교육에 배정되어 있어 성인 대상 교육 규모를 높게 잡을 수 없었다는 입장임(2024년 청소년 교육 예산: 40억 1,100만원, 성인교육 예산: 2억 8,000만원).

(단위: 명, %)

교육대상	교육대상 수 (KOSIS)	목표인원(명)[1] (A)	교육인원(명) (B)	목표대비 실적 (B/A)
합계		2,020,000	2,283,182	113.0

주1) 유아・초등・중등・고등 목표인원은 교육대상의 25%(체험형・온라인 교육 등을 제외한 현장 교육 기준)
2) 유아 및 초등(저학년) 대상과 초등 고학년~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체험으로 구성
3) 학교 밖 청소년 등
4) 다만, 군인의 경우 현장방문교육 위주로 교육 실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로 인해 실적 대비 목표 달성률이 과도하게 산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성과 과다 산정은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보다 현실적이고 적정한 목표인원을 설정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다음, 중등을 제외한 유아・초등・고등 대상군에서는 목표 대비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대검찰청의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25] 19세 이하 청소년의 마약류 사범 단속 비율이 2019년 239명(1.5%)에서 2023년 1,477명(5.3%)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예방교육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①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대상별로 동일하게 전체 대상의 25% 수준을 연간 교육 목표인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26] 유아의 경우 실제 마약 노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인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의 실효성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교육 인원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② 「2024년 청소년 예방교육 종합 효과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육이해도, 학습효과성, 행동인식 변화성'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하를 기록하고 있음.

25) 「2023 마약류 범죄백서」(대검찰청, p170)

26) 체험형, 온라인 교육 등을 제외한 현장 교육을 기준으로 설정한 수치임.

[2024년도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구분	항목	결과(%)	
		점수	평균
교육 이해도 (30%)	① 초등 저학년	82.1	83.9
	② 초등 고학년	86.7	
	③ 중·고등	82.3	
학습 효과성 (35%)	① 초등 저학년	92.4	86.5
	② 초등 고학년	87.8	
	③ 중·고등	80.8	
행동인식 변화성 (35%)	① 초등 저학년	95.8	92.1
	② 초등 고학년	95	
	③ 중·고등	89.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는 현재의 교육 내용 및 방식이 이들의 수용 수준과 학습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 콘텐츠 및 전달 방식 등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부광고 시행 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부광고 시행 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음.

「정부광고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면,[27]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정부광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광고를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마약퇴치운동본부는 2024년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정부광고 시행 시 「정부광고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한 집행이 의무화되었음.

그럼에도 동 본부는 2024년도에 시행한 정부광고 중 1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고를

27) 「정부광고법」
제9조(정부기관등의 유사 정부광고 금지 등) 정부기관등은 정부광고 형태 이외에 홍보매체나 방송시간을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어떤 홍보형태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홍보매체에 협찬받은 사실을 고지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협찬고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법령에 따른 의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집행한 사실이 확인됨.[28)]

[2024년도 광고 직접수행 현황]

(단위: 원)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
(대전지부) 마약류퇴치캠페인	불법마약퇴치 전광판 공익광고 제작	가람애드	10,000,000
(경기지부) 마약사범재활교육	마약퇴치 라디오 공익 캠페인 광고 집행	주식회사 경인방송	3,500,000
(충남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천안, 아산 버스 외부광고 용역비	(주)한국교통광고	10,164,000
(전남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마약편견해소 센터접근성 증진 광고(신문광고)	(주)교차로신문사	880,000
(경북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마약류 편견해소 버스광고 - 버스 및 전자게시대 광고 용역비	대한애드컴	14,950,000
(전남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마약편견해소 센터접근성 증진 광고	주식회사 대운	1,100,000
(전남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마약편견해소 센터접근성 증진 광고(버스광고)	주식회사 대운	550,000
(전남지부) 중독재활센터운영	마약편견해소 센터접근성 증진 광고	상민기업	396,000
24시간 상담 대응체계 구축	2024년 용기한걸음센터 1342 라디오 스팟 광고비 지출	경인방송 경기본부	19,500,00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광고법」은 정부광고 집행의 일원화를 통해 광고의 공익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광고 자체집행은 동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례임.

따라서 향후 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정부광고 집행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정부광고 집행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8) 이는 동 본부가 2024년도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기타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의 국고 반납 필요

가. 개 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9억 4,700만원 중 69억원이 집행(집행률 99.3%)되고, 4,700만원이 불용됨.[29)]

[2024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6,947	6,947	-	-	6,947	6,900	-	47	3,57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민간위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양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위탁사업의 이자를 원칙적으로 반납하도록 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자수익이 국고로 반납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 통합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30)]

29) 일반회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2231-509)(마약안전기획관)

3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1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제13조제2항에 따

[2024년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 세부 편성·집행 내역]

세사업 명	세부 편성내역	세부 집행내역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 42억 2,500만원 -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 3,111백만원 -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인프라 증설: 520백만원 - 실시간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344백만원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SW연계 기능강화: 250백만원	○ 42억 2,500만원 -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고도화: 3,111백만원 - 의료쇼핑방지 정보망 인프라 증설: 520백만원 - 실시간 데이터 품질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344백만원 - 의료쇼핑방지정보망 SW연계 기능강화: 250백만원
마약류통합 관리시스템 운영	○ 27억 2,200만원 - 운영인력 인건비: 1,635백만원(지원 517, 기술상담 230, 일반상담 552, 마약류 오남용 실시간 분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인력 336) - 운영경비: 388백만원 (홍보, 물품, 공공요금, 여비 등) - 전산유지보수: 699백만원 (개발SW 435, 상용SW 129, HW 135)	○ 26억 7,500만원 - 운력인영 인건비 : 1,588백만원, 운영경비 : 388백만원 - 전산유지보수 : 699백만원(개발SW 435, 상용SW 129, HW 135)

동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일반적인 위탁사업과는 달리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중 일부를 직접 해당 사업의 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178만원이 동 사업에 사용되었음.

라 통지받은 정보(이하 “마약류 통합정보”라 한다)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마약류 통합정보의 수집 · 조사 · 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마약류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마약류 취급 보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마약류 통합정보의 표준화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조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제11조의3에 따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사용을 위한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및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마약류의 통합정보 관리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약사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을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이하 “통합정보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최근 4년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자수익 반납 현황]

(단위: 천원)

연도	기말 수입 발생액	반납액 (차년도 출연금 감액 교부 사례 포함)	미반납액 사용처						
			내부 보유			지출			기타
			수입원 발생 계정에 보유	결산상 잉여금에 적립	타계정 적립	기관 운영비로 지출	수입원에 대응하는 지출에 한정된 용도로 지출	인건비 지급	
2021	1,072	200	-	-	-	-	871	-	-
2022	898	898	-	-	-	-	-	-	-
2023	1,246	1,246	-	-	-	-	-	-	-
2024	3,123	1,336	-	-	-	-	1,787	-	-

자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이에 대해 관리원은 위탁사업비의 이자수익 반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상 ‘선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는 조항을 근거로 해당 이자수익을 계약범위 내에서 집행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탁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이자수익을 포함한 모든 집행 잔액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탁계약을 근거로 이자수익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집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의 처리 방식에 대한 계약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자수익을 국고에 반납함으로써 관계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31]

3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위탁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전액 국고에 반납하도록 위탁사업 과업지지서를 변경조치(2025.5.20.)하였고, 직원 대상 집행 관련 안내(2025.6.2.)를 실시하였다는 설명임.

7.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사업: 예산 비목간 변경 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사업은 한약(생약) 분야 신뢰도 회복 및 대국민 홍보, 인식제고를 위한 전시 및 체험, 전문가 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 교육 등을 기획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억 100만원 중 3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1,500만원이 불용됨.[32)]

[2024년도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	2,965	2,965	93	189 △189	3,058	2,781	-	276	2,173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381	381	20	110 △110	401	386	-	15	42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예산 비목간 변경시 이행하여야 하는 절차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적정 세목 조정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및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도 동 사업 내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전시동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용역비(210-15)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당초 동 관리용역비에는 전시동 안내 및 해설 인력 파견에 소요되는 예산 1억 2,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후 해당 용역은 관리용역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일반용역비 항목에서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음.

32) 일반회계-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운영(4032-31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24년 센터 전시동 기획·운영 내역사업 중 관리용역비 사업 편성·집행 내역]

편성 내역	집행 내역	비 고
□ 센터 전시동 관리: 250백만원 * 전시동 관리용역(4명): 250백만원	□ 센터 전시동 관리: 241백만원	-
- 생약누리 안내·해설 용역: 122백만원	-	- 전시동 안내 및 해설사 파견 용역: 139백만원 * 일반용역비(210-14)로 집행 (세목조정 미실시)
- 환경미화 용역: 128백만원	- 전시동 관리용역: 94백만원 - 24년 지하수 관리용역: 39백만원	-
-	- 24년 전시관 기획전시: 108백만원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 후 집행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 재구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세목간 조정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세목간 조정 역시 예산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33)]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임전결 및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각 부서장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세목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일반용역비로의 세목변경에 필요한 내부승인 등 사전 조정 절차가 별도로 이행되지 않은 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예산의 비목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기준으로서, 이를 적절한 내부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변경·집행하는 행위는 예산의 비목별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항목별 구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예산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제 세목변경 절차 미준수로 인해 당초 안내·해설 용역을 위해 편성되었던 예산(1억 2,200만원)이 여유재원으로 남게 됨에 따라,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전시관 기획전시에 대한 재원으로 조정되어 집행되는 등 목적 외 사용이 이루어졌음.

이를 고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 비목간의 변경시 관련 내부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감독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33)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p397)

8. 송무업무지원 사업: 소송 패소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송무업무지원’ 사업은 식의약 산업의 발전, 권익구제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국가 상대소송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송무 대응 지원 강화를 통해 식의약안전 행정의 실효·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3억 8,700만원 중 3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5%)되고, 200만원이 불용됨.[34)]

[2024년도 송무업무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430	430	-	90	520	514	-	6	584
송무업무지원	291	291	-	96	387	385	-	2	44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족한 소송 배상금 지급 재원 마련으로 인해 교육훈련 등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송 패소율 증가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4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3건의 사건에 대해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에 따라 총 3,200만원을 지급하였음.

이 비용은 동 사업에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배상금으로 전용하여 충당하였는데, 이러한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례임.

34) 일반회계-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7036-309)(기획조정관)

[2024년도 소송배상금 지급을 위한 전용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6.13.) (2024.9.26.)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일반수용비 (210-01)	32	식의약 법무통계 관리운영 (7036-309)	배상금 (310-02)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그러나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중인 소송은 40건에 이르고 있는데, 2021년 이후 패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에도 유사한 배상금 지급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임.

[2019년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소송 패소 현황]

(단위: 건, %)

연도	승소 (소취하 포함)	패소	일부 승·패소	계	패소율주)
2019	35	1	0	36	2.8
2020	39	3	1	43	7.0
2021	41	4	0	45	8.9
2022	44	5	1	50	10.0
2023	34	5	0	39	12.8
2024	26	7	1	34	20.6

주) 해당연도에 '패소'로 확정된 사건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럼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상금 관련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있어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이 반복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제로 이번 배상금 지급을 위해 당초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이 전액 전용되었고, 이로 인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역량강화 교육 및 소송 실무 교육 등이 중단되었는데, 이는 소송에 대한 조직의 전문성과 대응 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35]

35)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체적으로 지방청 순회 8회('24년 2월~8월)·집합 2회('24년 6월, 11월)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훈련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입장임

[2024년 송무업무지원 사업 예산 편성·집행 내역]

편성액	집행액
○ 291백만원 - 실무수습변호사 인건비 : 30백만원(2명×2.5백만원×6개월) - 소송대응 : 245백만원(49건×5백만원(부가세 미포함)) **- 교육훈련 : 16백만원**	○ 385백만원 - 실무수습변호사 인건비 : 28백만원 - 소송대응 : 325백만원(57건×5.7백만원(부가세 포함)) **- 배상금 : 32백만원(3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2019년 2.8% 수준이었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패소율이 2024년 20.6% 수준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소율 증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

이를 고려하여 패소율 증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패소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6]

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처분/송무 통합지침」을 제정하는 등 최근 식약처 행정처분 대상 쟁송 제기 증가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임.

9.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한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 승인 절차 준수 필요

가. 개 요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은 식약처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베트남 정부에서 도입·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운영·관리 노하우를 전수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억 7,500만원 중 2억 3,500만원이 집행(집행률 30.3%)되고 5억 3,700만원이 이월되어 200만원이 불용됨.[37)]

[2024년도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개발협력 (ODA)	6,767	6,767	111	-	6,878	4,647	537	1,693	4,591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 시스템 선진화 지원	664	664	111	-	775	235	537	2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한국(식약처)과 베트남(보건부)간 식품·의약품·화장품 및 의료기기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양국 협력 증진 MOU에 따라 추진된 무상원조 ODA사업으로, 베트남의 ICT기반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먹거리 안전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품안전에 대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24년도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행정시스템 선진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

- 식약처-베트남 보건부 간 MOU 체결 및 개정(2015.12, 2018.5)
- 식약처-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간 MOU 체결(2018.5)
- 수원국 요청서 접수: PCP접수(2018.5), 사업 추진(2019~2023), 추가지원 착수(2024.11.~)

37) 일반회계-국제개발협력(ODA)(7036-311)(기획조정관)

나. 검토의견

ODA 수원국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등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중요사항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 지침」에 따라 외교부의 승인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이 필요하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의 승인 전 사업기간 변경을 전제로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부터 베트남을 수원국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당초 동 ODA 사업은 2024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수원국의 내부절차 지연(2024년 9월 베트남 보건부 승인)으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이 2025년 5월까지로 연장되었음.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항목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전용·이월·불용사유
2022년	일반연구비	-	1,040	1,039	-	1	낙찰차액 불용
2023년	일반연구비	-	560	445	111	4	용역사업 계약금 잔금 이월('23.6~'24.2) 및 낙찰차액 불용
2024년	일반연구비	111	-	111	-	-	-
	관리용역비	-	664	124	537	3	수원국 내부 절차 지연 잔금 이월('24.11~'25.5) 및 낙찰차액 불용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동 ODA사업은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총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수원국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을 위해서는 주관기관(외교부)의 검토·승인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상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음.[38)]

38)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7조(국제개발협력위원회) ①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계획·전략 및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 및 심사·의결한다.
1. 제11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 제14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수립·수정에 관한 사항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에 따른 동 사업 시행계획]

(단위: 억원)

사업유형	총사업예산	'24예산	신규/계속	총사업 기간	구분
프로젝트	74.35	6.64	계속	2019~2024	양자무상

자료: 「2024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안)」, 관계부처 합동

동 사업의 기간 변경 절차를 살펴보면, 2024년 12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외교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25년 1월 9일 외교부로부터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39] 최종적으로는 2025년 2월 20일에 개최된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업기간 변경이 의결됨.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교부와의 협의가 완료되기 전인 2024년 11월 29일에 이미 사업기간 연장을 반영하여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사업기간 변경이 공식 승인되기 이전에 해당 변경을 전제로 하여 계약을 선행하여 체결한 것임.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업기간 변경이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고, 주관부처(외교부)와 협의 및 동 위원회의 변경 승인 절차가 늦어짐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4년 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관리용역계약 내역					계약유형 (낙찰자결정방법)
	계약명	발주금액 (입찰공고서 기준)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베트남 ICT기반 식품안전시스템 선진화 지원	2024년 베트남 식품안전정보시스템 구축(추가지원)	664	657	주식회사 미소테크	2024.11~2025.5	수의계약

주) 동 사업에 편성된 관리용역비는 베트남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른 현지 개통식 및 완료 보고회 개최('24.2) 후 구축된 베트남 식품안전 행정시스템 운영 경험의 안전한 전수를 위한 ODA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임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 제15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22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 중 정부 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9)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외교부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 무상원조사업(ODA)의 변경 검토 요청은 2025.1.3.에 이루어졌음.

그러나 이와 같은 주관기관(외교부)의 검토·승인 및 위원회 의결 전 계약체결은 ODA 사업기간 변경의 적절성 및 타당성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향후 ODA 사업의 일정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절차를 선행한 이후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0.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입대체경비 집행 개선 필요

가. 개 요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은 해외 현지 제조소의 시설·제조 및 품질관리 등 실태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 6,000만원 중 14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0%)되고, 1억 900만원이 불용됨.[40)]

[2024년도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	21,896	21,896	-	745	22,641	22,327	-	314	28,567
의약품등 현지실사	815	815	-	745	1,560	1,451	-	109	815

주 1) 이·전용 등 금액은 초과지출 승인액임
2)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관련 현지실사 등에 따른 국외업무출장 여비를 산정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이는 세입과목인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와 직접 연계되어 있음.

[2024년도 기타잡수입(수입대체경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잡수입 (수입대체 경비)	1,075	1,075	1,711	1,711	-	-	100.0	815

40) 일반회계-인허가 심사지원 등(수입대체경비)(7037-650)(의약품안전국)

나. 검토의견

첫째, 2024년 동 사업에서는 수입대체경비 초과수납액보다 더 큰 규모의 초과지출 승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수입대체경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대체경비의 초과지출 승인 시 수입예산의 초과분보다 지출을 과다하게 승인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은 17억 1,100만원으로 예산액 10억 7,500만원 대비 6억 3,600만원이 초과 수납(59.2%)된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7억 4,500만원이 초과지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입 초과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지출이 승인된 것임.

[2024년도 의약품등 현지실사 사업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결산액	초과 승인액
수입	1,075	1,711	636
지출	815	1,451	745[1)]

주) 초과 승인액 7억 4,500만원 중 1억 900만원은 불용되어 6억 3,600만원이 최종 초과지출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전재정 기조로 국외여비가 삭감되어 동 사업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해외현지실사가 전면 재개 및 확대됨에 따라 초과지출의 필요성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41)]

그러나 국외여비 부족에 따른 초과지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수입대체경비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됨에 따라 초과 수납된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 승인이 발생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 간의 연계를 전제로 한 수입대체경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수입대체경비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항인 점을 고려하면 보다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예산과 세출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연계성과 적정 예산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함으로써 초과지출 승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41) '23년: 939백만원 → '24년: 815백만원

둘째, 초과지출 승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사업의 예산을 수입대체경비 세입으로 징수한 행위는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대체경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 해외에 직접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는데, 집행된 국외여비는 정산을 거쳐 민원인에게 납입고지서가 발부되고, 민원인은 이를 국고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음.[42)]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르면,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사업의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에 초과지출이 가능함.[4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외업무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초과지출의 필요성이 발생하였으나, 동 사업과 같이 세입예산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편성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상 초과지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과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과 세출예산을 동일하게 맞추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 다른 세부사업에서 국외여비 2억 6,000만원을 전용 등을 통해 우선 집행한 뒤, 해당 금액을 심사대상자로부터 납부받은 후 세입으로 징수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초과지출 승인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다른 세부사업 국외여비 추가 집행을 통한 세입 추가징수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집행액	상세 내역
의약품 관리운영	74.6	■ 일반수용비 35 (전용) ■ 일반용역비 14.6 (전용) ■ 국내여비 25 (세목변경)
바이오생약국 기본경비	21.6	■ 일반수용비 13 (전용) ■ 국외여비 8.6
바이오생약 관리운영	14	■ 일반수용비 14 (전용)

42) **(정산절차)** 현지실사 국외출장 → 여비 정산 → 출장자에게 지급 → 산정된 여비 납입고지서 발부(민원인) → 국고 납부(민원인)

43)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집행액	상세 내역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129.8	■ 국내여비 27 (세목변경) ■ 국외여비 102.8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20	■ 국외여비 20
합계	**26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러나 수입대체경비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된 경비에 대해 초과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즉, 수입대체경비는 특정 사업 내에서 발생한 수입과 지출간의 연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집행분을 수입대체경비로 간주하여 세입으로 징수하는 행위는 「국가재정법」 상 수입대체경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임.

특히 이와 같은 자의적인 운용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적절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므로, 향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의 지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운용하는 등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기　타】

11.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 시정요구 24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4건·제도개선 22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4	22	2	24
예비비	-	-	-	-	-	-	-
합계	-	-	-	4	22	2	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정요구사항 24건에 대해 2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24	24	100.0	-
예비비	-	-	-	-
합계	24	24	100.0	-

질병관리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3,908억 7,300만원(156.1%)이 많은 6,412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800만원(2.9%)이 증가됨.[1)]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8,776	78,776	623,280	544,504	250,415	250,415	641,288	390,873	18,008
총수입	78,776	78,776	623,280	544,504	250,415	250,415	641,288	390,873	18,008

문의 : 민승환 예산결산조사관 genmin80@assembly.go.kr (02-6788-5691)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384억 3,000만원(20.8%)이 많은 1조 9,687억 5,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84억 2,000만원(△35.0%)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383,084	2,383,084	3,027,171	644,087	1,630,321	1,630,321	1,968,751	338,430	△1,058,420
총지출	2,383,084	2,383,084	3,027,171	644,087	1,630,321	1,630,321	1,968,751	338,430	△1,058,42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504억 1,500만원으로, 6,862억 7,000만원을 징수결정되어 6,412억 8,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3.4%)되고 449억 8,0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203,304	203,304	-	203,304	637,960	593,784	44,174	2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	21,761	21,761	-	21,761	22,446	22,073	374	-
- 손익계정	15,131	15,131	-	15,131	15,815	15,442	374	-
- 자본계정	6,630	6,630	-	6,630	6,631	6631	-	-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	25,350	25,350	-	25,350	25,864	25,431	432	-
- 손익계정	10,873	10,873	-	10,873	10,642	10,209	432	-
- 자본계정	14,477	14,477	-	14,477	15,222	15,222	-	-
합 계	250,415	250,415	-	250,415	686,270	641,288	44,980	2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조 650억 1,100만원으로, 이 중 1조 234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1%)되고 33억 4,8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81억 6,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25,637	625,637	65,463	1,474 △1,474	326,800	1,017,900	991,732	2,561	23,607
국립마산병원 특별회계	21,761	21,761	-	-		21,761	20,505	30	1,226
- 손익계정	15,131	15,131	-	-		15,131	13,974	30	1,127
- 자본계정	6.630	6.630	-	-		6,630	6,531		99
국립목포병원 특별회계	25,350	25,350	-	734 △734		25,350	11,257	757	13,336
- 손익계정	10,873	10,873	-	3 △3		10,873	10,168	-	705
- 자본계정	14,477	14,477	-	731 △731		14,477	1,089	757	12,631
합 계	672,748	672,748	65,463	2,208 △2,208	326,800	1,065,011	1,023,494	3,348	38,169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질병관리청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5,385억 7,700만원이 감소된 5,479억 3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2,423억 8,600만원으로 크게 감소되었고 일반유형자산 61억 5,600만원, 무형자산 61억 82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5억8,100만원이 증가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대비 506억 6,400만원 감소된 369억 3,500만원으로 유동부채 479억 4,1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4,879억 1,400만원이 감소된 5,109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2조 1,07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09억 9,400만원 감소되었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조 9,052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804억 9,300만원 감소되었음.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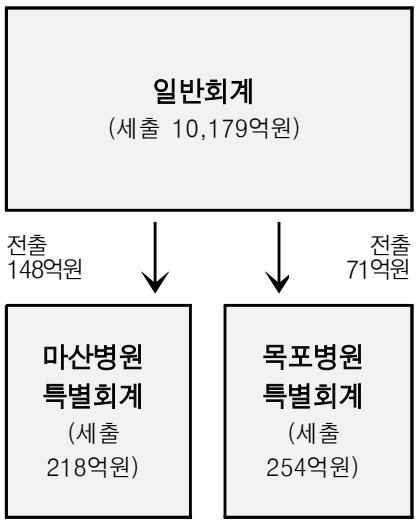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547,903	2,086,480	△1,538,577	△73.7
		유동자산	242,386	1,793,882	△1,551,496	△86.5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66,730	260,574	6,156	2.36
		무형자산	35,679	29,497	6,182	20.96
		기타비유동자산	3,108	2,527	581	22.99
	부 채		36,935	87,599	△50,664	△57.8
		유동부채	2,670	50,611	△47,941	△94.7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15	556	△441	△79.3
		기타비유동부채	34,150	36,432	△2,282	△6.3
	순자산		510,968	1,998,881	△1,487,914	△74.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107,403	3,908,343	△1,800,940	△46.1
	재정운영순원가		1,905,338	3,287,745	△1,382,407	△42.1
	재정운영결과		1,905,279	3,285,772	△1,380,493	△42.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일반회계·마산병원 특별회계 및 목포병원 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마산병원 특별회계, 목포병원 특별회계로 각각 148억원, 71억원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질병관리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위기단계 ‘관심’ 하향 조정 이후 안전한 일상회복 추진과 함께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한 국내외 역량 강화와 함께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일반회계는 9개 프로그램과 126개 세부사업에서 ‘감염병 예방 강화와 대응 체계 고도화 사업’ 등을 수행하고, 특별회계는 2개 프로그램과 21개 세부사업을 통해 ‘결핵 및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공공의료기관 구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 결과, 집행과 관련한 여러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먼저, 면허료 및 수수료 사업은 병원체자원 분양 수수료의 경우 분양받는 자로부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의결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둘째,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은 시험연구비 집행이 특정 비목에 집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일괄적으로 시험연구비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질병관리청은 각 비목별 소요를 반영하여 구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셋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전액 교부함에 따라 과다 이월이 발생하였으므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사업 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넷째,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 사업은 「국가재정법」 상 이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월 사유를 확대해석하여 이월을 실시하였으므로, 향후 질병관리청은 유사한 예산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봄.

마지막으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은 집행 목적과 성격이 다름에도, 이를 일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가병원(국립목포병원,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입원치료병상 운영비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세입 계상 필요

가. 개　요

‘면허료 및 수수료’는 국립검역소에서 발급한 선박위생관리 및 면제증명서를 발급하는데 발생하는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3억 9,600만원 전액이 수납(수납률 100.0%)됨.[2)]

[2024년도 면허료 및 수수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면허료 및 수수료	413	413	396	396	-	-	100.0	42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현행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3)]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는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별첨1]에 따른 분양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024년 수납액은 9,753만원임.

---

2) 일반회계-면허료 및 수수료(65-651)(감염병위기관리국)

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수수료)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보존·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고 병원체자원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022년 이후 분양 주수 및 징수수수료]

(단위: 주, 원)

연도	분양 주수	징수수수료
2022년	4,295	209,048,800
2023년	3,352	130,126,900
2024년	2,948	97,530,000

자료: 질병관리청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

등급	종류			분양수수료	
				국내(원)	국외(US$)
A	□ 배양과 보존이 쉬운 병원체자원 - 세균, 효모			20,000	40
B	□ 배양은 쉬우나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 세 균 : A, C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세균류 (방선균류, 유산균류 포함) - 효 모 : A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효모류 - 곰팡이			40,000	80
C	□ 배양과 보존이 까다로운 병원체자원 - 혐기성 세균, 저·고온 세균류 등 - 동결건조가 불가능한 병원체 - 배양에 혈액이나 혈청 등을 요구하는 병원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항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 바이러스			60,000	120
D	파생물질	핵산	- 병원체자원 A 등급	40,000	80
			- 병원체자원 B 등급	60,000	120
			- 병원체자원 C 등급	80,000	160
		항체	단클론항체	150,000	300
			다클론항체	80,000	160

무료분양 대상기관	할인분양		
대학,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교육용 참조 균주 분양	50%할인	20%할인	없음
	국공립 연구기관	교육기관(국립대학 포함) 및 비영리단체	그 외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한 수입의 경우에도 징수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해 세입으로 계상하여 징수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질병관리청이 징수하는 동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되고 있는데,[4] 동 수수료가 정부수입인지 납부 방식에 따라 수납되고 있어 질병관리청이 아닌 기재부 소관 세입으로 처리되고 있어, 징수결정 등 질병관리청 자체 세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음.[5]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6] 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4) 「병원체자원법 시행규칙」 제4조(수수료)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5)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판매수입금의 납입 등) ① 판매기관의 장은 매월 판매된 수입인지의 판매수입금 총액에서 제10조제1호나목,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인지 외의 수입인지 판매수입금: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판매수입금: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② 공급기관의 장이나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매월 판매한 수입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1. 공급기관의 장: 한국은행에 납입
2. 전자수입인지 공급기관의 장: 매월 판매한 수입금에서 제10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반회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으로 납입

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수납후 징수결정) ①수입징수관은 납입의 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제92조제1항에 따른 대리점(이하 "국고대리점"이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체신관서(이하 "체신관서"라 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및 국세 외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하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납입된 경우에는 해당 출납공무원, 한국은행등, 국고대리점,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이하 "수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이 한국은행 등에 납입된 경우 이들로부터 송부된 수납증빙서류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분양수수료에 대한 징수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임.

아울러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병원체자원 분양수수료의 징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수수료 징수를 현행 정부 수입인지 방식에서 납입 고지를 통한 전자결제 등의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여 질병관리청 자체 세입으로 편성·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납증빙서류" 라 한다)에 따라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하는 경우의 징수결정일은 수납증빙서류를 접수한 날로 하되, 수납된 월을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납증빙서류를 수납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세 출〉

2.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계획성 있는 예산 편성·집행을 통한 조정의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질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억 5,800만원 중 20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0%)되고, 1억 2,900만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1,583	1,583	575	-	2,158	2,029	-	129	1,86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동일 비목에서 세목변경의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어 예산 집행의 계획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 수행과정에서 질병대응센터 운영비 부족,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실험실 이전비 부족 등에 따른 예산 소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도중 총 12회의 세목변경을 실시하였음.

비목 간의 세목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및 시험연구비의 경우 예산의 증액과 감액이 번갈아 가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업의 향후 집행가능성과 집행

7) 일반회계-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6137-300)(질병대응센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면,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비용 부족으로 시험연구비와 일반용역비에서 세목조정 증액을 하였으나, 다시 시험연구비로 세목조정 감액하는 등 증액과 감액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8)]

[질병대응센터 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세목조정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세목변경 (2024.1.16.)	임차료 (210-07)	3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 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3.21.)	임차료 (210-07)	3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관련 제반 비용 재원 부족
세목변경 (2024.4.15.)	관리용역비 (210-15)	4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BL3시설 수리를 위한 비용 확보 필요
세목변경 (2024.7.25.)	임차료 210-07	4	일반수용비 (210-01)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실 운영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9.13.)	시험연구비 (210-13)	36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용역비 (210-14)	8		
세목변경 (2024.9.19.)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1	시험연구비 (210-13)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용역비 (210-14)	25		
세목변경 (2024.9.26.)	시험연구비 (210-13)	36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진단분석 실험실 이전 비용 마련
			일반수용비 (210-01)	

8)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임차건물 매도에 따른 임대인 변경으로 기존 임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함에 따라 실험실 이전 비용이 발생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목변경을 실시하였다는 설명임.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목-세목 코드	금액	~으로 목-세목 코드	이·전용 등 사유
세목변경 (2024.10.23)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2	시험연구비 (210-13)	검역감염병 진단분석 시약 구매 재원 부족
세목변경 (2024.10.23)	임차료 (210-07)	7		
세목변경 (2024.10.28)	임차료 (210-07)	8	일반수용비 (210-01)	진단분석과 실험실 이전 관련 소요재원 및 운영관련 제반 비용 부족
세목변경 (2024.11.27)	공공요금및 제세 (210-02)	3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충청권질병대응센터 진단분석과 실험실 시설장비유지비 재원 부족
	일반수용비 (210-01)	4		
세목변경 (2024.12.9)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0.5	일반용역비 (210-14)	감염병 원인병원체 실험실 검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염기서열 분석(시퀀싱) 수행
세목변경 (2024.12.1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0	일반용역비 (210-14)	

자료: 질병관리청

예산의 이·전용, 세목조정 등을 통한 예산의 변경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므로 구체적인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와 같은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세목조정은 당장의 예산 집행에 대한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 전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과도한 예산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3.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지출원인행위 준칙 준수 필요 등

가. 개 요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신종감염병 대응정책을 설계·시행하고, 방역물품·의약품 비축 등을 통해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215억 9,000만원 중 5,154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5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5억 7,100만원이 불용됨.[9)]

[2024년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D)	예산현액 (A+B+C+D)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185,345	185,345	9,445	-	326,800	521,590	515,490	528	5,571	8,052
중앙방역비축물품	931	931	335	3,301	-	4,567	4,511	-	56	3,880
치료제 구입비	179,760	179,760	-	△3,272	326,800	503,288	502,112	519	657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중앙방역비축물품’**은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비축 방역물품을 활용하여 현장 요원 및 의료진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및 이동형 음압기 등의 보관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5억 6,700만원 중 45억 1,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5,600만원이 불용됨.

또 다른 내역사업인 **‘치료제 구입비’**는 코로나19 고위험군 환자치료를 위해 정부가 치료제를 구매하여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032억 8,800만원 중 5,021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5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억 5,700만원이 불용됨.

9) 일반회계-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6232-330)(감염병위기관리국)

나. 검토의견

첫째,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의 경우, 당초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목조정을 통한 예산확보 이전에 사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용역계약 체결시 배정된 예산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상 지출원인행위 준칙을 위반한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향후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중앙방역비축물품 사업은 현장 요원 및 의료진에 대한 개인보호구 등을 보관·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결산 현황에 따르면, 당초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음.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개인보호구 보관을 위해 재원 마련 전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24년 1월 23일 세목조정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전인 2024년 1월 1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

[이·전용 등을 통한 재원 확보 전 계약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 사업명	용역사업	이·전용 날짜	이·전용 등 금액	용역 계약일주)	사업기간	사유
중앙방역 비축물품	2024년 개인보호구 보관·배송	2024.1.23	3,172	2024.1.1.	2024.1.1. ~ 12.31.	신종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을 위한 개인보호구 보관 필요
		2024.12.5	100	계약변경		개인보호구 추가 배송 등에 따른 비용 필요

주) 용역계약일은 사업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해 1월 1일로 작성됨.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예산 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개인보호구 보관 비용이 전액 미반영되었고, 물품보관의 연속성을 위해 재원 마련 전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현행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0)]

10) 「국고금 관리법」

이는 원칙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먼저 확보한 후 지출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바, 재원 확보 전 계약 체결 행위는「국고금 관리법」상 지출원인행위 준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예산 운용 방식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치료제 구입비 사업은 정부 예산이 비목별 예산 편성·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치료제 보관·유통비와 치료제 구입비를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비목별 성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 요구됨.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구입 예산 편성시 공급가·보관유통비 및 관세 등을 포함한 예산단가로 산출한 후 재료비(210-11)로 편성하고 있는데,[11] 보관·유통비에 대한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일반수용비(210-01) 또는 일반용역비(210-14)로 세목조정 후 집행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질병관리청은 2024년 1월 22일 코로나19 치료제 운송 및 보관을 위해 재료비에서 일반수용비 및 일반용역비로 각각 8,000만원과 2억 8,000만원을 세목조정한 후 집행하였음.

[2024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 및 유통을 위한 세목조정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1.2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01 (일반수용비)	코로나19 치료제 운송비용 등
세목조정 (2024.1.22.)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28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국가재정법」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1) 예산단가: 베클루리주 2.8백만원/명분, 먹는치료제 0.98백만원/명분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024.6.2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110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세목조정 (2024.7.2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4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01 (일반수용비)	코로나19 치료제 운송비용 등
세목조정 (2024.11.26.)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1 (재료비)	931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6232-330)	210-14 (일반용역비)	코로나19 치료제 보관계약 체결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국내 미허가 의약품(신약)으로 공급가 외 추가 비용(관세, 유통, 보관비 등) 발생이 잦고, 국내 확진자 발생 현황 및 글로벌 수급 상황 등 불확실성이 존재함에 따라 비목을 통합하여 편성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정부 예산 편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비목별 예산 편성·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사업비를 집행 성질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비목상 성격이 다른 치료제 구입비와 보관·유통비를 구분하지 않고, 이를 통합 편성한 후 필요할 때마다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편의적인 방식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또한 이와 같은 비목 통합 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 비목별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향후 비목을 구분 편성하는 한편, 사업 추진시 비목별 소요 예산에 대한 면밀한 추계를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임.

4.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사업 예산 집행상황을 고려한 교부 필요

가. 개 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신종감염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5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 감염병동 설치·운영을 위한 구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3억 8,800만원 전액이 집행됨.[12)]

[2024년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6,388	6,388	-	-	6,388	6,388	-	-	5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구체적으로는, (수도권)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천안병원, (호남권) 광주광역시 조선대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병원 등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다만, 현재 호남권 1개소의 경우 착공에 들어 갔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는 설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호남권역 총공사비 552억 4,900만원(국비) 중 63억 8,800만원이 편성·집행되었음.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추진 현황(2025.8월 기준)]

구분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의료기관명	조선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지정 시기	2017.8.	2020.7.	2020.7.	2021.7.	2022.4.
예타	예타 면제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 (→ 타당성 재조사 대상)	
지원 규모	(국고지원내용) 음압병상 36개(일반30, 중환자6) 및 음압수술실(2)을 포함한 감염병동 구축 및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지원				

12) 일반회계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6234-331)(감염병위기대응국)

구분	호남권	충청권	경남권	경북권	수도권
추진단계	공사단계 (2024. 6월 착공)	중간 재설계 완료 (조달청 중간 재설계 적정성 재검토 중)	KDI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	중간설계 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중)	기본계획 완료 (KDI 타당성 재조사 중)
총사업비[1] (국비/자부담)	741억원[2] (552/189)	450억원	450억원	450억원	450억원
완공예정[3]	2026.12.	2030. 下	2030. 下	2031. 下	2033. 上

주1) 호남권(총사업비 확정('23.9)) 이외 권역(4)은 설계단계 절차 중으로 국비만 기재
2)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23.9) 이후, 자율조정(낙찰차액 등 감액,'24.6)된 금액(국비 552억원, 자부담 189억원)
3) 현재 추진단계 기준, 예상한 일정으로 추후 총사업비 협의 등 절차에 따라 변동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나. 검토의견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의 실집행실적이 극히 부진함에도 2024년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함에 따라 교부 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금 보유현황 등을 미리 검토하여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적절한 집행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및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 2023년 9월 총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2024년 6월 공사 착공을 시작하였으나, 2024년도에 교부된 예산액 63억 8,8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음.

[2024년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질병관리청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6,388	6,388	6,388	6,388	17,718	24,106	5,224	6,388	-	18,882	-	-

자료: 질병관리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조 및 제17조,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시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이월

금 보유현황 등 연내 실집행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집행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

이는 보조사업자의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임.

그러나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의 경우 실집행률이 2022년 0.2%, 2023년 0.6%에 그쳤고,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21.6%로 여전히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신규 교부 예산이 전액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 예산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적지 않은 규모의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예산을 전액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13] 특히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임.

[2021~2024년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이월액 및 사업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실집행률	목표공정률[1]	
					계획	실제
2021년	19,543	856	12,290	4.4	-	-
2022년	17,326	27	13,466	0.2	-	-
2023년	26,192	177	17,718	0.6	-	-
2024년	24,106	5,224	18,882	21.6	16	7.45

주1) 2024년 6월 착공
자료: 질병관리청

따라서 향후 질병관리청은 사업 지연에 따른 실집행 부진 및 보조금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점검을 철저히 하는 한편, 면밀한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4]

아울러, 호남권 뿐만 아니라 충청권·경남권·경북권·수도권의 경우도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재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지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3)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착공 이후 암반반출 등 예상치 못한 현장여건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계획대비 실집행이 부진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14) 당초 호남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사업기간은 2018~2021년이었으나,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최종 2018~2026년으로 늦춰진 상황임.

5.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 시험연구비로의 일괄 편성 지양 필요

가. 개 요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은 국가보건의료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의 사업 기획 및 과제관리, 장비 유지·보수, 연구성과 창출 및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 500만원 중 14억 6,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2%)되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4년도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질병연구기획 관리지원	1,467	1,467	38	-	1,505	1,464	-	42	1,563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817	817	-	71 △71	817	790	-	27	913
정밀진단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기기실 운영	270	270	-	17 △17	270	269	-	1	270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지원	220	220	-	-	220	207	-	13	220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	160	160	38	-	198	198	-	-	16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는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연구과제(내부 및 용역과제)의 기획, 진도관리, 평가 및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지

15) 일반회계-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6631-301)(국립보건연구원)

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1,700만원 중 7억 9,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었음.

또 다른 내역사업인 **‘정밀진단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기기실 운영’**은 고위험 병원체 등의 기관 내 감염병 병원체 분석을 위하여 중장기 최신 첨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고가 첨단 기자재의 적기·적시 활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7,000만원 중 2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었음.

내역사업인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지원’**은 기관 우수 연구성과 중 특허 출원·등록,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2억 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1%)되었음.

내역사업인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은 질병관리R&D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시행계획 및 투자방안 마련, 미래 환경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질병관리R&D 신규사업을 기획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9,8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

나. 검토의견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 내 4개의 내역사업 모두 시험연구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시험연구비는 10개의 비목을 합한 비목으로 예산 통제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최소한으로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사업과 같이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과 같은 특정 비목에 집중되어 집행되는 경우 각 비목별 소요를 반영하여 구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 일부 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임차료, 유류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여비, 고용부담금의 여러 비목을 하나의 비목(210-13)으로 합친 비목임.[16)]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내역사업에는 시험연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최근 3년간 각 내역사업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수용비 및 재료비 등과 같은 특정 비목에 집행이 집중되어 있음.

16) 시험연구비(210-13) 비목은 10개의 비목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므로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신축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시험연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2022~2024년 질병연구기획관리지원 사업 시험연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 비목	예산액	집행액	지출내용
2022년	질병연구 사업 기획 및 관리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53	210	• 연구과제 평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 자문료 등
			임차료	3	3	• 자문회의 및 업무보고 대관료
			여비	77	11	• 연구협력 방안 논의 여비
			계	233	224	
	정밀진단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기기실 운영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0.3	0.3	• 학회등록비
			재료비	99.7	99.7	• 공동기기실 운영 정밀진단용 시약초자 및 연구소모품비
			계	100	100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1	19	• 전문위원 수당 • 사무용품
			임차료	1	1	• 위원회 대관료
			국내 여비	3	3	• 위원회 회의 참석 등
			계	15	23	
2023년	질병연구 사업 기획 및 관리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55.8	214.5	• 연구과제 평가,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 자문료 등 • 화상회의 시스템 이용료, 모바일 설문 이용료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0.2	0.1	• 우편요금
			여비	77	3.4	• R&D 중장기 계획 논의 등 업무보고회
			계	233	218	
	정밀진단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기기실 운영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0.4	0.4	• 학회등록비
			재료비	99.6	99.6	• 공동기기실 운영 정밀진단용 시약초자 및 연구소모품비
			계	100	100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5	1.4	• 전문위원 수당
			임차료	10	8.1	• 자문회의, 전문위원회 등 대관료
			계	15	9.5	

(단위: 백만원, %)

구분			집행 비목	예산액	집행액	지출내용
2024년	질병연구 사업 기획 및 관리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231	231	• 연구과제 평가 및 자문료, 교육 등록비 등 • 연구과제 알림톡 이용료
			공공 요금 및 제세	0.2	0.2	• 우편요금
			여비	-	-	• 외부강사 여비
			계	231	231	
	정밀진단 확인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기기실 운영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0.7	0.7	• 평가수당 • 학회 등록비
			재료비	89.3	89.3	• 공동기기실 운영 정밀진단용 시약초자 및 연구소모품비
			계	90	90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지원	시험 연구비	일반 수용비	110	97	•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 심의 및 고문변리사 자문수당 • 지적재산권 연계 특허 창출지원 부담금
			공공 요금 및 제세	-	-	• 우편요금
			계	110	97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	시험 연구비	임차료	5	5	• 역량강화 워크숍, 위원회 등 대관료
			계	5	5	

자료: 질병관리청

시험연구비는 여러 비목이 합쳐져 있어 실제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비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 통제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를 고려하면, 동 내역사업들과 같이 명확하게 비목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비목으로 편성하는 등 시험연구비 편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특히 ‘질병연구 사업 기획 및 관리’, ‘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 지원’ 및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 사업의 경우 특정 시험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구사업의 기획·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 등의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편성되는 항목이므로, 개별 집행 목적에 부합하는 비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17]

17)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질병연구사업 기획 및 관리’ 사업의 경우 연구과제 평가 수당 및 자문료 등 일반수용비 성격의 시험연구비는 일반수용비로 편성·집행하고 있고, 동 사업의 최근 3년간 시험연구비 집행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2개의 내역사업(연구성과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지원, 미래질환 대응 연구기획)에 편성된 시험연구비도 2026년 부처안 편성시 적정 비목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임.

6.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지출원인행위 없는 이월 부적절

가. 개 요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차원의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정책-연구-진료현장 간 분절된 지식의 통합·조정을 위한 국립심뇌혈관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 3,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18)]

[2024년도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330	330	-	-	330	-	330	-	72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가재정법」에서는 입찰공고를 한 경비만 이월 대상이 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조달청에 대한 설계 계약요청을 근거로 공고 절차도 없이 기본조사설계비를 이월한 것은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전남 장성, 광주 북구를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에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질병관리청은 2024년 8월 26일 총사업비가 확정(769억원)됨에 따라 설계공모를 추진하였음.

이 과정에서 기본조사설계비(420-01) 전액을 이월하였는데,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총사업비 조정 및 집행계획 변동 등으로 인해 예산 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연례적 불용을 중단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월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하고

18) 일반회계-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6631-309)(만성질환융합복합연구부)

있음.[19]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이월을 실시하면서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한 후 이월을 실시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현행 「국가재정법」 제48조는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①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20]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2025년 2월 20일에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고, 2025년 5월에 설계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는 '조달청에 계약요청' 한 행위를 「국가재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입찰공고'의 범위로 해석함에 따른 것임.

질병관리청은 연례적 불용에 대한 지적이 지속된 상황에서 불용 지양을 위해 이월 근거를 확대 해석하여 이월을 실시하였다는 설명임.

[총사업비 확정 이후 사업 추진 사항]

(8.26)수시배정 해제 요청 → (9.12)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 요청 → (9.19)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신청 → (10.14)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결과 통보 → (10.24)조달청 맞춤형 서비스 약정체결 → (10.29)설계 관련 기본안전보건대장 초안 조달청 제출 → (11.6)기본안전보건대장 조달청 검토 완료, 확정 → (11.14)설계용역 사전 협의 자료(설계공모 지침서 등) 조달청 제출 및 공공건축 심의 요청 → (11.26)수시배정 승인 통보(기재부) → (12.3)공공건축 심의 완료 → (12.5)공공건축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확인서 등 제출 → (12.11)설계용역 계약 요청 → (2025.2.20)설계 공모 → (2025.5.)설계계약

자료: 질병관리청

19) 2024년 예산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를 위해 편성되었으나, 공사비 조정으로 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긴급히 다음 단계(기본설계) 추진할 필요성이 발생했다는 설명임.

20)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조달청에 대한 계약 요청 행위가 어느 시기에 발생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하게 되므로 자의적인 관련 규정 확대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재정법」은 입찰공고를 한 경비가 이월 대상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월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를 고려하면 질병관리청은 결국 지출원인행위 또는 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입찰공고 등 이월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월을 실시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향후 질병관리청은 「국가재정법」에 부합하도록 이월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불용처리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예산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7.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비목 변경시 사전 절차 이행 필요 등

가. 개 요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은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 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음.[21)]

[2024년도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	2,200	2,200	-	-	2,200	2,200	-	-	2,200
백신 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2,200	2,200	-	800 △800	2,200	2,200	-	-	2,2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 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질병관리청이 자체 세목조정 종료 후 기재부와의 협의를 실시한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절하므로, 향후 보조금 운영에 있어 「보조금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신속한 백신 개발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연구인력 확보 및 사업 운영

21) 일반회계-국가 면역도 조사체계 구축 및 운영(6632-314)(국립보건연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자산취득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중 일부인 8억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변경(2024.2.22.)하였음.

[비목 변경으로 인한 민간보조금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민간경상보조 (320-01)	400	1,200	800
민간자본보조 (320-07)	1,800	1,000	△800

자료: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상 보조사업자의 책무]

나. 보조사업자의 책무
(3)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간접)보조사업자가 세목조정(ex. 경상보조↔자본보조)을 요청할 경우
※ 이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계획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발췌(p102)

이와 같은 사전협의는 자본형성적 성격의 자본보조금과 운영비 성격의 경상보조금 간 조정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취지이나, 질병관리청은 이미 자체 세목조정(2024.2.22.)을 마친 후 뒤늦게(3.21.) 협의를 실시하였음.

질병관리청은 중앙부처 차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세목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체 세목 조정 시행 후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설명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이는 보조금 예산의 비목 변경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미이행한 것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민간보조금 비목 조정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신규채용 지연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없이 보조금을 전액 교부함으로써 과도한 이월이 발생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보조금 교부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보조사업자인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에 2024년도 예산액 22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액 1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 32억원 중 18억 3,200만원이 실집행(실집행률 57.2%)되고, 13억 6,400만원이 이월되는 등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

[2024년도 백신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질병관리청			(재)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B)	실 집행률 (D/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D)				
2,200	2,200	2,200	2,200	1,000	3,200	1,832	2,200	832	1,364	4	57.2	37.8

자료: 질병관리청

이러한 집행 부진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7차례에 걸쳐 사업 수행 전문인력 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응시자 부족 등으로 채용이 무산되는 등 사업진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고,[22] 2023년 이월액의 우선 집행으로 인해 2024년 본예산 집행이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금 교부 현황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실집행액은 8억 3,200만원으로 2/4분기 교부액 17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3분기까지 집행액이 8,200만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질병관리청은 4분기에 추가로 5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이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임에도 보조사업의 집행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추가로 보조금을 교부한 것임.

[2024년 백신첨단 공정기반 구축 및 운영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교부액	-	1,700		500	2,200
실집행누적액	-	-	82	750	832

자료: 질병관리청

22) 우수인력채용 공고(5회) 및 재공고(2회) 실시('24.5～'24.10)

이와 같은 보조금 교부는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므로 향후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23]

특히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계획변경으로 인해 예산 집행 단계에서 보조금 비목을 조정하였음에도 과도한 이월이 발생한 것은 면밀한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므로,[24]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임.

2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보조금 교부시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및 이월금 보유현황 등 연내 실집행 가능성과 관련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한 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음.

24)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전 신변종 감염병 대비 백신 신속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설립 근거 및 사업수행 법률 마련)와 사업비의 추가편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간자본 8억원을 민간경상으로 변경함.

8. 통합정책소통 사업: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연초 전용 부적절

가. 개 요

‘통합정책소통’ 사업은 다양한 매체 광고 등의 송출을 통해 질병·보건 이슈 관련 정보 및 관련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5)]

[2024년도 통합정책소통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질병관리 국민소통	561	561	-	100	661	649	-	12	561
통합정책소통	31	31	-	100	131	131	-	-	3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전용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예외적인 행위로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에도, 연초 전용 증액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홍보 예산을 확보한 후 연말에 집중 집행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예외적·한정적 사유에 한정하여 전용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정책홍보 강화를 위해 언론 등 매체 광고를 증대하고자 연초(1.24.)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비총액) 내 일반수용비 중 1억원을 이 사업 일반수용비로 전용 증액하였음.

25) 일반회계-질병관리 국민소통(7028-300)(대변인)

[2024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1.24.)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비총액) (7011-253)	210-01	100	질병관리 국민소통 (7028-300)	210-01	질병관리청 정책홍보 강화

자료: 질병관리청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2024년도 예산액이 예년보다 감액된 상황에서 2024년 초 코로나19 재유행 우려 및 이례적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등 신규 사업홍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 따른 희귀질환, 기타 감염병 예방 등 민생 관련 사업의 홍보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용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함.[26)]

그러나 세출 예산의 전용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예외적인 행위로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27)]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연초 전용 증액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3배 이상 많은 홍보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이를 통해 실제 실시한 홍보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실시 시기가 2024년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연초에 전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할 만큼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안이었는지 의문임.

[2024년 전용 재원으로 실시한 홍보 세부내역]

(단위: 원)

집행일	내역	집행금액	주요내용(광고기간)
2024.2.15.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개통 관련 온라인 배너 광고 추진	9,999,990	'감염병 유행·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역정보시스템 개편' 웹배너 홍보(24.2.1.~2.8.)
2024.3.21.	희귀질환사업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9,999,990	'희귀질환의 모든 정보를 한곳에!! 희귀질환 헬프라인' 웹배너 홍보(24.3.7.~3.13.)
2024.4.17.	감염병 뉴스레터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3,999,990	'감염병 뉴스레터' 웹배너 홍보(24.3.30.~4.4.)

26) 동 사업 예산액 추이: ('22년) 296백만원, ('23년) 396백만원, ('24년) 31백만원

27) 원칙적으로 전용을 위해서는 ① 사업 간 유사성, ② 시급성, ③ 기관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단위: 원)

집행일	내역	집행금액	주요내용(광고기간)
2024.6.17.	말라리아 예방 홍보 관련 지면광고료 지출 요청	4,999,990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지면 홍보(24.6.12.)
2024.9.11.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4,999,990	‘방역통합정보시스템 한곳에 모으다!’ 웹배너 홍보(24.8.21.~8.27.)
2024.9.13.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9,999,990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웹배너 홍보(24.8.28.~9.3.)
2024.9.13.	심뇌혈관질환 예방주간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4,999,990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 웹배너 홍보(24.8.30.~9.5.)
2024.10.02.	항생제 내성 예방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9,999,990	‘항생제 내성 예방’ 웹 배너 홍보(24.9.13.~9.19.)
2024.10.23.	말라리아 예방 홍보 관련 광고비 지급 요청	9,999,990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입니다.’ 웹 배너 홍보(24.10.8.~10.14.)
2024.10.25.	세계 손씻기의 날 홍보 관련 광고비 지출 요청	4,999,990	‘10월 16일 세계 손씻기의 날 손은 반짝! 세균은 깜짝!’ 웹 배너 홍보(24.10.11.~10.16.)
2024.11.29.	당뇨병 및 합병증 예방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4,999,990	‘당뇨병과 합병증, 알고 관리하면 걱정 없어요’ 웹 배너 홍보(24.11.8.~11.14.)
2024.11.29.	심뇌혈관질환 예방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4,999,990	‘급격한 기온 변화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웹배너 홍보(24.11.8.~11.14.)
2024.12.13.	예방접종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4,999,990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접종’ 웹배너 광고(24.12.5~12.11.)
2024.12.13.	에이즈 예방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2,999,990	‘HIV/AIDS 바로 알고 예방하기’ 지면 홍보(24.11.29.)
2024.12.18.	예방접종 홍보 관련 광고료 지급 요청	5,999,990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동시 접종’ 웹배너 광고(’24.12.6~12.11.)
계		97,999,850	

자료: 질병관리청

특히 전용은 당초 계획된 예산을 변경시키는 예외적인 행위이므로 구체적이고 면밀한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나, 전용이 연초에 실시된 반면, 홍보사업 집행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시기별 중점 홍보가 필요한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 집행계획을 수립한 후 전용을 추진하였다는 입장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용은 시급

히 그 필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일괄적으로 연초에 전용을 실시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질병관리청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취지대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사업의 추진 추이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기금】

〈지　출〉

9.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행정편의적인 비목의 운영 지양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은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격리입원치료를 통해 병원 및 지역 사회로의 2차감염 최소화 및 신종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9억 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8)]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3,907	3,907	-	3,907	3,907	-	-	3,90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질병관리청은 국가병원(국립목포병원,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입원치료병상 운영비를 시설장비유지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동 지원항목의 집행 사례를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성격과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정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음.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은 신종 감염병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

28) 응급의료기금-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2837-322)(감염병위기관리국)

정 입원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시설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인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29)]

이에 질병관리청은 음압병실 수, 신종 감염병 (의심)환자 등 입원·치료 실적, 감염병관리기관 시설평가 결과, 운영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기관은 15개 시도(세종, 전남 제외) 및 국가병원(국립목포병원, 국군수도병원)임.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관리 사업 세부 편성근거 및 집행 내역]

편성 근거	집행 내역
○ 3,90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12개 병실(2개소) × 16.8백만원 = 19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221개 병실(36개소) × 16.8백만원 = 3,712백만원	○ 3,907백만원 - (시설장비유지비) 12개 병실(2개소) × 16.8백만원 = 195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221개 병실(36개소) × 16.8백만원 = 3,712백만원 * 의료기관별 음압병실수, 코로나19 등 환자진료실적, 전년도 집행실적, 감염병관리기관 평가점수, 신규사업 추진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평균단가 16백만원)

자료: 질병관리청

구체적으로, 15개 시도에 대해서는 지자체경상보조 비목으로, 국가병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⑤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행지침」에 따르면,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는 특정 시설·장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임.

그런데 국가병원에 대해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시설정기점검 등 관리용역비로 집행해야 할 내역에 집행되는 등 시설장비유지비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집행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집행 사례]

(단위: 원)

집행 내역		집행액
국립목포병원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4월분	1,65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5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6월분	1,65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7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8월분	1,650,0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검증 및 TAB 용역	17,00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9월분	1,650,000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훈증소독 용역	6,820,000
	2024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0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1월분	1,650,000
	2024년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설정기점검 용역_12월분	1,650,000
	합계	38,670,000
국군수도병원	의료물품의 소모성 재료비	9,520,000
	시설유지보수(계약)	26,820,810
	훈증소독(계약)	8,106,000
	TAB(계약)	3,558,500
	시설 종합 검증(계약)	3,600,000
	승강기관리(계약)	1,898,750
	회계감사수수료	1,000,000
	합계	131,844,060

자료: 질병관리청

국가 예산은 집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비목별로 구분하여 편성·집행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배정하고 세목조정 등의 절차 없이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행정 편의성만을 고려한 집행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집행방식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일반지출(계좌이체) 방식의 예산 교부 및 집행잔액의 세입 계상은 국가 재정 운용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국군수도병원에 대한 지원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국가병원에 대한 예산 교부시 국립목포병원에 대해서는 관서간 예산 재배정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일반지출(계좌이체)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국군수도병원의 경우 예·결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국방재정정보시스템)을 사용 중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예산 재배정이 어려워 일반지출(계좌이체)로 운영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국군수도병원 역시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활용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임에도 다른 시스템 사용을 이유로 일반지출을 통해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되므로,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군수도병원 지원 금액에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반납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다음연도 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24년도의 경우 질병관리청은 국군수도병원에 시설장비유지비 1억 2,900만원을 일반지출하였는데, 이 중 집행잔액 38,917,090원(집행액 90,082,910원)을 보건복지부의 세입으로 계상하였음.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상 지출되지 않은 집행 잔액의 경우 세입처리하기보다는 반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30)]

셋째,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인 병실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일부 기관에서 다인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으므로,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다인실을 축소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해 현재 시·도 및 국가병원 38개 사업자에 대해 233개의 음압격리병상을 지정·운영하고 있는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

30) 「국고금 관리법」
제29조(지출금의 반납) ① 지출된 금액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지출한 과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지출금이 반납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 연도의 수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춘 1인 병실을 지원해야함.[31]

그런데 2015년 이전에 지정된 병실은 1인 병실이 아니더라도 지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여전히 다인실 20병실(57병상)이 존재하고 있음.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지정 현황]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총 병실수 (병상수)
1	국가병원	국군수도병원	8	-	8(8)
2	국가병원	국립목포병원	2	4*2	4(10)
3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4	5*3	7(19)
4		서울대병원	7	-	7(7)
5		서울의료원	10	-	10(10)
6		중앙대병원	4	-	4(4)
7		한일병원	3	-	3(3)
8	부산	부산대병원	5	-	5(5)
9		부산시의료원	5	-	5(5)
10		삼육부산병원	5	-	5(5)
11		온종합병원	6	-	6(6)
12	대구	경북대병원	5	-	5(5)
13		대구의료원	1	2*2	3(5)
14	인천	인천의료원	7	-	7(7)
15		가천대길병원	5	-	5(5)
16		인하대병원	7	-	7(7)
17	광주	조선대병원	5	-	5(5)
18		전남대병원	7	-	7(7)
19	대전	충남대병원	8	-	8(8)
20		건양대병원	5	-	5(5)
21		대전보훈병원	8	-	8(8)
22	울산	울산대병원	9	-	9(9)
23	경기	명지병원	7	2*2	9(11)
24		분당서울대병원	14	-	14(14)
25		고대안산병원	5	-	5(5)
26	강원	강원대병원	6	-	6(6)
27		강릉의료원	1	2*2	3(5)
28		원주의료원	5	-	5(5)

3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감염병관리기관에는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등을 갖춘 1인 병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연번	시·도	의료기관명	1인실	다인실 (인실*개수)	총 병실수 (병상수)
29	충북	충북대병원	3	3*2	5(9)
30	충남	단국대천안병원	7	-	7(7)
31		아산충무병원	5	-	5(5)
32	전북	전북대병원	10	4*1	11(14)
33		원광대병원	3	-	3(3)
34	경북	동국대경주병원	1	2*2	3(5)
35	경남	경상대병원	1	2*3	4(7)
36		창원경상대병원	5	-	5(5)
37		마산의료원	7	-	7(7)
38	제주	제주대병원	7	2*1	8(9)
실 총계			213	20(57)	233(270)

자료: 질병관리청

현재 운영 중인 다인실은 「국가지정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 지침」(2011.10.)에 따라 2015년 메르스 이후 시설 기준이 강화되기 전 구축된 병실로서, 당시 음압격리병상의 경우 기본적인 감염 예방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1인실이 이상적이나 병원 구조에 따라 다인실도 가능하도록 함에 따른 것임.

그러나 이와 같은 다인실의 운영 및 지원은 1인실 설치를 통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질병관리청은 다인실을 1인실로 전환하는 등 다인실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　출〉

10. 국가결핵예방 사업: 국산 BCG백신 개발 난항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결핵예방’ 사업은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23~'27)」에 기반한 보다 강화된 결핵 전주기(예방・진단・치료)정책 추진으로 결핵 조기퇴치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88억원 중 382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7%)되고 3,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600만원이 불용됨.[32)]

[2024년도 국산BCG백신 개발 및 연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결핵예방	38,775	38,775	25	38,800	38,284	30	486	39,051
국산BCG백신 개발 및 연구지원	623	623	-	623	623	-	-	-
결핵환자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600	576	-	576	569	-	7	6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국산BCG백신 개발 및 연구지원’** 사업은 현재 전량 수입 중인 BCG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33)] 2024년도 계획현액 6억 2,3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2006년 정부는 ‘결핵퇴치 2030’ 계획을 통해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는 피내용 BCG백신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안정적 백신 수급을 위한

32) 국민건강증진기금-국가결핵예방(6136-303)(감염병정책국)

33) BCG(Bacillus de Calmette et Guerin) 백신: 결핵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으로 피내용과 경피용으로 구분됨.

자급화를 추진하였으며, GC녹십자가 사업파트너로 선정되어 총 306억 4,300만원이 민간 경상보조로 투입되었음.[34)]

질병관리청이 국산화를 준비한 피내용 BCG백신은 생후 4주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게 1회 접종하는 주사로서 영·유아 및 소아의 결핵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25년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산 BCG백신 품목허가 완료 후 심사결과에 따라 백신 생산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었음.

[국내 BCG백신 개발 현황]

○ ('08~'15) BCG 백신 개발 생산시설 및 공정기반 확립 - ('08~'11) 사업자 선정((주)녹십자, 공개입찰) 및 생산시설 구축(전남 화순) - ('09~'13) BCG 생산용 종균 및 생산기술 확보 노력 - ('14~'15) 프랑스 Pasteur사로부터 종균(마스터 균주) 확보 및 제조용 균주 생산 ○ ('16~'18) 비임상 및 임상1상 시험 완료 ○ ('19~'23) 국내·외 임상3상 시험 완료, 품질개선 연구 수행 ○ ('23.12.~'25.4)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품 품목허가 심사 ○ ('25.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품목허가 반려

자료: 질병관리청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공장 신축	BCG 백신 개발 투입비용									
연도	2008~2011	201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예산	8,700	1,700	1,400	2,420	1,920	3,734	4,504	3,567	830	1,245	623

자료: 질병관리청

또 다른 내역사업인 **'결핵환자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결핵 신고·감시, 역학조사, 결핵환자 관리,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등 국가결핵사업 전반에 활용되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5억 7,600만원 중 5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8%)되고 700만원이 불용됨.

34) △생산시설 투자비 87억원('08~'11), △종균 확보, 임상시험 등 219억원('12~'24)

나. 검토의견

첫째, 질병관리청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국산 BCG백신 개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반려로 인해 자급화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으므로, 원인 분석과 함께 BCG 백신의 상용화 방안 및 백신 수급 안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국산 BCG 백신이 없어 이를 전량 일본 등 해외 제조 백신에 의존함에 따라 해외 제조사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국산화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생산시설 구축(전남 화순)까지 완료(2011년)한 상황임.

그런데 2025. 4. 8. 동 BCG백신은「약사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 심사결과 안전성 관련 사안이 심사기준을 충족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신청이 반려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었음.[35)]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현재 사업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지원 중인 피내용 BCG 백신 재고량이 4.3만 바이알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이고,[36)] 국내 백신 수급 불안을 대비하여 피내용 BCG 백신 5,000바이알(3개월 접종분)을 비축 중으로 백신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여전히 BCG 백신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당초 사업 추진의 목적이었던 백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자급화를 달성하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추진과정에서 구축된 인프라 및 기술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투입비용이 매몰비용으로 남게될 수 있음.

백신의 공급 불안정은 국가의 보건 안보를 저해하는 해결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기투입된 국가재정이 낭비되지 않고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인 분석과 함께 향후 상용화 및 생산시설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결핵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구용

---

35) 주요 반려 사유는 높은 BCG 림프절염 발생률에 따른 안전성 부족으로, 해당 품목의 3상 임상시험 결과 BCG 림프절염 발생률이 국내 허가된 다른 BCG 백신 대비 높게 나타난데 기인하는데, 이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 BCG 백신 예방접종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고려되는 발생빈도를 상회하는 결과임.

36) 피내용 BCG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1바이알 당 최대 20명까지 접종 가능
※ (참고) 경피용 BCG백신 수입사 재고량 1.2만 도즈('25.4월말)

역비로 편성하는 것은 비목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므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경비는 관리용역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질병관리청은 결핵관리 사업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기록・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동 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중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일반연구비는 국가로부터 전산개발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비용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목으로는 적절하나, 이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전산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비목으로는 적절하지 않음.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로 편성・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시스템 유지・보수 비목을 관리용역비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11.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사업실적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79억 100만원 중 198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0%)되고 80억 8,300만원이 불용됨.[37)]

[2024년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예방접종실시	801,022	795,521	16,249	811,770	800,246	-	11,524	601,831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12,031	12,031	15,870	27,901	19,818	-	8,083	7,7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에는 이상반응 보상금(기타보전금)이 편성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에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고,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됨.

[이상반응 보상금 지원내용]

구분	내 용
보상	사망일시보상금[1)] 및 장제비(30만원), 장애인일시보상금(중증은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경증은 55%), 진료비[2)] 및 간병비(일 5만원)
지원	- 코로나19 백신에 한해 관련성 의심질환 지원 등 추가적 국가지원 **(관련성의심질환)** 심의기준 ④-1에 대해 의료비(5천만원 상한) 및 사망위로금(1억원) 지원 **(사인불명위로금)**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불명’인 경우 지원(1천만원) **(한시적지원)** ①사인불명위로금 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접종 후 90일 내 사망, 최대 3천만원) 및 부검미실시사례 지원(최대 2천만원), ②접종 후 3일내 사망한 경우 또는 시간근접·특이 임상경과 등을 검토하여 위로금 지원(최대 3천만원)

주1)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 상당

2)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자료: 질병관리청

37) 국민건강증진기금-국가예방접종실시(6431-303)(의료안전예방국)

나. 검토의견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은 국가 정책변화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년도 예산이 거의 실집행되지 않아 대규모 이월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통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상반응 보상금(기타보전금)은 예산현액 255억 3,000만원 중 175억 9,4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9%)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54억 9,000만원을 제외한 본예산의 경우 100억 4,000만원 중 2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24.8%)되고 75억 5,3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12,031	12,031	15,870	27,901	19,818	12,031	4,436	-	8,083	7,700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465	504	465	-	39	504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100	100	100	-	-	100
- 기타보전금(310-04)	10,040	10,040	15,490	25,530	17,594	10,040	2,487	-	7,936	6,033
- 민간위탁사업비 (320-01)	1,387	1,387	380	1,767	1,659	1,387	1,384	-	108	1,063

자료: 질병관리청

이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상황’ 당시에는「감염병예방법」제25조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권고·실시(’21.2월~’24.6월)되었으나,[38] 2024년

38)「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시예방접종)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을 준용한다.

하반기 이후 65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정책이 변화됨에 따라 접종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최근 4년간 코로나19 연도별, 접종대상별 접종 건수]

(단위: 건)

구분		코로나19 접종실적			
연도	대상	계	보건소	의료기관	접종센터
2021	국민(6,628만명)	103,415,932	1,629,645	85,447,585	16,338,702
2022	국민(4,430만명)	30,943,359	595,699	30,320,747	26,913
2023	국민(1,657만명)	6,456,774	228,395	6,228,379	-
2024	고위험군(633만명)	5,180,763	118,192	5,062,571	-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지원금 상향(1천만원→최대 3천만원), 시간근접 사망 등에 대한 위로금 신설(최대 3천만원) 등 국가 피해보상·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보상실적은 2022년 1만 9,097건에서 2024년 239건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등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부진은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안정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수 역시 정책변화에 따라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최근 4년간 보상심사 신청 및 보상 현황]

('25.3.25. 기준, 단위: 건)

구분	신청 건수	심의 건수	보상[1]	진료비등	사망일시보상금등	장애일시 보상금
2021	47,784	8,618	3,433	3,433	1	-
2022	43,286	70,357	19,097	19,092	15	-
2023	6,686	15,694	2,078	2,076	7	-
2024	2,272	5,255	239	238	2	1
2025	160	175	18	18	-	-
합계	100,188	100,099	24,865[2]	24,857	25	1

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보상의 종류로 구분
2)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6명,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중복 수령자 1명
자료: 질병관리청

특히 코로나19 이상반응 보상금은 2023년도 예산도 거의 실집행되지 않아 대규모의 이월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정 예산 규모를 면밀하게 추계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면밀한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되지 못하는 경우 과다·과소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동 사업과 같이 과다편성되는 경우 이는 집행부진으로 이어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전반적이고 면밀한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동 사업은 2025. 7. 31. 기준으로도 집행률이 18.0%에 불과한 상황임.

[2025년 현재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관리	7,700	7,700	-	7,700	1,391	7,700	1,391	-	-
- 일반수용비(210-01)	504	504	-	504	118	504	118	-	-
- 일반연구비(260-01)	100	100	-	100	60	100	60	-	-
- 기타보전금(310-04)	6,033	6,033	-	6,033	298	6,033	298	-	-
- 민간위탁사업비(320-01)	1,063	1,063	-	1,063	915	1,063	915	-	-

주) 2025.7.31.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12. 암역학조사 사업: 예산 편성·집행 방식 변경 검토 필요

가. 개 요

‘암역학조사’ 사업은 암 역학조사 의뢰에 따른 역학조사 필요 여부 검토 후 역학조사 실시 또는 기술 지원, 암 역학조사 실시기준·방법 등 개발 및 역학조사 시행 및 평가 등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 현액 2억 8,700만원 중 3,700만원이 집행(집행률 12.9%)되고, 2억 5,000만원이 불용됨.[39]

[2024년도 암역학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만성질환 예방관리	17,074	17,074	3	17,077	16,809	-	268	13,925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근거생산	3,589	3,589	-	3,589	3,589	-	250	745
암역학조사	287	287	-	287	37	-	250	287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질병관리청은 동 사업을 통해 ① 암역학조사, ② 암역학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근거 마련 연구, ③ 암역학조사반 회의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사업은 세부사업 과목구조 개편으로 2024년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질병관리청 소관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이관되었음.[40]

[2024년도 암역학조사 사업 세부 편성·집행 내역]

세부 편성내역	세부 집행내역
□ 암역학조사: 287백만원 - 암 역학조사 : 250백만원 - 암 역학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근거 마련 연구 : 27백만원 - 암 역학조사반 회의 운영 : 10백만원	□ 암역학조사: 37백만원 - 암 역학조사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및 근거 마련 연구 : 27백만원(1개과제×27백만원) - 암 역학조사반 회의 운영 : 10백만원

39) 국민건강증진기금-만성질환 예방관리(6533-308)(만성질환관리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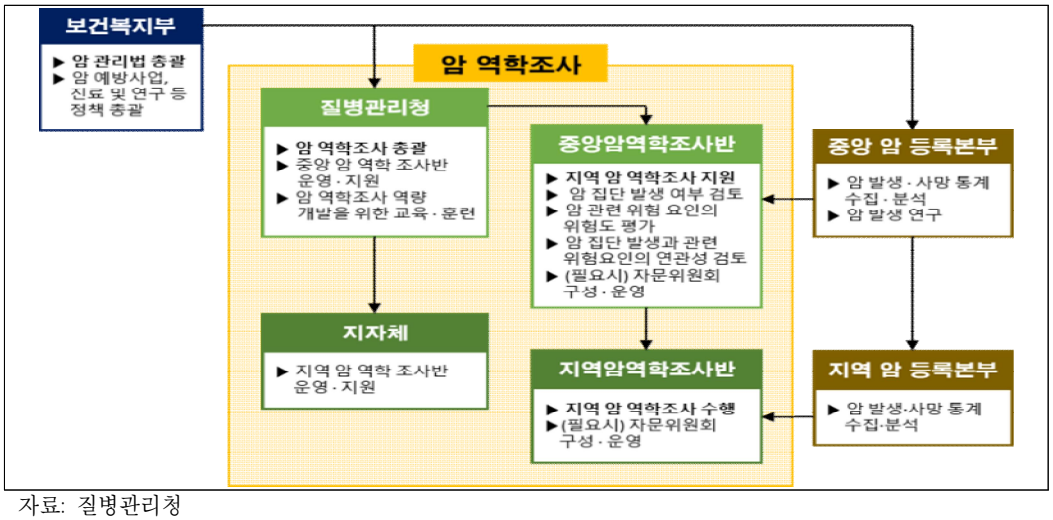
40) 국민건강증진기금-국가암관리 사업(2756-301)(보건의료정책실)

나. 검토의견

최근 지자체의 암 역학조사 수행의뢰 및 실시 실적이 없고, 역학조사가 필요한 암 진단 발생 관련 현안이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매년 역학조사 보조금이 편성된 뒤 전액 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사업 방향성을 개편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암역학조사 사업은 특정지역 및 인구집단에서 암의 집단발생 시 의심되는 암발생 원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관할지역 역학조사는 시도지역역학조사반이 수행하고, 질병관리청 중앙역학조사반은 시·도의 지원 요청 등 필요시 역학조사의 시행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수행하고 있음.[41)]

[암역학조사 추진체계도]



자료: 질병관리청

41) 「암관리법」
제16조(역학조사) ①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역학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에게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의 암 역학조사 수행의뢰 및 실시 실적이 없는 등 그동안 역학조사가 필요한 암진단 발생 관련 현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관련 지자체 보조금이 매년 전액 불용되고 있는 상황임.[42]

[2019~2024년 암 역학조사 사업 중 지자체경상보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지자체경상 보조 결산 현황	2019년	357	357	-	357	-	357	-	-	357
	2020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1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2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3년	350	350	-	350	-	350	-	-	350
	2024년	250	250	-	250	-	250	-	-	250

자료: 질병관리청

동 사업은 예기치 못한 암역학조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사전 확보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실제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하는 경우, 다른 필수 예산 항목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의 낭비가 발생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저해하게 되므로 동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성을 개편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43]

---

42) <2018년 이전 암역학조사 집행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	조사 내역	집행
2012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178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1차년도	270
2013년	50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00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2차년도	284
2014년	440	여수시 갑상샘암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123
		진도군 간암과 C형 간염 역학조사 및 사후관리 3차년도	204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1차년도	100
2015년	350	전라북도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2차년도	350
2016년	350	전라북도 남원시 폐암 집단발생 3차년도	35
2018년	350	해남 지역 소아 혈액암 발생 보완 조사	21

자료: 질병관리청

43)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내실있는 지원 등을 위하여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도내 집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기　타】

13.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질병관리청에 대해 시정요구 38건(중복 3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0건 · 제도개선 1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0	15	3	38
예비비	-	-	-	-	-	-	-
합계	-	-	-	20	15	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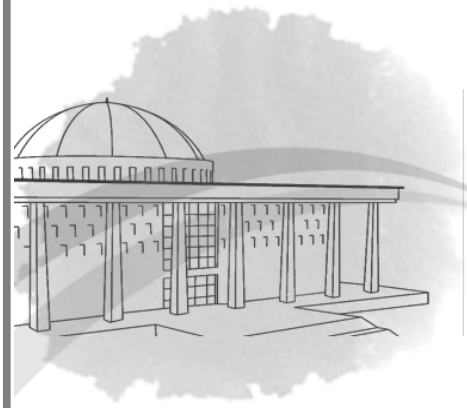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질병관리청은 시정요구사항 38건에 대해 3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1.6%)하고 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38	31	81.6	7
예비비	-	-	-	-
합계	38	31	81.6	7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77억 7,200만원(5.9%)이 많은 2조 8,242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47억 8,600만원(9.1%)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336,733	1,336,733	1,590,300	253,567	1,564,472	1,564,472	1,802,348	237,876	212,048
기 금	1,030,358	1,030,358	999,174	△31,184	1,102,016	1,102,016	1,021,912	△80,104	22,738
총수입	2,367,091	2,367,091	2,589,474	222,383	2,666,488	2,666,488	2,824,260	157,772	234,786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조 2,976억 6,600만원(△9.6%)이 적은 12조 2,556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74억 500만원(3.2%)이 증가함.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1,591,795	11,591,795	10,811,152	△780,643	12,505,905	12,505,905	11,230,280	△1,275,625	419,128
기 금	1,056,516	1,071,791	1,067,141	△4,650	1,047,459	1,047,459	1,025,418	△22,041	△41,723
총지출	12,648,311	12,663,586	11,878,293	△785,293	13,553,364	13,553,364	12,255,698	△1,297,666	377,405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조 2,710억 6,500만원으로, 7조 9,655억 2,1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7조 2,622억 8,6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2%)되고 566억 5,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6,465억 7,5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3,852	13,852	-	13,852	25,045	15,983	9,062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5	575	-	575	443	349	94	-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575	575	-	575	443	349	94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07,316	207,316	-	207,316	289,240	267,426	21,814	-
- 투자계정	207,316	207,316	-	207,316	289,240	267,426	21,814	-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573	7,047,573	-	7,047,573	7,598,222	6,937,505	604,058	56,65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49	1,749	-	1,749	52,571	41,023	11,547	-
- 지역지원계정	1,500	1,500	-	1,500	36,602	26,084	10,517	-
- 지역자율계정	249	249	-	249	14,162	13,696	466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	-	-	766	766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	-	-	-	1,041	477	564	-
합 계	7,271,065	7,271,065	-	7,271,065	7,965,521	7,262,286	646,575	56,659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조 1,094억 6,800만원으로, 이 중 18조 1,582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0.3%)되고 1,252억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조 8,259억 6,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7,874,785	7,874,785	53,981	-	-	7,928,766	7,464,741	57,615	406,4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8,025	38,025	-	-	-	38,025	37,406	-	619
-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38,025	38,025	-	-	-	38,025	37,406	-	6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66,950	3,066,950	337	-	-	3,067,287	2,128,739	862	937,685
- 투자계정	3,066,950	3,066,950	337	-	-	3,067,287	2,128,739	862	937,685
환경개선특별회계	7,047,573	7,047,573	130,365	95	-	7,178,033	6,766,367	66,822	344,8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97,357	1,897,357	-	-	-	1,897,357	1,760,951	-	136,406
- 지역지원계정	545,608	545,608	-	-	-	545,608	520,608	-	25,000
- 지역자율계정	1,287,650	1,287,650	-	-	-	1,287,650	1,176,844	-	110,806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9,931	59,931	-	-	-	59,931	59,631	-	300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4,168	4,168	-	-	-	4,168	3,868	-	300
합 계	19,924,690	19,924,690	184,683	95	-	20,109,468	18,158,204	125,299	1,825,964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조 3,547억 7,000만원으로, 1조 7,088억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2,407억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72.6%)되고 5억 3,7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으며 942억 5,2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석면피해구제기금	60,242	60,242	78,058	74,989	3,004	65
한강수계관리기금	665,062	665,062	765,658	570,717	47,119	21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79,366	279,366	481,931	244,180	21,231	52
금강수계관리기금	188,779	188,779	235,958	181,666	13,329	5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1,321	161,321	147,195	169,197	9,569	159
합 계	1,354,770	1,354,770	1,708,800	1,240,749	94,252	537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3,62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1조 2,407억 4,900만원이 지출(집행률 91.1%)되고 112억 3,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2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석면피해구제기금	60,242	60,242	104	60,346	74,989	27	11,490
한강수계관리기금	665,062	665,062	4,528	669,590	570,717	5,968	3,547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79,366	279,366	1,514	280,880	244,180	1,512	1,450
금강수계관리기금	188,779	188,779	1,024	189,803	181,666	2,791	581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61,321	161,321	316	161,637	169,197	939	1,222
합 계	1,354,770	1,354,770	7,486	1,362,256	1,240,749	11,237	18,290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환경부 자산은 전년 대비 1조 4,621억 3,400만원이 증가한 134조 9,656억 6,200만원으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이 1조 516억 7,200만원 증가하고 유동자산이 4,729억 8,6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97억 3,900만원 증가한 1,158억 8,700만원으로 유동부채 243억 8,7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1조 4,423억 9,500만원이 증가한 134조 8,497억 7,5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환경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0조 676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524억 7,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9조 7,687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82억 7,4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34,965,662	133,503,528	1,462,134	1.1
		유동자산	1,676,240	1,203,254	472,986	39.3
		투자자산	1,216,067	1,197,973	18,094	1.5
		일반유형자산	56,920,133	57,013,998	△93,865	△0.2
		사회기반시설	74,996,470	73,944,798	1,051,672	1.4
		무형자산	142,452	130,505	11,947	9.2
		기타비유동자산	14,301	13,000	1,301	10.0
	부 채		115,887	96,148	19,739	20.5
		유동부채	114,806	90,419	24,387	27.0
		장기차입부채	919	737	182	24.7
		장기충당부채	54	4,845	△4,791	△98.9
		기타비유동부채	108	146	△38	△26.0
	순자산		134,849,775	133,407,380	1,442,395	1.1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0,067,647	10,920,117	△852,470	△7.8
	재정운영순원가		10,746,415	11,568,071	△821,656	△7.1
	재정운영결과		9,768,793	10,607,067	△838,274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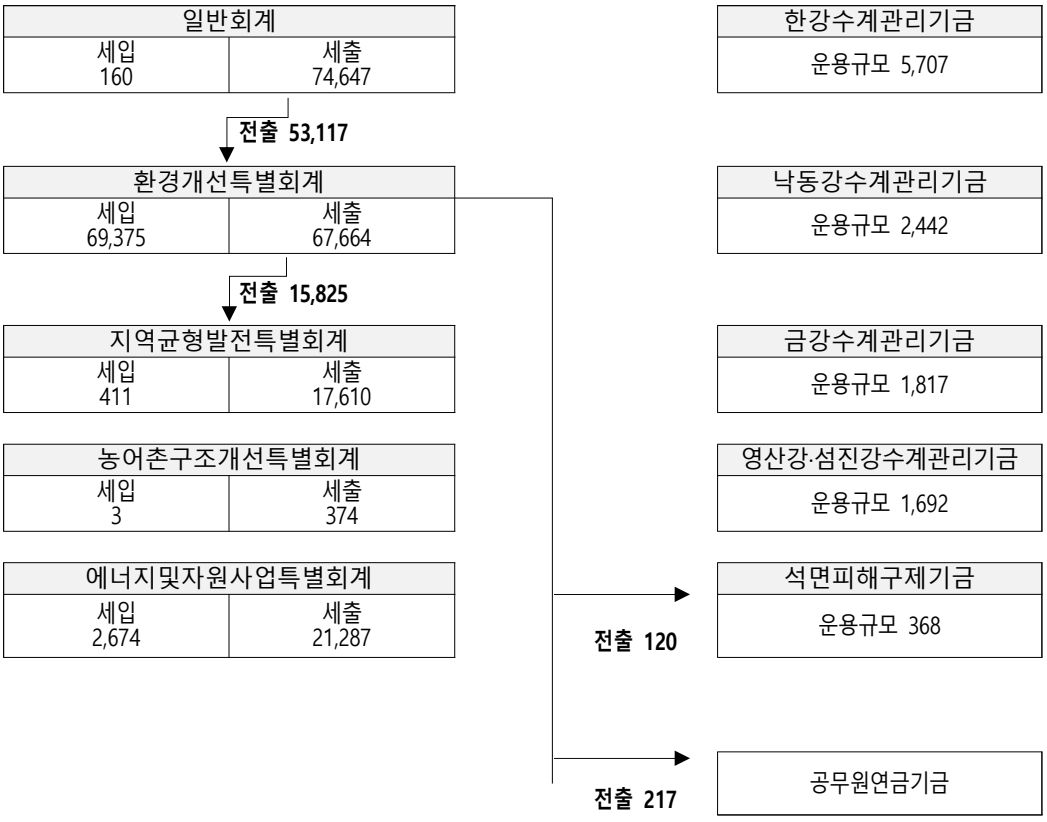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환경부 일반회계·환경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한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5조 3,117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5,825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석면피해구제기금으로 120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17억원 전출되었음.

[2024회계연도 환경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환경부는 ‘민생과 함께하는 환경복지, 미래로 나아가는 녹색강국’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379개 세부사업에서 안전한 환경관리, 사각지대 없는 폭넓은 환경복지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환경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R&D 사업에서 제재부가금과 정산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를 조속히 수납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장기 미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산을 거쳐 교부받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1,307억 2,900만원이 미정산 상태이므로, 환경부는 조속한 정산 완료와 국비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수행의 전제조건인 임시조정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 전액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역조정되고 사업기간도 연장되었으므로, 환경부는 동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넷째,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하여 2년 연속 교부한 금액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은 4,164억 9,600만원으로 수납률이 26.8%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동 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과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이 보조금 교부 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은 무응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부금액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실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여 2024년 실집행률이 47%에 불과하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환경부 R&D: 연구개발비 정산금 등 미수납액의 조속한 수납 필요

가. 개 요

환경부 R&D 사업은 환경 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연구 또는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4년 총 41개 사업에 예산현액 3,035억 8,400만원 중 3,002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13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환경부 R&D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회계명	사업수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	9,500	-	-	9,500	9,500	-	-	16,720
환경개선특별회계	29	236,099	2,305	-	238,404	235,066	1,990	1,348	229,403
기후대응기금	11	55,680	-	-	55,680	55,680	-	-	70,764
합계	41	301,279	2,305	-	303,584	300,246	1,990	1,348	316,887

자료: 환경부

환경부 R&D 사업은 6개 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35개 사업 총 2,276억 9,100만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밖에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환경부 R&D 사업 수행기관별 현황]

기관명	사업수	예산액(백만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5개	227,691
국립생물자원관	2개	18,687
국립환경과학원	1개	47,559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개	6,394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개	648
한국연구재단	1개	300
합계	41개	301,27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환경부 R&D 사업에서 제재부가금과 정산금 미수납액이 총 10억 8,0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이를 조속히 수납하도록 관리하는 동시에 장기 미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하도록 하고,[2]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3]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구개발비 정산 후 연구기관에 정산금 반납 요청을 하고 있고,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등 제재 사유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였음.

그런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제재부가금 미수납액 8억 8,000만원과 정산금 미수납액 2억원을 합하여 총 10억 8,000만원이 수납되지 않고 있음.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 R&D사업 중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종류	부과년도	세부사업명	미수납액
한국 환경산업 기술원	제재부가금 미수납	2022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	250
		2023		496
		2024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4
		합계		880
	정산금 미수납	2023	생태모방 기반 환경오염관리기술 개발	31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 기술개발사업	139
		2024	지중환경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30
		합계		200
	총 합계			1,08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특히 유망녹색기업기술 혁신개발사업의 경우 2022년에 2억 5,000만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기적인 미수납으로 인하여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음.[4)]

또한 야생생물 유래 친환경 신소재 및 공정기술개발사업은 2023년에 1억 3,900만원의 정산금이 부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수납되지 않고 있어 정산 절차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준수하여 제재부가금 및 정산금 미수납금이 조속히 수납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수납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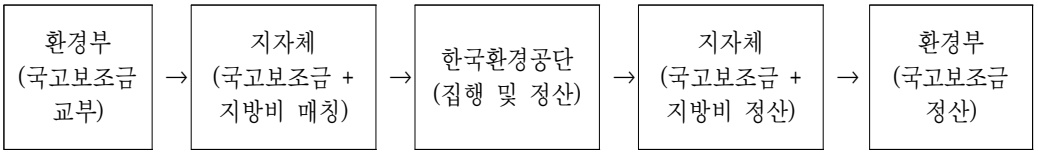
4)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수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임.

2.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한국환경공단 장기 미정산 금액의 조속한 정산 필요

가. 개 요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생태시설·상하수도시설 등 환경시설의 설치·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고,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매칭 지방비를 사업비로 교부받아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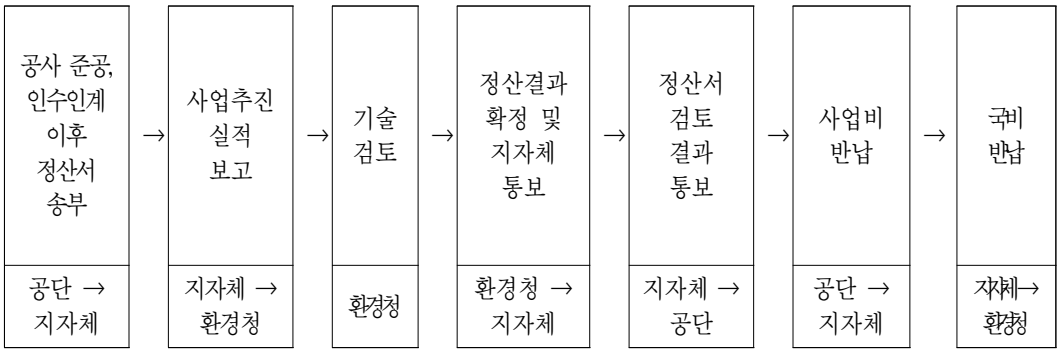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절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로 환경시설 설치공사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서를 송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송부받은 정산서를 바탕으로 환경청과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등을 검토한 후 한국환경공단에 정산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절차로 진행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사업비 정산 절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는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2024년 예산현액은 8,973억 7,700만원으로, 이 중 7,738억 5,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2%)되고 853억 3,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81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내역 조정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고 보조율
합계	803,545	109,423	△15,591	897,377	773,853	86.2	85,339	38,185	-
수생태시설 설치지원	118,461	22,335	-	140,796	118,587	84.2	15,960	6,249	30 ~ 80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467,568	68,720	-	536,288	459,889	85.8	50,060	26,339	30 ~ 90
폐기물시설 설치지원	215,198	18,368	△15,591	217,975	193,579	88.8	19,240	5,156	30 ~ 70
환경시설 민자사업지원	869	-	-	869	735	84.6	48	86	~ 80
설계VE[5]사업	1,449	-		1,449	1,063	73.4	31	355	-

나. 검토의견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정산을 거쳐 교부받은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1,307억 2,900만원이 미정산 상태이므로, 환경부는 조속한 정산 완료와 국비 반납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말 기준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환경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의 누적 금액이 1,307억 2,9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 그 중 338억 7,600만원은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서 작성 절차에 그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정산서가 송부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6] 2023년 이전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

5) 수생태시설, 상하수도시설, 폐기물시설에 대한 설계검토 사업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국가 및 지자체로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792억 6,800만원에 달하고 있어 동 지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

심지어, 2016년에 한국환경공단이 준공을 완료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인수인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개 사업 총 19억 9,700만원이 2024년까지도 지방자치단체 미회신을 이유로 반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설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8년 동안이나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임.

[최근 10년간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 후 미반납 사업]

(단위: 개, 백만원)

준공연도	미반납 사업 현황				합 계		
	정산서 작성 중 (소송 중 포함)		지자체 미회신 (공단 정산은 완료)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누적금액
계	22	33,876	57	96,853	79	130,729	130,729
2024년	17	30,057	16	21,404	33	51,461	130,729
2023년	3	2,484	15	31,938	18	34,422	79,268
2022년	-	-	9	16,775	9	16,775	44,846
2021년	1	1,401	4	4,829	5	6,230	28,071
2020년	-	-	4	10,357	4	10,357	21,841
2019년	1	△66	3	7,193	4	7,127	11,484
2018년	-	-	3	2,368	3	2,368	4,357
2017년	-	-	1	△8	1	△8	1,989
2016년	-	-	2	1,997	2	1,997	1,997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준공된 시설물 인계 후 지방자치단체에 정산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 정산 확정이 지연되어 집행 잔액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최근 10년간 미반납액 사유를 살펴보면, 한국환경공단의 정산서 작성을 이유로 미반납된 사업이 20개 총 317억 100만원에 달하고 있는데,[7] 이는 지방자치단체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와의 절차가 아닌 공단 내부에서 정산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 변경 등 지연을 이유로 정산이 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 47개 총 761억 7,700만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공단은 정산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정산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최근 10년간 한국환경공단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준공 후 미반납액 사유]

사 유		사업수	금 액(백만원)
총 계		79	130,729
정산서 작성 중	소 계	22	33,876
	정산서 작성 중 (지자체 ↔ 공단)	20	31,701
	소송 중	2	2,175
지자체 미회신	소 계	57	96,853
	지자체 검토 중 (담당자 변경 등 지연)	47	76,177
	국고 정산 중 (지자체 ↔ 환경청)	10	20,67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준공 후 조속히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 처리 절차를 이행하여 국고 미반납 금액이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 이는 2024년도에 준공된 17개 사업을 포함한 값으로, 소송 중으로 정산서 작성이 되지 않고 있는 2개 사업 21억 7,500만원을 제외한 값임

【일반회계】

〈세 출〉

3.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사업은 중부내륙지역 신규산단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용수 부족이 전망되는 충주 광역급수지역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액 73억 800만원이 전액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역조정되었음.[8)]

[2024년도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광역상수도 확충	24,204	24,204	-	-	24,204	24,204	-	-	49,262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7,308	7,308	-	△7,308	-	-	-	-	10,231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6,350	6,350	-	7,308	13,658	13,658	-	-	23,64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환경부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비의 30%를 출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9)]

---

8) 일반회계-광역상수도 확충(5033-301)(물이용정책관)

9)

내역사업명	구분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 금액 (2024결산)	지원 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남한강3차 급수체계사업	출자	한국 수자원공사	7,308	30	수도법 제75조,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당초 계획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836억원으로 기존 정수장 증설, 가압장 개량·신설 등을 하고자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기업과 임시조정 협의 소요 등으로 인하여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943억원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계획 변경]

	사업기간	총사업비
당초 계획	2022년 ~ 2025년	836억원
변경된 계획 (2025. 4.)	2022년 ~ 2028년	943억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수행의 전제조건인 임시조정 협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의 예산 전액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역조정되고 사업기간도 연장되었으므로, 환경부는 동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6월 30일 환경부는 충주댐광역 용수 부족이 예상되는 3개 지자체에 대하여 관련 기업과 임시조정 협의 후 용수수급을 추진하도록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을 일부개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을 추진하였음.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부분변경 보고서]

4.3 급수체계조정 세부 사업계획
4.3.1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 사업
나. 용수수급 전망
충주댐광역 2025년 부족량은 괴산군, 음성군, 안성시, 진천군에서 122.6천㎥/일의 용수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 용수공급 방안
충주댐 광역상수도 2025년 기준 3개 지자체 여유량에 대해 공급·전환 후, 부족량에 대해서는 충주댐 Ⅰ단계 증설(Q=30.0천㎥/일) 및 A기업 충주댐 Ⅱ단계 공급량 중 82.0천㎥/일*을 급수체계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 A기업과 임시조정 협의 후 계획 추진 필요[1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과 임시조정 협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와 관련 기업 간 전용 공업용수도 시설 연장사용 등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임시조정 협의가 계속되어 5차 협상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당초 2022년에 임시조정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 계획과 달리 2024년 9월에야 임시조정 협의가 완료되었고, 적정 공사기간 반영 등으로 사업 기간도 2025년 준공에서 2028년 준공으로 연장되었음.[11]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협상일 및 국고 교부일 현황]

날짜	관련 기업과 협상	국고 교부
2023. 1. ~ 3.	1차 협상	-
2023. 9. 21.	2차 협상	
2023. 10. 11.	3차 협상	
2024. 3. 14.	4차 협상	
2024. 6. 26.	-	1차 국고 교부 (39억 8,200만원)
2024. 8. 7.	5차 협상	-
2024. 9.	임시조정 협의 완료	
2024. 12. 18.	-	2차 국고 교부 (33억 2,600만원)
2024. 12. 24.		교부 국고 전액(73억 800만원)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역조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0) 일 용수공급량에 대한 임시조정 협의 후 사업 추진

11)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계획

	실시설계	공사
당초 계획	2022년 ~ 2023년	2024년 ~ 2025년
변경된 계획	2022년 ~ 2024년	2025년 ~ 2028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자원공사는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공정 추진을 이유로 2024년 12월 23일 환경부에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예산의 내역조정을 요청하였고, 환경부는 12월 24일 이를 승인하여 동 사업의 사업비 전액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으로 내역조정되어 집행되었음.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임시조정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의 연내 공사 발주와 선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의 공정 추진을 위한 추가 공사비 투입을 위하여 내역조정하였다는 입장임.[12)]

그러나 남한강(3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은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수행의 전제조건인 임시조정 협의를 충족하였으면 협상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어야 하나 이러한 논의 없이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조정되었고, 동 사업의 준공 예정일이 3년 연장되었음.

특히 동 사업은 2025년에 용수수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용수공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준공 예정일이 2025년을 경과한 상태에서 다른 사업의 공정 만회를 위하여 내역조정 하는 것은 일정 지연의 반복으로 용수수급 부족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 수행 전제조건의 충족 가능성과 진행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임시조정 협의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된 경우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동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 일정이 3년 지연되었으므로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2)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은 정수장 부지 문화재 발굴조사로 시설공사가 지연되었음.

4.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연내 착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은 도림천 일대에 반복적으로 침수가 일어남에 따라 침수예방을 위하여 수행하는 수해대책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5억원 전액이 사업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교부되었음.[13)]

[2024년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	12,500	12,500	-	-	12,500	12,500	-	-	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환경부가 서울특별시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총사업비의 25%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당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3,000억원을 투입하여 도림천 방수로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어 총사업비가 5,005억 1,9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14)]

13) 일반회계-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5338-309)(수자원정책관)

14)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사업개요

	당초 계획	계획변경 후 (2024. 02.)
총사업비	3,000억원	5,005억 1,900만원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2023년 ~ 2028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이 계약 유찰 등으로 인하여 2년 연속 교부한 금액의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2024년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 사업을 위하여 125억원의 예산 전액을 사업 시행주체인 서울특별시에 교부하였는데, 교부한 보조금 전액이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이 0%임.

그런데 2023년에 교부했던 30억 3,100만원의 예산도 당시 전액 이월되어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이 0%였고, 해당 보조금이 2024년 12월에서야 집행되는 등 연속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년도	사업시행주체(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A)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3	서울시	3,031	3,031	3,031	3,031	-	3,031	-	3,031	-	3,031	-	-
2024	서울시	12,500	12,500	12,500	12,500	3,031	15,531	3,031	12,500	-	12,500	-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연속적 이월은 동 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이 계약을 2023년에 체결하는 것이었으나, 사업 집행 과정에서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턴키공사 유찰로 인하여 계약이 2024년 12월에 체결된 것에 기인함.

이로 인하여 본공사 시작 예정일도 당초 2024년 6월에서 2025년 10월로 1년 4개월 지연되었고, 공사 완료일도 당초 2027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1년 지연되어 총 사업 기간이 1년 지연되었음.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계획 변경]

	계약 체결	본공사 시작	공사 완료
당초 계획	2023년	2024년 6월	2027년 12월
변경된 계획	2024년 12월 4일	2025년 10월	2028년 12월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024년 6월 28일 당초 편성된 본예산 전액을 서울특별시에 교부하였고, 교부한 금액은 계약 체결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전액 이월되었음.[15]

[도림천 일대 침수방지사업 보조금 교부 일자]

(단위: 백만원)

	2023년	2024년
보조금 교부일	2023. 11. 9.	2024. 6. 28.
보조금 교부금액	3,031	12,500
공사계약체결일	-	2024. 12. 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에서 2024년 12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사유로 교부 요청이 와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부터 계약이 지연되어 교부금액 전액이 이월되었고, 공사계약 체결일이 2024년 12월 4일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본예산을 6월에 교부한 것은 실제 공사계약 체결이 연내에 가능한지 여부 등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16]

---

15) 이는 한 차례에 보조금 전액을 교부하였다는 점에서, 최소 2차례에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1항를 위배한 측면이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따라서 환경부는 동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1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2항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 입〉

5. 법정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은 환경개선부담금·대기배출부과금 및 수질배출부과금 등 총 10개 부과금이 수납되는 항목으로, 2024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법정부담금은 징수결정액 1조 2,853억 4,500만원 중 6,995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54.4%)되고 559억 1,9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으며, 5,299억 1,6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음.[17]

[2024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법정부담금	648,364	648,364	1,285,345	699,509	529,916	55,919	54.4	595,91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 중 하나로 법정부담금인 환경개선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는데,[18]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부과 및 징수하는 것임.[19]

2024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 중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결정액 6,414억 1,000만원 중 1,719억 4,600만원이 수납(수납률 26.8%)되었고, 4,164억 9,600만원이 미

17) 환경개선특별회계-법정부담금(59-593)(기획조정실)

18)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6조(회계의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19)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수납되었음.

[2024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합계	648,364	1,285,345	699,509	529,917	55,919	54.4
환경개선부담금	151,603	641,410	171,946	416,496	52,968	26.8
대기배출부과금	27,826	38,836	35,673	3,163	-	91.9
수질배출부과금	10,262	52,733	7,377	44,427	930	14.0
재활용부과금	24,587	30,193	18,788	11,405	-	62.2
폐기물부담금	200,320	226,829	221,952	4,877	-	97.8
수질개선부담금	15,844	19,245	14,748	4,497	-	76.6
생태계보전부담금	57,597	74,638	46,560	26,057	2,021	62.4
폐기물처분부담금	156,137	186,311	179,830	6,481	-	96.5
기타	4,188	15,149	2,636	12,514	-	17.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제외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2조 1,382억 8,600만원인데, 이 중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결정액이 6,414억 1,000만원에 해당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이 법정부담금의 약 50.0%,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 기준으로 세입의 약 30.0%를 차지하고 있음.[20]

20)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비율(징수결정액)
환경개선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제외)		1,340,980	2,138,286	1,477,568	-
	법정부담금	648,364	1,285,345	699,509	60.1
	환경개선 부담금	151,603	641,410	171,946	3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은 4,164억 9,600만원으로 수납률이 26.8%에 그치는 등 연례적으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수납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동 부담금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효성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결정액 6,414억 1,000만원 중 1,719억 4,600만원만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이 4,164억 9,600만원에 달하고 있고, 수납률도 26.8%에 불과함.

그런데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의 미수납액이 2022년 5,118억 2,100만원, 2023년 4,981억 8,600만원으로 수납률도 각각 28.8%, 26.9%에 불과하여 미수납액이 과다하고, 수납률도 연례적으로 저조함.

이로 인해 징수결정액 기준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개선특별회계수입의 30.0%를 차지함에도, 과다한 미수납액과 저조한 수납률로 인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수납률]

(단위: 백만원, %)

년도	예산액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2022년	243,100	750,314	216,371	511,821	22,122	28.8
2023년	191,362	699,729	188,334	498,186	13,209	26.9
2024년	151,603	641,410	171,946	416,496	52,968	26.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장기체납자로 인하여 체납액이 누적되어 환경개선부담금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이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금 감면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임.[21)]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의 현황을 살펴보면, 과거 체납액의 미수납 비율이 2022년 87.5%, 2023년 90.6%, 2024년 82.5%인 등 당해연도 미수납 비율이 20%

21) 또한 환경부는 자동차 말소정보 조회서비스를 도입하여 폐차 차량에 대한 수시 부과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임

정도인 것에 비하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최근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미수납액의 당해연도 및 과거체납분 액수]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체납액	과거 체납액	총 체납액
2022년	징수결정액(A)	215,431	534,883	750,314
	미수납액(B)	43,335	468,486	511,821
	미수납 비율(B/A)	20.1%	87.5%	68.2%
2023년	징수결정액(A)	194,008	505,721	699,729
	미수납액(B)	39,854	458,332	498,186
	미수납 비율(B/A)	20.5%	90.6%	71.1%
2024년	징수결정액(A)	171,051	470,359	641,410
	미수납액(B)	30,524	385,972	416,496
	미수납 비율(B/A)	17.8%	82.5%	64.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과거 체납액의 수납률이 저조한 것은 환경부의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실질적인 수납률 개선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수납률 저조를 설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당해연도 체납액은 물론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를 하는 등 실효성있는 징수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함으로서 안정적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세　출〉

6.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지상 사외배관의 안전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사업은 사업장 외부에 설치되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 주민 및 환경 피해 우려가 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외배관에 대한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개선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억 6,600만원 중 6억 5,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6.0%)되고,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도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	16,175	16,175	564	-	16,739	15,707	297	735	14,734
사외배관 안전성 평가 및 시설기준 마련	792	792	-	74	866	659	125	82	79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화학물질 사외배관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외배관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장조사,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 및 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지상 사외배관 설치 규정이 다른 수송관의 설치규정과 비교했을 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환경부는 안전한 지상 사외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2) 일반회계-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지원(2320-302)(환경보건국)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는 유해화학물질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 고시는 사외배관의 설치와 관련해서 '적절한 기준'이라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절한 기준'을 구체화한 별표에서도 지상 사외배관의 설치와 관련하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는 등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지상 설치 배관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지상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규정]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배관의 설치 등) 배관의 설치 등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배관을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사외배관으로서, 유·누출 여부 확인 등에 대한 안전점검 대장 작성을 통해 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표1] 2)-1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한다. (1) ~ (3) 생략 (4) 차량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5)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질 것

이와 달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의 경우 적합한 열수송관 설치 요건을 차량 충돌에 대비한 충격도 계산방법을 별표로서 별도의 산식으로 명시하는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23)]

23)「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제34조 (열수송관의 설치일반) 열수송관을 설치할 때에는 휨·신축·진동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열수송관은 불균형 침하에 의하여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외부로부터 차량 충돌 등의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열수송관에는 이를 견딜 수 있는 적절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도 계산방법은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에 따른다.
4. 고열의 열매체를 통하는 열수송관으로서 열에 의하여 주위에 심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것에는

이는 두 규정 모두 관을 통해 물질을 이송하는 설비의 안전성 기준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설치 규정은 추상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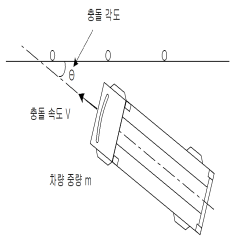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호 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사외배관 안전사고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유출로 큰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환경부는 지상 사외배관 이송시설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열수송관의 내진설계는 [별표 1] "열수송관 내진설계기준" 을 따른다.

[별표 3] 충격도 산정기준



$$IS = \frac{1}{2} \cdot m \cdot (\frac{V}{3.6} \cdot \sin\theta)^2$$

IS : 충격도 (kJ)

m : 충돌차량의 중량 (ton)

V : 충돌 속도 (km/시)

θ : 충돌 각도 (도)

7.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시험연구비로 행정소송착수금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사업은 선진국 수준의 폐기물 위해성 평가·관리 제도화 및 유해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7억 1,000만원 중 14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86.9%)되고, 1억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24]

[2024년도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위해우려 폐기물 관리	8,124	8,124	98	2,044	10,266	9,164	489	612	5,779
폐기물유해성평가 관리체계선진화	1,612	1,612	98	-	1,710	1,487	80	142	1,61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 집행을 위해 독립된 세목(210-13)에 10개 세목을 통합 편성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4년도 폐기물유해성평가관리체계선진화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예산현액 2억 1,400만원 중 1억 8,4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9%)되고, 3천만원이 불용되었음.

[폐기물 유해성평가 관리체계 선진화 사업 2024년 시험연구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시험연구비 (210-13)	247	247	11	△44	-	214	184 [184]	214	184 [184]	-	30	247

24) 일반회계-위해우려 폐기물 관리(1433-303)(자원순환국)

나. 검토의견

동 사업에서 영업정지 불복에 관한 소 등 소송착수금으로 시험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부는 향후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시험연구비를 일용임금 및 일반수용비 등 총 10개 세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25)]

이에 따라 시험연구비는 각 세목의 편성 및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고,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 및 시험설비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 등에 집행이 가능할 것임.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시험연구비로 2건의 소송 착수금 총 99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2건의 소송은 각각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영업정지 불복,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양수·인수 허가취소 관련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시험연구의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25)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10-13 시험연구비
>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 ① 일용임금(110-04)
> ② 일반수용비(210-01)
>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④ 피복비(210-03)
> ⑤ 임차료(210-07)
> ⑥ 유류비(210-08)
>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 ⑧ 재료비(210-11)
> ⑨ 여비(220목)
> ⑩ 고용부담금(320-09)

[폐기물유해성평가 관리체계선진화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중 소송 착수금 지급내역]

(단위: 원)

집행내용	금액
전수원 영업정지처분취소 착수금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영업정지 불복 소)	4,400,000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신청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착수금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양수·인수 허가취소 소)	5,500,0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집행은 연구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재료비나 설비 유지비 등 시험연구의 직접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시험연구비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당초 시험연구비를 편성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환경부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면밀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한 집행 필요

가. 개 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피해자 및 유족을 구제 및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3억 8,000만원 중 51억 200만원이 집행되고(집행률 94.8%)되고, 2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음.[26)]

[2024년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15,127	15,127	67	-	15,194	14,420	268	506	13,809
가습기살균제피해 종합지원센터 운영	5,380	5,380	-	-	5,380	5,380	-	-	3,00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5,380	5,380	-	-	5,380	5,102	-	278	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2021년 10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로드맵을 마련하였고, 이를 통해 2024년부터 백신접종 지원, 2026년부터 교육환경 지원을 계획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중장기 로드맵(2021. 10.) 중 일부]

전략과제	현재(2021~)	단기(~2024)	중기(~2026)	장기(2026~)
질병관리 및 예방을 통한 건강 증진	-	백신접종 지원		
학업 정진 교육환경 제공	-		멘토링, 도서대여 사업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6) 환경개선특별회계-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2206-306)(환경보건국)

백신접종 지원의 경우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2024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음.

교육환경 제공 사업은 당초 2026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2023년 학령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동 사업을 조기에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2024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업을 수행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사업 내용]

	예방접종 지원	인터넷 강의 지원
지원대상	가습기살균제 전체 피해자 (5,800명)	학령기 피해자 (1,054명)
지원내용	폐렴구균 예방접종 비용(생애 1회)	인터넷 강의 수강권지급(1회/년・인)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결여로 인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면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4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수행한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사업의 신청률이 저조하여 사업비 1억 5,000만원 중 9천 100만원이 불용되었음.

가습기살균제 지원 중장기 로드맵 등에 따라 백신접종 사업은 2021년부터, 인터넷 강의 지원사업은 2023년부터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정작 사업을 수행하는 2024년까지도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동 사업을 집행하는 예산 전액이 2024년에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이・전용을 통하여 집행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	-	150	-	150	59	-	91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사전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두 사업 모두 2024년 중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기간이 단축되었음.

구체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의 경우 2월까지 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백신접종 및 인터넷 강의 비용 지원 사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등 사전에 이행하였어야 할 각종 절차이행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실제 피해자들을 위하여 신청을 받고 지원을 수행한 기간은 백신접종, 인터넷 강의 지원 사업 각각 3개월, 1개월에 불과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사업 월별 집행 현황]

<table>
<tr><th></th><th>일반 지원 사업</th><th>백신 접종</th><th>인터넷 강의 지원</th></tr>
<tr><td>1월</td><td>세부 추진계획 수립</td><td rowspan="5">사업추진 타당성 검토</td><td rowspan="6">인터넷 강의 업체 현황 조사 및 협의</td></tr>
<tr><td>2월</td><td>신청서식 정비 등</td></tr>
<tr><td>3월</td><td rowspan="9">사업 추진</td></tr>
<tr><td>4월</td></tr>
<tr><td>5월</td></tr>
<tr><td>6월</td><td rowspan="3">신청서식 정비 등</td></tr>
<tr><td>7월</td><td rowspan="2">신청서식 정비 등</td></tr>
<tr><td>8월</td></tr>
<tr><td>9월</td><td rowspan="3">사업 추진 (신청 및 지원)</td><td>사업추진 (신청 및 지원)</td></tr>
<tr><td>10월</td><td rowspan="3">결과 보고</td></tr>
<tr><td>11월</td></tr>
<tr><td>12월</td><td>결과 보고</td><td>결과 보고</td></tr>
</table>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실질적인 지원 기간이 단축됨과 함께 두 지원사업 모두 별도 수요 조사 절차 없이 수요 인원을 산출함에 따라 두 사업 모두 당초 예측한 인원인 769명, 1,000명에 비해 실제 신청 인원이 각각 448명(58.2%), 95명(9.5%)에 불과하여 실제 신청 인원과 예측 인원 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사업의 예측인원과 실제 신청 인원]

	백신접종	인터넷 강의 수강권
예측 인원	769명	1,000명
실제 신청	448명 (58.2%)	95명 (9.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2021년 로드맵에 이미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연도까지 수요 조사가 미비하였고,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추진되어 피해자들의 충분한 신청 및 지원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결국 저조한 신청률로 이어졌음.

따라서 향후 피해자 지원사업을 계획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인 계획단계부터 수요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사업수행 전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사업 추진 기간을 확보함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9.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ODA): 협력국과 협조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개발도상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등 대상국의 환경여건을 고려한 프로젝트 발굴을 통해 수출 경쟁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6억 8,400만원 중 38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67.8%)되고, 18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	32,258	32,258	71	130	32,459	30,584	-	1,875	30,265
해외프로젝트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5,543	5,543	11	130	5,684	3,858	-	1,856	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해외프로젝트를 수행할 협력국(개발도상국)과 논의를 거쳐 프로젝트를 기획한 뒤, 협력국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사업계획서(PCP)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환경부가 협력국 외교부로부터 외교문서(LOI)를 받아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의 심의 및 승인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됨.

[해외프로젝트 발굴 사업 추진 절차]

기술원과 협력국 간 프로젝트 논의	→	협력국 환경부에서 PCP[28)] 기술원에 제출	→	협력국 외교부에서 외교문서(LOI[29)]) 환경부에 제출	→	외교부에서 프로젝트 심의	→	국무조정실에서 프로젝트 심의
환경산업기술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7) 환경개선특별회계-환경산업수출기반 육성지원(1531-303)(녹색전환정책관)

나. 검토의견

해외프로젝트 발굴 사업이 2년 연속 외교문서 미수령을 이유로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에서 미승인되었으므로, 환경부는 협력국과의 사전 협의를 강화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협력국에서 해외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협력국의 사업 의향 확인이 필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은 「무상원조사업 시행계획 작성 지침」에서 협력국의 사업 의향이 나타나있는 외교문서의 수령을 사업승인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으로 국무조정실에서의 프로젝트 심의 전까지 환경부가 외교문서를 받지 못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에 9억원, 2024년에 6억원을 합하여 총 15억원의 사업이 수행되지 못하였음.

[해외프로젝트 중 국무조정실 미승인 내역]

(단위: 백만원)

심의연도	국가	사업명	사업비	미승인 사유
2023	베트남	생태하천복원을 통한 도시홍수 저감 및 생물 다양성 복원 마스터플랜	900	외교문서 미수령
2024	탄자니아	므완자주 폐기물 관리 마스터플랜	600	외교문서 미수령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경부는 협력국 현지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 현지 사정으로 인하여 외교문서가 미수령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외교문서 수령은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 심의에 앞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외교부 및 국무조정실 심의를 앞두고 있는 프로젝트의 경우 협력국 인사이동 등 현지 사정 및 시기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심의 전에 외교문서를 수령할 필요가 있음.

---

28) Project Concept Paper(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수원국에서 ODA 사업제안을 위한 사업의 개요, 배경 및 목적, 설명, 이해관계자 등이 기술된 자료로 수원국의 수원기관(대상부처 또는 지자체)의 명의로 작성하여, 수원총괄기관(기재부 등)으로 송부되는 구비서류

29) Letter of Intent(외교문서, 사업의향서, 협력의향서): 수원국의 수원총괄기관(기재부 등 ODA 총괄부처)에서 PCP 검토 후 대상 공여국에 사업의 추진요청을 위해 발행하는 문서

특히 미승인된 해외프로젝트는 이미 협력국 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의 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황이었므로, 협력국 외교부에서 사전에 외교문서 수령을 완료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국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강화하고, 외교문서 수령을 조기에 완료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0. 지질공원사업: 사업계획의 면밀한 수립을 통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지질공원사업’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9억 6,600만원 중 16억 4,600만원이 집행(집행률 83.7%)되고, 3억 2,000만원이 불용되었음.[30]

[2024년도 지질공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213,702	213,702	-	-	213,702	213,362	-	340	145,591
지질공원사업	1,966	1,966	-	-	1,966	1,646	-	320	1,38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지질공원 사업 중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사업비 327억원으로 지질분야 복합 공공플랫폼 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서, 환경부가 사업시행주체인 광주광역시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임.[31]

그런데 동 사업의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2022년 총사업비 1차 조정 결과 사업 기간을 2년 연장하여 2025년까지 준공하고자 하였으나, 이 기간 내에도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였고 총사업비 2차 조정을 통해 2027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

---

30) 환경개선특별회계-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1831-301)(자연보전국)

31)

내역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지질공원사업	지자체보조	50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조성사업 사업기간 변경]

	당초 계획 (2021. 7.)	총사업비 1차 조정 (2022. 10.)	총사업비 2차 조정 (2025년 예정)
사업기간	2021년 ~ 2023년	2021년 ~ 2025년	2021년 ~ 2027년
총사업비	327억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 수립 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절차 기간들을 계산하지 않아 사업 기간이 4년 지연되었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하게 하고 동 사업의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하여 2022년 광주시에 70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그런데 사업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2022년 2억 7,200만원만 집행되어 67억 2,700만원이 이월되었고, 2023년에는 이월된 금액 중 7억 2,400만원만이 집행되고 60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음.

2024년에는 이월액 60억 300만원 중 약 9,300만원만이 집행되었고, 최종적으로 59억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2년 이후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일시	교부액	실집행금액	이월액	불용액
2022	7,000	272	6,727	-
2023	-	724	6,003	-
2024	-	93	-	5,90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은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은 당초 사업 계획에서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 등 필수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설계 기간을 10개월로 설정한 데 기인한 것임.

이와 같이 행정절차 기간을 반영하지 않아 당초 사업계획 시 공사 준공을 2023년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2023년까지 실시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2년 총사업비 1차 조정을 통해 사업 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었음.

그런데 총사업비 1차 조정에 따라 2023년 4월까지 설계가 완료되어야 하나, 실제사업 집행 과정에서 2024년 7월에 설계가 완료되어 연장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중 총사업비 2차 조정을 통하여 사업 기간이 2027년까지로 연장될 예정임.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조성사업 사업기간 변경]

구분	총사업비 신규등록 (2021. 7.)	총사업비 1차조정 (2022. 10.)	총사업비 2차조정(진행중) (2025년 예정)
사업기간	2021~2023 (3년)	2021~2025 (5년)	2021~2027 (7년)
설계기간 (기본 및 실시설계)	2021.11.~2022.9. (당초 계획, 10개월)	2022.4.~2023.4. (1차 변경, 12개월)	2022.4.~2024.7. (실제 설계기간, 27개월)
기간변경 사유	실시설계 10개월 건축공사 12개월	실시설계 12개월 건축공사 2년 이상	실시설계 27개월 건축공사 및 개관준비 2년 이상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실시설계가 당초 계획인 10개월에서 27개월로 지연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공사비로 2022년 광주광역시에 교부되었던 70억원의 보조금은 2차례 이월을 거쳐 결국 2024년에 59억원 900만원이 불용되었음.

따라서 환경부는 광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검증단계부터 사업 기간을 면밀히 산정하고,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1.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은 해외로부터 야생동물 질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을 구축하고 야생동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 국내 전파를 차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83억원 중 185억 9,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7%)되고, 64억 300만원이 불용되었음.[32)]

[2024년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67,615	67,615	33,298	-	100,913	83,145	10,052	7,716	51,825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	3,300	3,300	25,000	-	28,300	18,597	3,300	6,403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 야생동물의 검역을 수행하는 시설로서, 당초 계획상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2억원으로 수행하고자 하였으나, 검역시행장 부지 사용방식 변경 및 총사업비 조정 등으로 인하여 총사업비 265억원으로 2025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음.[33)]

32) 환경개선특별회계-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1831-309)(자연보전국)

33)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실치 사업 개요

	당초 계획 (2022)	변경된 계획 (2024. 9.)
사업기간	2022년 ~ 2024년	2022년 ~ 2025년
총사업비	422억원(국고 100%)	265억원(국고 1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설치되지 못하였으므로, 환경부는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은 환경부에서 설치계획 수립 후 현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설치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상으로 2022년 6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이었음.

그런데 관계 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2025년 12월로 연기되어 총 1년 7개월의 기간이 지연되었음.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의 단계별 계획 및 실제 추진 일정]

구분	당초 계획일정	실제 추진일정	지연된 개월 수
기본 및 실시설계	2022.12. ~ 2023.08	2022.12 ~ 2023.12	4개월
공사(착공~준공)	2023.09 ~ 2024.05	2024.12 ~ 2025.12	1년 7개월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검역시행장 건립 시 당초 인천국제공항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사업 설계단계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 결과 매입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라 총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가 지연된 것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설치사업 부지협의 추진 경과]

날짜	내용	기관
2022. 07. 15.	검역시행장 설치 부지 활용 협조요청	환경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2022. 08. 08.	유상임대 방식 제공, 매각은 추후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 → 환경부
2023. 01.	매각 불가 통보	인천국제공항공사 →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동 사업은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34] 동법 시행 시점인 2024년 5월에 맞춰 검역 시설이 완비되어야 했지만, 2025년 6월까지도 준공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임.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근거 규정과 실제 설치 절차 현황]

	2021. 5.	2022 10.	2024. 5.	2025. 12.
근거 규정	법률 개정	-	법률 시행	-
당초 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3. 8.)	설치 완료	
실제 설치 현황	-	기본 및 실시설계 (~ 2024. 5.)	-	설치 완료 (예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환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 임시로 인천국제공항 인근 별도의 공간을 임대하여 야생동물에 대하여 검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35]

그러나 현재 설치 중인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설치 완료 및 검역 수행을 목표로 계획한 것으로, 동 법의 검역시행장 설치규정 신설 취지가 야생동물 검역 사각지대 해소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임시 공간을 활용한 검역 수행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또한 검역시행장의 설치 지연으로 인해 별도로 임시 검역시행장을 운영함에 따라 임차료,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및 재료비가 집행되고 있는데, 자산취득비 및 재료비로 취득한 장비 등의 물품은 야생동물 검역시행장의 설치가 완료되면 이전하여 활용이 가능하나, 임차료는 매몰 비용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음.

3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검역시행장) ① 수입검역은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지정검역시행장”이라 한다)에서도 검역을 할 수 있다.
1. 수입검역 대상 야생동물 또는 물건을 야생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2.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가 확산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때

35) 임시 검역 수행장은 현재 건립하고 있는 검역시행장과 6km 정도 거리에 있음

[2024년 임시 검역시행장 운영 집행비용]

(단위: 백만원)

구 분	비 용	내 용
총 계	2,636	
임차료	105	물류창고, 컨테이너 임대료
자산취득비	2,473	계류장비, 무균대, 방역장비, 실험장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7	컨테이너 내 전기·급수설비 설치, CCTV 운영
재료비	51	진단키트, 방역·계류 물품 구매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처럼 임시 검역시행장 운영으로 인하여 계획대로 검역시행장이 준공되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임차료 1억 50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었고, 당초 법 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는 검역시행장 운영을 위하여 동 사업이 더 늦어지지 않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12. 국토생태네트워크: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전국의 생태축과 자연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7억 200만원 중 159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6%)되고, 4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4년도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A)	추경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16,589	16,599	113	16,702	15,972	328	402	33,140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11,358	11,358	-	11,358	11,058	-	300	9,972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3,759	3,759	94	3,853	3,812	9	32	6,70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태탐방 수요에 맞춰 전국에 생태탐방로를 조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3억 5,800만원 중 110억 5,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3억원이 불용되었음.[37]

내역사업인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복원하기 위해 생태통로 조성, 서식지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7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8억 5,300만원 중 38억 1,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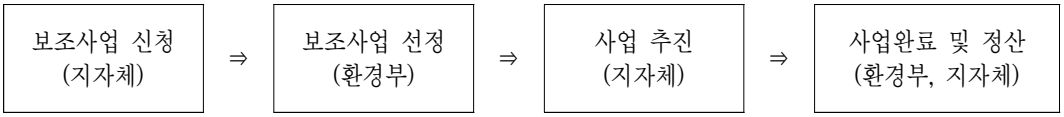
36) 환경개선특별회계-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1832-308)(자연보전국)

37)

내역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지자체 보조	50

38)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백두대간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 추진방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관리 사업과 백두대간 등 생태축 훼손지 복원 사업이 보조금 교부 후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추진 여건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은 110억 3,800만원으로, 그 중 35억 6,200만원이 집행되어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32.2%에 불과함.

그런데 최근 3년간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2022년 57.7%, 2023년 57.9%으로 연례적으로 저조한데, 특히 2024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32.2%에 불과하여 전년도의 실집행률인 57.9%보다 25.7%p나 더 저조하게 나타남.

이러한 저조한 실집행률은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데 따른 것으로,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이월액이 2022년 32억 9,100만원, 2023년 70억 9,800만원, 2024년 77억 9,500만원으로 이월액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심지어 2024년의 경우 당해연도 교부액의 집행액은 35억 6,200만원에 불과한데, 이월액은 당해연도 집행액을 초과한 77억 9,500만원임.

내역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백두대간 등 생태축 복원사업	지자체 보조	70

[최근 3년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년	8,050	8,050	8,050	8,050	915	8,965	5,460	8,050	4,646	3,291	214	57.7
2023년	13,125	13,125	13,125	13,125	3,577	16,702	9,554	13,125	7,612	7,098	50	57.9
2024년	11,338	11,338	11,038	11,038	7,098	18,136	9,611	11,038	3,562	7,795	731	32.2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편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은 32억 5,900만원으로, 그 중 13억 9,100만원이 집행되어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42.7%에 불과함.

동 사업 역시 최근 3년간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2022년 13.3%, 2023년 71.1%로 연례적으로 저조한데, 특히 2024년의 경우 실집행률이 42.7%에 불과하여 전년도의 실집행률이 71.1%보다 28.4%p가 저조하게 나타남.

이러한 저조한 실집행률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이월액은 2022년 50억 9,600만원, 2023년 33억 9,100만원, 2024년 25억 1,500만원임. 특히 2024년의 경우 당해연도 교부액 집행액이 13억 9,100만원인데 이월액이 25억 1,900만원으로 집행액보다 이월액이 더 많은 상황임.

[최근 3년간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사업 실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년	6,496	6,496	6,496	6,496	831	7,327	1,367	6,496	862	5,960	-	13.3
2023년	4,656	4,656	4,656	4,656	4,965	9,621	6,230	4,656	3,309	3,391	-	71.1
2024년	3,259	3,259	3,259	3,259	3,391	6,650	4,020	3,259	1,391	2,519	111	42.7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집행가능성의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은 것임.[39]

특히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서 일부 사업주체는 전년도에 이월된 보조금조차 2024년 말까지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초인 3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였는데, 이 역시 연내 집행가능성의 검토가 미흡했음을 나타냄.[40]

이에 대해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 및 종교단체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내용과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이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으로 이월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과 설계변경 가능성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이므로,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전 사업 진행 가능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토와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보조금 교부 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류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의 실제 추진 여건과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39)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0) 2024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이월액 미집행 지자체 연초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수행주체 (연번)	전년도이월액	연말 집행액	교부금액	교부일자
1	120	96	135	2024. 3. 21.
2	650	623	390	2024. 3. 21.
			300	2024. 10. 16.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13.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시험연구비로 상시·지속적인 인력 운용 부적정 등

가. 개 요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사업은 주요 야생동물질병 폐사체, 생체 및 환경 진단·분석, 야생동물 질병을 조사·관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8억 7,300만원 중 53억 4,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1%)되고, 2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41)]

[2024년도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운영	8,646	8,646	555	-	9,201	8,537	308	356	9,373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5,751	5,751	185	△63	5,873	5,348	244	282	4,72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 집행을 위해 독립된 세목(210-13)에 10개 세목을 통합 편성하여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2024년도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사업의 시험연구비는 예산현액 39억 2,500만원 중 36억 2,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4%)되고, 2억 4,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사업 시험연구비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질병 진단·분석 및 관리	5,751	5,751	185	△63	-	5,873	5,348	5,688	5,163	244	282	4,726
시험연구비(210-13)	4,851	4,851	148	△1,074	-	3,925	3,629	3,777	3,481	56	240	3,953

41) 환경개선특별회계-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1833-345)(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나. 검토의견

첫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사연구원 등 상시·지속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시험연구비를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비 집행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집행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시험연구비를 일용임금, 일반수용비 등 총 10개 세목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연구비 중 임금의 경우 일용임금(110-04)에 대해서만 집행하여야 함.[42)]

동 지침은 일용임금을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용임금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로 일용임금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임금 규정]

1-3. 상용임금·일용임금

가. 적용범위
- ㅇ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상용임금)
- ㅇ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일용임금)

42)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10-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⑩ 고용부담금(320-09)

그런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운용하는 야생포유류・야생조류 AI조사인력(예찰인력)과 조사연구원(단기근로자)은 약 4~8개월간 주 40시간 및 주 5일 근무하면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임금을 시험연구비에서 일용임금으로 집행되었음.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예찰인력과 단기근로자 근무일]

채용 명칭	직종	근무월	근무시간
예찰인력	야생포유류 AI조사인력	2024. 5. 1. ~ 2024. 8. 31. (약 4개월)	주 40시간, 주 5일
예찰인력	야생조류 AI조사인력	2024. 9. 2. ~ 2025. 3. 31. (약 7개월)	주 40시간, 주 5일
단기근로자	조사연구원	2024. 7. 1. ~ 2025. 2. 28. (약 8개월)	주 40시간, 주 5일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또는 상용근로자인지 여부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채용 명칭이 단기근로자라 하여도 근로자의 근무월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질을 바탕으로 근로의 성질을 판단하여야 함.[43]

또한 「고용보험법」은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운용하는 인력이 약 4~8개월간 근무하면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은 상용임금 근로자의 실질이 있다고 볼 수 있음.[44]

따라서 야생포유류・야생조류 AI조사인력과 조사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은 집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근로자 실질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시험연구비를 집행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43) 판례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67004 판결)

44)

출처	내용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1451-12200, 1983-05-12)	일용근로자라 함은 고용기간이 1일로서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종료되고 필요에 따라 하루하루를 기간으로 하여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등

둘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와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비를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부는 향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시험연구비를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집행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시험연구비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각 세목의 편성 및 집행기준 범위 내에서 운용되어야 하고,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시험에 사용되는 재료 구입, 시험설비 유지를 위한 비용 지출 등에 집행이 가능할 것임.

그런데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 총 6,659,400원과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비 1,144,000원 등 총 7,803,400원을 시험연구비로 집행하였음.

[2024년 질병 진단 분석 및 관리 시험연구비 집행내역 중 일부]

(단위: 원)

집행내용	금액
2024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비	1,144,000
생물안전연구동(광주)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1회_2월분)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554,95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 지출결의	1,109,900
생물안전연구동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 합계	6,659,4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출입통제시스템 임차료의 경우 기관의 출입관리를 위한 행정적 기능과 관련된 항목으로, 시험 자체의 수행이나 시험 설비의 운용에 직접 사용되는 경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역량강화교육 기념품 제작은 주로 참가자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기념품 제작이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위 지출들은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로 어려우므로, 환경부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시험연구비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집행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14. 친환경에너지타운: 실집행 제고를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폐자원에너지 회수 등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활용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7억 1,500만원 전액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었음.[45]

[2024년도 친환경에너지타운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160,023	160,023	-	-	160,023	155,563	796	3,664	225,499
친환경에너지타운	7,715	7,715	-	-	7,715	7,715	-	-	10,86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환경부가 해당 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의 50%의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46]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방법]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 사업계획 검토 (환경부) ⇒ 국고편성 및 지원 (환경부) ⇒ 사업 시행 (지자체)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5) 환경개선특별회계-폐기물처리시설 확충(1433-306)(자원순환국)

46)

내역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자체 보조	50

나. 검토의견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실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여 2024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환경부는 향후 사업 추진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을 반영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교부액은 77억 1,500만원으로, 그 중 36억 2,700만원이 집행되어 교부액 실집행률이 47%에 불과함.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당해연도 교부액의 실집행률이 2022년 69.9%, 2023년 42%로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는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한 것에 기인함.

최근 3년간 이월액이 2022년 16억 3,000만원, 2023년 49억 6,800만원, 2024년 36억 1,100만원으로 과다하고, 특히 2024년에는 불용액도 20억 2,200만원으로 나타남.

[최근 3년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당해연도 교부액 실집행률 (B/A)
					예산 현액	집행액 (B)			
2022	3,378	3,241	6,619	4,980	3,378	2,360	1,630	9	69.9
2023	7,266	1,630	8,896	3,863	7,266	3,053	4,968	65	42.0
2024	7,715	4,968	12,683	7,050	7,715	3,627	3,611	2,022	47.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이월액이 과다하여 실집행률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실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본예산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한 번에 교부하였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는 보조금 교부시 보조사업자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는 2024년 보조금 전체를 4월 1일에 모든 보조사업자에게 일괄적으로 교부하였음.[47]

[2024년 친환경에너지타운 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2024년					
사업수행주체 (연번)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실집행률	교부일자
1	375	375	-	0	2024. 4. 1.
2	100	100	-	0	
3	100	100	-	0	
4	240	240	-	0	
5	530	530	-	0	
6	1,450	1,450	-	0	
7	260	260	17	6.5	
8	521	521	325	62.4	
9	1,600	1,600	1,062	66.5	
10	1,900	1,900	1,636	86.9	
11	190	190	190	100	
12	449	449	449	1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 결과 2024년 보조사업자 12개 중 6개의 지방자지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집행액이 없었는데, 이는 환경부의 사전 집행가능성 검토와 집행관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나타냄.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한 주민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집행현황 조사와 수행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임.[48]

그러나 동 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후 해당 시설과 연계해 추진되는 특성을 가

4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48) 또한 환경부는 2025년에는 보조금 전체를 일괄적으로 교부하지 않고, 집행상황을 확인 후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있다는 입장임

지므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민원이 발생해 준공이 지연될 경우 동 사업 역시 함께 지연될 가능성이 큰 구조임.

이에 따라 환경부는 보조금 교부 이후의 사업수행 상황만 점검할 것이 아니라, 교부 전 단계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여부 등 사업의 선행조건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원 가능성 또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환경부는 향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 추진 여건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5. 무공해차 보급사업: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등

가. 개 요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차의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3,193억 1,500만원 중 1조 5,210억 6,700만원이 집행(집행률 65.6%)되고, 7,981억 9,900만원이 불용되었음.[49)]

[2024년도 무공해차 보급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A)	추경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319,254	61	2,319,315	1,521,067	49	798,199	1,900,854
전기자동차 보급	1,734,000	1,734,000	-	1,734,000	1,174,996	-	559,004	1,242,770
수소차 보급사업	571,350	571,350	-	571,350	332,238	-	239,112	638,5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면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무공해차 구매자에게 구매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무공해자 보급사업 집행 절차]

국고보조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보조	사업 정산
환경부 → 시 · 도	시 · 도(또는 기초 지자체) → 무공해차(전기 · 수소) 구매자	시 · 도 →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4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무공해차 보급사업(1633-311)(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데, 이는 예산 편성시 예상한 전기차 및 수소차 대수와 실제 집행되는 전기차 및 수소차 대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부는 현실적인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무공해차 보급사업은 예산현액 2조 3,053억 5,000만원 중 1조 5,072억 3,400만원만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5.3%에 불과한데, 이는 불용액이 전기차 5,590억 400만원과 수소차 2,391억 1,200만원을 합하여 7,981억 1,600만원에 달하고 있음에 기인함.

전기차의 경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22년 2,727억 900만원, 2023년 3,450억 3,200만원, 2024년 5,590억 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집행률도 84.1%, 82.0%에서 67.8%로 저조해지고 있음.

또한 수소차의 경우 최근 3년간 불용액이 2022년 1,656억 9,200만원, 2023년 3,110억 8,000만원, 2024년 2,391억 1,200만원으로, 이에 따라 집행률도 2022년 63.5%, 2023년 50.9%, 2024년 58.1%로 연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3년간 무공해차 보급사업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년도	예산	변경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전기차	2022	1,719,000	1,719,000	-	1,719,000	1,446,291	-	272,709	84.1%
	2023	1,918,000	1,918,000	-	1,918,000	1,572,968	-	345,032	82.0%
	2024	1,734,000	1,734,000	-	1,734,000	1,174,996	-	559,004	67.8%
수소차	2022	679,505	454,505	-	454,505	288,813	-	165,692	63.5%
	2023	633,400	633,400	-	633,400	322,320	-	311,080	50.9%
	2024	571,350	571,350	-	571,350	332,238	-	239,112	58.1%
합계	2024	2,305,350	2,305,350	-	2,305,350	1,507,234	-	798,116	65.3%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실제 동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24년 교부받은 보조금 중 불용액이 전기차 2,609억 4,600만원, 수소차 515억 700만원 총 3,124억 5,300만원에 달하고 있음.

[2024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환경부		보조사업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당해연도 교부액 대비 실집행률 (A/B)
전기차	1,734,000	1,174,996	1,174,996	112,496	1,287,493	993,498	891,014	33,049	260,946	75.8
수소차	571,350	332,237	332,237	89,248	421,485	329,898	261,597	40,080	51,507	78.7
합계	2,305,350	1,507,233	1,507,233	201,744	1,708,978	1,323,396	1,152,611	73,129	312,453	76.4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결국, 이와 같은 동 사업의 과다한 불용액으로 인하여 2024년 예산액이 2조 3,053억 5,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8,910억 1,400만원, 수소차는 2,615억 9,700만원 총 1조 1,526억 1,100만원만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었고, 1조 1,527억 3,9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아 당해연도 예산액에서 집행된 금액보다 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더 많음.

[2024년 예산현액 중 무공해차 보급사업 실집행 액수]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예산 (A)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예산 실집행액 (B)	2024년 집행되지 않은 금액	2024년 예산의 실집행률 (B/A)
전기차	1,734,000	891,014	842,986	51.4
수소차	571,350	261,597	309,753	45.7
합계	2,305,350	1,152,611	1,152,739	5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과다한 불용액과 저조한 실집행률은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예산 편성 시 예상 차량대수와 실집행 차량대수의 차이에 기인함.

2024년 예산 편성 시 예상 차량대수와 실집행 차량대수의 차이가 전기차는 162,640대, 수소차는 5,165대로 총 167,805대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이처럼 예상 차량대수가 실집행 차량대수보다 높게 책정된 결과 실집행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되었음.

[2024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 편성과 실집행 대수 차이]

(단위: 대)

	예상 차량대수	실집행 차량대수	차이
전기차	292,272	129,632	162,640
수소차	8,550	3,385	5,165
합계	300,822	133,017	167,805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실제로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실집행 추이를 고려하여 전기차는 당초 예상대수보다 64,300대, 수소차는 당초 예상 대수보다 3,700대가 집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애초에 예산 편성 시부터 예상 대수와 실제 공급과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점이 크다고 볼 수 있음.

[2025년 무공해차 보급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구분	차종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추경안		차이 (대수)	차이 (금액)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전기차 (자치단체 보조)	전기승용	7,020억원	234,000대 x 3백만원	5,910억원	197,000대 x 3백만원	37,000대	1,110억원
	전기화물	5,460억원	54,600대 x 10백만원	2,730억원	27,300대 x 10백만원	27,300대	2,730억원
수소차 (자치단체 보조)	수소승용	2,475억원	11,000대 x 22.5백만원	1,642억5,000만원	7,300대 x 22.5백만원	3,700대	832억 5,000만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 계획단계부터 보다 현실적인 수요 예측과 시장 상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 중 국고에 반납되지 않은 금액이 1,316억 7,100만 원에 달하고 있으므로, 환경부는 반납 지연 사유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신속한 정산과 회수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은 보조급 집행잔액과 이자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도록 규정하고 있음.[50]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 보조금 정산자료를 차년도 3월 내에 교부받아 정산자료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금액을 통지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행 잔액을 반납받고 있음.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집행잔액 반납 절차]

정산자료 제출 (차년도 3월 내)	→	정산자료 검토	→	반납 금액 통지	→	집행잔액 반납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2023년 2,526억 200만원의 지방자치단체 집행잔액을 2024년 말까지 반납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1,534억 8,400만원만이 반납되고 991억 1,800만원은 반납되지 않아 반납률이 60.8%에 불과함.

동 사업의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집행잔액 미반납액을 살펴보면, 202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불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말 기준 미반납된 집행 잔액이 총 1,316억 7,100만원에 달하고 있음.

심지어 2018년에 반납을 요청한 집행잔액 3억 1,900만원이 2024년 말까지 미반납되었는데, 이는 사업이 완료된 지 6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반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임.

---

50)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율]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자체 집행잔액(A)	국고반납액(B)	미반납액	반납률(B/A)
2018	8,079	7,760	319	96.1
2019	64,620	64,463	157	99.8
2020	52,705	52,294	411	99.2
2021	69,695	55,344	14,351	79.4
2022	78,632	61,317	17,315	78.0
2023	252,602	153,484	99,118	60.8
합계	526,333	394,662	131,671	74.9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반납금액을 통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내부 절차로 인하여 반납이 지연되고 있고, 미반납한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는 등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집행잔액 반납을 통지한 지 6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납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단순히 공문을 보내는 등의 독려 방식으로는 실효성 있는 회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환경부는 단순한 반납 독려 수준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반납 지연 사유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함께 회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교부 보조금 집행 잔액을 조속히 반납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16. 전기차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등

가. 개 요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공용 충전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거나 구축 비용 중 일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365억원 중 2,991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5%)되고, 1,373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4년도 전기차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	734,441	734,441	24	-	734,465	595,204	66	139,195	865,423
전기차충전인프라 구축·지원	436,500	436,500	-	-	436,500	299,150	-	137,350	560,7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단 및 협회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희망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진행 절차]

국고보조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 정산
환경부 → 공단, 협회	→	공단, 협회 → 충전기 설치 희망자	→	공단, 협회 → 환경부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51) 에너지및자원사업회계-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1633-312)(대기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이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충전기 물량을 면밀히 추산하는 등 실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지원사업을 시행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2024년 교부받은 2,391억 5,000만원 중 737억 4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30.8%에 불과함.

이는 한국환경공단의 이월액이 1,073억 3,700만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이월액이 각각 265억 2,200만원으로 총 1,338억 5,900만원이 이월된 것에 기인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한국환경공단	271,500	271,500	174,150	174,150	81,426	255,576	106,113	174,150	37,979	107,337	42,126	21.8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05,000	105,000	65,000	65,000	17,042	82,042	47,917	65,000	35,725	26,522	7,603	54.9
합계	376,500	376,500	239,150	239,150	98,468	337,618	154,030	239,150	73,704	133,859	49,729	30.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에도 교부액 2,825억원 중 1,145억 1,500만원이 이월되고 1,614억 2,900만원만을 집행하여 57.1%의 실집행률을 보이는 등 연례적으로 과다한 이월액으로 인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 2년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지원 사업의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

년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년	302,500	302,500	282,500	282,500	102,791	385,291	253,600	282,500	161,429	114,515	6,556	57.1
2024년	376,500	376,500	239,150	239,150	98,468	337,618	154,030	239,150	73,704	133,859	49,729	30.8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신청 후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일부 설치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하여 행정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요청서를 검토한 뒤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되므로, 요청서 검토 단계에서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충전기 물량을 정확히 추산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연내 집행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물량을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사업자의 설치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관리를 강화하여 동 사업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5년 1월부터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설치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까지도 정산 완료된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없으므로,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한 후 조속히 정산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 제어기능과 차량과의 통신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제어 충전기(화재예방 완속충전기) 구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 800억원 중 70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음.

[화재예방 완속충전기(스마트제어 충전기) 집행 내역]

사업명	2024년 예산	산출근거	집행액(교부액)
화재예방 완속충전기	800억원	20,000기x4백만원	706.5억원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이후 사업수행기관이 착공을 증빙하면 선금을 지급하고, 실제 완속 충전 기능이 작동하는지 현장조사 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스마트제어 충전기 구축사업 준공 및 정산 절차]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	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수행 신청서 제출
↓	
스마트 충전기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가 한국환경공단에 설치신청
↓	
스마트 충전기 설치 착공	사업수행기관이 한국환경공단에 착공 증빙 및 선급금 지급 요청
↓	
한국환경공단에서 스마트 충전기 현장조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제 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조사 실시
↓	
스마트 충전기 설치 준공 및 정산	한국환경공단에서 준공확인 후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잔급 지급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2025년 7월말 기준 총 23,281대의 스마트제어 충전기가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말까지 정산이 완료된 충전기가 없고,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이 사업수행기관에 지급한 보조금은 모두 충전기 착공 확인 후 지급한 선급금에 불과하며,

정산 절차에 따른 잔금 지급은 미이행된 상태임.[52)]

[월별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완료 및 준공건수]

(단위: 건)

시기	설치 완료 건수[53)]	2025년 7월말 기준 정산 완료 건수
2025. 01.	3,494	0
2025. 02.	4,315	0
2025. 03.	4,383	0
2025. 04.	2,336	0
2025. 05.	240	0
2025. 06.	3,724	0
2025. 07.	4,789	0
합계	**23,281**	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스마트제어 충전기에 대하여 준공 및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성능을 검증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정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실제 차량을 이용한 현장조사 및 준공 절차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기차-충전기 배터리 정보 통신프로토콜 기술기준」 개정과 이해관계자 논의 등으로 인해 현장조사 절차 마련이 지연되었고, 2025년 6월부터 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 현장조사를 본격 실시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충전기 설치가 완료될 경우

52) 선급금은 충전기 지원 비용의 70%를 지급하며, 최초 선급금은 2024년 12월 6일에 지급하였음

53) 월별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신청건수

(단위: 건)

스마트제어 충전기 설치 신청 건수	
2024. 08.	273
2024. 09.	3,584
2024. 10.	10,948
2024. 11.	11,409
2024. 12.	15,818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 기능을 검증하고 정산하기 위한 절차 역시 사전에 준비되었어야 하므로 절차가 2025년 6월에 마련된 것은 사전 계획 및 준비가 미흡했다는 측면이 있음.

특히 2025년 1월에 3,494대의 충전기가 설치 완료되었음에도 설치 완료 후 약 5개월이 지난 2025년 6월까지 단 한 건의 현장조사도 실시되지 않아 충전기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조금 환수 등 정산절차도 함께 지연되고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조속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성능검증 및 준공절차를 완료하여 충전제어 기능이 없는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경우 사업승인 취소 및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는 등 정산 절차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5년 6월 기준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에 통신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차종 비율이 33%이므로, 환경부는 조속히 모든 차량에 통신 기능이 도입되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안전한 충전을 위하여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모든 완속충전기를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설치하고, 기존 완속충전기도 단계적으로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교체할 계획임.

스마트제어 충전기는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충전제어기능과 차량에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기능이 핵심이나, 2025년 6월 기준 전체 98개 차종 중 66개 차종(67%)만이 통신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32개 차종(33%)은 이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핵심 기능이 제한되고 있음.

또한 2025년 판매량 기준 점유율 기준으로도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통신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 40%를 차지하고 있음.

[스마트제어 충전기 통신기능 지원 차량(승용 기준) 대수]

(단위: 개)

	통신기능 지원	통신기능 미지원	합계	통신기능 미지원 비율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 수	3	7	10	70%
차종 수	66	32	98	33%
점유율 (2025년 판매량 기준)	60%	40%	100%	4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대해 환경부는 통신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전기차 제작·수입사로부터 2026년 1월까지 통신기능이 수행되도록 확약서를 받고, 전 차종에 대하여 통신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부터 시행되었고, 사업의 주요 목적이 충전 중 화재 예방 등 전기차 충전의 안전성 제고에 있는 만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 통신기능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차량 제작·수입사에 대해 통신기능 조기 도입을 적극 유도하고 통신기능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통신기능이 원활하게 도입되도록 관리하여 스마트제어 충전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7. 하수관로 정비: 하수관로 관리대행업자의 선정 기준 정비 필요

가. 개 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하수관 정비, 하수의 유출·누출을 방지하여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 제고 및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조 2,815억 9,300만원 중 1조 1,707억 8,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1.3%)되고, 1,108억 600만원이 불용되었음.[54]

[2024년도 하수관로 정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281,593	-	-	1,281,593	1,170,787	-	110,806	1,717,71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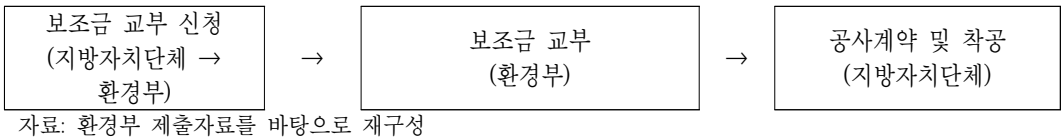
동 사업은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통해 정비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55]

5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55)

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하수관로 정비	지자체 보조	30~60

[하수관로 정비 사업 진행 절차]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할 때, 기술과 가격을 분리 평가한 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6)]

그런데 이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 입찰자를 우선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특정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제안하고 있음.[57)]

---

56)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준」 (환경부고시 제2018-23호)
제8조(관리대행업자선정 평가기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수도법 시행령」제15조의3에 따라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기술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및 가 · 감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참여업체의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신용도, 환경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산업안전, 가 · 감점 등을 평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단, 총 합산점수가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별표 1]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사업수행능력	참여기술자 : 기술등급 등 참여업체 : 수행실적 등	60
사업수행계획	계획 적정성 방법 적정성	40
가・감점	신규기술자 고용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비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관리대행업자 선정 시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평가하고…. · 기술평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동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협상절차를 통한 계약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부 고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자와 가격협상 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동 시행령에 따라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허용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고 있음.[58]

5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382호)
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 · 용역(청소 · 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 기술성 · 창의성 · 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술성 · 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식기반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다만,「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거나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9.. (생략)

이처럼 예외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기술평가만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가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예산 절감과 적격심사 병행이라는 동 시행령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낙찰자 결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환경부 고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58)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예산 절감이 가능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임.

18.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기한 내 준공을 위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은 하수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하수관 정비 및 지하 저류조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37억 3,100만원 중 60억원이 집행(집행률 43.6%)되고, 77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음.[59)]

[2024년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281,593	-	-	1,281,593	1,170,787	-	110,806	1,717,712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13,731	13,731	-	-	13,731	6,000	-	7,731	15,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환경부가 서울특별시가 수행하는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을 통해 설치사업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집행됨.[60)]

동 사업은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당초 각각 총사업비 3,500억원, 2,500억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을 수행하려 하였으나, 조달청 무응찰로 인하여 총사업비 변경을 통해 각각 사업비가 5,386억 500만원, 3,297억 7,3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2028년까지로 연장되었음.

---

5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하수관로정비(1132-312)(물환경정책관)

60)

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25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개요]

	강남역		광화문	
	계획변경 전	계획변경 후	계획변경 전	계획변경 후
총사업비	3,500억원	5,386억 500만원	2,500억원	3,297억 7,300만원
사업규모 (직경, 길이)	직경: 3.1m 길이: 8.3㎞ 저수용량: 16.8만㎥	직경: 5~11m 길이: 4.4㎞ 저수용량: 45.5만㎥	직경: 3.2m 길이: 5.5㎞ 저수용량: 7.6만㎥	직경: 6m 길이: 3.4㎞ 저수용량: 12.2만㎥
사업기간	2023년 ~ 2027년	2023년 ~ 2028년	2023년 ~ 2027년	2023년 ~ 2028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무응찰로 인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교부금액이 이월되는 등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므로, 환경부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대심도하수저류시설은 서울특별시의 침수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하여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2024년 교부액 60억원 중 100만원만 집행되어, 0.01%의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그런데 동 사업은 2023년에 45억원을 교부하였는데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없고 교부받은 금액이 전액 이월되어 실집행률이 0%로 나타나는 등 연례적인 이월로 인하여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년도	사업시행주체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C)			
2023	서울특별시	5,435	5,435	4,500	4,500	-	4,500	0	4,500	0	4,500	0	0
2024	서울특별시	13,731	13,731	6,000	6,000	4,500	10,500	4,501	6,000	1	5,999	0	0.01

이러한 연례적인 이월은 사업계획 변경에 기인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조달청 공고 이후 사업이 2차례 무응찰되어 2024년 2월 총사업비 재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되고, 총사업비도 강화문과 강남역을 합하여 6,000억원에서 8,683억 7,800만원으로 증가하였음.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추진으로 이월금을 집행하고, 이후 우선 시공분 착공 및 실시설계를 통하여 2024년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이었음.

이에 따라 2024년 환경부는 광화문의 경우 9월 23일, 강남역의 경우 10월 18일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나,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하여 2024년에는 이월된 금액만 집행되고 2024년에 교부된 보조금의 경우 60억원 중 100만원만 집행되었음.

[2024년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백만원)

	교부일자	전년도 이월액	교부액	예산현액	2024년 집행액	이월액 제외 집행액
계	-	4,500	6,000	10,500	4,501	1
서울특별시 (광화문)	2024. 09. 23.	2,000	4,000	6,000	2,001	1
서울특별시 (강남역)	2024. 10. 18.	2,500	2,000	4,500	2,500	-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런데 이월된 59억 9,900만원 중에서 2025년 7월말 기준으로도 용역준공과 감리선금으로 총 5억 6,200만원만 집행되었다는 점에서 기본설계 및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추진을 이유로 2024년의 교부한 금액은 연내 사업 집행 가능성의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측면이 있음.[61]

61)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17조제2항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 사업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 집행계획[62]]

(단위: 백만원)

		2025년					
		1~5월	6월	7월	8~10월	11월	12월
집행예정액 합계		562	1,542	2,726	-	13,226	2,943
광희문	집행예정액	25	824	800	-	8,407	2,943
	집행원인	용역준공	모형실험 등	공사 기성		실시 설계비	우선사공분 및 감리 준공
강남역	집행예정액	537	718	1,926	-	4,819	-
	집행원인	감리선금	모형실험 등	공사기성 및 인허가 용역준공		실시 설계비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따라서 환경부는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업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음.

62) 2025년 7월말 기준으로 1~5월 집행예정액은 집행되었으나, 6월 및 7월 집행예정액은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하여 집행되지 않았음.

【한강수계관리기금】

〈지　출〉

19.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한 보조금 교부 필요

가. 개　요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치수위주의 하천 정비로 인해 훼손된 하천환경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여 자정기능 향상을 통한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85억 4,700만원 전액이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었음.[63)]

[2024년도 생태하천복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생태하천복원사업	8,547	8,547	-	8,547	8,547	-	-	3,464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물환경보전법」제27조의2 및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제13조제4항에 따라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총사업비 35%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됨.[64)65)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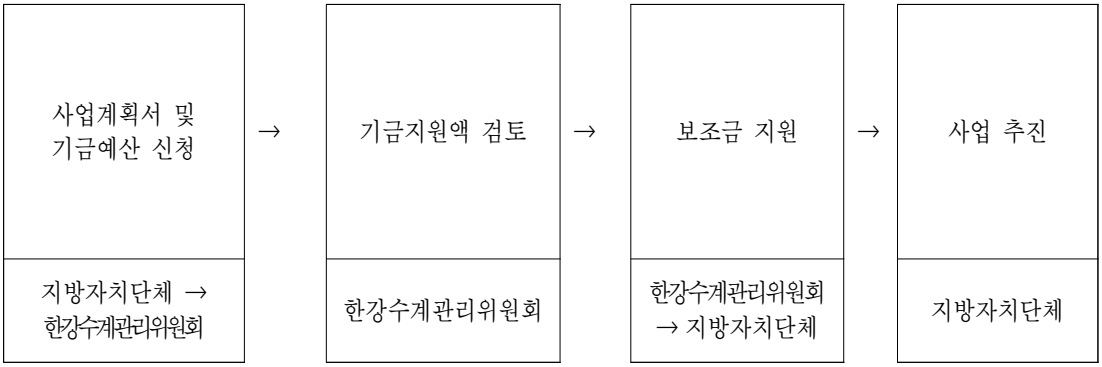
63) 한강수계관리기금-생태하천복원사업(1333-405)(물환경정책관)

64)「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9조 또는 제9조의3에 따른 측정 · 조사 결과 수질 개선이 필요한 지역 또는 수생태계 훼손 정도가 상당하여 수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이하 “복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65)「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3조(수질개선지원사업) ④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지역으로서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의한 수생태계복원계획이 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35를 지원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계획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신청한 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기금지원액을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생태하천복원사업 집행 과정]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나. 검토의견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사업이 수생태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환경부는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따라 생태하천복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생태하천복원 대상 사업을 '수질개선 등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66)

사업명	기관명	지원비율(%)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자체보조	35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0차[67])]

2. 지원대상
 가. 대상 지역 선정
 ○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하천 구간 또는 하천정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구간에서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이 주 목적인 하천
 ○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수반되는 토지매입비, 건물 및 지장물 등 보상 포함)을 차지하는 경우를 말함.
  - 물리·화학적 및 생태학적 수질정화 (오염된 퇴적물의 준설, 습지 조성, 수질정화식물 도입, 하상여과, 접촉산화시설 등)
  - 하천변에 매설된 오·폐수 차집관로의 신설 및 개선
  - 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수변수질정화습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등)
  - 생태이동통로의 조성 및 개선(어류, 양서·파충류 등 생물의 이동 유도 및 종횡단 통로 등)
  - 하천 내 생물서식공간 확보(산란처, 은신처 등을 확보하기 위한 하상 및 호안의 생태적 개선, 시설도입, 유도공사 등)
  - 수질 개선 또는 생태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하수재이용시설 등 관련 시설

그런데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제출된 계획서상 수질개선 관련 사업비 비중이 35.3%에 불과하여 수질개선 등 목적의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이 아니어서 지침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보조금이 교부되었음.[68)]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계획서상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복원 목적 비율]

(단위: 백만원, %)

구분	총 사업비	수질 개선 및 생태적 목적	그 외 목적(이·치수)
금액	51,535	18,214	33,321
비율	100	35.3	64.7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따라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9년 처음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교부받은 금액은 설계용역 및 보상금으로만 지출되었고 2022년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이월되기 시작하여 2024년까지 보조금이 이월되었음. 결국 2025년 3월 치수사업 비중 축소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어 이월된 보조금이 불용되었음.

67)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0차 개정) 2017. 12. 22.

68)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 목적에 맞게 여러차례 검토 후 보완을 요청하고 보조금 삭감 등 조치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지침 기준에 적정하지 않게 교부되었다는 입장임.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연도별 결산]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자							
연도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등(b)	예산현액 (c=a+b)	실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19	350	0	350	273	77	0	78.0
2020	5,326	77	5,403	5,403	0	0	100.0
2021	2,668	0	2,668	2,668	0	0	100.0
2022	892	0	892	200	692	0	22.4
2023	2,500	692	3,192	0	3,192	0	0.0
2024	0	3,192	3,192	0	3,192	0	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는 당초 사업계획이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금이 계속 이월된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 금액도 설계용역비를 제외하면 한국부동산원에 공탁 중인 보상비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다가 취소된 것임.[69]

따라서 환경부 및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향후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선정할 때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을 준수하여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회복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69)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지출결의일자	세부사업내용	지출액
계	-	8,544
2019.6.28.	산곡천2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선금	168.7
2019.12.20.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선금	35
2019.12.20.	산곡천2 하천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용역-2차 선금	69.3
2020.6.19.	산곡천2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1차	752
2020.7.27.	산곡천2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2차	77
2020.11.23.	산곡천2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3차	4,574
2021.5.25.	산곡천2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4차	700
2021.8.31.	산곡천2 생태하천조성사업 보상금 지급 5차	700
2021.12.9.	보상자금 지급(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6차	1,268
2022.4.19.	보상자금 지급(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 7차	200

자료: 환경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기　타】

20.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환경부에 대해 시정요구 91건(중복 5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19건·주의 30건·제도개선 47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19	30	47	5	91
예비비	-	-	-	-	-	-	-
합계	-	-	19	30	47	5	91

환경부는 시정요구사항 91건에 대해 75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2.4%)하고 16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91	75	82.4	16
예비비	-	-	-	-
합계	91	75	82.4	16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환경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환경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46) 환경부는 홍수기에 하천을 통해 바다로 배출되는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47)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후, 해당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지역부터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48) 환경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 및 국가 NDC 수송분야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승용 예산이 집행되지 아니할 경우, 수소버스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상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억 4,900만원(1.8%)이 많은 86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900만원(27.5%)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8,133	8,133	6,785	△1,348	8,505	8,505	8,654	149	1,869
총수입	8,133	8,133	6,785	△1,348	8,505	8,505	8,654	149	1,869

문의 : 이동현 예산결산조사관 gerbera@assembly.go.kr (02-6788-568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억 8,400만원(0.3%)이 많은 4,496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4억 5,700만원(△2.1%)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69,672	469,672	459,126	△10,546	448,185	448,185	449,669	1,484	△9,457
총지출	469,672	469,672	459,126	△10,546	448,185	448,185	449,669	1,484	△9,457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5억 500만원으로, 86억 5,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86억 5,4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505	8,505	-	8,505	8,655	8,654	1	-
합 계	8,505	8,505	-	8,505	8,655	8,654	1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04억 1,700만원으로, 4,496억 6,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7%)되고 23억 6,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3억 8,500만원은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46,242	446,242	12,051	-	-	458,293	447,599	2,309	8,38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943	1,943	181	-	-	2,124	2,071	53	-
합 계	448,185	448,185	12,232	-	-	460,417	449,669	2,363	8,385

주) 총계 기준

다.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기상청 자산은 전년 대비 157억 7,100만원이 증가한 1조 285억 4,700만원으로, 이는 일반유형자산이 92억 5,600만원, 무형자산이 55억 700만원 증가한 것 등에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81억 2,700만원 감소한 99억 6,100만원으로 유동부채 117억 2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338억 9,800만원이 증가한 1조 185억 8,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기상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050억 9,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9,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336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4,9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기상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028,547	1,012,776	15,771	1.6
		유동자산	8,072	8,326	△254	△3.1
		투자자산	1,903	1,175	729	62.0
		일반유형자산	951,023	941,767	9,256	1.0
		무형자산	62,611	57,104	5,507	9.6
		기타비유동자산	4,937	4,403	534	12.1
	부 채		9,961	28,088	△18,127	△64.5
		유동부채	6,628	18,330	△11,702	△63.8
		장기차입부채	3,333	9,758	△6,425	△65.8
	순자산		1,018,586	984,688	33,898	3.4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05,096	296,606	8,490	2.9
	재정운영순원가		433,618	428,869	4,749	1.1
	재정운영결과		433,618	428,869	4,749	1.1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기상청은 ‘일상으로 다가온 기후위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총 111개 세부사업에서 위험기상·지진으로부터 국민 안전 지원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기상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R&D 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법」에 따른 사용실적 보고 기한을 경과하여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세부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기상청은 보고서가 법령상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을 통해 관리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발생 시 그 지역의 정확한 기상 값 측정이 어려우므로, 향후 기상청은 고장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상청은 ‘고층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을 통하여 연직바람관측장비를 도입하고 있는데, 2023년 특정 장비에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도 해당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정보보안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기상청 R&D: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비 실적보고 기간 준수를 위한 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기상청 R&D 사업은 수치예보 지원 등 기상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연구 수행 또는 연구개발기관 등에 연구개발출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888억 3,400만원 중 863억 4,900만원(집행률 97.2%)이 집행되었음.

[2024년도 기상청 R&D 사업 결산]

(단위: 개, 백만원)

회계명	사업수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회계	18	88,548	106	180	88,834	86,349	-	2,485	104,738

자료: 기상청

기상청 R&D 사업 18개 중 6개 사업은 자체연구로 기상청이 직접 수행하였고, 12개의 출연사업의 경우 「기상법」과 「기상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였음.[2)3)]

---

2) 「기상법」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2024년도 기상청 R&D 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구 방식	사업명 (총 18개)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자체 연구 (6개)	수치예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6,324	-	5,891	-	433
	국가레이더 통합 활용기술 개발(R&D)	2,015	-	1,760	-	255
	지진화산업무 지원 및 활용 기술 개발(R&D)	1,431	-	1,377	-	54
	기상위성 운영 및 활용 기술개발(R&D)	9,965	-	10,112[4]	-	114
	기상위성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4,632	106	4,657[5]	-	454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연구(R&D)	27,785	-	26,916	-	869
출연 (12개)	아태 기후정보서비스 및 연구개발(R&D)	6,270	220	6,418	32	40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R&D)	9,819	3,826	12,435	1,028	182
	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799	23	792	25	5
	스마트시티 기상기후 융합기술 개발(R&D)	744	-	744	-	-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II)(R&D)	3,070	-	3,070	-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기상청)(R&D)	2,788	-	2,788	-	-
	기상·지진 See-At 기술개발연구(R&D)	600	-	600	-	-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R&D)	4,750	-	4,750	-	-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R&D)	410	-	410	-	-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기술 개발(R&D)	300	-	300	-	-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R&D)	2,940	-	2,940	-	-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R&D)	3,600	-	3,600	-	-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기상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기상분야 R&D 사업의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가 법령상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연구개발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연구개발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4) 2억 6,100만원 이·전용

5) △8,100만원 이·전용

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

그런데 2024년 3개의 기상청 R&D 세부사업에서 연구비 관리 담당자 변경 등의 사유로 사용실적보고서가 3개월을 초과하여 제출되었는데,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제출기한을 초과한 것임.

[2024년 기상청 R&D 사업 중 사용실적 보고 기한(3개월)을 경과한 과제]

세부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제출일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지연 사유[7)]
기후 및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응용 기술개발(R&D)	가까운 미래 기후변동성 예측을 위한 토지피복인자 개발	~ 2024. 12. 31.	2025. 05. 28.	연구기관 시스템 오류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R&D)	기상관측장비 형식승인 대상 측기별 시험절차 표준기술 개발	~ 2024. 12. 31.	2025. 05. 23.	연구비 변경
차세대 항공교통 지원 항공기상 기술개발(R&D)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 2024. 12. 31.	2025. 05. 13.	연구비 관리 담당자 변경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 2024. 12. 31.	2025. 05. 14.	
	의사결정 지원 항공기상정보 전환 기술개발	~ 2024. 12. 31.	2025. 05. 15.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연구기관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날인 2025년 1월 3일을 정산 실시일로 보고 있어 「국가연구개발법」상 정산 실시일을 준수하고 있고, 사용실적보고서가 늦게 제출되어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임.

---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기상청은 이에 대해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가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전체 연구기관에 2차례 제출을 요청하였고,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가 제출요청을 하였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법 시행령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과 정산 실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8] 이는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이 지연될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를 순연시켜 이후 절차인 정산 및 연구개발비 회수 조치도 지연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R&D 사업의 원활한 정산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실적보고서가 법령상 기한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기상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상 집행실적 보고 기한이 상이하므로, 연구개발비 정산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4년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사업 등 총 4개의 세부사업을 「기상산업진흥법」제9조 등을 근거로 연구기관에 출연하여 수행하였음.[9]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상 연구개발비 정산 관련 규정

제26조제1항	제26조제2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보고서에 적힌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이하 “사용용도”라 한다)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하 “사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9)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24년「기상산업진흥법」등을 근거로 수행한 연구개발사업]

연도	세부사업명	사업근거
2024	한반도 지하 단층·속도구조 통합모델 개발Ⅱ	- 지진관측법 제21조 - 지진화산대책법 제22조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응용 기술개발	
	기상관측장비 핵심기술 및 관측자료 활용기법 개발	- 기상법 제32조 - 기상산업진흥법 제9조
	위험기상 선제대응 기술개발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집행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0)]

그런데 연구개발비 집행실적과 사용실적이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과제 각 단계의 종료 시점이 해당 연도 말인 경우에는 같은 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제출기한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0)「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연구개발비 실적보고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상산업진흥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용실적(집행실적)[11] 보고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8조(출연금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그 해의 연구개발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기상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계획과 그 집행실적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두 법령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제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의 우선 적용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나,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규정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상청은 법령 간의 적용 혼선을 방지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음.

1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과 집행실적은 내용이 같음

【일반회계】

〈세 출〉

2.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자동기상관측장비 고장 방지를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은 사회 각 분야의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질의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는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지상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4억 1,400만원 중 54억 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

[2024년도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35,144	35,144	180	81	35,404	33,207	1,555	642	24,876
지상기상관측장비 운영	5,414	5,414	-	-	5,414	5,404	-	10	5,414

나. 검토의견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정확한 기상 값 측정을 위하여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4년 운영중인 640대의 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 총 600건의 고장이 발생

12)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하였고, 고장난 장비를 복구하는데 평균 33시간 40분의 복구 시간이 소요되어 고장 발생 시 일별 예보(24시간)를 넘는 시간 동안 정확한 기상 값을 측정하기 어려움.

그런데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수는 1~2대 수준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고장 건수는 2023년 156건, 2024년 59건 증가하여 장비 도입 증가 폭에 비하여 고장 건수가 매년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최근 3년간 자동기상관측장비 지점(측정소)별 고장 건수]

년도	장비 수(대)	전년도 대비 장비수 증가(대)	고장건수	전년도 대비 고장 증가건수	평균 복구 시간
2022년	637	-	385건	-	34시간 7분
2023년	639	2	541건	156건	35시간 25분
2024년	640	1	600건	59건	33시간 40분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024년 640개의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한 해 동안 고장이 발생하지 않은 장비는 283개에 불과하고, 5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6대, 6건 이상 고장이 발생한 장비가 4대로 고장이 발생하여 복구한 장비도 계속 고장이 발생하고 있음.

[2024년 자동기상관측장비 별 고장 건수]

	고장건수							합계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장비 수	283개	216개	78개	38개	15개	6개	4개	640개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자동기상관측장비가 야외에서 장시간 운용되고 있으며 장비 외 센서의 추가 도입으로 인하여 고장 건수가 증가하였고, 고장이 발생하면 인근 관측장비의 관측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동기상관측장비와 센서가 야외에서 운용되는 점은 애초부터 전제된 운용조건이며, 이러한 외부 환경은 설계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장 발생 시 평균 하루 이상 그 지역의 기상값 측정이 곤란하고, 인근 관측장비의 관측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서 원 장비로 관측하는 것보다 정확도가 저조하므로, 관측장비에 고장이 발생하면 그 지역의 기상 값이 부정확할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고장 발생 시 국가 기상자료의 정확성과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기상관측장비의 고장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상청은 관측장비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장비 도입과 관련한 정보보안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사업은 연직바람관측장비 등의 설치·운영으로 한반도 고층 대기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여 강수예측 정확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6억 6,700만원 중 42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4.8%)되고, 6억 200만원이 불용되었음.[13]

[2024년도 고층기상관측장비 확충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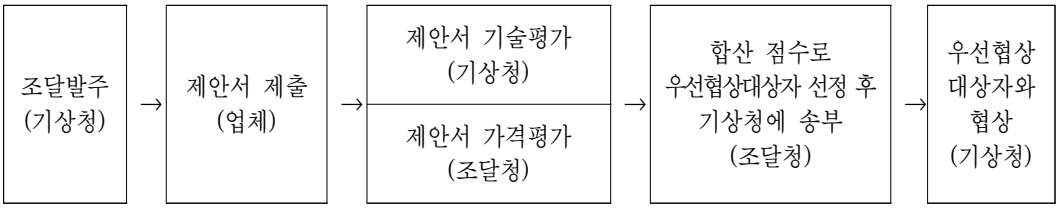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35,144	35,144	180	81	35,404	33,207	1,555	642	24,876
고층기상관측망 운영	5,550	5,550	17	100	5,667	4,243	822	602	5,536

기상청은 연직바람관측장비 조달 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조달청은 가격평가를 실시한 후 양 기관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14]

---

13)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14) 기상청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절차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상청은 이러한 절차로 2024년 연직바람관측장비 신규 도입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업체와 협상 과정에서 해당 장비가 정보보안 사고 장비인 것을 인지하고 기존에 개발한 연직바람관측장비 시제품을 대신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조달을 철회하면서 해당 예산 전액이 불용되었음.

[2024년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집행내용]

추진내용	날짜	집행내용
조달발주 및 입찰공고	2024. 4. ~ 9.	3회 유찰이후 반려
	2024. 9. ~ 11.	2회 재공고
입찰 제안서 평가 및 협상	2024. 11. 12.	기상청 기술평가
	2024. 11. 18.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 11. 19.	정보보안 사고 장비 인지
	2024. 12. 24.	계획 변경 및 조달 철회 요청
	2024. 12. 26.	조달 철회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따라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려는 관측장비 시제품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기상청과 방위사업청이 공동 추진하여 개발한 장비로서, 해당 장비는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상용이 가능한 기술성숙도 9단계를 달성하였음.[15)]

[기상청 R&D 사업으로 개발된 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운용계획]

년도	내용	비고
2017. 11. 3. ~ 2021. 12. 31.	연직바람관측장비 개발	기상청, 방위사업청 공동 추진 (총사업비 80.84억원 중 기상청 54.85억원) 기술성숙도 7단계 개발 완료[16)]
2022. 6. ~ 2024. 1.	연직바람관측장비 실증 연구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17)] (시제품 연구장소로 속초기상관측소 제공) → 실증연구로 기술성숙도 9단계 달성
2024. 1. ~ 4.	민간업체와 기상청 간 장비운영방안 관련 협의	-
2024. 4.	민간업체에서 장비 기증 의사 표명	-
2024. 6.	장비 활용 및 도입 계획 수립	-
2024. 12. ~	기상청 운용 결정	기존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대체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5) 기술성숙도 9단계: 최종 형태 및 임무조건 하에서 기술의 실제적인 응용이 완성된 상태

16) 기술성숙도 7단계: 운용환경에서 시제품에 대한 성능 시연을 수행하는 단계

나. 검토의견

첫째, 기상청은 2023년 정보보안 사고 발생 이후 정보보안 지침을 개정하였으나, 2024년 장비 조달 시에도 정보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조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정보보안 검증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2023년 6월 특정 연직바람관측장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되는 정보보안 사고를 계기로 기상관측장비 도입에 있어 정보보안 기준을 강화하고자 관련 정보보안 규정을 두 차례 개정하였음.

[정보보안 규정 개정 및 사업추진 경과]

년도	규정	내용
2023. 06. 21.	-	관측장비 악성코드 정보보안 사고 인지
2023. 12. 27.	기상관측장비 도입절차 종합매뉴얼	기술제안서에 정보보안 평가 항목 신설
2024. 05. 17.	기상정 정보보안업무 규정	정보시스템이 포함된 기상측기는 보안성 검토 대상
2024. 11. 18	-	조달 업체 기술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4. 12. 24.	-	조달 철회 요청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두 차례 정보보안 지침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2024년 11월 신규 연직바람관측장비 조달 과정에서 제안된 정보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장비를 기술평가 단계에서 확인하지 못하여 해당 장비를 제안한 업체가 우선조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업체와의 협상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확인한 후 조달을 철회하였음.

이는 2023년 정보보안 사고 발생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달 과정에서는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장비를 사전에 검증하지 못한 것으로, 개정된 규정이 조달 과정에서 실효성있게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기상청은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서 기술평가 단계에서 정보보안 적합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7) 연구명: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산악지역 위험기상 현장 대응을 위한 국산 연직바람관측장비 실증 연구)

둘째, 기상청은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예정 지역에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연구개발장비 시제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신규 관측장비 도입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운용의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향후 기존 연구개발장비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이 계획을 변경하여 운용하기로 결정한 관측장비 시제품은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4월까지 해당 시제품 소유 업체와 장비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음.

그런데 해당 관측장비 시제품이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장소가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신규로 도입하려는 곳을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은 신규 도입 논의 시 시제품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만약 당초 계획대로 장비가 도입되었다면 해당 관측 지역에 장비가 중복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있었음.

[연직바람관측장비 시제품 운용 상황과 도입 계획]

년도	연직바람관측장비 시제품	신규 연직바람관측장비 도입
2022. 6. ~ 2024. 1.	실증연구 수행	-
2023. 1. ~ 2024. 1.	실증연구 종료 후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음	신규 도입 논의
2024. 1. ~ 4.	업체와 활용방안 논의	조달발주 준비 등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당초 계획대로 연직바람관측장비를 조달하였다면 시제품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이는 해당 장비의 실증연구 종료 시점이 2024년 1월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이전 활용 방안이 사전에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이미 배치된 장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었음.

따라서 기상청은 관측장비를 도입할 때 기존 장비의 실증연구와 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복 운용 및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전 협의를 통한 부지 확보 수립 계획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은 관측기관의 국가기상관측시설 표준화로 관측시설 개선을 통한 관측자료 품질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2억 9,400만원 중 42억 8,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7%)되고, 9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35,144	35,144	180	81	35,404	33,207	1,555	642	24,876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4,314	4,314	-	△20	4,294	4,285	-	9	2,597

동 사업을 대행하여 집행하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예산현액 35억 9,100만원 중 30억 9,400만원을 집행(86.1%)하고 4억 9,7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2024년도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 실집행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예산 현액	집행액 (C)			
한국기상산업 기술원	3,541	3,541	3,541	3,541	-	3,591	3,094	3,591	3,094	-	497	87.4

18) 일반회계-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231-301)(관측기반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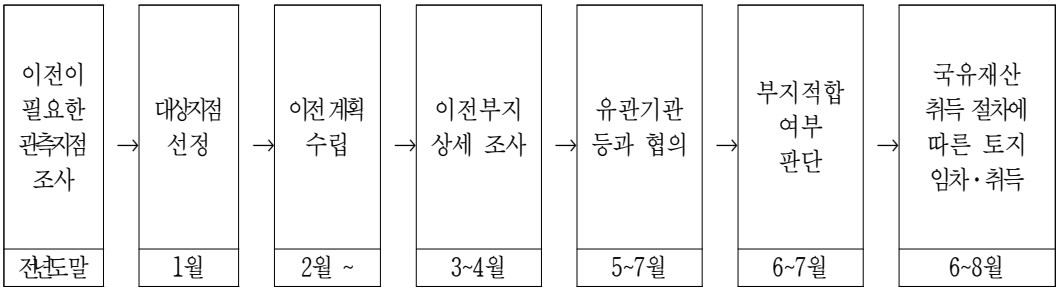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관측지점 이전 계획을 수립한 뒤 연례적으로 부지 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기상청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여 원활한 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기상청은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라 기존 기상관측지점이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기상 관측에 적합하지 않거나 관측 정확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관측지점의 이전을 추진하는 기상관측표준화 추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19)]

이에 따라 기상청은 관측지점 이전이 필요한 곳을 조사하고, 대상지점을 선정한 뒤 이전 계획을 수립한 후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서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기상관측표준화 사업 추진 절차]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2024년 기상청은 총 89개소의 관측지점에 대해 부지확보 등 관측지점 개선 계획이었으나 이 중 21개소는 민원 제기, 유관기관 협의 결렬 등으로 인해 매입 등을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3년간 매년 20개소 이상의 관측지점이 유사한 사유로 연례적으로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19)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7조(기상관측환경의 최적화) ① 기상청장은 관측시설이 최적의 기상관측환경을 확보 ·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최근 3년간 관측지점 부지 매입 실집행 불용 현황]

(단위: 개)

연도	계획지점	확보 건수	불용 건수	불용 사유
2022년	108	63	45	건물 구조안전진단 부적합,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2023년	85	53	32	건물 구조안전진단 부적합,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2024년	89	68	21	민원, 유관기관 협의 결렬, 부지 확보 난항 등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계획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당초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존 관측지점의 열악한 환경조건이 계속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기상관측의 정확도가 저하되고,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함.

부지 매입 불용의 대부분의 사유가 유관기관과 협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상청은 이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대체부지 발굴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부지 확보를 통한 정확한 기상관측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 기상산업육성: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 저하 등 기상감정 제도 운영 미흡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기상산업 육성’** 사업은 기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면허 취득교육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7억 4,500만원 중 37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00만원이 불용되었음.[20)]

[2024년도 기상산업육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산업활성화	15,320	15,320	-	-	15,320	15,318	-	2	14,753
기상산업육성	3,734	3,734	-	11	3,745	3,743	-	2	3,847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기상감정사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상청은 기상감정사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하고 있음.[21)22)]

동법에 따른 기상감정사는 기상감정업체에 소속되어 소송 과정에서 풍속 및 일조량과 같은 기상 상황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

나. 검토의견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의 면허취득 인원이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는

20) 일반회계-기상산업활성화(1431-301)(기상서비스진흥국)

21)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기상감정사”란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에 따라 기상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동 사업에서 2024년 기상감정사 면허 교육 등 관련 비용으로는 8,009만원이 집행되었음.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므로, 기상청은 기상감정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최근 4년간 기상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는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2024년에는 면허 취득자가 없으며, 제도를 운영한 11년간 기상감정사를 취득한 인원이 총 49명에 불과한 등 기상감정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기상감정사 취득 인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 인원 (2014 ~ 2024년)
5명	9명	4명	0명	49명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감정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여 기상감정사 취득이 저조하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상감정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예시로 2023년 박람회 패널 홍보, 2024년 카드뉴스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임.[23)]

그러나 주무부처로서 다년간 홍보를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인지도

23) 최근 4년간 기상감정 홍보 내역

년도	홍보 내용
2021년	- 기상감정 사례집 발간
2022년	- 시·군 방재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2022. 5.) - 기상감정사례집 배포(2022. 12.) - 기상면허제도 홍보리플릿 제작 및 배포 (2022. 12.)
2023년	- 카드뉴스 홍보 (2023. 9.) - 박람회 패널 홍보 (2023. 9.) - 영상제작 및 홍보 (2023. 11.)
2024년	- 관련 기관에 우편 등을 통한 기상감정 제도 안내 (2024. 4.) - 카드뉴스 홍보 (2024. 6.) - 기상감정 홍보 페이지 개편 (2024. 6. ~ 7.) - 리플릿 제작 및 배포 (2024. 9.) - 기상감정 퀴즈 이벤트 및 카드뉴스 홍보 (2024. 11.)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여전히 낮고, 성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홍보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기상감정사가 근무하는 기상감정업체 수가 2024년 기준 5곳에 불과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기상감정 업무 수도 2021년 2건, 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4건으로 최근 4년간 평균 약 2건에 불과함.

[최근 4년간 기상감정업체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업체 수	5개	6개	6개	5개
기상감정 업무 수	2건	1건	2건	4건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상청은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와 함께 기상감정 제도의 활용성과 사회적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상감정사 제도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음.

6.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국제 기상전문인력의 국제기상분야 취업률 미흡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국제사회 내 국내 인력 진출 확대를 위해 국제적 소양을 갖춘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제기구·기관으로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억 100만원 중 2억 1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되었음.[24)]

[2024년도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	550	550	-	-	550	520	-	30	550
국제기상전문인력양성	201	201	-	-	201	201	-	-	231

기상청은 기상기후 전문인력의 국제기구·기관 진출 지원을 위해 2024년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선발된 교육생들에게 약 3주의 교육과 국제기구 인턴십 근무를 위하여 항공료 등 인당 평균 800만원을 지원하였음.

[2024년도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사항]

시기	지원 내용
2024. 7. 8. ~ 7. 26.	이론, 실습, 현장학습 등 교육
2024. 7. ~ 8.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CL[25)], CV[26)] 작성 지원)
인턴십 기간 (6개월)	인턴십 근무 지원 (경비, 항공료, 보험료 등)
교육 수료생	맞춤형 취업컨설팅 (취업 내용 선별 제공)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4) 일반회계-국제기구 및 양국간 기상협력(6132-301)(국제협력담당관)

25) CL: Cover Letter(자기소개서)

26) CV: Curriculum Vitae(이력서)

나. 검토의견

기상기후 전문인력의 국제기구·기관 진출 지원을 위한 양성 교육 수료생의 국제기상분야 취업비율이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상청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 인원 21명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 인원이 2명으로 그 비율이 9.5%에 불과하는 등 최근 5년간 교육 수료 인원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비율이 연례적으로 저조함.

[2024년 말 기준 최근 5년간 국제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생의 취업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수료 인원 (명)	30	29	30	30	21
교육 수료 인원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 인원 (명)	3	4	2	6	2
교육 수료 인원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인원 비율	10.0%	13.8%	6.7%	20.0%	9.5%
인턴십 참가 인원 (명)	16	20	16	13	11
인턴십 참가 인원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 인원 (명)	3	4	2	4	1
인턴십 참가 인원 중 국제기상분야 취업인원 비율	18.8%	20.0%	12.5%	30.8%	9.1%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인턴십 참가 인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근 5년간 2020년부터 각각 18.8%, 20.0%, 12.5%, 30.8%, 9.1%의 국제기상분야 취업 인원 비율을 보이는 등 연례적으로 저조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대해 기상청은 해외 및 국제기구 취업 시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국제기구의 한정된 정규직 TO 등과 같은 여건으로 인하여 취업비율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4년 총 65건의 기상·기후 관련 채용정보와 수시 기업 인력추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제 기상전문인력 양성사업 교육 수료생에게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상분야 취업 인원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지원이 실질적인 취업 성과로 이어지는 데 유효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있음.

[2024년 국제기상 전문인력 수료생에 대한 맞춤형 취업컨설팅 내용]

구분	제공 내용
취업 정보 제공 (65건)	- 기상기후관련 기업, 기관 및 국제기구 취업 정보 제공 - 기업에서 인력 추천 요청시 정보 제공
상담 제공	- 교육생 희망 시 1:1 상담 및 정보 제공 - 교육생 요청 시 추천서 작성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기상청은 해당 사업의 목적이 기상기후 전문인력의 국제기구·기관 진출 지원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상 전문인력 교육 수료자의 국제기상분야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7.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당초 계획과 다른 센터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부진

가. 개 요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관측환경에서도 고품질의 관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상·지진장비의 내구성·정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인증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7억 1,900만원 중 112억 7,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2%)되고 1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8,919	8,919	4,100	△1,300	11,719	11,276	324	119	4,243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는 기상측기의 검정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2023년 9월 준공이 완료되었고 2024년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으로 17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억 9,400만원으로 집행률이 11.3%에 불과함.

[2024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공공요금 결산]

(단위: 백만원)

세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산액
공공요금 및제세	1,721	-	△1,464	257	194	-	63	11.3%	1,801

27) 일반회계-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1231-304)(관측기반국)

나. 검토의견

동 사업은 인증센터의 운영 시기 및 도입 장비 사양 등 센터 운영 계획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 집행률이 11.3%에 불과하므로, 운영 개시일 및 변경된 시험장비의 사양·소비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공공요금 예산은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1,000kW급 풍동시험장비 2대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실제로는 인증센터에 각각 945kW 및 445kW급 풍동시험장비가 1대씩 도입되었고, 센터 운영도 2024년 4월부터 시작되었음.

이에 따라 공공요금 예산 편성시에는 1월 1일부터 2,750kW를 기준으로 풍동시험장비를 가동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로는 4월 1일부터 낮은 사용량으로 인한 기본요금 기준인 825kW로 풍동시험장비가 가동되었음.

[2024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의 당초 계획과 실제 운영]

	예산 편성시 계획	실제 운영
센터 운영 시작일	1월 1일	4월 1일[28]
풍동시험장비	1,000kW 2대 도입	945kW 1대, 445kW 1대 도입
그 외 장비	750kW	750kW
공공요금 (기본요금) 계산	설비용량(2,750kW) 기준 산정	사용량 저조로 2,750kW x 30% (825kW) 기준 계산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상청은 이에 대해 장비 및 인력을 센터로 이전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센터 운영이 지연되었고, 풍동시험장비의 경우 업체 측에서 저전력장비를 제안함에 따라 장비 사양이 변경되었다는 입장임.

그런데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는 당초 준공계획인 2022년 6월 대비 1년 3개월 지연된 2023년 9월 7일 준공되었고, 이에 따라 시험장비 도입, 시험운영 일정 및 센터 운영 시기도 연쇄적으로 늦어져 2024년 4월부터 운영되었음.

28) 2024년 1월 ~ 3월 센터 운영내역

시기	내용
2024. 1. ~	온도시험장비 등 시험 가동
2023. 12. ~ 2024. 2.	풍동시험장비 조립 및 설치
2024. 02.	풍동시험장비 열교환기 내부 설치 및 물탱크 칠러 시험
2024. 0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풍동장비 성능 확인

이와 같이 센터 설계 및 준공단계부터 일정이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장비 이전 및 설치에 따른 일정 지연 가능성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였을 것임.

[기상·지진장비 인증센터 관련 연도별 계획 및 실제 운영]

	당초 계획	실제 운영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	2018. 04. 17. 개정 (2021. 04. 18. 시행)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개정	2020. 01. ~ 11.	2021. 03. 30.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2021. 04. 16.
설계	2019. 11. ~ 2020. 12.	2020. 12. ~ 2021. 11.
공사대행 준비	2020. 10 ~ 2020. 12.	2021. 9. ~ 2021. 12.
시공자 선정	2021. 1. ~ 2021. 3.	2021. 10. ~ 2021. 12.
착공 및 준공	2021. 4. ~ 2022. 6.	2022. 1. ~ 2023. 9.
장비 도입	2022. 7. ~ 2022. 12.	2023. 11. ~ 2025. 2.[29]
시험운영	2022. 10. ~ 2022. 12.	2023. 11. ~
센터 운영	시험운영 이후	2024. 4. ~

자료: 기상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현재 도입된 풍동시험장비에 대한 제안서 기술평가일이 2023년 6월 19일, 계약일은 2023년 7월 7일이었으므로, 예산 편성 시점에는 실제로 도입된 장비의 사양과 소비전력을 바탕으로 공공요금을 산정할 수 있었을 것임.

따라서 기상청은 운영 개시일 및 변경된 시험장비 도입 사양·소비전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 계획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29)

2023년도 도입분 (33대)	2024년도 도입분(52대)	2025년도 도입분(1대)
- 전기시험분야(6대): 2023.11월 - 습도시험분야 등(27대): 2023.12월	- 온도시험분야 등(19대): 2024.3월 - 지진장비(3대): 2024.11월 - 온도시험분야 등(30대): 2024.12월	- 고층시험분야(1대): 2025.2월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기상청에 대해 시정요구 13건(중복 1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8건·제도개선 6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8	6	1	13
합계	-	-	-	8	6	1	13

기상청은 시정요구사항 13건에 대해 11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4.6%)하고 2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3	11	84.6	2
합계	13	11	84.6	2

고용노동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480억 7,600만원(1.4%)이 많은 31조 7,422억 8,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59억 3,700만원(4.3%)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50,447	250,447	344,649	94,202	342,259	342,259	212,561	△129,698	△132,088
기 금	28,953,741	28,953,741	30,091,696	1,137,955	30,951,947	30,951,947	31,529,721	577,774	1,438,025
총수입	29,204,188	29,204,188	30,436,345	1,232,157	31,294,206	31,294,206	31,742,282	448,076	1,305,937

문의 : 오민석 예산결산조사관 ohmin3259@assembly.go.kr (02-6788-0000)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6,780억 800만원(△1.9%)이 적은 34조 5,468억 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73억 4,700만원(2.6%)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674,114	6,674,114	5,787,760	△886,354	5,815,148	5,815,148	5,712,100	△103,048	△75,660
기 금	28,276,425	29,094,542	27,871,753	△1,222,789	27,867,377	29,409,720	28,834,760	△574,960	963,007
총지출	34,950,539	35,768,656	33,659,513	△2,109,143	33,682,525	35,224,868	34,546,860	△678,008	887,347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422억 5,900백만원으로, 4,198억 3,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125억 6,100만원이 수납(수납률 50.6%)되고 2,049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어 22억 8,9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증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23,517	323,517	-	323,517	358,221	169,369	186,564	2,28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486	83	40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742	18,742	-	18,742	61,127	43,107	18,020	-
지역지원계정	17,904	17,904	-	17,904	56,232	38,212	18,02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838	838	-	838	4,896	4,896	-	-
합 계	342,259	342,259	-	342,259	419,836	212,561	204,987	2,289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3,550억 1,700만원으로, 6조 1,334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5%)되고 26억 2,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189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5,552,020	5,552,020	17,099	20,441 △20,441	101,388	5,670,507	5,463,160	2,623	204,7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89,566	89,566	-	-	-	89,566	89,565	-	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887	183.887	-	50 △50	-	183,887	179,138	-	4,749
지역지원계정	166,611	166,611	-	50 △50	-	166,611	161,862	-	4,749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7,276	17,276	-	-	-	17,276	17,276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411,057	411,057	-	-	-	411,057	401,619	-	9,438
합 계	6,236,530	6,236,530	17,099	20,491 △20,491	101,388	6,355,017	6,133,482	2,623	218,91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47조 1,872억 9,400만원으로, 49조 2,677억원이 징수결정되어 41조 4,311억 4,900만원이 수납(수납률 84.1%)되고 7조 4,600억 9,100만원은 미수납되어 3,764억 5,800만원은 불납결손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고용보험기금	23,413,642	23,413,642	24,177,384	22,067,918	2,041,479	67,987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0,295,013	20,295,013	17,127,297	15,592,315	1,435,924	99,058
임금채권보장기금	972,809	972,809	5,035,569	1,006,157	3,830,242	199,17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004,757	2,004,757	2,334,825	2,304,378	27,772	2,675
근로복지진흥기금	501,073	501,073	592,624	460,381	124,674	7,568
합 계	47,187,294	47,187,294	49,267,700	41,431,149	7,460,091	376,458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47조 1,874억 8,300만원으로, 41조 4,311억 4,900만원이 지출(집행률 87.8%)되고 4,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272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고용보험기금	23,413,642	23,413,642	87	23,413,729	22,067,918	21	309,30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기금	20,295,013	20,295,013	102	20,295,115	15,592,315	24	256,441
임금채권보장기금	972,809	972,809	-	972,809	1,006,157	-	50,29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2,004,757	2,004,757	-	2,004,757	2,304,378	-	2,199
근로복지진흥기금	501,073	501,073	-	501,073	460,381	-	9,009
합 계	47,187,294	47,187,294	189	47,187,483	41,431,149	45	627,248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고용노동부 자산은 전년 대비 3조 1,355억 3,600만원이 증가한 49조 6,983억 7,9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3조 94억 6,900만원 증가하고 일반유형자산이 971억 8,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4,040억 95백만원 증가한 42조 209억원으로, 이는 장기차입부채가 2조 5,824억 1,500만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비유동부채가 1조 5,930억 4,700만원 증가하고 유동부채가 1조 3,876억 6,8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조 7,314억 4,100만원이 증가한 7조 6,774억 7,9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3조 6,397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6,324억 5,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4조 3,837억 7,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563억 8,9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49,698,379	46,562,842	3,135,536	6.7
		유동자산	11,845,506	8,836,037	3,009,469	34.1
		투자자산	34,349,954	34,330,191	19,764	0.1
		일반유형자산	3,383,786	3,286,598	97,188	3.0
		무형자산	25,019	19,545	5,474	28.0
		기타비유동자산	94,114	90,472	3,642	4.0
	부 채		42,020,900	41,616,805	404,095	1.0
		유동부채	1,469,429	81,761	1,387,668	1,697.2
		장기차입부채	7,734,350	10,316,765	△2,582,415	△25.0
		장기충당부채	34,118	28,322	5,796	20.5
		기타비유동부채	32,783,003	31,189,957	1,593,047	5.1
	순자산		7,677,479	4,946,037	2,731,441	55.2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33,639,707	31,007,252	2,632,455	8.5
	재정운영순원가		33,522,879	31,529,314	1,993,564	6.3
	재정운영결과		4,383,777	2,827,387	1,556,389	55.0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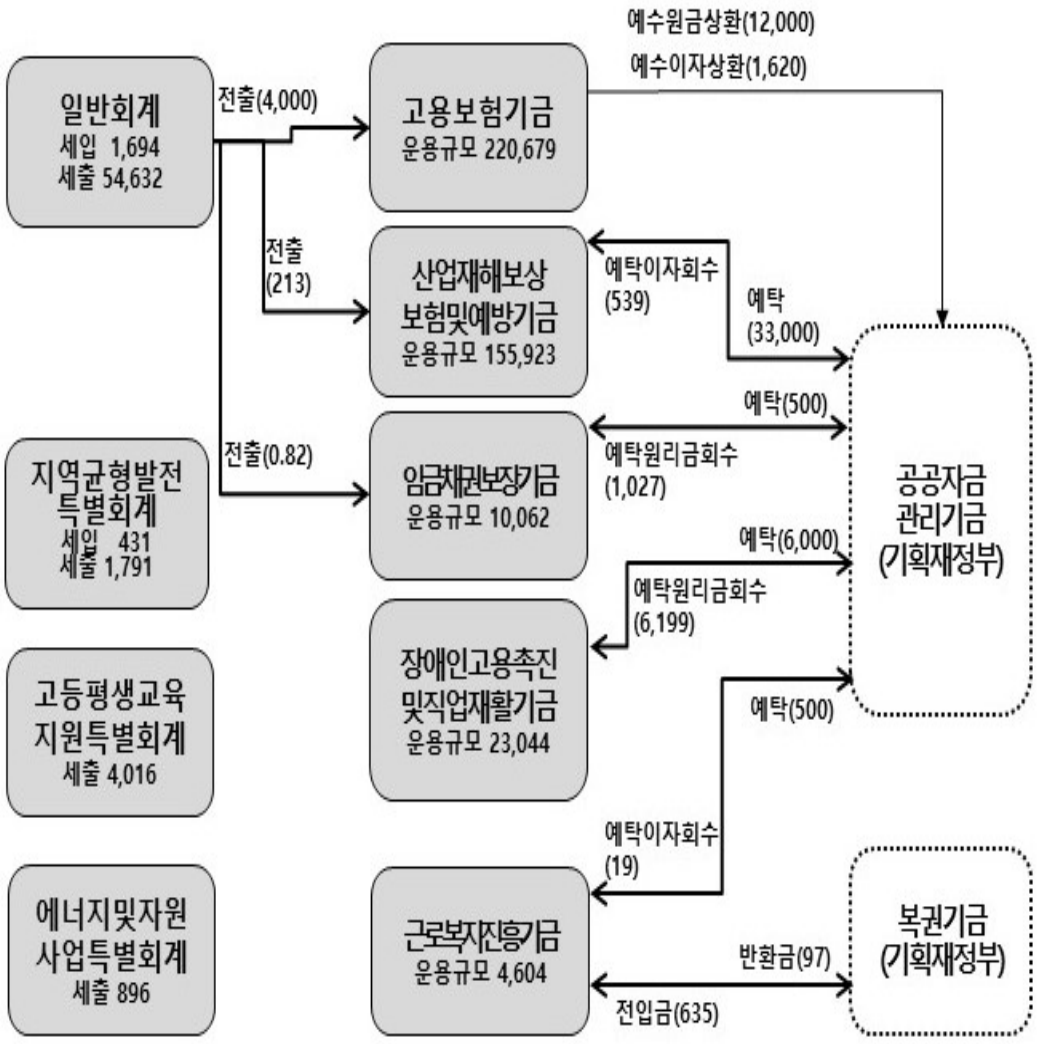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구조는 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4개 회계와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4,000억원,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으로 213억원,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82백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고용보험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1조 2,000억원과 예수이자 1,620억원을 상환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 53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3조 3,0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1,000억원, 예탁이자 27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6,000억원, 예탁이자 19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하였음.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이자 19억원을 받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500억원을 예탁하였으며, 복권기금으로부터 635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97억원을 반환하였음.

[2024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고용노동부는 청년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산업현장 핵심 인력 양성, 고용안전망 내실화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총 246개 세부사업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기준 26.3%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인 30.3%에 비해 다소 저조하고, 특히 청년 선발형(24.7%), 비경활 선발형(16.4%)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구직급여 사업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구직급여 의존행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반복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지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단기취업 등의 고용 관행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반복수급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산업재해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산재근로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넷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법정부담금 사업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을 제정할 당시 대지급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비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여 경감 비율 상한을 50%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을 고려하여 현행 경감비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이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내 취업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국민취업지원지원제도는「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으로,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2]은 예산현액 1조 33억 9,100만원 중 1조 28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연말 구직촉진수당부족으로 608억 3,600만원의 예비비가 집행되었음.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3]은 예산현액 89억 5,5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4]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지특)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비비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E)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42,515	942,515	40	-	60,836	1,003,391	1,002,899	-	492	1,010,865
국민취업지원제도(지특)	8,955	8,955	-	-	-	8,955	8,955	-	-	8,9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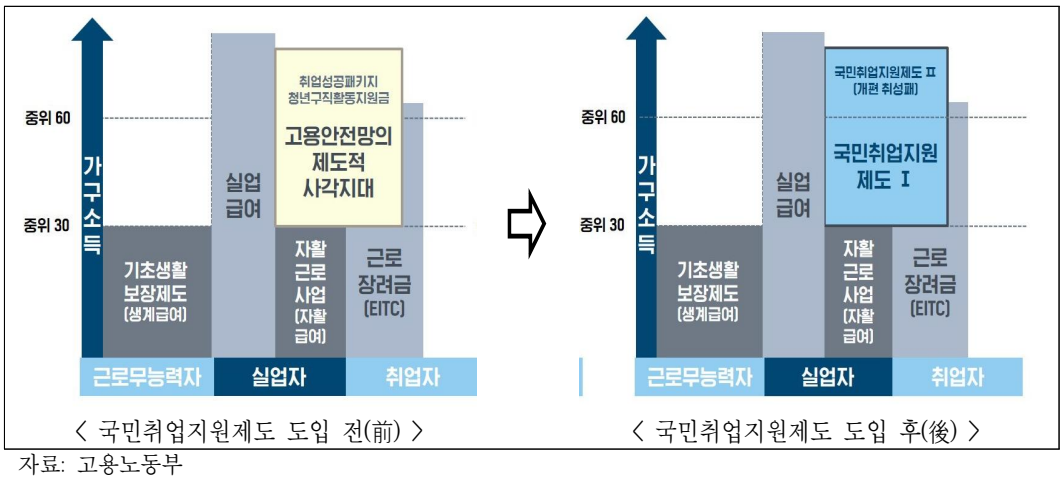
2) 일반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1234-300)(고용서비스정책관)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민취업지원제도(7041-316)(고용서비스정책관)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경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사는 있으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저소득 구직자 등(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실업자, 고용보험 혜택이 종료된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다가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구직자 등)에게 소득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는 것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후 고용안전망 비교]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전(前) 〉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후(後) 〉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만 제공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1유형 내에서도 최근 취업여부를 기준으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요건심사형은 저소득층이면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선발형은 저소득층이지만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음.

이러한 구분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구직촉진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는 수요를 방지하기 위함임. 요건심사형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참여자로 확정되어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지만, 선발형의 경우 요건에 해당하여 신청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 하에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요건				지원내용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800시간) 이상	○	○	×
	선발형	청년	15~34세	중위소득 120%↓	5억원↓	×			
		비경활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원↓	2년이내 100일(800시간) 미만			
2유형	특정계층		15~69세	×	×	×	○	×	○
	청년		15~34세	×	×	×			
	중장년		35~69세	중위소득 100%↓	×	×			

자료: 고용노동부

2022~202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목표 대비 실제 참여인원 규모가 다소 부진하였으나, 매해 지속적으로 목표 인원을 감소시켰고 그 결과 2024년에는 지원인원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음.

[2022~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별 목표 대비 실제 참여인원(수급자격 인정 기준)]

(단위: 백만원, %)

유형		연도	참여 인원(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유형		연도	참여 인원(수급자격 인정 인원)		달성률
			목표	실제					목표	실제	
Ⅰ유형	요건심사형	2022	250,000	86,233	34.5	Ⅱ유형	특정계층	2022	10,000	12,983	129.8
		2023	200,000	83,595	41.8			2023	20,000	15,029	75.1
		2024	88,100	88,431	100.4			2024	9,870	12,535	127.0
	선발형 비경활	2022	80,000	30,242	37.8		청년층	2022	80,000	37,801	47.3
		2023	60,000	28,697	47.8			2023	40,000	39,709	99.3
		2024	20,000	26,690	133.5			2024	40,000	40,259	100.6
	선발형 청년특례	2022	170,000	100,495	59.1		중장년층	2022	10,000	14,046	140.5
		2023	140,000	114,454	81.8			2023	10,000	14,565	145.7
		2024	140,000	134,543	96.1			2024	9,810	12,767	130.1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4년 기준 26.3%로,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인 30.3%에 비해 다소 저조하고, 특히 청년 선발형(24.7%), 비경활 선발형(16.4%)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며,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조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2024년 기준 전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는 24만 7,546명이고, 이 중 수급기간 내 취업한 인원은 6만 5,068명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6.3%였음.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은 2022년 28.1%에서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21~2024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수급기간 내 취업 현황]

(단위: 명,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1]	332,528	214,758	224,431	247,54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2]	83,859	60,264	61,051	65,06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5.2	28.1	27.2	26.3
	요건 심사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41,908	85,194	82,730	87,59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41,970	28,173	27,312	27,776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9.6	33.1	33.0	31.7
	청년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130,177	99,802	113,411	133,632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34,086	27,590	29,055	32,967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26.2	27.6	25.6	24.7
	비경활 선발형	전체 구직촉진수당 수급자 수(A)	60,443	29,762	28,290	26,318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자 수(B)	7,803	4,501	4,684	4,325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B/A)	12.9	15.1	16.6	16.4

주 1) (A): 해당년도 1회차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은 자(심사결정일 기준 해당년도에 기재)
2) (B): (A)에 해당하는 사람 중 취·창업일자가 구직촉진수당 지급계획 기간 내에 있는 자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6월 마감 기준)

반면 2024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30.6%로, 2020(26.8%)~2024년간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현황]

(단위: 천명,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수급인원	수급기간 중 재취업자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재취업률
1,211	325	26.8	1,337	359	26.9	1,211	339	28.0	1,237	374	30.3	1,244	380	30.6

주) 수급인원: 수급종료자 기준, 자영업자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이미 노동시장 경력을 가진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와 재취업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직장경험이 없는 청년·경력단절여성·노무제공자 등 불완전취업자와 같이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직활동의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어 수급자의 구직활동 어려움이 심화되는 점과, 2024년 구직촉진수당 수요증가로 당초 예산 6,718억 3,800만원보다 814억 4,600만원 많은 7,532억 8,400만원이 집행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사정을 고려할 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세부적으로는 청년 선발형(24.7%), 비경활 선발형(16.4%)의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는데, ① 청년의 경우 소득으로 인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더라도 자기주도적인 취업활동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므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직업훈련 등을 통해 참여기간 동안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 지원금 수급을 위한 시간보냄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고, ② 비경활 선발형의 경우 일 경험 부족을 해소하고 취업의지를 제고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동안 수급자가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적정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내 취업률을 제고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대상 변경을 고려한 적정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062억 8,000만원 중 4,870억 300만원이 집행(집행률 80.3%)되고, 1,192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5)]

[2024년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청년일자리창출지원	657,680	657,680	-	-	657,680	537,609	-	120,071	802,597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607,780	607,780	-	△1,500	606,280	487,003	-	119,277	802,59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하나의 유형으로 운영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유형1’(사업주 지급)과 ‘유형2’(빈일자리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 및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로 구분하여 운영 중임.

① ‘유형1’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② ‘유형2’는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해당 빈일자리 기업에서 6개월·12개월·18개월·24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 근로자’에게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6)]

5) 일반회계-청년일자리창출지원(1043-301)(청년고용정책관)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5년 제1회 추경안에서 총 254억 1,600만원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① 당초 지원대상 청년에서 제외되었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사업대상자 확대와 ② ‘유형2’의 ‘6개월 및 12개월 근속인센티브 신설’로 인한 것임.

나. 검토의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사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달리 ‘취업애로청년’으로 지원대상을 축소하였음에도 기존 사업 참여자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한 예산을 편성하여 1,192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선행한 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은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임.

과거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는 달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수혜자가 ‘일반 청년’에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과 같은 ‘취업애로청년’[7] 으로 변경되고, 지원기업에서 중견기업이 제외되는 등 사업 요건이 변화하였음.

[청년채용장려금 사업 비교]

구분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17~21년)	청년채용 특별장려금 (21년 한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 요건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예외)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원칙)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예외) 지식서비스 산업 및 미래유망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23년) 최소 매출액 기준 설정
청년 요건	**청년이면 별도 제한 없음 (15~34세)**		**취업애로청년** 6개월 이상 장기 실업(24년 4개월), 고졸 이하 학력, 자립지원 필요청년 등
지원 수준	월75만원×3년 (최대 2,700만원)	월75만원×1년 (최대 900만원)	(24년) 월60만원×1년 + 480만원 (2년차) (최대 1,200만원)
			(22년) 월 80만원×1년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정규직 채용 6개월 고용유지

자료: 고용노동부

7) 2025년 기준 사업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은 ①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②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③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④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⑤ 청년도전지원사업수료청년, ⑥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⑦ 북한이탈청년, ⑧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⑨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임.

고용노동부는 사업대상과 요건이 달라졌음에도 2019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수혜자의 고용유지율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당초 계획한 고용유지율인 92%보다 실제 고용유지율이 83%로 약 10%p 낮아 1,192억 7,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함.

지원 대상 청년 및 기업의 범위를 축소하였음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수혜자의 고용유지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대상자인 취업애로청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전에는 '취업애로청년'을 특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부재하여 참고할 고용유지율 자료가 없었고, 다양한 유형의 청년이 포함되어 있는 '취업애로청년'은 일반적인 청년고용통계 적용에 한계가 있어 유사한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의 2019년 고용유지율을 적용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취업애로청년'의 특성과 2022년 불용액 3,094억 4,800만원(집행률 43.0%), 2023년 불용액 1,696억 4,900만원(집행률 80.9%)이 발생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임.[8)9)]

8)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① △77억원 감액의견에 대해 원안유지를 희망하고, ② 2023년도 집행률이 90%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2023년도 실제 집행률은 80.9%(1,696억 4,900만원 불용)에 불과하였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77억원이 감액 조정이 되었다면 불용액(2024년 1,192억 7,700만원 발생)이 감소하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음.

〈'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관련 내용〉

○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202페이지, 11번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2022년·23년 집행률을 고려, 신규 지원 인원을 감축하여 77억 원 감액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서삼석** 부처 의견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도약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022년까지는 집행률이 43%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집행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71.3%고요 연말까지 한 9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상임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됐었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원안 유지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해서, 상임위 논의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

9) 더욱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6개월 고용유지를 한 인원들에게 지급된 장려금으로,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명단을 제출토록 하고 그 중 6개월을 근속한 인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사업구조상 분명한 차이가 존재함.

[2022~2024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2년	542,820	542,769	-	-	-	542,769	233,321	43.0	43.0	-	309,448
2023년	889,078	889,078	-	-	-	889,078	719,429	80.9	80.9	-	169,649
2024년	607,780	607,780	-	-	-	606,280	487,003	80.1	80.3	-	119,277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향후 고용장려금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자의 고용유지율 등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10)]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유지율 비교〉

(단위: %)

고용유지기간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92	90	87	84	82	80	78	-	50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22년		83	78	75	73	71	69	68	43	40
	'23년	전체	83	80	77	75	72	70	67	-	-
		제조업	83	80	77	74	72	70	67	-	-

자료: 고용노동부

10) 현재는 2022년 말에 채용된 '취업애로청년'의 고용유지율까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2025년 예산부터는 실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자의 고용유지율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3.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집행부진 등

가. 개 요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은 수지차보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838억 1,400만원 중 1,755억 8,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5%)되고, 82억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11)]

[2024년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184,482	184,482	-	△668	183,814	175,582	-	8,232	182,333
자체수입	△113,440	△113,440	-	-	△113,440	△113,440 [△129,890]	-	-	△129,983
청년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24,210	△24,210	-	-	△24,210	△15,310	-	-	△24,21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4년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감면하는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수입인 자격검정수입이 242억 1,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수지차 보전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응시료 감면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감소분 242억 1,000만원만큼을 추가로 공단 운영지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11) 일반회계-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1043-301)(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응시료 지원 사업은 당초 목표 대비 집행실적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사업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설계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 고용노동부는 청년(만 19~34세)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3회까지는 응시료의 50%를 감면해주는 청년 응시료 지원사업을 수행하였으나, 당초 목표인 242억 1,000만원 중 약 153억원(목표대비 63.2%)만 지원이 이루어짐.

이러한 목표 대비 실적 부진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 및 시험장을 선택한 후 결제 단계에서 응시료 지원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화면을 구현하였으나, 시험장 선점 등을 위해 최단시간 내에 원서접수를 종료하고자 하는 수험자의 특성상 응시료 지원에 대한 확인과 지원여부 선택을 건너뛰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들간 수수료 지원 경험이 전파·확산되지 못하였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음.[12)]

처음부터 빠른시간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는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응시료 지원 절차를 설계했을 경우 적기에 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임.

향후 고용노동부는 유사사업 추진 시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지원절차를 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자체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1인당 지원 금액 한도를 정하여 국가기술자격 외에 국가전문자격·공인민간자격 및 어학시험 등 다양한 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 99개·2024년 129개·2025년 135개 지자체에서 청년 대상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2) 2025년의 경우 지원절차를 개선하여 응시료 지원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응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응시료 지원을 받지 않는 선택을 하도록 설계한 결과 집행이 개선(7월말 기준 집행률 63.2%)되었다고 설명하였음.

[2023~2025년 지자체별 주요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현황(예시)]

2023년			2024년			2025년		
지역 (지자체)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역 (지자체)	지원내용	지원 한도	지역 (지자체)	지원내용	지원 한도
서울 (동대문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20만원	서울 (양천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서울 (도봉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10만원
인천 (남동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인천 (연수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인천 (계양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어학	10만원
경기 (광명시)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30만원	경기 (평택시)	국가기술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30만원	경기 (안산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30만원
강원 (원주시)	국가기술자격, 어학	5만원	강원 (삼척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강원 (고성군)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100 만원
충남 (천안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7만원	충남 (천안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충남 (계룡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5만원
울산 (북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5만원	울산 (울주군)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0만 원	대구 (남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10만원
부산 (금정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어학	10만원	부산 (사상구)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어학	10만원	울산 (남구)	국가기술자격	10만원
경북 (경주시)	취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자격	10만원	경북 (경주시)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어학	10만원	부산 (기장군)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공인민간자격	10만원
등 총 99개 지자체			등 총 129개 지자체			등 총 135개 지자체		

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11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당시 지적된 이 사업의 지자체와의 중복지원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장간담회 결과 지자체에서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복지원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하였음.[13)]

그러나 이 사업 이후 지자체가 응시료 지원을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 대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34세 이하 청년이지만, 지자체 사업은 사업 대상(다양한 자격시험) 및 요건(거주, 연령, 취업, 신청시기, 금액 등)이 상이하고, 응시료 지원 사업은 감면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선지원 방식으로, 응시료 결제 후 사후 증빙을 통해 실비를 지원 받는 지자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료 수준이 다양(최저 14,500원~166,700원)하여 지원 금액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국가기술자격 1회 응시료 50% 미만을 지원받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청년층이 합리적 선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험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음.

다양한 제도를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이중으로 행정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시스템과 홍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우려가 있음.[14)]

---

13) <'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사업 관련 내용>

○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다음 198쪽, 7번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내역사업인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입니다.
다수 지자체 사업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 일반에서 미취업 청년으로 수혜 범위를 축소하고 80억 원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서삼석**: 부처 의견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생략)
○ **이원택 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그 중복되는 만큼 일부 감액을 하자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중지원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아닌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조사된게 있냐 이 말이지요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간담회를 몇 번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지자체에서는 응시료 지원을 아마 철회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은 중복 지원의 우려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

14)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응시료 지원 사업은 '사후 현금 지원' 사업이나, 고용노동부의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은 원서접수 시점에 응시료를 할인하는 '선 지원' 방식의 사업으로 사업 간 중복 우려가 없어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른 협의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 또한 있으므로 지자체와의 이중지원으로 인한 비효율을 완화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 · 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 · 직업능력계정)】

〈지 출〉

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보조사업연장 평가 반영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체 훈련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게 체계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대·중소 상생의 직업훈련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250억원 중 1,248억 2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1억 9,800만원이 불용되었음.[15)]

[2024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125,000	125,000	-	125,000	124,802	-	198	129,325
산업맞춤형	71,000	71,000	-	71,000	71,000 [70,906]	-	-	71,225
하이테크형	40,000	40,000	-	40,000	40,000 [29,788]	-	-	38,000
대중소상생아카데미	12,200	12,200	-	12,200	12,200 [8,975]	-	-	18,3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의 경우 훈련 인프라(훈련장비 및 시설, 교강사 등)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우수한 훈련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대학) 등이 협력기업 등 중소기업과 컨소시엄(협약체결)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음.

15) 고용보험기금-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지원(1153-350)(직업능력정책국)

협약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발굴하고 중소기업 협력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훈련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인프라 비용을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대기업 등에게 지원하고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업 사업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첫째, 내역사업인 하이테크형은 연도 중 뒤늦게 보조사업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였고, 변경된 사업내용에 따라 다시 선정기관들에 대한 컨설팅과 역량검증을 하여 실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유사한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내역사업인 ‘하이테크형’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및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의 중소협력기업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보조사업연장평가(2023년 5월 30일)에서 중소기업 훈련 지원을 중심으로 우수한 훈련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어 ‘사업방식변경’을 결과로 받았음.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16]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17]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 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조사업연장평가와 해당 세부사항을 규정한 지침의 취지는 보조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에 따른 사업방식 개선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내용을 공고하여 2024년 2월에 신규선정 기관을 모집해 8개 기관을 선정하였음.

이후 2024년 5월에 뒤늦게서야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재직자 훈련을 의무화해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직자 중심훈련 강화를 위한 개편방안' 을 마련하고 사업내용을 변경하였음.

[2024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 개편 내용]

항목	개편 전	개편 후
정체성 재확립	■ 지역주민, 학생(초등생 포함), 중소/협약기업 등 대상	■ 지역주민 수혜 제한, 중소/협약기업 중심, 중견/대기업(일부) 대상 확대
기금 합목적성 강화	■ 재직자 훈련 선택 적용	■ 재직자 훈련 의무화
공유개방 재설계	■ 개인 단위 공유・개방 ■ 학생・지역주민 체험 위주	■ 지역기업(기관) 연계 공유・개방 ■ 기업연계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기존 40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개편방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을 위한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2024년 2월에 신규로 모집한 8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편 방안 수행 가능 여부를 추가적으로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규지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문가 컨설팅과 역량검증 등을 2024년 7월~10월간 하였음.

16)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지침」
제22조(예산편성 및 기타 재정운용과의 연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반드시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관련조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기타 재정운용에 반영할수있다.

1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③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내용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역량검증 후 2024년 12월에서야 공동훈련센터 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8개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8개 기관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였고, 실집행 단계에서 불용액 102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음.

사전에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했다면 연도중에 컨설팅 및 역량검증과 같은 추가적인 행정부담 없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 평가 결과를 뒤늦게 반영하여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4년 신규 내역사업인 대중소 상생아카데미는 계획대비 참여가 저조해 2차 및 3차 공고를 추가로 내었고 하반기 선정물량의 집행시간이 부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과도한 목표설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대중소 상생아카데미 사업은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인증을 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대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후에 인증을 받고 대학이나 협회와 같은 수행기관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 훈련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임.

고용노동부는 사업 설계 이후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수렴 및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100개 프로그램 개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음.

1차 공모('23.12.29.~'24.2.5.) 당시 8개 기업만 참여하여 61개의 프로그램만이 개설되었고, 2~3차 공모('24.4.29.~6.30.)까지 추진하여 9개 기업의 39개 추가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총 100개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였음.

그러나 ① 전반기 조선업종 모집실적이 부진하였고, ② 하반기 선정프로그램의 경우 훈련생 모집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간의 부족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며, 교부된 보조금 89억 7,500만원 중 36억 900만원(40.2%)이 불용되었음.

[2024년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개)

공모 및 선정시기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훈련업종	목표 인원 (A)	모집 인원 (B)	B/A	교부액 합계	불용액	프로그램 수
공모 ('23.12.29.~ '24.2.5.) 및 선정 ('24.3.8.)	HD현대중공업	조선	1,190	432	36.3%	1,362	973	12
	SK에너지	정유·화학	1,332	1,270	95.3%	301	4	2
	삼성SDI	2차전지	210	210	100%	207	-	2
	세메스	반도체	180	128	71.1%	244	42	3
	HD현대삼호	조선	4,695	4,373	93.1%	1,266	437	24
	HMM오션서비스	해운	654	590	90.2%	433	43	5
	LX하우시스	인테리어	50	45	90%	194	40	2
	포스코	철강	2,540	2,217	87.3%	2,063	805	11
	합계		10,851	9,265	85.4%	6,070	2,344	61
공모 ('24.4.29. ~6.30.) 및 선정 ('24.8.8.)	부산교통공사	철도운전	240	-	-	236	236	4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	195	178	91.3%	239	49	2
	명신	자동차	440	64	14.5%	243	105	3
	삼성전자 로지텍	운송	552	207	37.5%	349	155	3
	우진플라임	사출	1,164	570	49%	592	212	14
	LS일렉트릭 (한국기술교육대)	스마트팩토리 등 공정관리	270	203	75.2%	364	157	4
	에드워드코리아 (한국기술교육대)	진공펌프 등 품질관리	120	40	33.3%	185	42	2
	코닝정밀소재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	90	62	68.9%	172	20	1
	두산 (한국생산성본부)	품질관리 및 AI	1,650	274	16.6%	525	289	6
	합계		4,721	1,598	33.8%	2,905	1,265	39
합계			15,572	10,863	69.8%	8,975	3,609	100

자료: 고용노동부

근본적인 집행부진의 원인은 결국, 1차 공모 당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 당초 예상보다 적어 추가적인 공모절차를 거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부족하게 된 것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신규사업이다 보니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부족하였으며, 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훈련인증체계를 구축하는 등 행정절차 상의 부담이 있어 수요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음.

신규사업의 인지도 부족과 행정절차상 부담은 예견되는 측면이 있고, 과도한 사업 인원의 설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정적인 고용행정자원을 내실있는 훈련 제공보다 인원모집에 집중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과도한 목표 설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18)]

18) 참고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1월 17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① △24억 4,000만원 감액의견과 △24억원 감액의견에 대해 원안유지를 희망하고, ②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 있고 참여하겠다는 대기업들도 꽤 있다고 설명을 하였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집행 단계에서 불용액이 36억 900만원 발생하였고, 수요 또한 저조하여 1차 공모에 이에 2~3차 공모까지 진행하였음. 향후 고용노동부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향적으로 심의에 임할 필요가 있음.

〈'24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록 중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 관련 내용〉

○ **수석전문위원 지동하**: 2번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지원 사업입니다.
내역사업인 대중소상생아카데미 사업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으로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80개 프로그램으로 축소하고 차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24억 4000만 원 감액 의견과 24억 감액 의견이 있습니다.
○ **소위원장 서삼석**: 부처 의견 주십시오.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략)
○ **이원택 위원**: 저는 사업 추진은 공감이 되고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데 개발비용에 대한 분석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 100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조사돼 있습니까, 앞으로 해 갈 예정입니까?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지금 수요는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대기업들도 꽤 있고 중소기업은 당연히……**
○ **이원택 위원**: 그러니까 100개 프로그램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
○ **고용노동부차관 이성희**: 아직 확정돼 있진 않습니다.

자료: 국회 회의록 시스템

5.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제도개선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부적정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은 외국인 유학생을 인구소멸지역의 제조업·뿌리산업에 숙련인력으로 신속공급하기 위하여 재학 단계부터 기능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24억원 중 69억원이 집행(집행률 55.6%)되고 55억원이 불용되었음.[19)]

[2024년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현장일학습 병행지원	311,632	311,632	-	311,632	301,547	-	10,085	276,632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12,400	12,400	-	12,400	6,900 [285]	-	5,500	순감 (내역통합)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훈련모집 대상(외국인 유학생)의 체류자격(D-2, D-10)[20)]에 따라 운영 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공동훈련센터에는 운영비 및 훈련시설·장비비와 훈련비(OFF-JT)를 지원하고, 참여기업에는 훈련비 및 훈련과정개발비, 기업전담인력수당을 지원하고자 하였음.

[2024년도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유형]

구분	세부구분	체류자격	기간	세부내용
1유형	구간정시제	D2 소지자 졸업 후 D10 전환必	1~1.5년	▸ 잔여학기가 1학기 또는 2학기가 남은 시점에서 훈련을 시작하여 졸업 후에도 해당 기업에서 최소 6개월 이상 훈련을 지속하는 모형
	연수		1년	
2유형	구간정시제	D10 소지자	1~1.5년	▸졸업 후 일학습병행에 참여하여 훈련하는 모형
	연수		1년	

자료: 고용노동부

19) 고용보험기금-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1154-356)(직업능력정책국)

20) D-2비자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학위 과정에 등록한 학생들을 위한 비자를 의미하고, D-10비자는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임.

나. 검토의견

외국인 유학생 대상 취업비자 제도개선을 전제로 외국인 유학생 일학습병행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관련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의 수요 저조로 인해 집행이 부진하였므로, 고용노동부는 향후 제도개선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일학습병행 훈련은 장기·숙련인력을 양성하는 훈련으로 훈련 중 및 훈련 후 해당 기업의 취업이 전제되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비자 발급규모는 극히 적고 기업과 유학생 모두 훈련 후 합법적으로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법무부와 별도요건을 충족한 일학습병행 참여 유학생의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23년 8월 법무부가 발표한 「비자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졸업한 유학생에 대한 3년간 취업 전면허용 내용을 근거로 2024년 본예산에 외국인 일학습병행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2024년내 유학생 취업비자 관련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었음.[21]

그러나 결국 2024년 연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2024년 5월에 운영기관 4곳, 11월에 1곳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훈련 인원이 적어 집행이 부진하였음.

[외국인 일학습병행 사업주체별 보조금교부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기관명)	기관 선정일	보조금 교부액	집행액	집행 기간	용도	집행내용
대림대학교	'24.5.31.	68	68	'24.6월 ~'24.12월	공동훈련센터 운영	공동훈련센터 전담자 인건비, 일반수용비(설명회, 모집행사, 사업 홍보비 등) 등
충북보건대학교	'24.5.31.	60	60			
한국공학대학교	'24.5.31.	83	83			
홍익대학교	'24.5.31.	74	74			

주) 2024년 11월 신규지정된 동의과학대의 경우 2025년부터 운영기간이 시작되어 2024년 보조금을 미교부함
자료: 고용노동부

향후 제도개선을 전제로 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계획대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아 집행이 부진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행 가능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21) 일학습병행 훈련 이수, 한국어 능력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향 등을 지속 협의하였음.

6.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연례적인 대부한도액 변경의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은 장기간(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계비를 융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454억 9,200만원 중 250억 5,500만원이 집행(집행률 55.1%)되고 204억 3,7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45,492	45,492	-	45,492	25,055	-	20,437	34,788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은 연도 중 전체 융자한도를 반복적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업종과 지역을 선별하여 우대지원하고자 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례적인 한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 중에 지속적으로 대부조건을 변경하고 있음. 2022년에는 중위소득 80%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소득요건을 완화하였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월 대부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총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였음.

직업훈련생계비의 대부조건은 훈련기간과 생계비 수준 등을 감안하여 정책적으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설정되어야 함에도 연도 중에 지속적으로 한도액이 변화하는 것은 사업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22) 고용보험기금-직업훈련생계비대부(1160-352)(직업능력정책국)

[2020~2024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의 연도중 사업내용 변경 사례]

(단위: 백만원)

연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변경 시점	전체 융자 금액	변경전 융자 금액	변경 후 융자 금액
'20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대상)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한도) 월 300만원, 총 2,000만원 (지원대상)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폐업·휴업 중인 자영업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수준 악화 감안 요건 완화	'20.7.1. (~12.31.)	101,808	17,676	84,132
'22	(소득요건) 중위소득 80%이하	(소득요건) 중위소득 이하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22.7.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장기 직업훈련 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대부 요건 완화	'22.8.1. (~12.31.)	53,848	33,547	20,301
'23	(지원한도)월 2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지원한도)월 300만원, 총 한도 1,500만원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23.2)」에 따른 생계비 대부한도 한시적 확대	'23.3.1. (~6.30.)	78,953	8,075	38,297
	(지원한도)월 300만원, 총한도 1,500만원	(지원한도)월 200만원, 총 한도 1,000만원		'23.7.1.		46,372	32,581
'24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000만원	(지원한도) 월 200만원, 총 1,500만원	장기훈련 참여 훈련생 대상 대부지원을 통한 생계부담 경감 ⇒ 직업훈련 몰입도 제고	'24.8.1. (~12.31.)	25,055	14,781	10,274

자료: 고용노동부

특히 전체 대부 한도액의 증액은 「고용보험법」과 동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23]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는 '저소득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24]

대부의 신청·결정 절차,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25]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제한된 재원 내에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은 선별하여 우대지원함으로써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부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23)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다.

2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 대부) ① 법 제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피보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수준 및 종전의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3.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4.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생계비 대부 신청 시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등이었던 사람(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제35조제5호바목에 해당하는 피보험자등
6. 그 밖에 생계비 대부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피보험자등
④ 제3항에 따른 대부의 신청 · 결정 절차에 관한 사항, 대부결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대부금액 및 상환방법, 그 밖에 대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5)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
제12조(대부한도) ① 월별 대부액과 대부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2.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별고용지원업종 또는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부한도액을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서민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직업훈련의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경제상황 등에 따른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대상 등을 한시 확대 운영하였으며, 이는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였음.

전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한도액의 인상으로 저소득 피보험자를 지원하여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한정된 재원 내에서 생계비 융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에서 근로하거나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등에게 차등적으로 한도액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지원대상 직업훈련에서 원격재생형 훈련을 제외하였으나 실적관리의 미비로 융자수요 감소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함에 따라, 지출계획액을 과다하게 편성해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는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융자지원대상 직업훈련에서 제외하는 제도개선을 하였고, 이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고려하여 전년(535억 2,000만원)대비 △80억 2,800만원 감액된 454억 9,200만원을 계획액으로 편성하였음.

[2019~2024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결산내역 및 2025년 계획]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2021	43,443	183,745	-	183,745	173,005 [173,005]	94.2	94.2	-	10,740
2022	41,030	59,780	-	59,780	53,848 [53,848]	90.1	90.1	-	5,932
2023	53,520	95,559	-	95,559	78,953 [78,953]	82.6	82.6	-	16,606
2024	45,492	45,492	-	45,492	25,055 [25,055]	55.1	55.1	-	20,437
2025	34,788	34,788	-	-	-	-	-	-	-

자료: 고용노동부

제도개선 결과 원격훈련 대상 융자금액은 2023년(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및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392억 5,900만원에서 2024년(비대면 실시간 원격 훈련) 24억 6,000만원으로 △367억 9,900만원 감소하였음.

[2020~2024년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사업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단위: 명,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지원 인원	지원 금액
전체	17,120	101,808	29,901	173,005	10,840	53,848	14,611	78,953	4,535	25,055
원격훈련*	2,220	22,343	9,897	45,192	4,820	23,070	8,020	39,259	494	2,460
집체훈련	14,900	79,465	20,004	127,813	6,020	30,778	6,591	39,694	4,041	22,595

주) 원격훈련의 경우 2020~2023년까지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모두 지원하였으며 2024년에는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만 지원하였음
자료: 고용노동부

결국 2024년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사업의 당초 계획액 454억 9,200만원 중 204억 3,700만원이 불용되고 집행률도 55.1%로 부진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가 원격훈련 중에서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 실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 변화에 따른 융자수요 감소를 적절하게 추계하지 못했기 때문임.[26)]

고용노동부는 향후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26)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 전체 실적만을 관리할 뿐 원격훈련 내에서 비대면 실시간 원격훈련과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으로 분류하여 실적을 관리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음.

7.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해소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금속・동력・전기 및 전자 등 중요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130억 9,800만원 중 1,985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4%)되고 1,145억 2,600만원이 불용되었음.[27)]

[202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내일배움카드(고보)	734,204	721,342	32	721,374	571,022	-	150,352	603,198
국가기간・전략 산업직종훈련	325,960	313,098	-	313,098	198,572	-	114,526	205,16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가능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 **지원내용**

- 훈련비 전액 (1회에 한함)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절차**

심사평가 공고	⇨	기관평가 및 과정심사・선정	⇨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훈련기관		고용센터

주) 심평원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27) 고용보험기금-내일배움카드(고보)(1151-352)(직업능력정책국)

나. 검토의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유사 사업인 첨단산업 디지털핵심 실무인재 양성 훈련의 훈련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훈련 수요가 감소하고 집행이 부진하므로, 훈련 간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은 2024년도 계획현액 3,130억 9,800만원 중 1,985억 7,200만원이 집행(집행률 63.4%)되고 1,145억 2,6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이 부진하였음.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해 정보통신 직종에서는 지원 분야가 동일한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 훈련(이하 'K-디지털트레이닝' 이라 함)의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설명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K-디지털트레이닝은 일부 동일한 훈련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기간·전력산업직종훈련의 훈련장려금이 월 20만원으로, 월 11만 6,000원인 K-디지털트레이닝에 비해 더 많으나, K-디지털트레이닝은 월 20만원의 추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훈련 참여 시 월 최대 31만 6,000원을 수령할 수 있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에 비해 참여 유인이 더 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 비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K-디지털트레이닝)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
재원		고용보험기금(직업능력·고용안정계정)	일반회계
2024년 예산		3,259억 6,000만원	4,731억 8,800만원
훈련 목적		주요 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 직종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여 기술인력 양성공급을 통한 인력난 해소	첨단산업·디지털 신기술 현장 실무 인재 양성
훈련 업종		NCS 세분류 기준 86개 직종	21개 신기술 분야
운영 주체/방식		지방노동관서 / 직접	지방노동관서 / 직접
지원 내용 및 수준	훈련비	NCS 100%	과정별 상이
	훈련 장려금	최대 20만원/월	최대 11.6만원/월 (특별훈련수당 20만원, 단기과정 제외)

자료: 고용노동부

실제 두 훈련에서 동일하게 지원하는 일부 직종의 경우, K-디지털트레이닝의 훈련 인원은 증가하는 반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경우 감소하고 있음.[28)]

스마트웹&콘텐츠개발 분야를 예로 들면,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의 경우 2021년 4,341명에서 2024년 780명으로 감소하였으나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의 경우 2021년 503명에서 2024년 5,748명으로 증가하였음.

[2021~2024년도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및 K-디지털트레이닝 주요 유사 직종 훈련인원 비교]

(단위: 명)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대상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3D프린터 운용	747	472	358	404	12	19	37	70
AI 활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응용	593	501	212	89	3,396	4,446	4,838	5,139
VR/AR 콘텐츠 개발	-	58	34	25	232	533	1,287	1,741
디지털컨버전스	12,081	7,879	4,677	2,633	140	2,284	6,136	7,728
빅데이터 UI 전문가	562	416	-	-	251	359	360	-
빅데이터 분석	430	183	-	-	1,002	2,237	1,622	-
빅데이터 분석 및 UI 전문가	-	-	207	39	-	-	506	1,343
빅데이터 전문가	1,460	663	233	91	1,880	3,705	4,206	4,581
사물인터넷	254	102	-	-	615	583	171	-
사물인터넷 (홈·산업 IoT)	-	-	87	9	-	-	146	404
산업응용 로봇제어	144	43	23	36	132	81	62	75
스마트웹 &콘텐츠개발	4,341	2,829	1,938	780	503	2,431	4,027	5,748
스마트팜구축	29	15	34	40	-	-	17	23
스마트팩토리 설계	50	36	-	-	113	60	73	-

28) 3D프린터 운용의 경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인원규모가 더 큼. 고용노동부는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프로젝트 비율 30% 이상이 기본요건으로, 3D프린터 운용 과정의 경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려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비해 개설되는 경향이 적어 훈련실시 인원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단위: 명)

구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 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대상 직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스마트팩토리 설계·운영	-	-	76	214	-	-	172	464
스마트팩토리 운영 관리	-	6	-	-	96	136	188	-
정보시스템구축 (개발,운영)	1,514	707	404	214	412	1,432	3,092	3,968
제품SW구축	19	-	-	-	-	-	106	-
증강현실	35	-	-	-	160	205	195	-
클라우드 운영 관리	593	372	200	88	768	2,560	2,664	2,380
핀테크	73	67	24	12	427	603	717	530

자료: 고용노동부

K-디지털트레이닝의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향후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의 유사 직종 참여가 더욱 저조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사업과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과의 중복·유사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사업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대체인력뱅크: 알선취업 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대체인력뱅크’** 사업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육아 등으로 인해 대체인력 구인수요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0억원 중 29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4년도 대체인력뱅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고용안정장려금	233,836	347,495	-	-	347,495	339,913 [339,907]	-	7,582	390,894
출산육아기고용 안정장려금	180,638	294,297	-	-	294,297	293,798 [293,798]	-	499	336,637
대체인력뱅크	3,000	3,000	-	-	3,000	2,995	-	5	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체인력뱅크’의 경우 일부 민간보조사업자에서 2024년 알선건수 대비 실제 취업매칭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충분한 상담인력과 행정역량을 보유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적절한 대체인력 매칭으로 중소기업의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고용보험기금에서 민간보조 방식으로 ‘대체인력뱅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민간보조사업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기업의 대체인력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구인수요 발생 시 상담 및 알선서비스를 제공하였음.

29) 고용보험기금-고용안정장려금(1345-350)(통합고용정책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을 찾기 어려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30] 해당 사업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31]

이 사업은 2024년 25억 3,900만원이 실집행 되었고 총 5개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담당하였는데, 2024년 민간보조사업자의 대체인력 알선건수와 대체인력 매칭건수를 비교하면, 알선건수 대비 매칭건수의 비율이 사업참여자별로 과도하게 편차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알선 대비 매칭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사업참여자도 있었음.

30) 2022년「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결과 중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이유를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30~99인 이하 및 100~299인 이하 기업의 경우 업무 공백 부담 때문에(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미사용한 사유가 가장 많았으며, 5~29인 이하의 경우 회사에서 제도를 사용한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미사용하였음.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 이유 >

(단위: %)

기업규모	업무공백 부담 때문에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여서)	회사에서 제도를 사용한 사례가 없어서	대상이 아니어서 (임신 중 등)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서	필요하지 않아서	제도에 대해 잘 몰라서	경력중단을 원하지 않아서	신청을 했으나 반려되어서
5~29인 이하	23.9	30.5	14.2	9.2	11.5	3.5	3.4	1.3
30~99인 이하	27.4	23.5	16.3	8.8	10.7	4.9	3.3	1.6
100~299인 이하	33.7	18.4	12.9	11.0	11.0	4.3	3.1	1.8
300인 이상	23.1	12.4	22.3	19.5	8.0	5.2	4.4	1.6
전체	25.6	24.5	15.9	11.1	10.7	4.2	3.5	1.5

자료: 2022년 고용노동부「모성보호제도 활용 관련 실태조사」

31) 통계청이 발표한「2023년 육아휴직통계」를 보면 육아휴직자 대상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인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의 경우 300명 이상 기업이 9.6%로 가장 높았고, 모(母)의 경우 50~299명 규모의 기업이 81.6%로 가장 높았음. 반면, 5~49명 규모의 기업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4.8%, 모(母) 67.0%이고, 4명 이하 규모 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부(父) 3.9%, 모(母) 41.2%로,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육아휴직이 활성화되어있음.

<2022년 및 2023년 기업체 규모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

(단위: 명, %, %p)

	2022년(A)			2023년p(B)			증감(B-A)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전체	부	모
계	31.2	7.1	71.1	32.9	7.4	73.2	1.6	0.3	2.0
300명 이상	36.2	9.2	78.7	37.4	9.6	79.9	1.2	0.5	1.2
50~299명	29.9	5.9	79.7	32.3	6.6	81.6	2.4	0.7	1.8
5~49명	26.4	4.5	62.7	29.7	4.8	67.0	3.3	0.3	4.3
4명 이하	17.1	4.4	36.7	18.8	3.9	41.2	1.7	△0.5	4.5

주)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자/육아휴직 대상자)×1000
자료: 통계청

[2024년 대체인력뱅크 사업참여자의 사업 실적]

(단위: 백만원, 건, %)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부처 교부액	보조 사업자 실집행액 (A)	대체인력 수요발굴 건수(건)	대체인력 상담건수	대체인력 알선건수 (B)	대체인력 매칭건수 (C)	매칭건수 당 실집행액 (A/C)	알선건수 대비 매칭건수 (C/B)
㈜커○○○	1,274	1,274	4,370	7,594	8,776	3,602	0.35	41.0%
㈜제○○	230	230	327	2,551	5,102	225	1.02	4.4%
㈜지○○○○	331	328	509	6,420	7,422	989	0.33	13.3%
㈜스○○○	479	479	1,118	2,605	2,588	766	0.63	29.6%
○○여성인력 개발센터	231	228	409	1,220	901	332	0.69	36.8%
합계	2,545	2,539	6,733	20,390	24,789	5,914	0.43	23.9%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체인력 알선건수 대비 대체인력 매칭건수를 평가지표로 고려하는 것은 각 기관의 적극적인 매칭 노력이 오히려 해당 기관의 평가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알선건수가 매칭건수와 특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운영기관 간 알선건수 대비 매칭건수의 편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인력 채용경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영기관간 숙련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32)]

그러나 사업의 취지가 적절한 알선과 매칭을 통해 대체인력을 적기에 제공하는 것에 있음을 고려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5,102건의 알선 중 225건만 매칭된 사례는 구인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알선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향후 충분한 상담인력과 행정역량을 보유한 민간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적기에 적절한 대체인력 매칭이 이루어져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33)]

32) 고용노동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외부위원이 과반수인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재채움뱅크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담당인력 확보 여부 및 전문성,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사업수행 경험 및 담당인력을 보유한 기관을 선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민간보조사업자의 매칭 건수 당 보조금 실집행액이나 알선건수 대비 대체인력 매칭건수를 비교하면 보조사업자 간 숙련도 차이가 과도하게 나는 측면이 있음.

33)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① 인재채움뱅크 및 전용관 알선 기능 강화를 위해 실적에 따른 성과급 비중을 대폭 확대, ② 전국형과 지역형 운영을 병행하여 구인기업 활성화 및 기관간 경쟁을 강화, ③ 민간협회 및 단체와 협업하여 인재채움뱅크 내 치과 전용관을 개설하고 시범적으로 직종별 맞춤형 채용알선 서비스를 제공, ④ 일육아 동행 플래너 확대 및 민간 협·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보험기금(실업급여계정)】

〈지　출〉

9.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관리 및 60세 이상 수급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개선 필요

가. 개　요

구직급여는 실직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11조 7,877억 9,300만원 중 11조 7,404억 8,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6%)되고 473억 700만원이 불용되었음.[34)]

구직급여의 경우 2024년 당초 10조 9,143억 9,6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예산조기 소진이 전망되어 8,733억 9,7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증액하였음.

[2024년 구직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구직급여	10,914,396	11,787,793	-	11,787,793	11,740,486	-	47,307	1,292,9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첫째, 최근 반복수급자가 증가하는 것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노동시장의 특성과 실업자의 구직급여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므로, 구직급여 지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단기취업 등의 고용 관행으로 노동시장이 왜곡되지 않도록 반복수급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34) 고용보험기금-구직급여(1280-350)(고용서비스정책관)

2020~2024년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한 수급자 규모의 추이를 보면,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한 반복수급자는 2020년 9만 3,019명에서 2024년 11만 2,823명으로 1만 9,804명(2020년 대비 21.3%) 증가하였고,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액도 2020년 4,799억 6,700만원에서 2024년 5,803억 9,500만원으로 1,004억 2,800만원(2020년 대비 20.9%) 증가하였음.

[2020~2024년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수 및 지급액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수급자	지급액
1회 수급	1,282,797	9,386,898	1,328,909	9,546,616	1,194,322	8,499,025	1,197,344	8,609,298	1,207,072	8,877,368
2회 수급	326,697	1,983,563	344,964	2,012,253	334,467	1,910,686	364,028	2,144,204	377,201	2,281,439
3회 수급	64,996	355,582	71,040	372,795	71,891	368,063	78,366	416,669	80,764	440,677
4회 수급	15,522	73,481	16,675	75,458	17,371	78,267	18,102	81,375	18,139	84,092
5회 이상 수급	12,501	50,904	12,776	50,672	13,059	52,239	13,709	54,204	13,920	55,626
합계	1,702,513 (100.0%)	11,850,428 (100.0%)	1,774,364 (100.0%)	12,057,794 (100.0%)	1,631,110 (100.0%)	10,908,280 (100.0%)	1,671,549 (100.0%)	11,305,750 (100.0%)	1,697,096 (100.0%)	11,739,202 (100.0%)
3회 이상	93,019 (5.5%)	479,967 (4.0%)	100,491 (5.7)	498,925 (4.1%)	102,321 (6.3%)	498,569 (4.6%)	110,177 (6.6%)	552,248 (4.9%)	112,823 (6.6%)	580,395 (4.9%)

주) 괄호안의 숫자는 구직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빈번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도한 단기고용 등의 왜곡된 고용관행을 야기하거나 실업자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에 의존해 구직급여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하므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

반복수급자 증가의 원인은 ① 높은 한시적 근로자 비중(2024년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25%)에 따른 고용불안정, ② 8시간 근무 기준 최저임금 일자리의 월급보다 구직급여 한 달 분이 더 많아[35]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36]

35) 2025년 기준 1일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인 최저임금(시간 당 10,030원) 근로자는 한 달에 약 187만원을 받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한 달에 192만 5,760원(8,024원×8시간×30일)을 수급할 수 있음.

36) 짧은 수급기간이 반복수급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급기간이 반복수급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나타나는 원인은 ①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및 계약 관행, ②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한 수급요건, ③ 일할 때보다 구직급여 수급 시 소득이 높아질 수 있는 하한액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단기고용(한시적 근로자) 중심의 인력 운영으로 구직급여 반복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실업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해[37] 필요 이상의 과도한 단기고용을 완화하고,[38] 한시적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일을 할 때 보다 실업급여 수급 시에 소득이 높아지고 실업자가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것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39]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보다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유의미하게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0]

〈 2025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당시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자료: 고용노동부

37)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은 사업장에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2024.7.19.)하였음.

38)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도록 한 사업장의 고용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사업주가 고용조정에 신중해지도록 하는 유인구조가 형성됨. 또한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도록 한 사업장은 더 많은 보험재정 지출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39)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2023년 7만 1,483건에 이어 2024년 9만 8,075건에 이르고 있음.

40) 추가로 고용보험료는 법에서 보험료의 상한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소득에 증가하면 보험료도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이 사회보험임을 감안하더라도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과 보험 급여 혜택 간에 불균형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예를들어 구직급여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별 수급현황을 보면 직전 평균임금이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는데,

〈2020~2024년 구직급여 수급자의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별 수급현황 〉

(단위: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지급인원	지급금액
전체	1,702,725	11,855,625	1,774,614	12,062,473	1,631,270	10,910,504	1,671,623	11,307,120	1,697,150 (100.0)	11,740,341 (100.0)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828,787	5,912,683	827,186	5,754,506	715,228	4,906,350	670,306	4,666,038	613,010 (36.1%)	4,372,720 (37.2%)
300만원 이상 350만원 미만	381,444	3,044,533	444,315	3,377,938	427,167	3,221,067	514,496	3,814,701	608,181 (35.8%)	4,512,182 (38.4%)

자료: 고용노동부

이들은 고용보험료 납부액 차이(24개월 근무 시 직전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와 350만원인 근로자의 실업급여계정 고용보험료 차이는 32만 4,000원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금액의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음.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료 부담과 급여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설명함.

둘째,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로 재취업활동을 인정 받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를 통한 재취업활동의 실효성과 성과를 점검하고,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업인정 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① 온라인 취업특강의 경우 60세 미만은 최대 2회까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취업특강을 통한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에 제한이 없고, ② 60세 미만의 경우 자원봉사를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자원봉사 또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2020~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온라인교육와 자원봉사로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현황을 보면 비중이 점차 증가('20:6.4%→'24: 49.5%)하고 지급액 또한 증가('20:1,518억 1,700만원→'24:1조 4,919억 4,800만원)하고 있음.

[2020~2024년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실업인정건수		1,773,312	1,926,718	1,861,477	2,017,455	2,158,667
	온라인교육(A)	104,126 (5.9%)	289,092 (15.0%)	456,806 (24.5%)	716,733 (35.5%)	1,006,568 (46.6%)
	자원봉사(B)	8,401 (0.5%)	7,346 (0.4%)	12,191 (0.7%)	54,891 (2.7%)	62,171 (2.9%)
	A+B	112,527 (6.4%)	296,438 (15.4%)	468,997 (25.2%)	771,624 (38.2%)	1,068,739 (49.5%)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		2,512,199	2,719,887	2,602,164	2,866,641	3,096,873
	온라인교육(A)	138,456 (5.5%)	376,076 (13.8%)	664,373 (25.5%)	984,589 (34.3%)	1,392,850 (45.0%)
	자원봉사(B)	13,361 (0.5%)	11,408 (0.4%)	18,746 (0.7%)	86,179 (3.0%)	99,098 (3.2%)
	A+B	151,817 (6.0%)	387,484 (14.2%)	683,119 (26.2%)	1,070,768 (37.3%)	1,491,948 (48.2%)

주) 1~8차 기간 동안의 실업인정 건수 및 구직급여 지급액을 합한 자료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실업인정 건수 및 전체 구직급여 지급액에서 해당 건수와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온라인교육과 자원봉사의 재취업 효과는 다소 제한적임. 구직급여는 최대 8회까지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온라인취업특강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60세 이상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12.2%, 자원봉사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한 60세 이상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8.7%에 불과하였음.[41)]

반면 온라인취업특강과 봉사활동을 제외한 구직 외 활동(집단상담프로그램 등) 중 같은 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24년 21.1%로 나타났음.

[온라인특강자원봉사로 3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단위: 명, %)

재취업활동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온라인 취업특강	20,994	7.4	61,068	10.5	100,676	12.3	145,393	12.1	168,589	12.2
자원봉사	1,364	9.3	1,783	7.3	4,001	9.0	13,367	8.5	13,212	8.7
구직 외 활동 전체	172,382	22.1	232,101	21.1	235,863	21.9	275,640	21.7	294,330	21.1

주1) 수급자 수는 수급기간이 2년에 걸친 경우 각각 포함
2) 재취업활동별 중복 가능(취업특강 3회, 봉사활동 3회 인정 시 각각에 포함),
3) 구직외활동 전체는 온라인취업특강, 봉사활동 외 집단상담프로그램 등 모든 구직 외 활동 중 같은 활동으로 3회 이상 실업인정받은 수급자
4) 자영업자 제외, 구직급여(연장포함), 60세 이상 수급자 기준
5) 재취업률: 수급 중 재취업자 수/ 수급 종료자 수
6) 전문위원실 요청에 따라 추출한 통계로, 통상적으로 활용하는 통계는 아님
자료: 고용노동부

제한적인 재취업효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업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도개선 없이 구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41) 60세 이상 70세 미만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22년부터 25%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음.
<2020~2024년 연령대별 구직급여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 >

(단위: 명, %)

연령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수급자 수	재취업률
60세 이상 70세 미만	345,989	23.8	392,834	23.9	385,142	25.4	410,851	26	437,637	25.8
70세 이상	9,497	6.5	10,962	6.7	11,562	8.5	13,712	9.2	16,627	9.4

주1) 수급자 수: 자영업자 제외, 구직급여(연장포함), 2년에 걸쳐 수급하는 경우 각각 포함
2) 재취업률: 수급 중 재취업자수 / 수급 종료자 수
자료: 고용노동부

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여 시행 중이며, 해당 방안에는 ① 60세 미만 수급자의 경우 온라인 교육은 기존 3회에서 2회까지만 구직활동을 인정하는 것으로 강화되었으나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제한없는 취업인정이 현행 유지되었으며, ② 자원봉사의 경우 활동 인정을 확대하여 1365자원봉사포털(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VMS자원봉사포털(보건복지부)를 통한 봉사활동도 인정하게 됨.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방안]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현행</th><th></th><th colspan="2">개선</th></tr>
<tr><td rowspan="4">재취업 활동 기준</td><td rowspan="4">횟수 제한</td><td colspan="2">〈횟수제한〉</td><td rowspan="4">➔</td><td colspan="2">〈횟수 제한〉</td></tr>
<tr><td>60세 미만</td><td>취업특강(3회), 직업심리검사(1회), 심리안정프로그램(1회)</td><td>60세 미만</td><td>•취업특강(2회까지 인정) , 그 외 현행 유지</td></tr>
<tr><td>60세 이상 및 장애인</td><td>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횟수 제한 없음</td><td>60세 이상 및 장애인</td><td>- 60세 이상, 장애인은 현행유지하되 60~64세는 구직활동으로 유도</td></tr>
<tr><td colspan="2">〈자원봉사: 60세 이상, 장애인〉
•횟수: 제한없음
•기준: 1일 4시간 이상, 같은 날 봉사활동만 합산 가능
•1365자원봉사포털</td><td colspan="2">〈자원봉사: 60세 이상, 장애인〉
•횟수: 현행유지
•기준: 현행유지
•1365(행정안전부)외 VMS(보건복지부)포털 추가</td></tr>
</table>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제도 취지상 수급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도, 60세 이상 수급자는 법정 정년 이후인 특성이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여건이 녹록지 않으므로 실업인정 요건 강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고, 경제 및 사회활동을 촉진토록 하는 취지에서 자원봉사 등도 재취업활동으로 폭넓게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① 자원봉사의 경우 구직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하고 있어 구직급여의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②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 증가('26년 약 798만명 → '34년 약 843만명)로 60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와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가 예상되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60세 이상 수급자의 실질적인 재취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실업인정 방식 개편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모성보호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재원구조 개편 검토 필요

가. 개 요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육아휴직급여 지급 등을 통해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 계획현액 2조 5,738억 4,100만원 중 2조 5,737억 8,0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6,100만원이 불용되었음.[42)]

[2024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다음년도 이월액(D)	불용액 (E)	계획액
	당초	수정(A)						
모성보호 육아지원	2,496,830	2,496,830	-	2,573,841	2,573,780	-	61	4,022,454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 6개 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유산사산휴가급여・배우자출산휴가급여・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난임치료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가 있고, 2024년 전체 집행액 중 약 79.7%인 2조 524억 8,700만원이 육아휴직급여로 집행되었음.

[2025년도 모성보호육아지원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관련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재원	2023년 결산	2024년		2025 계획안
			계획현액	지출	
모성보호육아지원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	2,261,495	2,573,841	2,573,780	4,022,454
출산전후휴가급여		326,290	353,700	353,689	352,497
유산사산휴가급여		1,647	2,331	2,323	1,859
육아휴직급여		1,796,995	2,052,506	2,052,487	3,402,970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30,324	157,982	157,970	233,521
배우자출산휴가급여		6,240	7,322	7,311	24,213
난임치료휴가급여		-	-	-	7,394

자료: 고용노동부

42) 고용보험기금-모성보호육아지원(1345-358)(통합고용정책국)

나. 검토의견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운영으로 제도적인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고, 현재 동 예산이 편성된 실업급여 계정은 모성보호와 연관성이 직접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재정의 부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원구조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들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음. 2001년 육아휴직 제도 도입 당시 모성보호가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차원에서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는 인식하에 건강보험에서 지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된 것임.[43)]

육아휴직급여 등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급되는 재원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2025년 모성보호급여 지급액 인상 등의 제도개선으로 전년 대비 지출계획액이 1조 4,487억원 증가하여 실업급여 계정지출에서 모성보호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25.5%까지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가 비례해서 증가하지 못하였고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4년 15.5%에서 2025년 13.7%로 감소하였음.[44)]

---

43) 제도 도입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소요비용의 일정 부분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1.6.)〉

주 문

대한민국국회는 모성보호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선 고용보험 적용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산전후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면서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을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 하고 있으나, 출산·육아는 사회공동의 문제로 산전후휴가급여는 장차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위해서는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산전후휴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형편상 고용보험이 부담토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하도록 촉구한다.
2. 정부는 일정 연한이 지난후에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면서 그 비용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중장기적인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한다.

44) 모성보호급여 사업들이 연례적으로 연도 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실업급여계정의 부담은 더 클 가능성이 있음.

[2020~2025년도 실업급여 계정 중 모성보호급여 비중]

(단위: 억원, %)

구분	실업급여 계정지출(A)	모성보호 급여(B)	비율 (B/A)	모성보호급여		일반회계 전입금 (C)	비율 (C/B)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2015년	54,978	8,859	16.1	2,590	6,269	700	7.9
2016년	58,557	8,840	15.1	2,480	6,360	700	7.9
2017년	62,858	9,356	14.9	2,434	6,922	900	9.6
2018년	79,157	11,041	13.9	2,493	8,547	900	8.2
2019년	98,558	13,500	15.1	2,701	10,799	1,400	10.4
2020년	138,860	15,614	11.2	2,942	12,671	1,800	11.5
2021년	144,138	16,850	11.7	2,978	13,872	2,200	13.1
2022년	141,325	20,772	14.7	3,126	17,646	3,000	14.4
2023년	143,307	22,615	15.8	3,342	19,273	3,000	13.3
2024년	151,541	25,738	17.0	3,633	22,105	4,000	15.5
2025(안)	157,775	40,225	25.5	3,860	36,365	5,500	13.7

주) 2015~2024년은 결산값이며 표의 '출산전후휴가급여' 항목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를 포함하고 '육아휴직급여' 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가 포함됨.

자료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정이 실업의 위험을 완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계정임을 고려할 때, 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의 부담으로 기금 계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45]

45) 게다가 실업급여계정은 2020~2024년간「고용보험법」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정적립배율(해당 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연례적으로 준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2020~2024년 결산 기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 입(a)	13,628,678 (10,328,678)	14,814,055 (10,840,080)	13,567,529 (13,120,717)	14,387,917 (14,387,917)	14,910,478 (14,910,478)
사업비(b)	13,885,952	14,413,779	14,132,507	14,330,660	15,154,139
수지차(a-b)	△257,275 (△3557,275)	400,277 (△3,573,699)	△564,978 (△1,011,790)	57,258 (57,258)	△243,662 (△243,662)
연말적립금	3,866,572 (566,572)	4,266,495 (△3,007,480)	3,695,306 (△4,025,481)	3,752,509 (△3,968,278)	3,508,310 (△4,212,477)
적립금배율	0.3 (0.0)	0.3 (△0.2)	0.3 (△0.3)	0.3 (△0.3)	0.2 (△0.3)

주) 괄호 안은 공공자금 예수금 제외한 수치임

자료 : 고용노동부

또한 고용보험가입자 중심으로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이루어짐에 따라 ①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중 6개월 미만 근속자 및 초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육아휴직급여 자격 미충족자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들(급여 사각지대), ② 근로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제도를 미적용받는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들(제도적 사각지대)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사각지대 범주화]

<table>
<tr><td colspan="8">만 12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과 남성</td></tr>
<tr><td rowspan="6">비경제활동
인구</td><td rowspan="6">실업자</td><td rowspan="6">무급가족
종사자</td><td colspan="5">취업자</td><td rowspan="6">육아휴직
급여
수급자</td></tr>
<tr><td>비임금</td><td>근로자</td><td colspan="4">임금근로자</td></tr>
<tr><td rowspan="3">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td><td rowspan="2">적용제외</td><td colspan="3">고용보험 적용대상</td></tr>
<tr><td>미가입자</td><td colspan="2">가입자</td></tr>
<tr><td>초단시간</td><td>영세사업장,
비정규직</td><td>퇴사자</td><td>자격
미충족자</td></tr>
<tr><td colspan="2">〈제도적 사각지대〉</td><td colspan="3">〈급여 사각지대〉</td></tr>
</table>

실제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주 수혜 연령대인 20~49세의 경우 2024년 1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약 1,557만 2,000명이지만 해당 연령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상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약 976만 9,000명에 불과하여 나머지 약 580만 3,000명은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고용보험 가입자 수 및 경제활동인구 수 비교]

(단위: 천명)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합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A) (상용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606	1,707	1,969	1,702	1,947	1,838	9,769
경제활동인구 (B)	1,114	2,588	2,941	2,676	3,119	3,134	15,572
(B-A)	508	881	972	974	1,172	1,296	5,803

자료 :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및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에는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되고 있고 사람은 일생 동안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모성보호지원제도가 지속될 경우 사각지대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호를 받는 집단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 간 불평등 문제와 불안정성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보임.

현재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속한 사람들은 근로자와는 다른 특성(휴직 개념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재원 구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와 재정당국은 실업급여 계정의 목적에 부합하는 지출과 기금 계정의 건전성 확보, 모성보호육아지원제도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재원 구조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46)]

46) 대다수 해외국가는 일반조세 또는 별도의 사회보험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까지 포괄하여 육아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국가별 모성보호육아휴직지원제도 관련 재원 〉

독일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캐나다	일본
일반조세	일반조세	일반조세	부모보험기금	가족수당기금	사회보장기금	사회보장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기금(중소복지계정)】

〈지 출〉

1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중도인출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은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01억 7,900만원 중 157억 1,900만원이 집행(집행률 77.9%)되고 44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47)]

[2024년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퇴직연금사업운영	22,324	22,324	-	22,324	17,857	-	4,467	24,00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20,179	20,179	-	20,179	15,719	-	4,460	21,855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출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사업주에게는 매년 납부하는 부담금(임금총액의 1/12이상)의 10%를 지원하고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적립을 지원하고 있음.

47) 근로복지진흥기금-퇴직연금사업운영(3061-318)(근로기준정책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개요]

ㅇ (내용) 중소기업(30명 이하)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 ㅇ (운영) 사용자가 부담금(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 → 공단이 부담금을 적립하여 운용(자산운용기관 위탁) *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 →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 및 규모의 경제 추구 ㅇ (제공 서비스) 재정지원*, 가입절차 간소화**, 수수료 면제('23.4월부터 5년간) * (지원요건) 월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23년까지는 120% 미만) (지원수준) **① (사업주)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2년부터 계속)** **② (근로자) 매년 납부하는 사용자부담금의 10% ('24년 신설)** (지원한도) 지원금별로 "1인당 최대 26만8천원, 1개社 당 최대 30명, 최대 3년간 지원" ** 표준계약서 체결(사용자↔공단)로 규약작성 의무 면제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퇴사 등을 사유로 1,765억원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에서 중도인출되었으므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도인출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30인 미만 사업장의 낮은 퇴직연금 가입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및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도입되었음.

이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한 부담금으로 공적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운영해 ① 퇴직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② 규모의 경제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024년의 경우 근로자 재정지원금까지 신설하여 가입을 독려하였으나, 가입 근로자 중 3만 529명이 중도취소하고 1,365억원을 중도인출 하였음.

[2022~2024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도취소 사업장 수 및 중도취소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억원)

	사업장(개소)		근로자(명)		당해연도 중도인출 금액	누적 중도인출 금액	연말 적립금액(억원)			
	당해연도 가입 사업장 수	당해연도 중도취소 사업장 수	당해연도 가입 근로자 수	당해연도 중도취소 근로자 수				적립금액 중 정부 재정 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사업주 재정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근로자 재정 지원금
2022년	2,549	106	10,282	632	2	2	324	0.38	0.38	-
2023년	12,194	946	66,927	11,897	398	400	4,734	23	23	-
2024년	10,383	841	74,364	30,529	1,365	1,765	8,601	147	82	65

주) 근로자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출 금액은 대부분 근로자 퇴직,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사업장의 특성상 짧은 근속기간[48]으로 인한 인출이 다수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49]

[2022~2024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인출 사유별 현황]

(단위: 명, 억원)

구분	근로자 퇴직		사업장 폐업		제도 이전		주택구입 등		기타		소계	
	근로자 수	금액	근로자 수	금액	근로자 수	금액	근로자 수	금액	근로자 수	금액	근로자 수	금액
2022년	105	2	10	-	-	-	-	-	517	-	632	2
2023년	8,746	299	290	8	891	70	121	15	1,970	6	12,018	398
2024년	26,581	1,176	357	16	1,331	115	303	52	2,260	6	30,832	1,365
계	35,432	1,477	657	24	2,222	185	424	67	4,747	12	43,482	1,765

주) 기타는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으로 인한 사용자 반환 등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적립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수익률도 연평균 6%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향후 근로자 노후 소득 보장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음.

48) 2024년 12월 기준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46년임.

49) 30인 미만 사업장의 평균 근속기간은 5.7년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인 11.2년에 비해 짧음.

[2022~2024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액 및 연평균 수익률]

(단위: 억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적립금액	324	4,734 (1,361.1)	8,601 (81.7)
연평균 수익률	2.45	6.97	6.5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나, 향후 적립금의 중도인출이 지속·반복되고 인출금액이 증가할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와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50]

따라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 규모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적립금이 운영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51]

50) 고용노동부는 2025년 6월말 기준으로 1,190억원이 인출되어 적립금 대비 인출액의 규모는 전년 동기와 유사한 규모라고 설명하였음.

〈2024년~2025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 및 인출액 규모(6월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인출액(A)	적립금(B)	적립금 대비 인출률(A/B)
2024년 6월말	690	6,300	11.0
2025년 6월말	1,190	10,727	11.1

주) 인출액: '24.1~6월 누계 및 '25.1~6월 누계
적립금: '22.9~'24.6월 누계 및 '22.9~ '25.6월 누계
자료: 고용노동부

51) 고용노동부는 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 인출 방지를 위해서 담보대출상품 신규 출시를 확대하고, 적정금리 설정 등을 추진해 담보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며, 불필요한 인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하였음.

〈지 출〉

12. 생활안정자금(융자): 다양한 업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강화 필요

가. 개 요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혼례비·장례비·생계비 등을 장기·저리(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로 융자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22024년도 계획현액 1,184억 6,200만원 중 1,182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2억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52)]

[2024년도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생활안정자금(융자)	88,462	118,462	-	118,462	118,234	-	228	106,342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53)] 및 고용노동부 고시 「근로복지사업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2020년 12월에는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융자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체 및 산재가입 1인 자영업자로 확대하였음.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 등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음.

52) 근로복지진흥기금-생활안정자금(융자)(3062-306)(근로기준정책관)

53)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 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사업홍보를 강화하여 타 업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과거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만 지원되었으나, 사실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적용대상자(49만명)의 15.3%(7.4만명)에 불과하였음.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노동자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강화되었으며, 이에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신용보증사업 등의 지원대상을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확대[54]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였음.[55]

다만 사업대상이 확대된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지원 현황을 보면, 직종 중에서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액 104억 1,800만원 중 보험설계사 대상 융자가 39억 7,400만원으로, 전체 융자금액의 38.1%를 차지하였고, 인원 기준으로는 전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융자 인원 2,232명 중 보험설계사가 966명으로 전체의 43.3%를 차지하였음.

고용노동부가 2021년 11월 실시한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융자대상 확대(특고)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와 같이 ‘정보접근성이 높은 특정 직종’에 융자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음.[56]

---

54)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 가능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개 업종(① 보험설계사, ② 건설기계조종사, ③ 방문강사, ④ 골프장, ⑤ 택배기사, ⑥ 퀵서비스 기사, ⑦ 대출모집인, ⑧ 신용카드모집인, ⑨ 대리운전기사, ⑩ 방문판매원, ⑪ 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⑫ 가전제품설치배송기사, ⑬ 건설현장 화물차주, ⑭ 화물차주, ⑮ 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⑯ 방과후 강사, ⑰ 관광통역안내사, ⑱ 어린이통학버스 기사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업종이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

55)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 확대〉」(2020.9.)

56) 「제5차 근로복지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p.29.

[2020~2024년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보험설계사 지원 비율]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자녀 양육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년	전체	2,869	24,347	219	1,142	68	842	12	120	101	491	326	1,638	-	-	1,190	15,558	952	4,556
	보험설계사	1,622	12,474	145	783	33	409	5	50	51	249	194	981	-	-	577	7,074	617	2,928
	비중	56.5	51.2	66.2	68.6	48.5	48.6	41.7	41.7	50.5	50.7	59.5	59.9	-	-	48.5	45.5	64.8	64.3
'21년	전체	2,517	13,304	346	1,563	132	1,589	15	135	86	423	375	1,867	546	2,697	339	3,413	678	1,616
	보험설계사	1,446	6,979	235	1,082	51	623	11	95	47	231	187	931	312	1,542	163	1,407	440	1,068
	비중	57.4	52.5	67.9	69.2	38.6	39.2	73.3	70.4	54.7	54.6	49.9	49.9	57.1	57.2	48.1	41.2	64.9	66.1
'22년	전체	4,509	20,481	679	2,939	315	3,749	31	254	263	1,226	606	2,949	1,212	5,945	218	1,076	1,185	2,342
	보험설계사	2,127	8,973	342	1,500	75	918	11	101	102	433	311	1,527	503	2,439	166	835	617	1,221
	비중	47.2	43.8	50.4	51.0	23.8	24.5	35.5	39.8	38.8	35.3	51.3	51.8	41.5	41.0	76.1	77.6	52.1	52.1
'23년	전체	4,115	17,572	670	2,314	265	3,199	25	228	249	1,075	592	2,718	1,193	5,633	97	461	1,024	1,944
	보험설계사	2,085	8,258	391	1,283	76	915	15	144	130	547	338	1,540	546	2,538	62	308	527	983
	비중	50.7	47.0	58.4	55.4	28.7	28.6	60.0	63.2	52.2	50.9	57.1	56.7	45.8	45.1	63.9	66.8	51.5	50.6
'24년	전체	2,232	10,418	412	1,337	247	2,991	11	91	119	482	335	1,544	703	3,224	-	-	405	749
	보험설계사	966	3,974	217	618	63	757	4	25	41	155	162	755	303	1,344	-	-	176	320
	비중	43.3	38.1	52.7	46.2	25.5	25.3	36.4	27.5	34.5	32.2	48.4	48.9	43.1	41.7	-	-	43.5	42.7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 5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 등 산정을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마련」 용역 보고서를 보면, 보험설계사 외에도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임금 조건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는데,[57] 이들의 경우 계약 기간이 불확실하여 고용 안정성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어려워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을 통한 생계보호가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적극적인 융자사업 홍보와 집행관리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기에 융자를 받아 생계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57) 퀵서비스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은 약 236~267만원, 대출모집인의 월평균 순소득은 약 287~303만원, 대리운전기사의 월평균 순소득은 약 149~157만원으로 조사되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

〈지 출〉

13. 신용보증대위변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 제고 필요 등

가. 개 요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58] 및 제26조[59]에 따라 보증·담보여력이 낮은 취약근로자 등에 대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금융회사를 통해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소득격차 해소와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01억 9,500만원 중 301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60]

[2024년도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신용보증대위변제	30,195	30,195	-	30,195	30,195	-	-	64,611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58) 「근로복지기본법」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구직 신청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해근로자를 포함한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9)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보증채무의 이행 등)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융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은 같은 조의 계약 내용에 정하여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22조제2항의 계약 내용에 따라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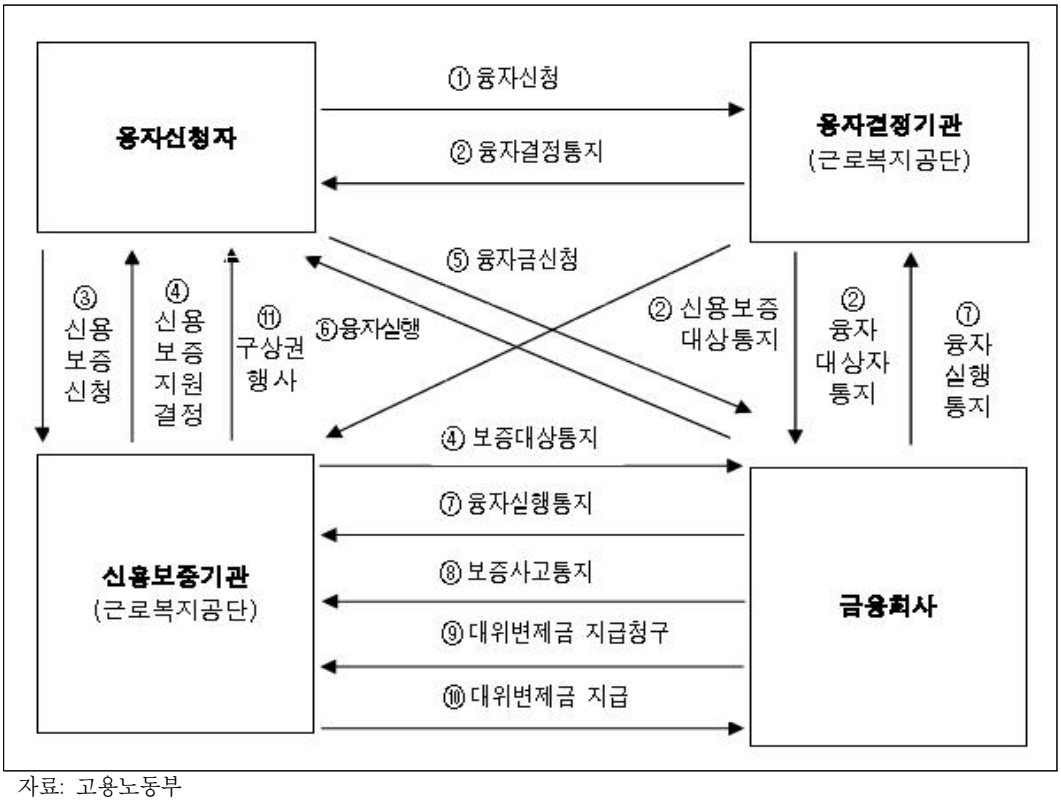
60)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대위변제(3064-308)(근로기준정책관)

이 사업을 통해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계정)이 취약계층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사업은 ①「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②「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 융자, ③「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에 따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④「고용보험법」 제29조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등이 있음.

신용보증사업계정의 보증을 제공받는 융자사업의 집행절차는 다음과 같음. 먼저 대상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이나 직업훈련생계비 등에 대한 융자 및 보증을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요건을 확인하여 융자신청자에게 융자결정 통보를 하고 대행금융기관에게 융자대상자를 통지함. 이후 각 기금으로부터 융자금을 지급받은 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대상자의 원리금 상환액을 각 기금에 반납함.

만약 대위변제 청구사유(6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신용보증계정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이 사업 예산에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융자대상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대위변제한 융자원리금을 회수하는 절차로 진행됨.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첫째, 향후 신용보증잔액 증가에 따른 대위변제금 증가가 예상되므로, 대위변제 후 구상채권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 사업을 통해 3만 6,608명의 근로자들이 1,929억 4,500만원의 신용보증을 받았음. 사업별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이 가장 큰 규모의 1,182억 3,400만원의 신용보증지원을 받았고, 다음으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353억 9,100만원), 고용보험기금의 직업훈련생계비 융자(250억 5,500만원), 산재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142억 6,500만원) 순임.

[2020~20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융자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206,647	31,743	143,946	24,801	220,676	41,639	165,030	30,639	118,234	20,306 (55.4%)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01,808	17,120	173,005	20,383	53,848	8,405	78,953	13,103	25,055	10,053 (2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13,635	1,459	15,481	1,588	15,636	1,580	15,617	1,637	14,265	1,515 (4.1%)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19,724	2,842	18,918	3,080	47,207	5,910	35,391	4,734 (12.9%)
신용보증합계	322,090	50,322	352,157	49,614	309,078	54,704	306,807	51,289	192,945	36,608 (100.0%)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에서 해당 융자사업 신용보증 지원금액 또는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신용보증금액은 2020~2023년 기간 동안 크게 확대되었는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일환으로 2020년부터 취약계층 융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금별로 융자지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결과적으로 이들 융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신용보증금액이 증가한 것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가 발생하여 금융회사 등이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융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보증지원 후 원리금 연체 등의 발생으로 근로복지공단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위변제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020~2024년도 사업별 대위변제금 회수 및 지급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회수	지급
생활안정자금융자 (근로복지진흥기금)	4,570	10,221	4,726	13,176	5,088	17,432	4,742	18,346	5,147	16,301
직업훈련생계비융자 (고용보험기금)	1,369	3,095	1,482	3,874	1,696	8,788	1,784	12,510	2,139	10,975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산재보험기금)	909	2,135	880	1,368	931	1,399	747	1,739	780	1,529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채권보장기금)	-	-	-	-	2	92	21	439	86	750
합 계	6,848	15,451	7,088	18,418	7,717	27,711	7,294	33,034	8,152	29,555

자료: 고용노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위변제금에 대한 회수율(구상채권 수납률)은 2024년 27.65%로 저조한 수준이며, 2024년에는 회수관리가 불가능한 불납결손액도 74억 6,300만원 발생하여, 2020~2024년간 가장 크게 나타났음.

[2020~2024년 구상채권 수납액 및 미수납액 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0	15,451	6,908	44.71	8,543	3,361
2021	18,418	7,147	38.80	11,271	4,170
2022	27,711	7,756	27.99	19,955	6,532
2023	33,035	7,320	22.16	25,715	6,942
2024	29,555	8,173	27.65	21,382	7,46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융자 건의 거치기간 경과와 2022년 이후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취약근로계층의 대위변제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구상채권 회수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하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이 사업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출계획액 148억 8,000만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출계

획액 65억 6,000만원이 증액되고, 제2회 추경에서 ‘체불청산지원융자’ 중 근로자 융자에 대한 지출계획액 52억 7,326만 1,000원이 증액되어 향후 대위변제금 지급 규모가 증가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상채권 회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둘째, 고용노동부는 타 기금의 융자사업에 대한 보증으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의 손실분에 대하여 융자사업 소관 기금별로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을 포함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신용보증사업계정)은 타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2020~2024년 동안 누적하여 78억 2,8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2022년부터 2024년은 매해 적자가 발생해 해당 기간 누적 적자는 168억 4,200만원에 이름.

[2020~2024년 신용보증사업 기금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고용보험기금	1,997	7,210	△4,183	△6,806	△7,524	△9,306
산재보험기금	△838	△56	△33	△538	△189	△1,654
임금채권보장기금	-	580	614	1,067	665	2,926
장애인고용기금	61	60	39	26	20	206
합계	1,220	7,794	△3,563	△6,251	△7,028	△7,828

주) 장애인고용기금 소관 융자사업은 종료되어 대위변제금 회수만 이루어지고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이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임금채권보장기금 등 다른 3개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상환 위험을 부담하여 3개 기금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발생하는 문제임.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이 기금 내 융자사업의 상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위험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근로복지진흥기금 신용보증사업계정은 다른 기금의 융자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하면서 「근로복지기본법」 제24조에 따라 1% 이내의 보증료를 받고 있으나, 신용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액이 보증료 수입과 구상채권 회수액보다 많음에 따라 신용보증사업계정의 사업비가 부족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복지계정으로부터 전출받고 있음.

2022년 이후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금번 추경에서는 당초 본예산 대비 266억 7,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78억 8,700만원이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전출되는 계획이 수립되었음.[61]

[2020~2025년 제1회 추경 기준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중소복지계정에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단위: 백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예산	2025제1회 추경
전출금	4,000	-	10,700	20,200	35,352	31,215	57,887

주) 2020~2024년도 결산값 기준 작성
자료: 고용노동부

그러나 근로복지진흥기금은 기금의 규모가 작고 복권기금 전입금과 보증료 수입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수입구조가 다소 취약하므로,[62] 근로복지진흥기금 내 내부거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과도한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의 전출로 인해 중소복지계정 내 자체사업(근로자복지지원, 퇴직연금사업 운영 등)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의 타 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를 종료하여 각 기금별 융자사업에 대한 손실분은 각 소관 기금에서 자체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거나, 융자사업 보증으로 인한 손실분은 각 소관기금별로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61) 2025년 제1회 추경안을 기준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비에서 신용보증대위변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7.8%로 전년대비 10.6%p 증가하였음.

62) 2024년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복지계정은 복권기금으로부터 635억 1,300만원을 전입받고, 신용보증사업계정으로 312억 1,500만원을 전출하였으며, 97억 1,400만원을 다시 복권기금으로 반환하였음.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수　입〉

14. 고용주부담금: 실질적인 위험예방조치에 상응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운영 필요

가. 개　요

‘고용주부담금’ 은 산재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 수입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10조 1,359억 4,700만원 중 8조 9,573억 1,400만원이 수납(수납률 88.4%)되고 1조 1,003억 5,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782억 7,4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63]

[2024년도 고용주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고용주부담금	9,134,689	9,134,689	10,135,947	8,957,314	1,100,359	78,274	88.4	9,586,905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위험성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고용주부담금(보험료)을 감면해주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실시 중이나, 2025년 1월부터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70점 이상 90점 미만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산재보험료 감면이 실질적인 위험예방조치에 상응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64]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65]에 따라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6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고용주부담금(38-381)(산업안전보건정책관)

하수도업 중 상시근로자 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후 인정을 받는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하(최대 3년)하는 ‘산재예방요율제’를 시행 중임.[66]

2024년까지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이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 50점을 미달하는 항목이 없고, 종합점수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사업장’이었으나 2024년 6월 24일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를 계기로 2025년 1월부터 종합점수 기준이 90점으로 상향되었고, 평가기준 또한 바뀌었음.[67]

위험성평가 참여기업들의 위험성평가 인정 심사점수 분포를 보면 2024년의 경우 70점 이상 90점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 위험성평가 참여 기업의 75% 이상으로, 해당 기업들은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기업들에 해당함.

[2020~2024년 위험성 평가 인정심사 점수 분포]

(단위: 개소)

연도	심사	50점 미만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2022년	6,096 (100.0%)	420 (6.9%)	231 (3.8%)	268 (4.4%)	2,638 (43.3%)	2,192 (36.0%)	347 (5.7%)
2023년	7,895 (100.0%)	628 (8.0%)	323 (4.1%)	281 (3.6%)	3,234 (41.0%)	2,953 (37.4%)	476 (6.0%)
2024년	7,377 (100.0%)	364 (4.9%)	483 (6.5%)	601 (8.1%)	3,072 (41.6%)	2,493 (33.8%)	364 (4.9%)
합계	32,611 (100.0%)	4,411 (13.5%)	1,575 (4.8%)	1,641 (5.0%)	12,481 (38.3%)	10,862 (33.3%)	1,641 (5.0%)

자료: 고용노동부

6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⑥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때 재해예방활동의 내용 · 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활동으로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설물, 기계 · 기구 ·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

66) 2024년에는 8,950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168억 9,40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사업장 1개소당 평균 188만원 감면)하였으며, 전체 감면금액의 99.9%인 165억 7,500만원이 제조업에서 감면되었음.

67) 2022년 11월 30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노 · 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 · 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해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산재예방요율제의 목적은 기업이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에 비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강화된 기준에 따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실질적인 위험완화 조치에 상응해 산재보험료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화성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내실있는 위험성평가와 사후관리가 더욱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① 기준 강화 전 인정을 받았으나 90점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정기간(3년) 간 위험성평가 수준을 확인하는 사후점검을 실시한 후 사후점검 시 강화된 기준에 따라 보완하여야 할 점을 제시하고 이행기간을 부여하여 위험성평가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으며, ② 기준 강화 후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90점 미만으로 불인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담긴 심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재정지원을 연계하여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음.

강화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준 변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산재예방 노력이 저조한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도 동일하게 감면되는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는 계획한 관리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위험예방조치에 상응하는 산재보험료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지 출〉

15.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의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은 협회나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회원사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방문컨설팅 등을 실시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채용인원당 월 250만원 한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26억원 중 53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42.4%)되고 72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68]

[2024년도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업종별 재해예방	158,255	158,255	571	158,826	148,981 [148,981]	-	9,845	163,152
자율안전관리 체계구축	98,461	98,461	571	99,032	89,760 [89,760]	-	8,701	95,823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12,600	12,600	-	12,600	5,344	-	7,256	12,6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이 집적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신규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부족 및 자부담 비용, 지원 수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하므로, 문제들을 보완하고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6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업종별 재해예방(4152-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을 위해 소규모기업(50인 미만)이 집적된 주요 산업단지에 공동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 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신설('24~'25년 한시 사업)하였음.

2024년에는 협회나 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직접 채용하여 회원사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600명 채용분 12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363명만을 채용하여 53억 4,400만원만 집행되었고, 72억 5,6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년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사업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내역사업명	구분	내용
자율안전 관리 체계구축	편성 근거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순증) ('24) **126억원** - 세부내역 : 지원금(600명 × 250만원 × 8개월 = 120억원), 수행경비(600명 × 100만원 = 6억원)
	집행 내역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지원 - **53억 4,400만원**(363명 × 1,47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이와 같은 집행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① 2024년에 신규로 도입되어 사업 초기 홍보가 부족하여 협회와 단체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② 소규모 단체의 경우 공동안전관리자에 대한 노무관리 등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으며, ③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에 대해서 정부지원 80%, 협·단체 20%로 설계되어 있으나 지원한도가 월 2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실제부담은 20%인 약 70만원 수준을 초과한다고 호소하는 협·단체가 있다고 설명하였음.

고용노동부는 2024년 집행단계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공동안전보건관리자 사업의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69]

69) 고용노동부는 조기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공동안전관리자 자격 기준을 확대하며, 홍보 강화 등의 사업 참여 활성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16.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의 주기적인 점검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일용직·공동주택 종사자 및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10억 8,8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0]

[2024년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유해작업환경개선	81,276	81,276	-	81,276	80,765	-	511	81,276
취약계층 고위험 환경개선지원	71,625	71,625	-	71,625	71,243 [71,243]	-	382	71,629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31,088	31,088	-	31,088	31,088	-	-	31,088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71]에 따라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고, 이 사업을 통해 카드소지자에 대하여 이직 후 매년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739명 대상으로 2,963만원을 지원하였음.

7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유해작업환경개선(4152-352)(산업안전보건정책관)

71)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의 경우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상물질을 점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응하고자 직업성 암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발급되는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계획하였음.

그러나 1990년 발급 대상 물질 11종을 최초로 규정한 이후 2005년 니켈·카드뮴 및 벤젠이 추가되고 2017년 비파괴검사(X-선)업무가 추가된 이후로 2024년까지 발급 대상 물질이 추가되거나 제외된 이력이 없음.

[건강관리카드 제도 연혁]

- ('90년) 건강관리수첩 제도 첫 시행(노동부, 11개 물질)
- ('93년) 건강관리수첩 제도 공단 위탁 (일선기관 발급·사후관리 업무 시작)
- ('94년) 직업성 암 첫 승인('93. 석면)에 따라, 석면 취급(제조 → 노출) 추가
- ('99년) 발급대상을 '이직자' 대상 → '종사자' 대상으로 확대
- ('05년) 니켈, 카드뮴, 벤젠 추가, 용접흄 삭제, 세부 작업요건 반영
- ('08년) 석면 해체·제거·보수 업무 추가
- ('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취득 개인정보 변경(주민번호 → 생년월일)
  석유화학설비 유지·보수 업무 추가(벤젠, 염화비닐)
- ('13년) 요양급여 신청 시, 의사의 초진소견서를 카드로 제출 가능
- ('14년) 교통비 및 식비 지급 시행
- ('17년) 비파괴검사(X-선) 업무 추가
- ('2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으로 명칭 변경(건강관리수첩 → 건강관리카드)
- ('21년) 석탄발전소 하역·이송·저장·혼합·분쇄·연소 등의 작업(석탄) 추가
- ('25년)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프로판 등 4종 추가, 비파괴검사 요건 완화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카드 발급 대상물질(15종) 중 6종(베타-나프틸아민, 벤조트리클로라이드, 베릴륨, 비스-에테르, 삼산화비소, 카드뮴)은 최근 5년간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 실적이 없고, 베타-나프틸아민 및 베릴륨 등 4종은 1990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건강관리카드가 발급된 이력이 없음.

[2020~2024년 건강관리카드 발급 요건(물질)별 특수건강검진 비용지원 실적]

(단위: 명,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벤지딘	지원건수	18	14	8	9	6
	지원금액	405	331	198	226	134
석면	지원건수	332	389	363	325	240
	지원금액	8,041	5,940	6,269	4,981	6,961
분진	지원건수	166	203	155	184	112
	지원금액	3,639	1,073	1,162	1,093	2,280
염화비닐	지원건수	10	66	34	36	46
	지원금액	78	528	79	153	138
크롬산·중크롬산	지원건수	284	303	137	349	239
	지원금액	5,767	1,496	1,609	3,375	5,254
니켈	지원건수	33	72	10	64	109
	지원금액	545	223	269	324	2,169
벤젠	지원건수	23	111	47	34	60
	지원금액	183	897	377	268	488
제철용 코크스	지원건수	105	146	64	95	127
	지원금액	1,824	2,837	1,473	1,692	2,589
비파괴검사	지원건수	13	1	2	11	5
	지원금액	8	8	8	22	9

자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1990년 제도 시행 후 수시로 법령을 제·개정하여 제도운영상 개선을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2025년 인체 발암물질로 확인된 산화에틸렌 등 4종[72]의 물질을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 물질로 추가하였고, 대상 요건도 완화[73]하였다고 설명하였음.

향후 직업성 질환(암)의 예방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업성 암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직업군과 물질들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발급대상물질로 지정하는 등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72) (현행) 15종 → (개정) 19종 (1,3-부타디엔, 산화에틸렌,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프로판)

73) (현행) 비파괴검사 X-선 → (개정) 비파괴검사 X-선 및 γ-선

17.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은 기술·재정이 취약한 산재보험가입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957억 700만원이 전액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74]

[2024년도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471,792	471,792	-	471,792	471,652	-	140	481,792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95,707	95,707	-	95,707	95,707	-	-	-

주1) 이 사업은 2025년부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안전일터 조성지원’의 내내역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 계획액은 757억 700만원임
2)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사업은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고위험개선’과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로 구분되며, ‘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소요비용의 50~65%를 지원하고 있음.[75]

이 사업은 ‘사업주 지원신청 →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서면·현장방문 등) → 공단의 지원대상자 결정(심사위원회) → 사업주의 시설개선(투자계획에 근거하여 4개월 이내) → 공단의 투자완료확인(현장방문) → 적정성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의 절차로 집행되고 있음.

74)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클린사업장 조성지원(41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75) 같은 사업주당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소요비용의 최대 65%까지, 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인 경우 소요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고용노동부는 영세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나, 최근 5년간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발생 비율이 23.9%~27.3%에 정체되어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3대(추락·끼임·부딪힘)사고[76] 유형의 8대 요인을 특별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계획액 714억 6,700만원 중 545억 2,200만원을 지출해 4,079개소의 사업장을 지원하였음.

[2020~2024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예산 및 결산]

(단위: 개소, 백만원,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물량	목표 지원 사업장 수 (A)	6,900	8,100	8,900	8,900	8,900
	실제 지원 사업장 수 (B)	5,010	5,515	7,332	4,943	4,079
	B/A	72.6	68.1	82.4	55.5	45.8
금액	예산 (C)	55,417	65,053	71,467	71,467	71,467
	결산 (D)	55,567	62,214	78,005	54,629	54,522
	D/C	100.3	95.6	109.1	76.4	76.3

자료: 고용노동부

이 사업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0조의3[77]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78]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절성을 평가받고 있고, 지원사업장과 동일 조건의 미지원 사업장을 추출하여 미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자 발생비율

76) ①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② 끼임: 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③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이하 "사업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소관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이하 "성과목표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 지원사업장 떨어짐 재해 발생비율의 격차를 비교하고 있는데, 2024년의 경우 전년 대비 건설경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79] 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이 높아졌으며, 2019~2024년간 지원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 않고 23.9%~27.7%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음.[80]

[2019~2024년 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건설업) 성과평가 결과]

사고재해발생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A)	35.5%	35.7%	32.0%	32.0%	33.0%	32.9%
지원 사업장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B)	27.7%	27.3%	23.9%	25.3%	24.3%	26.4%
실 적(A-B)	7.8%p	8.4%p	8.1%p	6.7%p	8.7%p	6.5%p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원 사업장의 떨어짐 재해발생 비율 실적이 정체되어 있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건설업 산재 예방 실적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79) 건설업 산재의 경우 건설업 경기의 영향을 받게 됨.(건설업 경기가 호황일수록 건설업 관련 산재도 많아지게 되는 것임) 2024년의 경우 2023년에 비해 건설기성(건설업체의 국내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조사하여 집계한 통계)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감소는 주로 건축 부문의 침체에 기인함.

<2020~2024년 건설기성(불변, 계절조정)>

(단위: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38,647,584	128,793,621 (△7.1%)	132,261,799 (2.7%)	143,073,754 (8.2%)	136,901,581 (△4.3%)
	건축	98,978,946	95,263,266 (△3.8%)	99,240,763 (4.2%)	109,427,895 (10.3%)	102,316,304 (△6.5%)
	토목	39,668,638	33,530,355 (△15.5%)	33,021,036 (△1.5%)	33,645,859 (1.9%)	34,585,277 (2.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감률을 의미함
자료: 통계청

80)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은 짧은 기간에 소멸하는 등 동일한 사업장의 지원 전·후 비교가 용이하지 않아 지원을 받은 건설현장과 지원을 받지 않은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자 발생비율의 차이를 성과지표로 사용중이나, 지원 건설현장 수는 매년 5천 개소 내외로 대조군인 미지원 사업장 수(7~8만개소)에 비해 훨씬 적어 떨어짐 재해자(분자)가 줄어도 전체 재해자 수(분모)에 따라 재해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아 성과지표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8. 안전보건교육 및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공공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안전보건교육’** 사업은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체험교육장의 운영비 지원 등 안전교육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92억 1,600만원 중 89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3%)되고, 2억 4,500만원이 불용되었음.[81]

[2024년도 안전보건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안전보건문화정착	32,925	32,925	-	32,925	32,366	-	559	35,674
안전보건교육 및 미디어개발	20,112	20,112	-	20,112	19,714 [19,714]	-	398	22,040
안전보건교육	9,216	9,216	-	9,216	8,971	-	245	9,274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은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및 리모델링 등으로 산재예방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55억 4,800만원 중 55억 4,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400만원이 불용되었음.[82]

[2024년도 산재예방시설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예방시설건립	5,548	5,548	-	5,548	5,544	-	4	4,2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8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안전보건문화정착(4154-350)(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8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예방시설 건립(4154-351)(중대재해감축로드맵이행추진단)

나. 검토의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안전체험교육장이 2024년 8곳 중 3곳만 운영되고, 2곳은 건립 중이며, 3곳은 시설 노후화 및 안전문제로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므로, 고용노동부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의 내용 및 체계를 정비하는 세부과제를 설정하였으며,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제1호[83]에 따라 설치된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 중임.

익산 안전체험교육장은 2024년 신규건립을 완료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고, 중부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2020년 1월 운영을 중단한 이후 2025년말 준공 예정을 목표로 시설개선 공사가 진행 중임.

반면 경남·경북·충청지역의 안전체험교육장의 경우 코로나 확산('20~'21년) 및 구조물 노후화('23년 정밀안전점검결과 D등급으로 운영 중단)로 인해 교육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상황이며, 2024년에는 제천·담양·여수의 안전체험교육관만 운영되었음.[84]

[2020~2024년 공공 안전체험교육장 교육실적]

(단위: 건,명)

교육장명	위치	개장일	운영 중단 시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교육 건수	교육 인원
중부	인천 부평구	'97.05.	'20.01.	-	-	-	-	2	45	32	865	-	-
경남	경남 김해	'02.06.	'24.01.	2	34	-	-	-	-	-	-	-	-

83)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 ·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84)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은 사업주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체험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게 해당 교육시간을 2배로 인정하여 연간 정기교육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전체험교육장 이용 시 교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음.

경북	경북 경산	'08.02.	'24.01.	-	-	-	-	-	-	-	-	-	-
충청	충남 공주	'09.04.	'24.01.	4	80	1	23	30	519	1	21	-	-
제천	충북 제천	'19.03.	-	20	323	-	-	102	1,763	173	2,868	308	4,987
담양	전남 담양	'23.05.	-	10	212	-	-	-	-	127	2,065	301	4,295
여수	전남 여수	'23.12.	-	-	-	-	-	-	-	-	-	595	8,775
익산	전북 익산	'24.12.	-	-	-	-	-	-	-	-	-	-	-
합계				36	649	1	23	134	2,327	333	5,819	1,204	18,057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주들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민간안전체험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공공 안전체험교육장과 달리 비용이 소요되고, 일부 회사의 근로자들만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경우가 있어 공공 안전체험교육장의 역할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의 감축을 위해 실질적인 대처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장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9. 산재보험급여: 업무상 질병의 평균 승인 처리기간 증가 개선 필요 등

가. 개 요

‘산재보험급여’ 사업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조 8,760억 9,100만원 중 7조 6,333억 1,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고 2,427억 7,300만원이 불용되었음.[85)]

[2024년도 산재보험급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보험급여	7,876,091	7,876,091	-	7,876,091	7,633,318	-	242,773	8,004,326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여 수행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제1호),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제2호),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제3호),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결정(제4호) 등을 수행함.

산재보험의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의 8종으로 구분됨.

2018년 이후 산재보험의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1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2022년 유통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음.

85)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보험급여(4051-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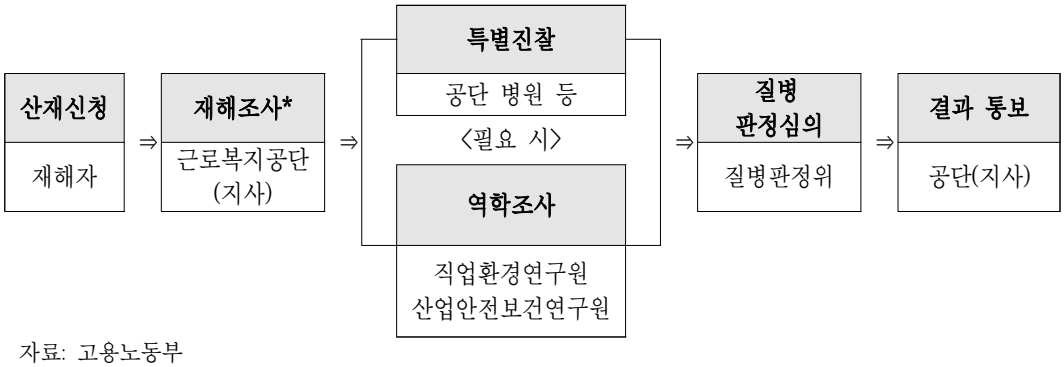
나. 검토의견

첫째,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신청 후 승인 여부 결과 통보까지의 처리기간이 2020년 172.4일에서 2024년 227.7일로 점차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산재승인 여부가 이루어져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함.

이 중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자의 산재신청 이후 공단의 재해조사와 (필요 시) 공단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직업환경연구원이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한 후, 질병 판정심의 절차를 거쳐 당사자에게 통보됨.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승인업무 처리 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평균처리일 수는 2020년 172.4일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27.7일로 2020년의 172.4일 대비 32% 이상 증가하였음.

[2020~2024년 산재신청 후 평균 처리일 수]

(단위: 일)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체 평균처리일수	39.1	43.4	47.6	55.0	63.9
업무상 사고의 평균처리일 수	15.1	14.8	15.5	16.2	17.4
출퇴근재해의 평균처리일 수	21.5	20.8	20.3	20.0	20.8
업무상 질병의 평균 처리일 수	172.4	175.8	182.0	214.5	227.7

자료: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의 산재 승인이 지연되는 원인을 ① 법원 판결로 소음성 난청의 산재신청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사업장 퇴사 시점이 아닌 진단 시점으로 변경되어 접수 건수가 폭증하였고,[86] ② 새로운 질병 및 유해인자의 증가에 따른 역학조사 및 특별진찰 의뢰 건수 증가로 설명함.[87]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산재승인 및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재해노동자는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받을 수 없어 의료비와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이후 재활도 지연되어 사회 복귀가 늦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 전문조사, 특별진찰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단순·반복업무의 전산화, 역학·전문조사와 특별진찰 위탁물량의 확대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으므로, 수립한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여 신속·공정하게 업무상 질병의 승인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88]

둘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산업재해 판단 기준이 상이하여 공단의 산재판정에 대해 불복소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의 근로복지공단 패소율 또한 높아지고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산재근로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음.

---

86) 소음성난청 접수건수: ('18) 3,294건 → ('20) 9,090건 → ('22) 12,590건 ('18년 대비 282% 증가)

87) ▲ 역학조사 의뢰건수(누적): ('18) 944건 → ('20) 1,136건 → ('22) 1,202건 → ('24) 741건
▲ 특별진찰 의뢰건수(누적): ('18) 5,398건 → ('20) 9,352건 → ('22) 24,223건 → ('24) 43,237건

88) 산재승인 소요기간이 150일 이상 넘은 장기미처리 업무상 질병 신청이 2024년에는 2만 3,567건 처리되어 점차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보임.

<2020~2025년(6월말) 기준 장기미처리 업무상 질병 처리 현황>

질병종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말)
소음성 난청	2,338	4,452	5,876	7,396	8,116	5,159
근골격계 질환	2,256	2,575	2,070	6,347	11,534	7,165
뇌심혈관	710	600	421	529	666	367
정신질병	409	448	392	406	497	216
직업성 암	391	326	362	543	673	572
호흡기계	1,151	1,328	1,768	2,091	1,922	1,106
기타	189	139	93	120	159	183
전체	7,444	9,868	10,982	17,432	23,567	14,768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중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관련 주요 조문]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법원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적 인과관계 뿐만 아니라 업무환경이나 근무의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판단기준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예를 들어 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업무상질병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②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공단은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기준이 아닌 상당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였음.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산재 인정 기준이 상이한 사례]

근로복지공단 판단기준	판례	특이사항
(소음성 난청)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력과 가장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달리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력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 법원의 또 다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사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거로 **85dB이하의 소음에서 소음성 난청의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점, 원고의 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만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음노출 기준 미달
(근골격계 질환) **나이 증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연적인 퇴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 여부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와 같이 법원과 공단의 산재판단기준이 상이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불승인된 경우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인정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으며, 업무상질병과 관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소송 수행 건수 및 패소율이 2019~2024년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20~2024년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 현황]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송 수행 건수	2,887	3,056	3,182	3,505	3,851
확정건수(A)	1,284	1,121	1,233	1,253	1,573
패소건수(B)	136	129	178	159	273
패소율 (B/A)	10.6%	11.5%	14.4%	12.7%	17.4%

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승인의 1차 판단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기준이 일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반복되는 불복소송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행정비용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의 적기 지원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89]

89) 근로복지공단은 판례가 누적되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와 상의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20. 산재병원지원: 경영성과 개선 및 노후의료장비 개선 노력 필요

가. 개 요

‘산재병원지원’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출연 방식으로 전국 15곳의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327억 6,200만원 중 327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2,800만원이 불용되었음.[90]

[2024년도 산재병원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재병원지원	32,762	32,762	-	32,762	32,734	-	28	79,654
의료장비현대화	3,784	3,784	-	3,784	3,784	-	-	3,812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산재병원을 전국에 13개소 운영하였으며, 3,703명의 환자가 산재병원을 이용함.

[2024년도 산재병원 운영 현황]

(단위: 명)

연번	병원명	지정년도	산재환자 현황(연도말 기준)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	인천병원	1983	863	971	921	929	766
2	안산병원	1985	634	604	548	674	620
3	창원병원	1979	305	253	339	378	348
4	대구병원	2012	218	271	360	403	306
5	순천병원	1985	292	268	218	218	216
6	대전병원	1991	541	596	635	588	401
7	태백병원	1977	369	337	328	314	304
8	동해병원	1983	343	395	452	462	311
9	정선병원	1988	158	165	162	168	173
10	경기요양병원	1985	142	26	115	86	100
11	서울의원	2019	47	41	67	46	45
12	광주의원	2020	2	78	46	87	62
13	부산의원	2022	-	-	52	55	51
산재병원 전체			3,914	4,005	4,243	4,408	3,703

자료: 고용노동부

9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산재병원지원(4054-350)(산업안전보건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산재병원의 경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간에서 수익성이 낮아 기피하는 산재장기요양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를 치료하고 있으나, 과도한 장기요양환자의 수용은 산재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므로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2020~2024년 산재병원의 수익과 비용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재정지원(의료외 수익)이 있었던 2021년과 2022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24년 적자는 △322억원으로 전년대비 2.5배 이상 증가하였음.

[2020~2024년 산재병원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손 익(A-B)			△53	112	282	△121	△322
수익(A)	합 계		3,395	3,665	3,802	3,596	3,580
	의료수익	소 계	3,048	3,194	3,048	3,356	3,346
		입 원	2,035	1,965	1,744	2,019	1,932
		외 래	796	992	1,062	1,086	1,145
		산업보건	217	237	242	251	269
	의료외 수익		347	471	754	240	234
비용(B)	합 계		3,448	3,553	3,520	3,717	3,902
	의료비용	소 계	3,268	3,509	3,499	3,693	3,877
		인건비	2,410	2,575	2,610	2,803	2,972
		운영비	538	627	612	574	583
		재료비	320	307	277	316	322
	의료외 비용		180	44	21	24	25

자료: 고용노동부

산재병원 적자가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전체 수용 환자 중 장기요양(입원 및 통원)환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임.[91] 산재 근로자가 산재병원에 입원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 단가가 하락하고,[92] 장기요양환자의 병상 장기 점유로 인해 병상회전률이 저하되면 신규환자 수용 여력이 감소하여 실질 수익이 저조하게 나타나게 됨.

91)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 적자의 원인은 ① 인프라 노후(시설·장비)에 따른 의료서비스 경쟁력 약화, ② 지방의사 구인난, ③ 코로나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입원환자 소산) 후 환자회복 속도 둔화, ④ 많은 장기요양환자 등 다양하다고 설명하였음.

92) 고용노동부는 장기입원은 수술, 집중재활 등 고부가가치의 의료행위가 적어 수익성이 낮다고 설명하였음. 예를들어 1년미만 환자의 경우 진료단가가 1일 평균 41만원이나, 5년 이상 환자의 경우 1일 평균 27만원임.

2020~2024년 산재병원 환자를 요양기간별로 보면, 10년이 넘게 요양을 받는 근로자가 매해 약 40%정도이며, 매해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산재병원 환자의 약 절반이 5년 넘게 산재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요양기간별 산재병원 환자 현황]

(단위: 명, %)

요양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개월 이하	279	13.4	254	11.9	333	13.8	414	15.0	496	21.6
6개월 초과 1년 이하	175	8.4	259	12.2	278	11.6	324	11.8	191	8.3
1년 초과 2년 이하	139	6.7	162	7.6	248	10.3	319	11.6	269	11.7
2년 초과 5년 이하	198	9.5	221	10.4	242	10.1	315	11.4	274	11.9
5년 초과 10년 이하	264	12.7	219	10.3	248	10.3	253	9.2	194	8.4
10년 초과	1,021	49.3	1,013	47.6	1,056	43.9	1,130	41.0	875	38.1
전체	2,076	100.0	2,128	100.0	2,405	100.0	2,755	100.0	2,299	100.0

자료: 고용노동부

2024년 2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환자의 요양기간 관리에 대해 ①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등 기준없이 진료계획서를 승인·연장하였고, ② 진료계획서 승인·연장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 절차가 부재하다고 지적하였음.[93]

또한 장기요양 환자 감소를 위한 평가체계 측면에서는 산재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점검 시 장기요양환자 감소를 위한 평가요소 및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현황분석과 통계관리가 부재한 문제가 있으며, 치료종결일 판단에서는 요양환자 진료계획서 연장심사를 위한 자문의사회의 시 치료종결일에 대한 기준 부재로 요양환자별 치료종결일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민간병원에서 요양이 곤란한 장기요양 환자(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진폐환자, 사지마비환자 등)들을 수용하고 있는 산재병원의 공적 역할과 산재근로자 개인마다 상병의 정도 및 상태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

93) 고용노동부는 산재병원에서의 요양 연장 변경횟수에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상병 상태, 치료 예정 기간 및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요양기간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별도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환자관리 방안으로 보이고,[94] 근로자의 조기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산재병원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장기요양환자 감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장기요양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여 산재병원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성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95]

둘째, 산재근로자의 적기 치료 및 재활지원을 통한 조기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노후화된 산재병원 의료장비의 적극적인 교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산재치료를 위해 특화된 병원인 산재병원을 전국 15개소 운영 중이며, 산재근로자가 산재병원에서 적기에 치료와 재활지원을 받아 조기에 노동시장에 복귀하면, 산재보험급여 지출 규모도 합리적으로 축소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까지 달성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로부터 출연을 받아 산재병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중기 의료기기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있으나, 계획 대비 실제 도입되는 장비 실적은 저조하며, 노후화된 장비가 정상적인 산재근로자를 위한 정상적인 진료를 어렵게 하고 있음.

노후화된 장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보고되었으나,[96] 2024년에서야 인천병원의 CT가 교체되었음.

창원과 순천병원의 경우 빈번한 고장으로 인한 반복적인 수리까지 발생하고 있고, 창원병원의 경우 2024년 6월 30일자로 유지보수업체로부터 더이상 제반 서비스를 제

94) 고용노동부는 표준요양기간 기준은 없으나, 산재근로자의 요양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의학자문 지원모형’을 구축하여 요양관리에 활용 중이라고 설명하였음.

95)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집중적인 전문재활치료를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고 장해를 최소화하여 직업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비용 없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집중재활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재활치료 분야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빠르게 직업과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집중재활치료 전체 참여인원〉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103	1,666	2,421	2,453	2,888	2,940	3,103	2,988

자료: 고용노동부

96) MRI 고장으로 촬영이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공할 수 없다는 서비스중단을 통보받았으며, 순천병원의 경우 MRI 냉동공조장치의 수명이 10년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어 장치 이상빈도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기술소견서를 받았음.[97]

위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2020~2024년간 MRI 도입 실적이 없는 등 최근 5년동안 의료장비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2020~2024년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개, 백만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예산	23	6,085	27	2,859	27	3,504	22	3,784	17	3,784
결산	58	6,085	106	2,859	85	3,504	116	3,784	68	3,784
MRI	-	-	-	-	-	-	-	-	-	-
CT	2	2,408	-	-	-	-	-	-	1	1,455
DR	1	367	1	65	-	-	3	1,075	1	355
영상	5	1,422	2	297	7	1,638	2	490	4	736
검사	22	970	32	1,359	34	903	39	1,238	16	544
수술/처치	9	486	4	176	6	185	9	220	8	149
보건	2	177	34	453	14	500	20	328	9	217
재활	13	66	21	184	19	139	36	349	22	104
기타	4	189	12	325	5	139	7	84	7	224

자료: 고용노동부

<노후 MRI 및 CT 노후화로 인한 의료사고 및 민원발생 사례>

연도	소속병원	의료사고 및 민원 내용
2019년	인천병원	MRI 노후 및 냉각시스템 이상으로 퀜칭(헬륨 전체 방출) 발생으로 인한 환자 검사 연기 및 민원 발생
2021년	인천병원	CT 노후화로 소음성난청의 업무관련성 여부판단을 위한 이비인후과 진단 촬영 시 영상오류 촬영중단 등으로 환자 1인이 다수로 촬영하는 사례발생
2022년	창원병원	MRI 노후로 작동불가시간 증가 및 주요부품(엠프류 등) 고장으로 촬영 중단 사례 발생
2023년	순천병원	MRI 노후로 헬륨감소량증가, 칠러 이상으로 인한 냉각수 온도상승 등으로 촬영 중단사례 발생

자료: 근로복지공단

97) 창원병원 MRI의 경우 2022년 10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15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으며, 순천병원 MRI의 경우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11월 4일까지 14건의 고장이 발생하였음.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의료장비는 정부지원금 및 자체 수입을 통해 확충하고 있고,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병원 자체 수입으로는 최근 5년('20~'24) 평균 약 16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산재병원이 재해자의 산재 신청・승인・재활치료 등을 지원하는 공공병원으로서 수익성이 낮아 민간병원에서 요양이 곤란한 장기요양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자체수입만으로 고가의 장비를 적기에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더욱이 산재병원지원 사업의 재원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은 2024년에 2조 7,255억 4,500만원의 여유자금(사업비 9조 1,305억 6,600만원 대비 29.85%)을 운용하고, 2025년에는 8조 5,505억 2,700만원(사업비 9조 5,695억 1,100만원 대비 89.35%)의 여유자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의료장비 개선을 위한 재원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장기적인 산재병원의 경영성과 개선과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료장비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음.

【임금채권보장기금】

〈수　입〉

21. 법정부담금: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은 임금채권보장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수입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4,635억 8,400만원 중 4,184억 3,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0.3%)되고 428억 8,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22억 6,8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98]

[2024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법정부담금	421,920	421,920	463,584	418,430	42,886	2,268	90.3	430,68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보수총액의 0.2%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고 있으며, 2010~2015년까지는 0.08%, 2016년부터는 0.06%의 요율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98) 임금채권보장기금-법정부담금(59-593)(근로기준정책관)

나. 검토의견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 기준」을 제정할 당시 대지급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비율이 약 50%인 점을 감안하여 경감 비율 상한을 50%로 설정하였으나, 현재 40%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경을 고려하여 현행 경감비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에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은 보수총액의 '1000분의 0.6(전업종 공통)'으로 정하고 있고, 또 다른 고용노동부 고시 「임금채권보장제도 사업주부담금 경감기준」은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전체 근로자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비율 또는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등으로 지급이 보장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담금에서 경감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1998년 부담금 경감 규정을 제정할 당시 대지급금 지급액 중 퇴직급여 비율이 약 50%였던 점[99]을 감안하여 부담금 경감 비율의 상한을 100분의 50으로 설정하였다고 설명함.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한 사외적립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대해 지급보장 조치를 한 사업주는 퇴직급여 미지급을 사유로 대지급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체불위험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비례하여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보험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100]

다만 2015년~2024년 체불임금액을 유형별(임금·퇴직급여·기타)로 살펴보면 전체 체불액에서 퇴직급여 체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101]

---

99) 1998년 7월~2001년 10월까지 지급된 체당금 중 퇴직급여 비중이 약 49.6%였음.

100)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이라는 사업에 내재된 공통의 위험을 사업주들 사이에서 분배하여 대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인 사회보험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음. (고용노동부(2023), 「체불 해결을 위한 책임 강화 방안 및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기준 등에 관한 연구」,p101)

101) <2015~2025년 전체 체불임금 중 유형별(임금·퇴직급여·기타)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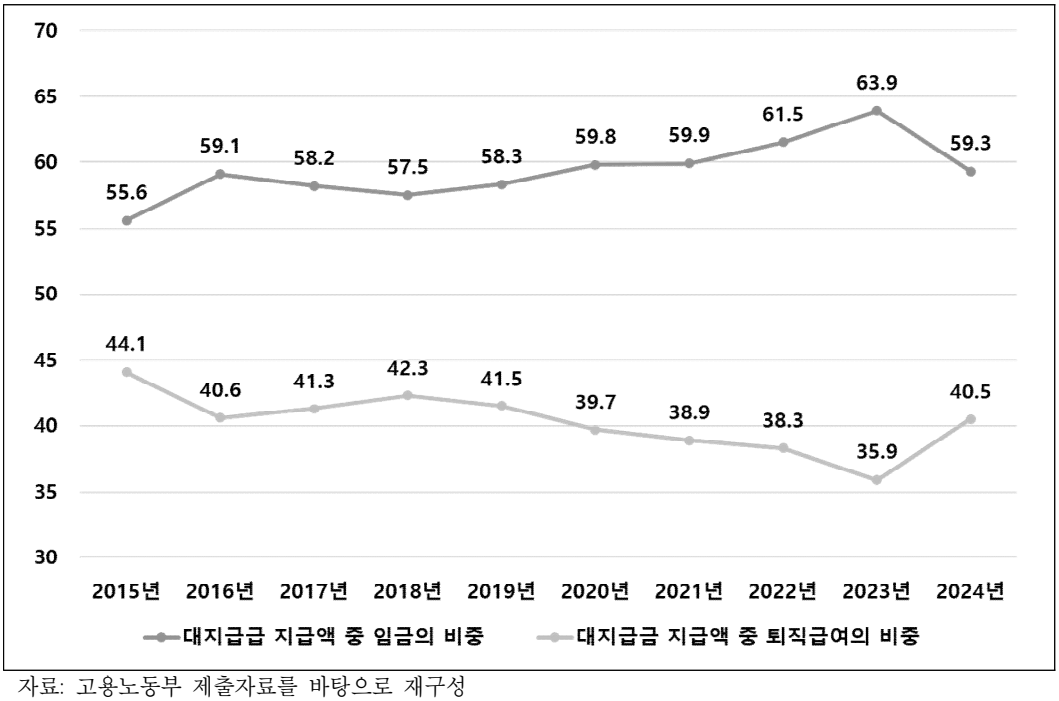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체불금액 중 임금체불액의 비중	54.0	52.2	52.7	52.8	54.3	53.5	54.2	53.1	54.6	51.8
전체 체불금액 중 퇴직급여 체불액의 비중	41.5	428.	41.7	39.5	40.1	40.0	39.0	40.6	38.3	40.2
전체 체불금액 중 기타체불액 (휴업수당 등)의 비중	4.5	5.0	5.6	7.7	5.5	6.6	6.7	6.3	7.1	8.0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대지급금 지급액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금액의 비중은 2015년 44.1%(1,313억 8,500만원)에서 2024년 40.5%(2,933억 9,900만원)로 감소하였으므로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02]

[2015~2024년 대지급금 지급 범위별 대지급금 지급 현황]

(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액에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금액의 비중이 40%대가 된 이후에도 경감비율 상한을 50%로 유지한 사유에 대해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 설정 및 퇴직연금 납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경감 비율 상한을 50%로 유지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러나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에서 퇴직급여 체불 해소를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의 비중이 40% 정도의 추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가입 시 50%를 상한으로 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은 퇴직연금 가입으로 인해 감소하는 임금체불의 위험성 이상으로 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02)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이직이 잦아 계속 고용의 기간이 감소하고 있는 고용형태에서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단기간에 회수하거나 퇴직급여 수급 요건을 미충족 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로 보임. 실제로 2015년 대비 2024년 비정규직 취업자 수는 약 215만 1,000여명(2015년 대비 34.1% 증가)이 증가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근속기간 3년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70%를 상회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 부담금 감면 제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동되었으므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2020~2024년 사업주 부담금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 부담금 경감 비율을 50%에서 40%에서 조정할 경우, 5년 합계 523억 7,100만원, 연평균 104억 7,400만원의 추가적인 기금 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보임.

[2020~2024년 결산 기준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시 예상되는 부담금 수입 증가분]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5년 평균
전체 사업주 부담금 납부액	336,243	347,122	380,901	408,876	419,067	1,892,209	378,441.8
전체 사업주 부담금 경감액 (현행 50/100)	44,842	50,131	53,689	50,963	45,758	245,383	49,076.6
사업주 부담금 증가액 (조정 40/100)	9,631	10,684	11,579	10,865	9,612	52,371	10,474.2

자료: 고용노동부

22. 기타경상이전수입: 대지급금 지급 후 회수 실적 제고 노력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대지급금 지급 후 당해 사업주로부터 회수한 대위변제금 등이 수납되는 수입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4조 877억 600만원 중 1,625억 8,700만원이 수납(수납률 4.0%)되고, 3조 7,290억 8,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1,960억 3,2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103]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198,797	198,797	4,087,706	162,587	3,729,087	196,032	4.0	198,797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대지급금 회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는 대지금금 회수를 철저히 하여 회수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 지급액의 규모는 2019년 4,598억 8,000만원에서 2024년 7,242억 7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104]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어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은 2019년 34.3%에서 2024년 30.0%로 감소하였음.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누적 대지급금 중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금은 3조 7,004억 2,300만원으로 2019년 2조 468억 8,600만원 대비 1조 6,535억 3,700만원(80.8%) 증가하였음.

103) 임금채권보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근로기준정책관)

104) 2024년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총계 기준 전체지출액은 1조 61억 5,700만원으로, 이 중 대지급금 지급액 7,242억 700만원의 비중은 약 72.3%임.

[2019~2024년 대지급금 지급 내역 및 사업 회수 실적]

(단위: 백만원,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당해년도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당해연도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345,663	457,207	398,323	383,623	538,773	565,979
당해연도 대지급금 회수율	24.8	21.1	27.1	28.5	21.6	21.8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A)	4,574,052	5,153,742	5,700,313	6,237,177	6,924,083	7,648,289
누적 대지급금 회수금액(B)	1,567,381	1,689,864	1,838,112	1,991,353	2,139,485	2,297,714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 중 미수금	3,006,671	3,463,878	3,862,201	4,245,824	4,784,598	5,350,575
불납결손액 제외	2,046,886	2,492,176	2,750,155	3,090,740	3,329,359	3,700,423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 (B/A)	34.3	32.8	32.2	31.9	30.9	30.0

주) 누적 대지급금 회수율을 당해연도 12월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지급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금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회수가 적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고, 임금채권보장제도 또한 유지할 수 있음.[105]

<2024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주요 지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결산	2023결산	2024년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대지급금지급	536,864 (69.2)	686,905 (70.4)	474,733	727,203	727,198 (72.3)	100.0
체불청산지원융자	33,177 (4.3)	72,785 (7.5)	40,190	77,200	76,918 (7.6)	99.6
총 계	775,395 (100.0)	975,222 (100.0)	972,809	972,809	1,006,157 (100.0)	103.4

자료: 고용노동부

105) 대지급금 지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있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해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퇴직급여가 사외에 적립이 되어 근로자의 퇴직급여 체불이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대지급금 수요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실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22년) 이후 2024년까지 4만 3,058명에게 총 1,765억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한 실적이 있음.

그러나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 대지급금 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지급금 회수가 저조하였고, 2019~2024년간 매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적립금의 규모가 2019년 9,587억 7,700만원에서 2024년 3,472억 6,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될 수 있는 상황임.

[2019~2024년 임금채권보장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488,392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지출(B)	519,153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사업비지출	506,251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대지급금 지급액	459,880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수지차 (A-B)	△30,761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적립금	958,777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여유자금	753,168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2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한국은행 예치금	5,609	4,965	4,188	4,980	3,601	4,576

주)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 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06]

<2022~2024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퇴직급여 지급 현황>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퇴직자	632	11,897	30,529	43,058
퇴직급여 지급	1.8	398	1,365	1,764.8

자료: 고용노동부

106) 고용노동부는 ①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업무 담당인력 보강 및 효율적인 배치, ②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고, 오래된 악성채권은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회수업무를 효율화, ③ 변제금을 일시납부하기 어려운 사업주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 ④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여 대지급금 보다 사업주 융자를 먼저 활용하도록 유도해 변제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지　출〉

23. 대지급금 지급: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의 연령별 차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272억 300만원 중 7,271억 9,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500만원이 불용되었음.[107]

[2024년도 대지급금 지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대지급금 지급	474,733	727,203	-	727,203	727,198	-	5	529,346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연령별로 대지급금 상한액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상한액 차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 두 종류가 있음. ① 도산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며, ② 간이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임.

고용노동부의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에 따르면, 도산 대지급금의 경우 연령별로 지급 상한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107) 임금채권보장기금-대지급금 지급(3051-300)(근로기준정책관)

[체불임금 유형별 도산 대지급금 상한]

(단위: 만원)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310				

자료: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2020년 도산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개정 시 검토한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의 산출근거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액에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도출하였음.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산출 근거]

(단위: 만원)

구 분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① '18.6월 기준 월평균임금[1)]	254	364	422	398	269
② 임금인상율[2)]	3.79%	3.79%	3.79%	3.79%	3.79%
③ '20년 평균임금 ①+(①×②)	264	378	438	413	279
④ 체당금상한액 산정비율[3)]	80%	80%	80%	80%	80%
⑤ 상한액 결과 ③×④	211	302	350	330	223
⑥ 단위 조정 (현행 대비 인상률)	220 (22.2%)	310 (19.2%)	350 (16.7%)	330 (17.9%)	230 (9.5%)
⑦ 현행 상한액	180	260	300	280	210

주 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18.6월)의 자료 활용(상시 5인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
2) 일반업 보수상승률(연 평균 3.79%)을 적용하되, 최근 체당금 제도 개편(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등)에 따른 기금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인상율 1회 반영
3) 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험료가 원천징수 되는 것을 감안하여 월평균임금의 80% 수준 반영

자료: 고용노동부

이러한 방식으로 상한액을 산출할 경우,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기업들의 임금체계까지 반영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한액을 높게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도산대지급금의 핵심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주로 규모가 작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도산 대지급금은 2015~2024년 주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며, 2024년의 경우 전체 도산 대지급금 지급액(548억 2,700만원) 중 약 48.8%(267억 7,100만원)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지출되었음.

[전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 중 사업장 규모별 지급액 비중]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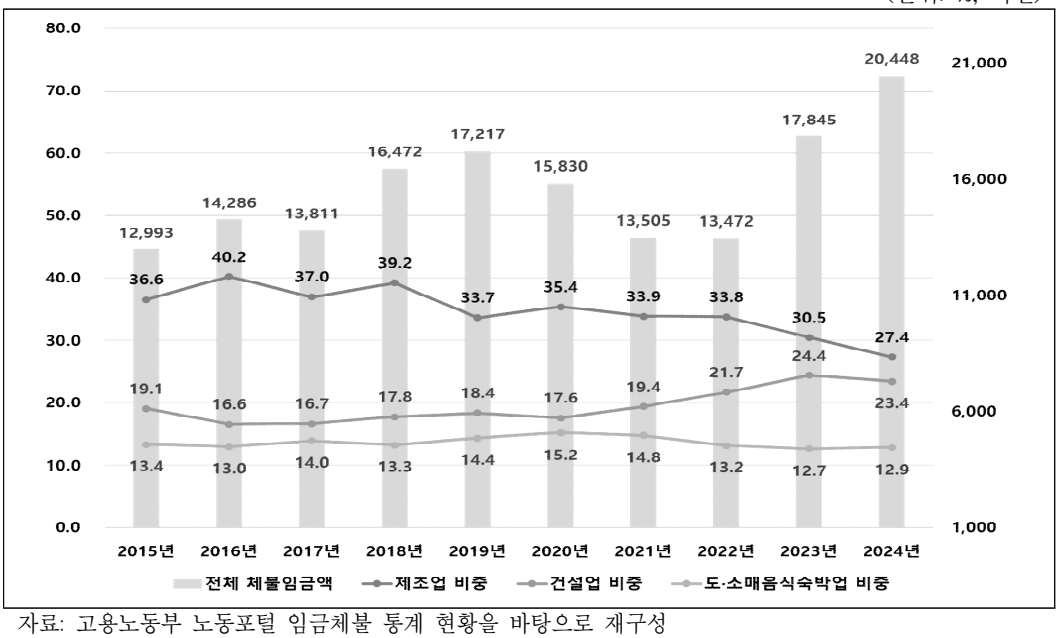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5인 미만 사업장	10.8	8.9	9.3	9.0	11.8	8.0	9.2	12.5	7.9	9.0
5~29인 사업장	42.8	44.4	41.5	45.3	44.8	44.1	43.4	46.7	43.3	39.8
30~99인 사업장	28.6	28.6	30.9	32.5	31.3	34.0	28.8	24.6	29.0	24.1
100~299인 사업장	13.3	14.3	16.4	8.9	7.1	9.5	11.9	13.6	15.4	11.9
300인 이상 사업장	4.5	3.8	1.9	4.3	5.0	4.4	6.8	2.6	4.4	15.1
전체 도산대지급금 지급액	262,644	240,724	232,727	187,467	168,789	109,975	79,360	36,576	39,635	54,827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체불임금액은 주로 제조업・건설업・도・소매 또는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건설업이나 도・소매업 또는 음식・숙박업 등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체계를 선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

[2015~2024년 전체 체불임금액 및 업종별 체불임금 비중]

(단위: %, 억원)



자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임금체불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재구성

고용노동부는 도산 대지급금의 연령별 상한 차등은 근로자 체불임금 등의 지급 보장이라는 「임금채권보장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가급적 실제 임금과 대지급금의 격차를 최소화하고 근로자 간 생계보장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한정된 재원 하에서 연령별로 동일한 상한을 적용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높은 40대는 실제 임금대비 대지급금 지급 비율이 낮아 오히려 형평성을 훼손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였음.

또한 대지급금으로 지급되는 임금과 퇴직금은 체불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가구원 생계부양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연령대별 1인 가구 비중과 주된 부양책임이 있는 연령대 등을 고려하여 체불근로자 및 그 가구원들의 생계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음.

다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체불임금이 주로 발생하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등에서 단순히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임금체계를 도입했을 가능성이 낮아 오히려 나이가 적은 임금체불근로자의 실제 임금 대비 대지급금 비율이 낮을 수 있고,[108]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취지는 있으나,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대위변제이지 시혜적인 복지와는 구분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09]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상한액 차등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등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8) 고용노동부는 2024년 대유위니아 파산으로 ① 주식회사 위니아에 도산대지급금 17억 9,000만원(199명), ② 주식회사 위니아전자에 14억 3,700만원(108명), ③ 주식회사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에 12억 3,000만원(81명)의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재직자 중 연령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함.

109) 프랑스의 기업 도산 시 임금채권보장제도는 근속기간에 따라 상한액에 차등을 두고 있음.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지　출〉

24. 장애인고용기금: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확대 필요

가. 개　요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써 설치하는 특정자금[110]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111]는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① 고용장려금, ②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③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등 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음.[112]

---

110) 「국가재정법」
제5조(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1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1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비용의 지급에 사용한다.
1. 공단에의 출연
2.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과 장비의 설치·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지원
5.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기기 등의 융자·지원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설립·운영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의 융자·지원
7. 직업지도, 취업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를 행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융자·지원
8. 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행하는 자 및 그 장애인에 대한 훈련비·훈련수당

나. 검토의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장애인고용률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여유자금은 약 1조 2,30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113)]

[2019~2024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수입·지출 및 적립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A)	639,032	793,130	807,319	827,571	879,340	1,013,735
지출(B)	484,896	591,140	685,848	772,194	865,954	935,797
사업비지출	420,378	519,138	610,819	693,356	784,648	851,734
수지차 (A-B)	154,136	201,990	121,471	55,377	13,386	77,938
적립금	1,310,840	1,521,783	1,650,715	1,705,932	1,736,776	1,830,333
여유자금	910,106	967,340 (6.3)	1,099,564 (13.7)	1,105,144 (0.5)	1,135,584 (2.8)	1,229,552 (8.3)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	400,000	553,890	550,000	600,000	600,000	600,000
한국은행 예치금	734	553	1,151	788	1,192	781

주 1) 적립금 = 여유자금+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한국은행 예치금
수입(A) = 부담금 등 자체수입(공자기금 회수액 및 이자, 여유자금 회수 제외)
지출(B) = 사업비+운영비(공자기금 예탁금, 여유자금 지출 제외)
여유자금 = 누적금액
2) 괄호 안의 숫자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

9. 자영업 장애인에 대한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생활 안정 자금 등의 융자
10.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관리를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등의 배치에 필요한 경비
11. 제70조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12. 이 법에 따라 장애인과 사업주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13. 제32조에 따른 포상금
1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 수행에 따르는 경비

113) 고용노동부는 사업비(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입 누적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는 금액은 2021년 5,500억원에서 2022년 6,000억원으로 증가한 이후 2024년까지 매해 6,0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202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립금은 약 1조 8,303억원으로, 사업비지출액 8,517억원의 2배 이상임.

고용노동부는 사업비(공단 인건비 등 운영비 포함)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운용수입 누적 등으로 여유자금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생산가능 장애인구와 장애인 일자리 기회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수단을 폭넓게 인정하고 장애인 고용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114]

그러나 장애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장애인고용증진 프로그램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이 최근 5년간 48%~50%대에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의 경우 매해 전년대비 장애인고용률이 감소하고 있음.

[2020~2024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

(단위: %)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8.0	49.0	50.3	49.8	48.4

주) 장애인 고용률 = (장애인 취업자 수 / 15세 이상 만64세 이하 장애인 인구) × 100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률은 경제상황과 외부요인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으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고용의무 이행 강화 등으로 의무고용 사업체(약 3만개)의 장애인 고용률[115] 및 중증 장애인 비중[116]이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고 설명하였음.

114)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규제 개선, 연계고용 적용 대상 확대, 고용컨설팅 제공, 디지털훈련센터 확충,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등

115) 장애인고용률(%): ('20) 3.08% → ('21) 3.10% → ('22) 3.12% → ('23) 3.17% → ('24) 3.21%

116) 중증장애인비중(%): ('20) 29.9% → ('21) 31.9%→ ('22) 33.7% → ('23) 35.0% → ('24) 35.8%

[2021~2025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사업추진 현황]

연도	신규사업 추진 등 제도개선 사항
2021	**('21년 6,789억원)** 저임금 중증장애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 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8천명)
2022	**('22년, 7,663억원, 전년대비 874억원 증가)** 신규고용장려금* 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시 月 30~80만원, 12개월 지원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22년 3.6%), 근로지원인 지원 대상을 장애인공무원까지 확대
2023	**('23년, 8,478억원, 전년대비 815억원 증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수준 및 인턴제 단가 인상, 근로지원인 지원 및 출퇴근 비용 지원 확대 * 장애인고용장려금 : <'22> 2,624억 → <'23> 2,977억 ↳ 지원수준(만원): 男·경증 30→35, 女·경증 45→50, 男·중증 60→70, 女·중증 80→90 * 장애인인턴제 : <'22> 32억(월 최대 80만원) → <'23> 46억(월 최대 100만원) * 근로지원인 지원 확대 : <'22> 2,047억(1만명) → <'23> 2,270억(+500명)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지원 : <'22> 26억(3.9천명) → <'23> 69억(15천명) ↳ <'22>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 <'23>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확대
2024	**('24년, 9,053억원, 전년대비 575억원 증가)** 출퇴근비용 지원 단가 인상, 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표준사업장·디지털 훈련센터(+4개소)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24년 3.8%) * 중증장애인출퇴근비용지원(월 7만원(+2만원)), 장애인고용장려금(3,119억, +302억)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확대(13천명, +2천명)·조기취업성공수당 신설 * 근로지원인(11천명, +5백명), 중증장애인 인턴(1천명, +3백명) * 표준사업장 설립지원(172개소, +25개소), 보조공학기기(15천점, +1천점)
2025	**('25년, 9,372억원, 전년대비 319억원 증가)** 고용장려금 확대 및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지원한도 10억→15억 상향, 30억, 10개소), 취업성공패키지 강화 및 디지털훈련센터 확충(+3개소) * 장애인고용장려금: 3,774억(+540억, 76만명(+13만명), 취업성공패키지: 265억(+18억, 14천명(+1천명))

자료: 고용노동부

지속적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긍정적이나, 장애인 고용률이 정체 상태임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117]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장애인 고용률 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118]

117) 기금의 적립금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사업확대를 통한 사업비 증대뿐만 아니라 수입원인 부담금 등을 감면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실효성 확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측면에서 수입에 대한 제도개선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8) 참고로 2022회계연도 결산 당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편성된 사업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음.

고용노동부는 동 기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 편성된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기후대응기금】

〈지 출〉

25.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적극적인 수요발굴 노력 필요

가. 개 요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자체 또는 위탁하여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을 위한 훈련 및 전직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7억 4,2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이 집행(집행률 32.1%)되고 11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119]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은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18억 300만원 중 7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41.2%)되고 10억 6,000만원이 불용되었음.[120]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3,742	1,742	-	1,742	560	-	1,182	-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2,500	1,803	-	1,803	743	-	1,06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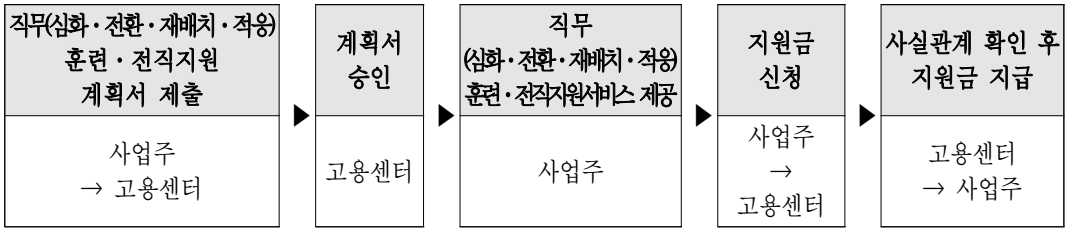
주) 2025년도부터 두 사업은 ‘산업・일자리전환 지원’ 세부사업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음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훈련이나 전직지원과 관련된 계획서를 제출 및 승인받고, 실제 훈련과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119) 기후대응기금-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6332-301)(노동시장정책관)

120) 기후대응기금-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6332-302)(노동시장정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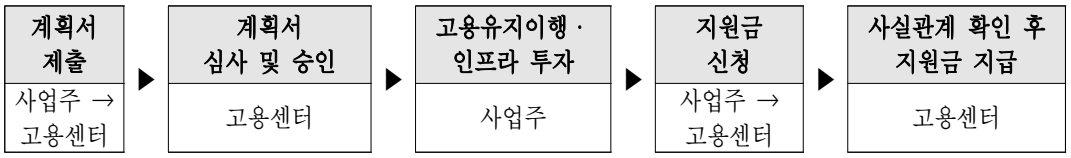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이행·인프라 투자에 대한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및 승인 받고, 실제로 고용유지를 이행하고 인프라 투자를 한 이후에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절차]



자료: 고용노동부

나. 검토의견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모두 산업전환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소기업이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직무훈련·장비·시설에 대한 수요가 저조하여 집행이 부진하였으므로,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선제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4년 당초 37억 4,200만원을 계획하였다가 저조한 수요로 20억원을 자체변경하여 삭감하였으나, 5억 6,000만원만 집행되고 11억 8,200만원이 불용되어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15.0%,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32.1%로 부진하였음.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2024년 당초 25억원을 계획하였다가 저조한 수요로 6억 9,700만원을 자체변경하여 삭감하였으나, 7억 4,300만원만 집행되고 10억 6,000만원이 불용되어 당초 계획액 대비 집행률은 29.7%, 계획현액 대비 집행률은 41.2%로 부진하였음.

[2024년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계획변경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자체변경 ('24.12.2.)	320	01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2,000	현장수요 및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기금운용계획 변경)
자체변경 ('24.12.6.)	320	01	산업・일자리전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697	현장수요 및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감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합 계				△2,697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은 2022년(2.0%)~2024년(32.1%)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도 2023년을 제외하고는 2022년(16.8%), 2024년(41.2%) 집행이 부진하였음. 특히 두 사업 모두 매해 자체변경을 통해 당초 지출계획액을 연도 중 감액하였음.

[2022~2024년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 및 산업·일자리전환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산업・일자리 전환지원금	2022	5,260	2,760	-	2,760	54	2.0	2.0	-	2,706
	2023	5,260	2,180	-	2,180	478	21.9	21.9	-	1,702
	2024	3,742	1,742	-	1,742	560	32.1	32.1	-	1,182
산업・일자리 전환고용환경 개선지원금	2022	5,000	4,350	-	4,350	730	16.8	16.8	-	3,620
	2023	2,500	2,500	-	2,500	2,113	84.5	84.5	-	387
	2024	2,500	1,803	-	1,803	743	41.2	41.2	-	1,06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집행부진 사유에 대해 두 사업 모두 산업전환이 단계적・점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훈련수요가 아직 높지 않고, 특히 산업구조 전환은 원청이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기업은 훈련기반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 지원 수요가 적으며 중소기업은 원청의 산업전환 방향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훈련수요가 저조하다고 설명하였음.[121]

121) 추가로 산업・일자리전환지원금의 경우 탄소중립・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현장체감도가 낮고, 사업도입기간이 비교적 짧아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등 수요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추계한 목표인원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하였음.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며, 정부가 기후전환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시켜야 산업계 전반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고용노동부는 선제적으로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전환·심화·재배치·적응 등의 훈련수요와 시설개선 수요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산업전환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사업의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기　타】

26.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고용노동부에 대해 시정요구 86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7건·주의 37건·제도개선 4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7	37	44	(2)	86
예비비	-	-	-	-	-	-	-
합계	-	-	7	37	44	(2)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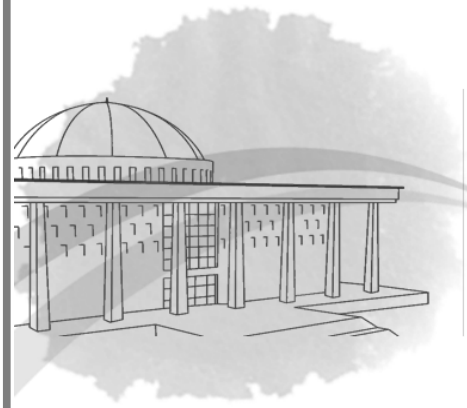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시정요구사항 86건에 대해 7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84.9%)하고 13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86	73	84.9	13
예비비	-	-	-	-
합계	86	73	84.9	13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4조 2,328억 4,700만원(△16.7%)이 적은 21조 48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6,323억 5,600만원(20.9%)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065,829	1,065,829	1,307,416	241,587	1,715,181	1,715,181	2,305,694	590,513	998,278
기 금	21,999,760	21,999,760	16,108,916	△5,890,844	23,566,254	23,566,254	18,742,894	△4,823,360	2,633,978
총수입	23,065,589	23,065,589	17,416,332	△5,649,257	25,281,435	25,281,435	21,048,588	△4,232,847	3,632,256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5조 9,820억 5,900만원(△9.7%)이 적은 55조 5,729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조 9,530억 8,100만원(7.7%)이 증가함.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2,401,280	22,401,280	21,098,171	△1,303,109	23,658,347	23,658,347	22,715,328	△943,019	1,617,157
기 금	33,350,132	32,260,316	30,521,718	△1,738,598	37,285,588	37,896,681	32,857,641	△5,039,040	2,335,923
총지출	55,751,412	54,661,596	51,619,888	△3,041,708	60,943,935	61,555,028	55,572,969	△5,982,059	3,953,081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조 1,704억 2,800만원으로, 17조 5,708억 8,8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5조 9,643억 7,7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7%)되고 1조 6,006억 6,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58억 4,500만원이 불납결손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189,914	189,914	-	189,914	371,297	308,045	63,247	5
교통시설특별회계	14,813,412	14,813,412	-	14,813,412	14,734,344	14,560,518	173,826	-
- 도로계정	7,962,536	7,962,536	-	7,962,536	8,182,534	8,056,488	126,046	-
- 철도계정	4,886,187	4,886,187	-	4,886,187	4,488,167	4,477,491	10,677	-
- 교통체계관리계정	997,793	997,793	-	997,793	1,093,784	1,067,601	26,183	-
- 공항계정	966,896	966,896	-	966,896	969,858	958,938	10,920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773	773	-	773	568	568	-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85,906	585,906	-	585,906	413,681	413,681	-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80,423	580,423		580,423	2,050,998	681,565	1,363,593	5,840
- 지역자율계정	297,492	297,492	-	297,492	1,493,210	357,310	1,130,061	5,840
- 지역지원계정	282,315	282,315	-	282,315	557,148	323,616	233,532	-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33	133	-	133	1	1	-	-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483	483	-	483	638	638	-	-
합 계	16,170,428	16,170,428	-	16,170,428	17,570,888	15,964,377	1,600,666	5,845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0조 4,200억 1,100만원으로, 37조 6,127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3.1%)되고 6,696억 6,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조 1,376억 1,0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22,131,164	22,131,164	56,049	70	27,600	22,214,883	21,145,918	33,190	1,035,775
교통시설특별회계	14,813,412	14,813,412	551,580	0	27,600	15,392,592	13,885,728	596,362	910,502
- 도로계정	7,962,536	7,962,536	428,120	0	0	8,390,656	7,751,965	451,432	187,260
- 철도계정	4,886,187	4,886,187	43,300	0	0	4,929,487	4,435,617	14,649	479,221
- 교통체계관리계정	997,793	997,793	18,085	0	27,600	1,043,478	983,208	1,529	58,741
- 공항계정	966,896	966,896	62,075	0	0	1,028,971	714,938	128,753	185,28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426	14,426	0	0	0	14,426	14,003	0	42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583,963	583,963	277	0	0	584,240	408,324	850	175,06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61,729	2,161,729	52,142	0	0	2,213,871	2,158,764	39,264	15,843
- 지역자율계정	381,121	381,121	0	0	0	381,121	381,121	0	0
- 지역지원계정	1,692,837	1,692,837	50,078	0	0	1,742,915	1,690,822	37,486	14,608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79,291	79,291	0	0	0	79,291	78,141	267	884
- 세종특별자치도계정	8,480	8,480	2,063	0	0	10,543	8,680	1,512	352
합 계	39,704,694	39,704,694	660,047	70	55,200	40,420,011	37,612,736	669,666	2,137,61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105조 6,656억 6,700만원으로, 121조 5,663억 7,9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20조 4,180억 1,0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1%)되고 1조 487억 6,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996억원이 불납결손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주택도시기금	105,400,280	105,400,280	121,012,230	120,150,481	779,809	81,940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5,387	265,387	554,149	267,529	268,960	17,661
합 계	105,665,667	105,665,667	121,566,379	120,418,010	1,048,769	99,600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05조 6,680억 2,000만원으로, 120조 4,180억 1,000만원이 지출(집행률 114.0%)되고 5억 5,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6조 863억 8,700만원이 불용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기금	105,400,280	105,400,280	2,353	105,402,633	120,150,481	554	6,086,387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265,387	265,387	-	265,387	267,529	-	-
합 계	105,665,667	105,665,667	2,353	105,668,020	120,418,010	554	6,086,387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산은 전년 대비 6조 7,410억 800만원이 증가한 724조 3,998억 7,4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9조 3,211억 6,7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투자자산이 14조 779억 4,600만원, 일반유형자산이 1조 7,207억 400만원 각각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조 619억 6,200만원 증가한 195조 8,110억 600만원으로, 이는 장기차입부채 3조 1,725억 3,600만원 감소하였음에도 유동부채가 5조 4,603억 4,0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조 6,790억 4,600만원 증가한 528조 5,888억 6,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23조 4,673억 6,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607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21조 1,029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9억 1,2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724,399,874	717,658,866	6,741,008	0.9
		유동자산	53,980,727	63,301,894	△9,321,167	△14.7
		투자자산	225,352,288	211,274,342	14,077,946	6.7
		일반유형자산	124,564,026	122,843,322	1,720,704	1.4
		사회기반시설	318,800,828	318,752,341	48,487	0.0
		무형자산	150,474	231,720	△81,246	△35.1
		기타비유동자산	1,551,531	1,255,247	296,284	23.6
	부 채		195,811,006	193,749,044	2,061,962	1.1
		유동부채	128,742,016	123,281,676	5,460,340	4.4
		장기차입부채	62,621,379	65,793,915	△3,172,536	△4.8
		장기충당부채	73,580	63,363	10,217	16.1
		기타비유동부채	4,374,032	4,610,089	△236,057	△5.1
	순자산		528,588,868	523,909,822	4,679,046	0.9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23,467,363	21,606,651	1,860,712	8.6
	재정운영순원가		21,538,229	21,247,159	291,070	1.4
	재정운영결과		21,102,956	20,765,044	337,912	1.6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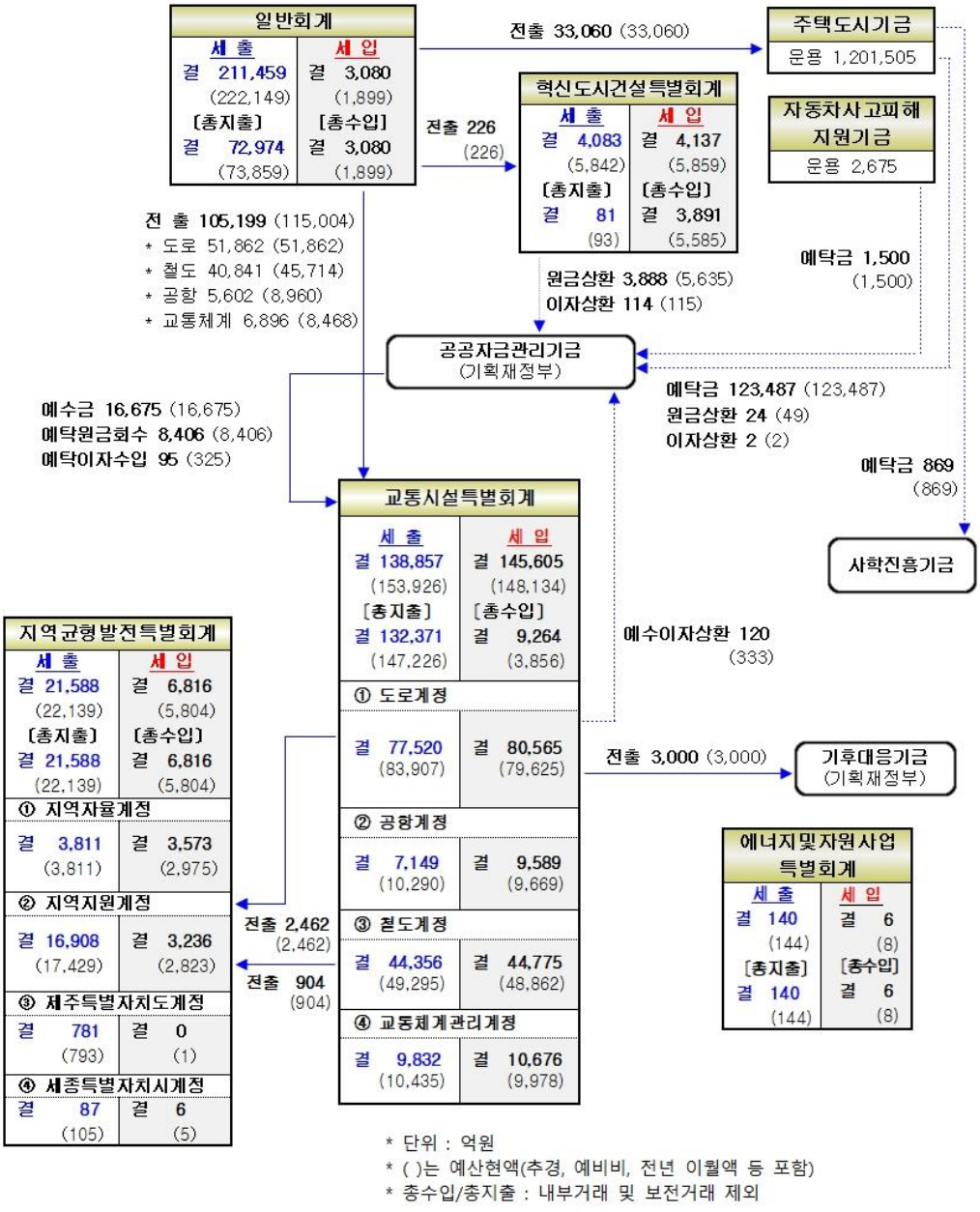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의 재정은 일반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5개 회계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0조 5,199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226억원, 주택도시기금으로 3조 3,06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366억원, 기후대응기금으로 3,000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예탁금 원금 8,406억원 및 예탁금 이자 95억원이 상환되었음.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6,675억원을 예수받고 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이자 120억원을 상환하였음.

또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금 원금 3,888억원과 예수금 이자 114억원을 상환하였음.

다음으로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500억원이 예탁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2조 3,487억원이 예탁되었으며, 예수금 원금 24억원과 예수금 이자 2억원이 상환되었음. 또한, 주택도시기금에서 사학진흥기금으로 869억원이 예탁되었음.

[2024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재정흐름도]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국토교통부는 교통부담 완화, 주거안전망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강화,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 780개(예산 736개, 기금 4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토교통부 소관 일부 사업에서 2년에 걸쳐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가정하고 2025년 재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들의 집행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2025년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철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 일부를 임의로 '미집행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인행위 없이 이월 및 재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보완하여 집행잔액의 정산·반납 및 이월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넷째, 주거급여 사업에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임차료를 인상시켜 쪽방 건물주만 수혜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쪽방 등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다섯째, 「항공안전기술원법」은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과 수입금을 통해서만 조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차입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정할 필요가 있음.

여섯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보증가입자의 환불건수 및 금액이 최근 3년간 6만건, 25억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보증료 지원 혜택을 받은 후 보증 취소·해지 등으로 환불받은 경우 기 지원한 보증료의 환수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

일곱째,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순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덟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어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공사는 이러한 부채관리를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아홉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국토교통부 소관 집행부진 사업 분석

가. 개　요

(1) 집행부진 사업 현황 및 총집행률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사업으로서, ①집행률 70% 미만으로 예산현액과 집행액의 격차가 현저하면서 통상적인 관급공사의 낙찰 하한율인 85 ~ 88%를 하회하는 등 수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②이러한 집행부진 상황이 2년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시적인 집행부진으로 보기 어렵거나 집행부진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위 기준에 따른 집행부진 사업은 총 39건이며, 전체 예산현액 4,851억 9,400만원에서 2,082억 1,100만원이 집행되어 평균 집행률은 42.9%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도 평균 집행률 46.4%보다 3.5%p 낮은 수치로서 해당 사업군의 집행부진이 개선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함.

[2023, 2024년도 집행률 연속 70% 미만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기금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1	일반회계	철도기본계획수립	15,250	8,714	57.1	6,999	1,857	26.5
2	교특회계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3	0	0.0	70	25	35.7
3	교특회계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3	0	0.0	70	25	35.7
4	교특회계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4	2	50.0	70	34	48.6
5	교특회계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	27,535	14,068	51.1	39,711	25,932	65.3
6	교특회계	거제-마산국도건설	200	0	0.0	5,000	0	0.0
7	교특회계	안성공도-대덕	9,599	4,735	49.3	12,312	7,131	57.9
8	교특회계	평택-오산국도건설	4,452	2,936	65.9	10,090	5,947	58.9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기금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9	교특회계	신장-복용국도건설	4,572	2,702	59.1	3,406	2,105	61.8
10	교특회계	부안-흥덕국도건설	125	10	8.0	7,112	3,101	43.6
11	교특회계	양남-감포 국도건설	14,089	9,248	65.6	17,860	12,380	69.3
12	교특회계	오지-동송 국도건설	7,327	3,941	53.8	6,183	3,774	61.0
13	교특회계	포천이동-철원서면 국도건설	562	8	1.4	1,341	301	22.4
14	교특회계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27	7	25.9	2,670	1,420	53.2
15	교특회계	위험도로개선	159,519	108,526	68.0	205,344	109,925	53.5
16	교특회계	충북선 고속화	18,677	0	0.0	39,713	18,220	45.9
17	교특회계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를이용한도심형수소모빌리티확산인프라기술개발(R&D)	2,600	454	17.5	1,060	0	0.0
18	교특회계	제주공항 시설개선	14,871	3,776	25.4	8,613	94	1.1
19	교특회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7,100	759	10.7	6,934	744	10.7
20	교특회계	제주제2공항 건설	17,480	258	1.5	17,286	1,149	6.6
21	교특회계	새만금신공항건설	13,920	18	0.1	38,359	1,360	3.5
22	교특회계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200	0	0.0	13,800	0	0.0
23	교특회계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2,500	0	0.0	12,983	0	0.0
24	교특회계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 건설	1,744	0	0.0	3,000	0	0.0
25	지특회계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567	55	9.7	567	36	6.3
26	지특회계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1,700	0	0.0	400	0	0.0
27	지특회계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3,211	971	30.2	3,815	2,404	63.0
28	지특회계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1,000	34	3.4	24	0	0.0
29	지특회계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1,577	1,018	64.6	401	96	23.9
30	지특회계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	5,002	2,006	40.1	4,994	3,045	61.0
31	지특회계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202	0	0.0	375	0	0.0
32	지특회계	의령부림산단진입도로	5,126	2,960	57.7	4,599	2,870	62.4
33	지특회계	창원국가산단진입도로	4,760	2,081	43.7	4,930	2,874	58.3
34	지특회계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550	344	62.5	311	160	51.4
35	지특회계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583	389	66.7	365	210	57.5
36	지특회계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209	137	65.6	107	52	48.6
37	주택도시기금	기타경비(주택)	294	135	45.9	420	139	33.1
38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15,000	110	0.7	2,700	801	29.7
39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4,000	0	0.0	1,200	0	0.0
합계			367,140	170,402	46.4	485,194	208,211	42.9

자료: 2024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일반적으로 집행률 산정은 2024년 당초 예산액에 전년도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이는 실제 2024년 예산의 집행 실적을 과다 측정할 수 있는데, 전년도이월액은 대체로 지출원인행위가 분명하거나 재이월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집행 가능성이 높고, 사업 절차상 또는 계속사업의 성질상 집행 과정에서 전년도이월액이 먼저 집행되기 때문임.[2] 이에 전년도이월액을 제외한 2024년 순수 예산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정부의 집행실적과 함께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집행률 산출 방식]

구분	산출방식
집행률(일반)	$\frac{\text{집행액}}{\text{2024년 예산액} + \text{이전용등} + \text{2023년도이월액}}$
2024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frac{\text{2023년도이월액에서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집행액}}{\text{2024년 예산액} + \text{이전용등}}$

전년도이월액을 제외하면, 2024년 예산액 기준으로 총 3,966억 700만원 중 1,380억원을 집행하여 평균 집행률은 34.8%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집행률 42.9%보다 8.1%p 낮은 수치임.

[2024년도 예산(전년도 이월액 제외) 기준 사업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기금	사업명	2024년도				
			예산현액 (C)	전년도이월액 (E)	전년도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C-E)	집행액 (F)	집행률 (C-E)/F
1	일반회계	철도기본계획수립	6,999	1,855	5,144	6	0.1
2	교특회계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70	0	70	25	35.7
3	교특회계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70	0	70	25	35.7
4	교특회계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70	0	70	34	48.6
5	교특회계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	39,711	316	39,395	25,616	65.0

2) 2024년 100만원의 예산액 중 25만원을 집행할 경우 집행률은 25%인데, 전년도이월액 50만원이 포함될 경우 집행률은 50%($\frac{(25\text{만원}+50\text{만원})}{(100\text{만원}+50\text{만원})}$, 전년도이월액 전액집행 가정)로 증가함. 전년도이월액 규모가 클수록 집행실적은 더욱 개선됨.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기금	사업명	2024년도				
			예산현액 (C)	전년도이월액 (E)	전년도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C-E)	집행액 (F)	집행률 (C-E)/F
6	교특회계	거제-마산국도건설	5,000	0	5,000	0	0.0
7	교특회계	안성공도-대덕	12,312	3,513	8,799	3,618	41.1
8	교특회계	평택-오산국도건설	10,090	1,515	8,575	4,470	52.1
9	교특회계	신장-복용국도건설	3,406	1,866	1,540	240	15.6
10	교특회계	부안-흥덕국도건설	7,112	0	7,112	3,101	43.6
11	교특회계	양남-감포 국도건설	17,860	4,825	13,035	7,556	58.0
12	교특회계	오지-동송 국도건설	6,183	3,379	2,804	395	14.1
13	교특회계	포천이동-철원서면 국도건설	1,341	554	787	0	0.0
14	교특회계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2,670	20	2,650	1,400	52.8
15	교특회계	위험도로개선	205,344	48,065	157,279	67,410	42.9
16	교특회계	충북선 고속화	39,713	0	39,713	18,220	45.9
17	교특회계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를이용한도심형수소모빌리티확산인프라기술개발(R&D)	1,060	0	1,060	0	0.0
18	교특회계	제주공항 시설개선	8,613	6,034	2,579	0	0.0
19	교특회계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934	344	6,590	400	6.1
20	교특회계	제주제2공항 건설	17,286	0	17,286	1,149	6.6
21	교특회계	새만금신공항건설	38,359	5,708	32,651	1,360	4.2
22	교특회계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3,800	0	13,800	0	0.0
23	교특회계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12,983	0	12,983	0	0.0
24	교특회계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 건설	3,000	0	3,000	0	0.0
25	지특회계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567	0	567	36	6.3
26	지특회계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400	0	400	0	0.0
27	지특회계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3,815	2,230	1,585	175	11.0
28	지특회계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24	0	24	0	0.0
29	지특회계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401	251	150	94	62.7
30	지특회계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	4,994	2,994	2,000	319	16.0
31	지특회계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375	175	200	0	0.0
32	지특회계	의령부림산단진입도로	4,599	1,678	2,921	1,192	40.8
33	지특회계	창원국가산단진입도로	4,930	2,679	2,251	197	8.8
34	지특회계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311	206	105	0	0.0
35	지특회계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365	180	185	31	16.8

(단위: 백만원, %)

연번	회계/기금	사업명	2024년도				
			예산현액 (C)	전년도이월액 (E)	전년도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C-E)	집행액 (F)	집행률 (C-E)/F
36	지특회계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107	57	50	0	0.0
37	주택도시기금	기타경비(주택)	420	143	277	130	46.9
38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2,700	0	2,700	801	29.7
39	주택도시기금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1,200	0	1,200	0	0.0
합계			485,194	88,587	396,607	138,000	34.8

자료: 2024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4년 집행액에서 전년도이월액에 대한 집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수록 향후 사업지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실제 2024년 집행액 중 전년도이월액 집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33.7%이며, 일부 개별사업은 2024년 집행실적의 대부분이 전년도이월액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 지연이 1년 가까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2024년에 전년도이월액 집행실적이 대부분인 대상 사업]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도				
	집행액 (D)	전년도이월액 제외 집행부분 (F)		전년도이월액 집행부분 (D-F)	
		금액	비중	금액	비중
39개 집행부진 사업 전체	**208,211**	**138,000**	**66.3**	**70,211**	**33.7**
철도기본계획수립	1,857	6	0.3	1,851	99.9
신장-복용국도건설	2,105	240	11.4	1,865	88.6
오지-동송 국도건설	3,774	395	10.5	3,379	89.5
포천이동-철원서면 국도건설	301	0	0.0	301	100.0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2,404	175	7.3	2,229	92.7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도로	3,045	319	10.5	2,726	89.5
창원국가산단진입도로	2,874	197	6.9	2,677	93.1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160	0	0.0	160	100.0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210	31	14.8	179	85.2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52	0	0.0	52	100.0

자료: 2024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집행부진 사유

일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크게 ①예산편성에서의 수요예측 실패 또는 예산 과다추계, ②예산집행에서의 사업지연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업지연은 사업 절차에 따라 다양한 사례로 발생함.

[사업 추진 절차별 사업지연 사유]

사업추진 절차 또는 예산 집행단계 (예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지연 사유
기본계획 (계획수립,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또는 예타수행기간 지연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늦은 사업공고, 유찰
총사업비 협의 · 타당성재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협의 또는 타당성재조사 사유 발생
행정절차(인허가 고시) 및 유관기관 · 이해당사자 협의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법령 제개정, 유관기관간 협의 장기간 소요, 주민과의 협의 지연
공사발주	유찰 및 재공고
토지수용 또는 보상	토지수용재결
착공	시공사 부도 등으로 인한 재선정,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공기부족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분류에 기초하여 2년 연속 집행률이 70% 미만인 대상 사업을 보면,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사업지연이 85%를 차지함(총 39건 중 33건). 이는 대상 사업이 대규모 또는 다년도 관급공사라는 사업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가 사업지연을 유발할 수 있음.

[집행부진 사유]

유형	사유	대상사업	건
예산 편성	수요예측, 과다추계	기반시설부담금환급및수수료지원, 층간소음성능보강(융자), 층간소음개선리모델링(융자)	3
사업 지연	사업 재검토, 예타 실시	철도기본계획수립, 새만금신공항건설,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3
	설계 지연	충북선 고속화,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부안-홍덕국도건설	3
	총사업비 협의 (타당성 재조사)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청주북이산단진입도로,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신장-복용국도건설	8
	인허가 등	제주제2공항 건설,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2
	유관기관간 협의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충주드림파크산단진입도로	3

유형	사유	대상사업	건
	이해당사자 (주민) 협의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위험도로개선	2
	토지보상 (수용재결 진행)	무안항공특화산단진입, 창원국가산단진입도로,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 양남-감포 국도건설, 포천이동-철원서면 국도건설	5
	발주 및 유찰, 시공사 재선정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제주공항 시설개선, 안성공도-대덕, 오지-동송 국도건설, 평택-오산국도건설	5
	착공 이후 지연 (부도, 공기지연)	의령부림산단진입도로, 기타경비(주택)	2
사업 중단	거제-마산국도건설(손실보전금 미해결), 도시철도회생전력유휴에너지를 이용한 도심형수소모빌리티확산 인프라기술개발(R&D)(지자체부담금 미납), 부산도시철도오륙도선 건설(타당성재조사 탈락)		3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첫째, 일부 사업에서 2년에 걸쳐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을 가정하고 2025년 재차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동 사업들의 집행부진이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2025년 사업의 추진 경과를 반영하여 2026년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다음 21건의 사업은 2024년 집행액 대비 최대 수십 배 규모로 2025년 예산을 공사비 또는 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해당사자간 협의 지연 또는 유찰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지 못할 경우 집행부진이 2025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산술적으로 보면, 21건의 사업에 대한 2025년 예산은 3,487억 4,600만원인데 2024년 집행액 1,651억 2,200만원보다 2.1배 많은 금액임. 2025년에는 당초예산액 3,846억 6,800만원에 더하여 다음연도이월액 1,198억 3,700만원을 합한 5,045억 500만원을 집행하여야 하므로, 실제 집행하여야 하는 금액은 2024년 대비 3.1배(5,045억 500만원 ÷1,651억 2,200만원)로 더욱 증가함.

[집행부진이 발생하였음에도 2025년도 설계비 또는 공사비를 편성한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철도기본계획수립	5,144	1,855	0	6,999	1,857	0	5,142	10,005
남양주-춘천1 국도건설	500	0	-430	70	25	45	0	6,372
남양주-춘천2 국도건설	500	0	-430	70	25	45	0	4,481
남양주-춘천4 국도건설	500	0	-430	70	34	36	0	2,903
남해 서면-여수 신덕 국도건설	40,040	316	-645	39,711	25,932	13,779	0	69,395
오지-동송 국도건설	5,304	3,379	-2,500	6,183	3,774	2,409	0	9,137
포천이동-철원서면 국도건설	2,118	554	-1,331	1,341	301	787	253	4,577
화순동면-송광봉산 국도건설	3,041	20	-391	2,670	1,420	1,250	0	10,266
위험도로개선	159,697	48,065	-2,418	205,344	109,925	51,914	43,505	134,156
충북선 고속화	39,713	0	0	39,713	18,220	0	21,493	9,900
제주공항 시설개선	2,579	6,034	0	8,613	94	2,579	5,940	4,441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590	344	0	6,934	744	0	6,190	2,955
제주제2공항 건설	17,286	0	0	17,286	1,149	15,631	506	23,557
새만금신공항건설	32,651	5,708	0	38,359	1,360	31,018	5,981	63,186
대구도시철도엑스코선건설	13,800	0	0	13,800	0	0	13,800	13,900
부산도시철도하단-녹산선건설	12,983	0	0	12,983	0	0	12,983	10,000
광주남부산단진입도로	1,700	0	-1,300	400	0	0	400	1,700
공주동현산단진입도로	1,000	0	-976	24	0	0	24	500
서오창테크노밸리산단진입도로	1,000	175	-800	375	0	200	175	1,000
예산예당2산단진입도로	2,050	180	-1,865	365	210	144	10	587
세종복합산단진입도로	550	57	-500	107	52	0	55	1,650
합계	348,746	66,687	-14,016	401,417	165,122	119,837	116,457	384,668

자료: 2024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22건의 공사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공사는 특성상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공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년도 사업이 많아 각종 인허가 · 협의 및 시공 순서에 따른 공정 등 사업단계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그리고 유관기간간 협의 등으로 발생한 사업지연은 그 기간만큼의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늘어난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행실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실무자에게 조기집행을 독려할 경우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등 위험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당초 계획에서 정한 연부액대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반복적인 다음연도 이월액 또는 불용액 발생을 유발하게 되므로, 예산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함.

따라서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을 지양하고 2026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5년도 사업추진경과와 집행 가능성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액이 감액 조정될 필요가 있음.

둘째, 일부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받은 예산의 대부분을 같은 연도에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국회 심사를 우회하는 것이므로 지양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와 제47조(예산의 이용·이체)에서는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예산의 이·전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다음 4개 사업에서는 2024년에 총 90억 1,200만원을 다른 사업으로부터 이·전용받았음.

한편 이·전용한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 처리하는 것도 가능함.

[이·전용 후 다음연도 이월 처리한 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이전용 등 (C)	예산 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안성공도-대덕	6,308	3,513	2,491	12,312	7,131	5,181	0	0
평택-오산국도건설	4,935	1,515	3,640	10,090	5,947	4,105	39	0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	244	2,230	1,341	3,815	2,404	1,398	13	0
신장-복용국도건설	0	1,866	1,540	3,406	2,105	1,300	1	1,652
합계	11,487	9,124	9,012	29,623	17,587	11,984	53	2,606

주) 보령웅천산단진입도로는 2025년 당초예산 954백만원에서 추경 0원으로 변경
자료: 2024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위 사업은 이·전용 등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 받은 예산액보다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규모가 비슷하거나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전용 필요성이 있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연하면, 이·전용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액만 전용하였어도 2024년 사업수행에 지장은 없었고, 2025년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편성 및 심사 절차를 거쳐 확보하거나 예산 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이·전용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위와 같이 이·전용한 예산 대부분을 집행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과 국회의 예산심사 없이 2025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같

은 효과가 발생함. 이는 정상적인 예산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데, 국회에서는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없어 예산심사를 제한시킴.

특히 “안성공도-대덕”, “평택-오산국도건설” 사업과 같이 2025년 사업예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회 심사대상 사업에서 제외되므로 총사업비 규모 증가의 적정성 판단 등 예산통제가 더욱 곤란하여 부적절하다고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 및 유관기관은 집행 과정에서 과도한 이·전용과 다음연도 이월 처리 방식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철도공단: 원인행위 없는 출연금의 이월 및 재이월 부적정

가. 개 요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철도건설 · 유지보수 · 시설개량 및 관리비 등을 출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2024년도 기준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예산현액은 7조 5,192억원이며, 이 중 4조 8,789억원이 집행(집행률 64.9%)되고, 2조 1,63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4,769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

[2024년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집행내역]

(단위: 억원)

예산과목	2024년 예산현액	집행실적	%	이월	불용 (a+b)	세출조정(a)	집행잔액(b)
계	75,192	48,789	64.9	21,634	4,769	4,768	1
1 사업비	74,614	48,211	64.6	21,634	4,769	4,768	1
- 고속철도건설	5,985	5,318	88.9	617	50	50	-
- 일반철도건설	39,465	16,496	41.8	18,293	4,676	4,676	-
- 광역철도건설	5,563	4,691	84.3	830	42	42	-
- 유지보수	5,165	4,712	91.2	453	-	-	-
- 시설개량	17,050	15,762	92.4	1,288	-	-	-
- 기타사업	1,386	1,232	88.9	153	1	-	1
2 관리비	578	578	100.0	-	-	-	-

자료: 국가철도공단

나. 검토의견

국가철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 일부를 임의로 '미집행 이월'이라는 항목으로 구분하여 원인행위 없이 이월 및 재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하고,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을 보완하여 집행잔액의 정산·반납 및 이월 절차를 보다 상세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非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처리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출연기관의 기관운영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 세입에 계상하되,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의 경우 인건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3]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통해 국가철도공단에 교부되는 사업비 출연금에 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출연금 집행잔액에 대하여 "출연사업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사업에 사용" 할 수 있으며,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 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종료되지 않은 출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한 정산·이월·반납 등에 관한 처리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4] 특히 "당해 출연사업" 이라는 용어가 집행잔액의 사용목적 및 시기에 제한이 없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이와 같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이나 자체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은 집행잔액을 임의로 "미집행 이월" 과 "불용액" 으로 구분한 후, '미집행 이월' 은 매년 원인행위 없이 이월과 재이월을 반복하고 있음.

2024년 결산 기준 미집행 이월액 규모는 약 1조 9,835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일반철도(1조 6,926억원) · 시설계량(1,138억원) 및 광역철도(758억원) 등 다양한 사업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미집행 이월액 중 39.3%에 해당하는 7,795억원은 이월예산으로서 재이월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음.

[2024년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명	2024년 예산현액(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D=A-B-C)
			사고	미집행	소계(C)	
합계	7,519,133	4,878,836	179,913	1,983,482	2,163,395	476,902
본예산	5,439,476	3,620,819	137,799	1,203,956	1,341,755	476,902
이월예산	2,079,657	1,258,017	42,114	779,526	821,640	-
□ 관리비	57,792	57,792	-	-	-	-
본예산	57,792	57,792	-	-	-	-
이월예산	-	-	-	-	-	-

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5

4)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출연금을 교부하여 수행하는 철도건설사업과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적용한다.
제9조(출연금의 사용) ④ 출연사업자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출연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출연사업 종료 후 관리) ① 출연사업자는 종료된 출연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출연금의 집행잔액을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단위 : 백만원)

예산명	2024년 예산현액(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D=A-B-C)
			사고	미집행	소계(C)	
□ 사업비	7,461,341	4,821,044	179,913	1,983,482	2,163,395	476,902
본예산	5,381,684	3,563,027	137,799	1,203,956	1,341,755	476,902
이월예산	2,079,657	1,258,017	42,114	779,526	821,640	-
□ 고속철도	598,507	531,795	20,264	41,448	61,712	5,000
본예산	518,202	502,554	10,296	352	10,648	5,000
이월예산	80,305	29,241	9,968	41,096	51,064	-
□ 일반철도	3,946,503	1,649,594	136,715	1,692,573	1,829,288	67,621
본예산	2,096,990	552,571	104,569	972,229	1,076,798	467,621
이월예산	1,849,513	1,097,023	32,146	720,344	752,490	-
□ 광역철도	556,263	469,051	7,167	75,842	83,009	4,203
본예산	464,901	392,296	7,167	61,235	68,402	4,203
이월예산	91,362	76,755	-	14,607	14,607	-
□ 시설유지보수	516,515	471,233	768	44,514	45,282	-
본예산	510,991	465,716	768	44,507	45,275	-
이월예산	5,524	5,517	-	7	7	-
□ 시설개량	1,704,994	1,576,204	14,979	113,811	128,790	-
본예산	1,665,427	1,536,638	14,979	113,810	128,789	-
이월예산	39,567	39,566	-	1	1	-
□ 기타사업	138,559	123,167	20	15,294	15,314	78
본예산	125,173	113,252	20	11,823	11,843	78
이월예산	13,386	9,915	-	3,471	3,471	-

자료: 국가철도공단

이러한 국가철도공단의 출연금 미집행 이월처리는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2022년에는 2조 1,617억원, 2023년에는 1조 7,841억원의 집행잔액이 미집행 이월액으로 처리되었음.

[2022, 2023년 국가철도공단 출연금 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불용액 (D=A-B-C)
				사고	미집행	소계(C)	
2022	합계	6,491,568	3,879,152	365,694	2,161,650	2,527,344	85,072
	본예산	5,415,625	3,047,247	335,898	1,952,506	2,288,404	79,974
	이월예산	1,075,943	831,905	29,796	209,144	238,940	5,098
2023	합계	7,311,863	4,662,752	295,593	1,784,077	2,079,670	569,441
	본예산	4,784,520	2,793,640	276,664	1,153,279	1,426,943	560,937
	이월예산	2,527,343	1,869,112	18,929	630,798	649,727	8,504

자료: 국가철도공단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원인행위 없이 미집행 이월처리한 예산을 차년도에 공단 이사회 의결 및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 다른 내역사업으로 변경·배정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당초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임. 구체적으로, 2024년 철도개량사업 중 “역시설 개량사업” 내역사업에서 발생한 440억 3,700만원의 이월금 중 2025년에 195억 8,900만원만 배정되고 244억 4,800만원은 타 내역사업(방음벽 설치 및 개량, 내진성능보강, 소방안전시설 개량 등)에 배정되었음.

반대로 “내진성능보강” 사업의 경우는 2024년에 191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2025년에 타 사업으로터 152억 7,90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344억 3,300만원이 배정되어 집행 중에 있음.

[2024년 철도개량사업 차년도 배정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 (A)	변경(1차)	변경(2차) (B)	증감 (B-A)	집행 (C)	이월 (B-C, D)	사고이월	미집행	배정 (E)	이월배정 (E-D)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31,257	1,431,257	1,423,633	-7,624	1,296,017	127,616	14,463	113,153	127,616	0
○ 수도권신호시스템안정화	9,200	22,049	26,224	17,024	26,224	0	0	0	0	0
○ 선로전환기개량	41,164	69,780	62,974	21,810	62,674	300	0	300	0	-300
○ 전기설비개량	221,978	241,706	266,477	44,499	263,445	3,032	529	2,503	4,486	1,454
○ 전철전원급전안정화	30,000	9,604	9,557	-20,443	7,337	2,220	154	2,066	154	-2,066
○ 선로시설개량	197,230	1,97,230	207,230	10,000	201,685	5,545	527	5,018	5,545	0
○ 구조물개량	59,450	59,450	60,723	1,273	59,713	1,010	400	610	1,010	0
○ KTCS-2	0	0	0	0	0	0	0	0	0	0
○ 소방안전시설 개량	1,810	1,810	1,481	-329	1,407	74	0	74	2,679	2,605
○ 승강장안전시설개량	86,495	86,495	85,935	-560	69,969	15,966	1,793	14,173	15,966	0
○ 산업안전시설 개량	64,314	65,580	59,523	-4,791	59,523	0	0	0	0	0
○ 재해예방시설개량	128,689	117,973	118,873	-9,816	106,376	12,497	853	11,644	10,506	-1,991
○ 내진성능보강	**32,487**	**32,487**	**29,246**	**-3,241**	**10,092**	**19,154**	**644**	**18,510**	**34,433**	**15,279**
○ 건널목안전설비확충	11,000	14,553	15,876	4,876	15,453	423	0	423	0	-423
○ 철도통신망안정화	6,485	6,485	6,666	181	6,278	388	388	0	388	0
○ 교량구조개선	52,057	52,057	51,598	-459	49,398	2,200	188	2,012	2,200	0
○ 역시설개량	**127,130**	**127,130**	**117,130**	**-10,000**	**73,093**	**44,037**	**2,713**	**41,324**	**19,589**	**-24,448**
○ 노후역사(전주역) 시설개선	9,048	9,048	9,275	227	9,258	17	0	17	17	0
○ 대전차량기지안전시설	7,791	7,791	7,791	0	6,177	1,614	0	1,614	1,614	0
○ 방음벽 설치 및 개량	53,343	53,343	54,554	1,211	54,022	532	0	532	9,115	8,583
○ 선로횡단시설확장	1,525	1,525	971	-554	943	28	0	28	0	-28
○ 하자관리	11,948	11,948	11,913	-35	11,913	0	0		0	0
○ 스마트SOC	215,000	215,000	190,159	-24,841	173,841	16,318	5,914	10,404	16,077	-241
○ 노후과선교	0	0	0	0	0	0			0	0
○ EMU-260 시설개선	3,113	3,113	3,113	0	2,663	450	0	450	450	0
○ 광역철도 집중개량	60,000	25,100	26,344	-33,656	24,533	1,811	360	1,451	3,387	1,576

자료: 국가철도공단

이와 같이 국가철도공단이 해당 연도에 사정변경 등으로 집행되지 못한 출연금 집행잔액을 “미집행 이월” 처리하고, 차년도에 다른 내역사업에 배정하는 것은 원인행위 없는 이월 · 재이월 및 내역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예산 심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임. 공단은 미집행 이월을 활용하여 국회에서 정한 예산 범위에 제약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업기간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가철도공단은 「국가재정법」과 지침에서 정한 이월 · 재이월 취지에 부합하도록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는 출연금 처리에 관한 자체 규정인 「철도건설사업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 출연금에 관한 관리규정」에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및 이월에 관한 지침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출연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3.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연금 사업의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7개의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2024년도 결산 기준 예산현액 607억 3,700만원 중 577억 2,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0%)되고 21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8억 7,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또한 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3개의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2024년도 결산 기준 예산현액 940억 3,200만원 중 866억 7,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2.2%)되고 73억 5,4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음.

[2024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교부된 목적성 출연금 및 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총 계	**241,990**	**1,092**	**242,882**	**232,514**	**2,136**	**8,232**
□ 교통안전공단 출연	**88,113**	**-**	**88,113**	**88,113**	**-**	**-**
□ 정부보조금 소계	**94,232**	**-**	**94,032**	**86,678**	**-**	**7,354**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플러스	21,110	-	20,910	18,480	-	2,430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72,822	-	72,822	67,898	-	4,924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300	-	300	300	-	-
□ 목적성 출연금 소계	**59,645**	**1,092**	**60,737**	**57,723**	**2,136**	**979**
•철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5	-	325	315	-	10
-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217	-	217	215	-	2
- 철도차량 이력관리정보망 구축	108	-	108	100	-	8
•철도안전관리제도운영	100	-	100	100	-	-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운영 위탁	100	-	100	100	-	-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운영	300	-	300	300	-	-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720	-	720	720	-	-
•자동차안전도강화	16,399	1,072	17,471	16,796	457	218
- 자동차안전도평가	3,835	-	3,835	3,835	-	-
- 자동차제작결함조사	7,773	-	7,773	7,476	297	-
- 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	553	-	553	553	-	-
- 자동차 및 부품 안전점검 시설장비 구축	3,138	1,072	4,210	3,832	160	218
- 자동차교환환불제도 운영	900	-	900	900	-	-
- 자동차안전단속원제도 운영	200	-	200	200	-	-
•건설기계 제작결함시정	1,351	-	1,351	1,351	-	-
•자율자동차 상용화	40,450	20	40,470	38,141	1,679	636
- 테스트베드 고도화	37,750	20	37,770	35,455	1,679	636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예산액	전년이월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 주행데이터 공유사업	1,000	-	1,000	988	-	12
-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500	-	500	500	-	-
-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1,200	-	1,200	1,198	-	2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나. 검토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출연금 집행잔액을 소진하기 위해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탁과제로 받은 2024년도 출연금 중 실집행률이 100%인 내역사업은 튜닝교육 및 컨설팅, 자동차안전도평가, 자동차 교환 환불제도 운영, 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 건설기계제작결함 시정, 자율차 경진대회 사업 등으로 나타났음.

[내역변경을 통해 100% 예산을 집행한 사례]

(단위: 백만원)

항 목	예 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① 자동차 튜닝인증 기술지원				
1. 튜닝 교육 및 컨설팅	**720**	**720**	**0**	**100.0**
1) 튜닝 컨설팅 지원	230	200	30	87.0
2) 튜닝 관련 교육 지원	85	123	△38	144.7
3) 사업운영비	405	397	8	98.0
② 자동차안전도강화				
1. 자동차안전도 평가	**3,835**	**3,835**	**0**	**100.0**
1) 시험차 구매	1,408	1,585	△177	112.6
2) 부품 및 평가시험	1,503	1,508	△5	100.3
3) 평가장비 고도화	500	413	87	82.6
4) 안전도평가 홍보	274	224	50	81.8
5) 제도발전 연구	150	105	45	70.0
2. 자동차교환 환불제도 운영	**900**	**900**	**0**	**100.0**
1) 중재부 운영	700	788	△88	112.6
2)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	175	65	110	37.1
3)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운영	25	47	△22	188.0
3. 자동차안전기준국제화	**553**	**553**	**0**	**100.0**
1) UN국제기준 제·개정 실무회의체 대응 활동	120	135	△15	112.5
2) 국내기준 반영, 제도 및 국제기준 제안연구 활동	220	184	36	83.6
3) WP.29 국제회의, FTA 등 대응 국제협력	113	137	△24	121.2
4) 신기술 특례 제도 운영 및 심의위원회 운영	100	98	2	98.0
③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1.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1,351**	**1,351**	**0**	**100.0**

(단위: 백만원)

항 목	예 산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1) 제작동일성 조사	544	544	0	100.0
2) 안전기준 성능시험	507	507	0	100.0
3) 안전기준 성능시험 장비 구매	300	300	0	100.0
④ 자율자동차 상용화				
1.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500**	**500**	**0**	**100.0**
1)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지원	130	130	0	100.0
2) 자율주행 기술 실습 및 평가 환경 구성	85	103	△18	121.2
3) 경진대회 경기 및 행사운영	100	92	8	92.0
4)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및 고도화	35	35	0	100.0
5) 자율전기차 제작지원	150	140	10	93.3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그런데 위 사업들의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본 결과,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 대비 초과 집행을 하는 등 내역사업별 조정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전액 소진하는 형태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튜닝 교육 및 컨설팅 사업”(7억 2,000만원)의 경우 튜닝 우수업체 해외연수 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절감액을 실습 중심의 교육 필요성에 따라 신규 교재 제작 지원비에 활용하였음.

또한 “자동차교환 환불제도 운영사업”(9억원)의 경우 중재부 사건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재부 운영 및 사무국 운영 예산이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예산을 축소 집행하거나 전산시스템 관리 예산의 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 운영사업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 고
위원회 운영	68,125	64,629	위원회 회의 수당, 회의 운영비 등
중재부 운영	608,878	614,779	중재위원 수당, 민원 상담 인건비, 심리판정, 공간 임대료
사무국 운영	45,157	47,271	출장 여비, 사무용품 임대료 등
전산시스템 관리	177,840	173,321	정보화시스템 용역
합계	900,000	900,00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 사업”의 경우 여비·유인물비·회의비·홍보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재료비를 초과 집행하여 13억 5,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 건설기계제작결함시정사업 집행내역]

(단위: 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제작결함조사	여비	40,000,000	33,039,230	국내·외 조사여비
	유인물비	10,000,000	8,535,000	인쇄물(복합기)
	회의비	30,000,000	25,444,980	제작사 간담회, 안전기준 협의체
	홍보비	40,000,000	38,413,500	건설기계전 참석, 홍보물 제작
	재료비	931,000,000	945,567,290	제작동일성조사 수행경비, 안전기준 시험품 구매비,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
	총계	1,051,000,000	1,051,000,000	
기계장치구축	창유리 시험장비	300,000,000	300,000,000	계약준비비 등, 장비계약(281,710,000), 장비시험실구축(16,291,550)
합계		1,351,000,000	1,351,000,000	100%

자료: 한국교통안전공단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연기관은 개별사업 출연금을 예산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5] 사업출연금의 경우 별도의 처리지침이 없는 경우 기관운영출연금과 달리 집행잔액을 정산 후 반납하는 것이 원칙임.

따라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집행잔액을 소진하려는 목적으로 당초 계획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계획된 예산을 초과지출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5)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204.

【일반회계】

〈세 출〉

4. 주거급여 지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대상 주거급여 인상에 대한 부작용 검토 필요

가. 개 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수급자격을 충족한 저소득가구에 대해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7,492억 3,100만원 중 2조 7,449억 9,1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8%)되고 5억 2,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7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음.[6)]

[2024년도 주거급여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거급여 지원	2,742,436	-	6,795	-	2,749,231	2,744,991	524	3,716	3,036,823
주거급여지원	2,726,586	-	6,795		2,733,381	2,732,588	524	269	3,020,97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10,000	-	-		10,000	7,170	-	2,830	10,000
이사비지원	3,000	-	-	-	3,000	2,383	-	617	3,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주거급여지원 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임차가구)하고,[7)] 주택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자가가구)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조 7,333억 8,100만원 중 2조 7,325억 8,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

6) 일반회계-주거급여지원(1034-302)(주택토지실)

7)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또한 국토교통부는 비주택[8] 거주자에게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이주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역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 및 이사비 지원사업]

주요사업	수요 발굴(지자체・LH)	임대주택 공급(LH)	이주・정착 지원(기관협업)
	· 비주택 방문 상담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업) · 이주 희망자 발굴	· 1:1 주거지원 상담 · 동반 주택물색, 신청 지원 · 이사 및 초기정착 지원	· 사회공헌사업(주거복지재단) · 자활・돌봄 서비스 연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자체 및 주거복지센터 등 지역 주거복지 역량을 활용하여 비주택거주 주거급여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00억원 중 71억 7,100만원이 집행(집행률 71.7%)이 집행되었음. **이사비지원사업**은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0억원 중 23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4%)되었음.

나. 검토의견

첫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사업과 이사비 지원사업의 실적이 목표치를 하회하고,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가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민간경상보조 또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식으로 지원되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및 이사비 지원 사업의 실집행률은 2024년 기준 64.6% 58.9%으로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음. 2023년 해당 사업의 실집행률이 각각 55.2%, 49.5%으로, 집행 부진은 전년 대비 다소 완화되었으나 근본적으로 해소되지는 못하였음.[9]

---

8) 비주택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움막 등을 의미함

9) 위 두 내역사업 외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비주택 거주자의 주거상향에 따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보증금을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보증금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데, 지원실적이 2023년 494건(200억원) 대비 2024년에는 216건(109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주택구입・전세자금(융자) (1231-401)사업의 내역사업,
지원한도는 호당 8천만원(민간) 호당 50만원(공공), 이율은 0%, 기간은 최장 20년임

[2024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및 이사비지원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	목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집행률 (B/A)	실집행률 (C/A)
		예산		집행액 (교부액) (B)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실집행액 (C)		
		본예산	추경 (A)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320-01	5,000	5,000	2,750	-	2,250	2,750	2,700	55.0	54.0
	330-01	5,000	5,000	4,420	-	580	4,420	3,758	88.4	75.2
	합계	10,000	10,000	7,170	-	2,830	7,170	6,458	71.7	**64.6**
이사비 지원사업	330-01	3,000	3,000	2,383	-	617	2,383	1,768	79.4	**58.9**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위 사업들은 2023년에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초기 인지도가 부족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주거상향실적이 2023년 10,718호, 2024년 12,232호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시 쪽방 거주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등 사업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임.

[2020~2024년 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쪽방 거주 현황]

(단위 : 가구)

주거급여 수급권자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367,456	1,533,918	1,628,643	1,724,271	1,826,470
서울시	248,228	278,602	292,865	308,848	324,866
서울시 쪽방 거주	1,816	1,735	1,670	1,674	1,646

국토교통부의 의견대로 이 사업의 집행실적이 저조하다고 사업 성과를 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주택거주 가구수가 2020년 43만가구에서 2023년 48만가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비주택거주 가구수를 줄이고자 하려는 사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비주택거주 가구수]

(단위: 가구)

연도	2020	2021	2022	2023
가구수	435,121	462,629	480,411	486,408

주)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한 가구 수 중 오피스텔 거주자 제외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가 점차적으로 정상적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주거상향 지원 사업 효과를 검토하는 한편, 집행실적 관리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주거급여 사업에서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수급자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임차료를 인상시켜 쪽방 건물주만 수혜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쪽방 등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주거급여지원 사업 중 임차급여는 지역별·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기준임대료(19.1~66.7만원)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는 것임. 최근 5년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살펴보면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1급지(서울) 1인 기준 매년 3,000~44,000원까지 기준임대료가 인상되었음.

[연간 기준임대료(1인 기준)]

(단위: 원)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외 지역)
2025년	352,000	281,000	228,000	191,000
2024년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023년	330,000	255,000	203,000	164,000
2022년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021년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020년	266,000	225,000	179,000	158,000
2019년	233,000	201,000	163,000	147,000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국토연구원 등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가 수급자의 거주환경을 개선시키기보다는 비주택의 임대료를 인상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10][11]

---

10) 진미윤(2017).「개편 주거급여 제도의 특징과 개선과제」.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25권 제1호
김성연(2020),「주거복지정책 성과감사적 접근: 주거급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수진(2021)「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국토연구원
탁장한(2023)「빈곤 비즈니스와 쪽방촌의 주거 빈곤」사회과학연구, 31(2), 160-207.

11) 탁장한(2023)에 따르면 건물주는 월세에 공과금을 포함함으로써 세입자의 반발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주거급여에 연동해 월세를 종종 1~5만 원씩 올림으로써 세입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최대한도의 주거급여를 챙긴다. 특히 월세는 한 건물주가 올리면 세입자들에 의해 소문이 확산되어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때 매년 모두에게 월세를 올리면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는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일일이 갱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때로는 집단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수년 전 간접 경험한 건물주들은, 기존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연립주택 월세 상승률은 평균 0.59%로 나타난 반면, 쪽방 평균 월세 상승률은 4.10%로 나타나 연립주택의 7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12] 2023년과 2024년에는 주거급여 인상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서울시 연립주택·쪽방 월세가격 및 변동률]

(단위: %, 만원)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쪽방	변동률	3.83	1.23	3.24	4.31	7.89	4.10
	월세	24.4	24.7	25.5	26.6	28.7	26.0
연립주택 변동률		0.36	1.19	0.42	-0.33	1.32	0.59
주거급여 인상률(1인)		14.2	16.5	5.5	0.9	3.3	8.1

주: 1급지(서울) 주거급여 2020년 26.6만원, 2019년 23.3만원
자료: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주거급여와 같은 가격보조방식의 복지서비스는 해당 서비스 수요를 자극하여 서비스 비용 인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쪽방과 같은 비주택은 물리적·법적 제약으로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라면, 수요 증가가 공급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여 임대료 상승폭이 더욱 클 수 있음.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고시원·쪽방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복지재정 낭비를 유발하면서 복지서비스가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거주환경에 직면한 수급자가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쪽방 등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선행하는 등 주거급여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세입자는 자주 건드리지 않는 대신 빈방을 매년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한다. 주거급여는 계약된 월세만큼 지급되므로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도로 공과금을 걷는 것보다 최대한의 월세를 일괄 수금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공과금을 월세라는 명목으로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금도 가능하다.

첫 계약 후 갱신 없이 수년씩 거주해 온 세입자들 또한 재계약에 응할 수밖에 없으며, 차라리 월세를 더 내고 난방, 수도, 전기를 편하게 쓰겠다는 생각을 가진다. 이 생각이 가능한 이유는 재계약 시 건물주는 월세 상한선을 다음 연도에 오르는 주거급여 수준, 즉 국가가 지원하는 최고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세입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계약서를 제시하면 다음 달부터 주거급여를 올려받을 수 있고 재계약 시 별도의 복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항 없이 재계약을 체결하고, 기초생활 비수급자도 월동기 이주의 어려움으로 현 상황을 받아들인다.

기본적으로 쪽방촌은 국가가 제공하는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급여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건물주 집단은 국가의 지원 및 세입자들의 빈곤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 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월세와 공과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12) 서울시, 「서울시 쪽방 건물 및 거주민 실태조사」(2020-2024)

5. 주택가격동향조사: 주간조사의 신뢰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사업의 내역사업인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은 전국 주택가격(매매·전세·월세)을 조사하여 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실거래가지수·공시가격 등 지표와 함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등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임.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예산현액 144억 4,4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13)]

[2024년도 주택가격동향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택 및 주거동향조사	18,694	18,694	814	-	19,368	17,753	814	127	18,194
주택가격 동향조사	14,444	14,444	-	-	14,444	14,444	-	-	14,44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주택동향조사는 조사대상 표본의 실거래 사례 및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지역의 실거래 사례를 기반으로 매물정보 · 시세정보 및 부동산 중개업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표본가격을 산정하는 사업임. 세부 편성내역을 보면, 월간조사(77억 5,700만원), 주간조사(58억 7,400만원), 상세조사(8억 1,3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2024년도 주택가격동향조사 예산편성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14,444,000천원
가. 월간조사 (7,757,000원)
· 48,170호×4,474원×3종(매매·전세·월세)×12월 = 7,758,453천원
나. 주간조사 (5,874,000천원)
· 33,500호×1,686원×2종(매매·전세)×52주 = 5,874,024천원
다. 상세조사 (813,000천원)
· 134개 지역×300호×3,372원×1종(매매)×6월 = 813,326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13) 일반회계-주택 및 주거동향조사(1031-301)(주택토지실)

나. 검토의견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주간조사’가 짧은 공표주기로 인해 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하는 등 통계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2020년)와 관련 학계의 연구를 살펴보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중 주간조사에 대하여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14)]

구체적으로 ①주간조사의 짧은 주기[15)]에 따른 제한된 정보량으로 인해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주간조사가 공공과 민간(KB시세)에 의해 각각 매주 공표되면서 시장에 혼선을 초래하는 문제, ②실거래가와 호가를 혼용하는 조사방법으로 인해 주간조사가 월간조사,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16)] 등 각종 통계 간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③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주택가격지수는 월 단위로 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반면, 주 단위로 주택가격을 발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 주택가격지수 공표 주기]

국가	작성기관	발표 주기	가격 성격	조사범위
미국	FHFA	월간	실거래가격	반복매매
	S&P	월간	실거래가격	헤도닉
	NAR	월간	실거래가격	중위수/평균
영국	통계청	월간, 분기, 연간	실거래가격	헤도닉
	Right move	월간	평가가격	중위수/평균
	HBOS의 Halifax	월간	평가가격	헤도닉
	Nationwide	월간, 분기	평가가격	헤도닉
	Hometrack	월간	실거래가격	반복매매
	Acadata	월간	실거래가격	-
중국	중국 국가 통계국	월간, 분기	-	헤도닉
	중국인민대학 부동산연구소	월간, 분기	-	-
일본	국토교통성	월간, 분기, 연간	실거래가격	헤도닉
	부동산연구소	월간	실거래가격	반복매매
호주	통계국	월간, 분기, 연간	실거래가격	반복매매

14) 한국도시연구소, 「2024년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현안과 과제」, 2025.5.

15) 주간조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분석 후 목요일에 공표하여 분석과 공표기간 사이가 2일에 불과함

16)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정보를 월단위로 제공하는 통계로, 부동산거래조사(일반회계)사업의 내역사업(2024년도 예산액 10억 3,800만원)임

국가	작성기관	발표 주기	가격 성격	조사범위
	CoreLogic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Proptrack	월간	실거래가격	하이브리드
독일	연방통계청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IPI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Deutsche Bundesbank	분기, 연간	평가가격	중위수/평균
	vdpResearch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프랑스	INSEE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Notaires de France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FNAIM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캐나다	Statistique Canada	월간,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Royal LePage	분기	실거래가격	헤도닉
이탈리아	ISTAT	분기	실거래가격	-

자료: 한국부동산원

또한 ④월간조사 결과는 재건축부담금 부과 기준, 증여재산 산정기준 등 9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 중이나, 주간조사 결과는 주택시장 동향 모니터링 외에 행정목적으로의 활용처가 없다는 지적, ⑤주간조사에서 적용하는 지수작성 방식이 산술평균 대신 기하평균을 사용하여 산술평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문제도 있음.[17]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토교통부가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2025년 7월), 향후 국토교통부는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주간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 제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7) 예를 들면, 거래사례가 없을 경우 거래가능가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호가에 비해 가격이 낮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실제 거래가를 낮게 산정하는 경향이 존재할 수 있음(통계청,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2020년)).

6. 주택공시가격조사: 조사·산정 수수료 요율에 대한 기준 검토 필요

가. 개 요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은 재산세 · 개발부담금 · 기초연금 · 감정평가 및 기타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주택의 기준가격을 공시하는 사업임. 2024년도 결산 기준 예산현액 613억 9,400만원 중 600억 4,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8%)되고, 3억 7,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억 7,900만원이 불용되었음.[18)]

[2024년도 주택공시가격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주택공시가격조사	61,360	61,360	34	-	61,394	60,040	375	979	60,462
표준주택가격조사	16,532	16,532	34	-	16,566	16,034	375	157	16,532
공동주택가격조사	23,819	23,819	-	-	23,819	23,024	-	795	22,921
개별주택가격조사	21,009	21,009	-	-	21,009	20,983	-	26	21,00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을 보면, **“표준주택가격조사”**는 전국 408만호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25만호를 표본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65억 6,600만원 중 160억 3,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8%)되었음.

“공동주택가격조사”는 전국 1,590만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38억 1,900만원 중 230억 2,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었음.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시·군·구청장이 표준주택공시가격과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나머지 395만호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10억 900만원 중 209억 8,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었음.

이 중 표준주택가격조사 및 공동주택가격조사는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되어 한국부동산원에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음.

18) 일반회계-주택공시가격조사(1031-302)(주택토지실)

나. 검토의견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을 위한 수수료 단가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책정될 수 있도록, 그 적정성 등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 한국부동산원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고,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19]

위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서는 개별공시가격 검증 수수료에 대해서는 산정기준(12%)을 정하고 있고,[20] 표준 및 공동주택 조사·산정 수수료에 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21]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일반수용비를 편성할 때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음.[22]

---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9조(수수료 등) ① 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등은 이 법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부동산 가격정보·통계 등의 조사,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 및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수수료와 출장 또는 사실 확인 등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개별공시가격의 검증 수수료)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5항, 제17조제6항·제8항,제21조제6항·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제19조제4항, 제22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부동산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4조, 제17조제8항, 제21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산정 수수료 × 12%

21) 「부동산 가격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등의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2.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3. 법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4. 법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조사·산정
5. 지가변동률 표본지 조사·산정, 주택가격동향 조사,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및 상가권리금 현황조사

22) 기획재정부, 「2024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 149.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4년 예산에서 조사·산정 수수료 단가를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엔지니어링협회)를 참고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건설부문에 대한 노임단가인 평균임금(초급숙련기술자 186,909원부터 기술사 432,440원)을 참고하여 표준주택 55,800원, 공동주택 1,410원으로 책정하였다는 의견임.

[2024년도 표준주택 및 공동주택 조사·산정 수수료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36,519,000천원
가. 표준주택공시가격 조사 (14,039,000천원)
· **조사·산정 수수료 : 250,000호×55,800원=13,950,000천원**
· 이의신청 수수료 : 69,000천원
· 인쇄비(서식 등) : 20,000천원
나. 공동주택공시가격 조사 (22,480,000천원)
· **조사·산정 수수료 : 15,900,000호x1,410원=22,419,000천원**
· 이의신청 수수료 : 22,000천원
· 인쇄비(서식 등) : 39,000천원

자료: 국토교통부

다만 해당 노임단가는 작업자 1인당 단가인 반면, 주택공시가격조사 수수료는 주택 1호당 단가로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며, 단가 산정 과정에서 주택공시가격조사 난이도와 작업자 1인이 1일 평균 조사 가능한 총 주택수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없는 상황이므로, 단가 산정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였음.

표준주택공시가격과 공동주택공시가격은 과세와 기초연금 산정의 근거로 활용되는 등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사 · 산정 수수료 단가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책정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단가 산정의 적정성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분쟁조정 업무에 대한 환경부와의 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검토 필요

가. 개 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민원·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복잡·다양화되며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2024년도 결산 기준으로 예산현액 19억 9,800만원 중 19억 5,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9%)되고, 4,200만원이 불용되었음.[23)]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	1,998	1,998	-	-	1,998	1,956	-	42	2,19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세부내역을 살펴보면, ①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가 7억 2,400만원, ②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비가 12억 7,400만원 편성되었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24)]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상담 및 조정 실적을 살펴보면, 층간소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3) 일반회계-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센터 운영지원(1034-306)(주택토지실)

24)「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 조정법」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실적]

- 분쟁상담실적 : 2,924건 · **층간소음 901건(30.8%)**, 공용부분 유지보수 622건(21.3%), 관리비·사용료 142건(4.9%), 입주자대표회의 137건(4.7%) 등 · 전화 2,697건(92.2%), 인터넷 223건(7.6%), 방문 4건(0.1%) - 분쟁조정실적 : 88건 · **층간소음 48건(54.5%),** 공용부분유지보수 31건(35.2%),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8건(9.1%), 입주자대표회의 1건(1.1%), 등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층간소음 분쟁과 관련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로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민원절차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층간소음 관련 민원에 대한 대체적 분쟁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존재함.

또한, 각 위원회의 조정업무를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25]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26]가 각각 설치되어 있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하여 오염·소음 및 일조권 침해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 분쟁을 다루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비·사용료 등 징수, 아파트 리모델링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다루기 때

25)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를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 공동주택의 조사·검사 및 분쟁조정의 지원

26)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문에 서로의 권한과 역할이 다르지만, 두 기관 모두 층간소음 분쟁을 처리하는 것을 업무에 포함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층간소음을 다루는 정부기관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원화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27)]

한편 당사자의 의사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입주자 공동체의 자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여 제도상 두 기구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28)]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두 기관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 절차는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ADR제도로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민원인의 관점에서 그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우며, ②동일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의 역할이 부여되었음에도 처리방식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상담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분쟁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고, ③두 기관의 분쟁해결 판단 또는 결과가 다를 경우 민원인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④중복되는 층간소음 업무를 일원화함에 따라 절차·인력 및 경비가 절감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로 접수된 민원 중 방문상담이나 소음측정을 원하는 경우 환경부 소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로 다시 안내를 하고 있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분쟁조정 권한이 없어 다시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로 다시 안내하게 됨.

[층간소음 분쟁 관련 기관 비교]

구분	환 경 부		국 토 부	
관련 기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근거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 제1항
설립 목적	환경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해결	층간소음 측정,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피해조정지원	공동주택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조정	공동주택 관리 민원상담,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소관 업무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및 소음·진동, 일조 방해, 통풍 방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 동대표 자격	공동주택관리 전 분야(관리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에 대한 전화, 서면,

27) 박광현,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한 형사법적 접근」, 2020, p. 163.

28) 이현욱,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에 관한 소고」, 2022, p. 32-34.

구분	환 경 부		국 토 부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재산・정신상 피해에 대한 분쟁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공용부분 유지·보수·개량, 리모델링, 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인터넷, 방문 등 다채널 상담 관리진단, 기술자문 법정교육 관련 매뉴얼, 지침서 등 제작 및 배포 등
업무 범위	사업활동, 기타활동에 의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소음 등과 관련된 분쟁해결	층간소음 관련 전화상담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공동주택 분쟁 (층간소음 등) 조정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층간소음 포함), 관리진단 및 기술자문,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위원회 구성	(중앙) 3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29 (지방) 20인 이내 -위원장 1, 위원 19	위원회 없음	(중앙) 20인 이내 - 위원장1, 위원 19 (지방) 15인 이내 - 위원장 1, 위원 14	위원회 없음
권한	중재, 재정, 조정, 알선	조정기능 없음	조정 * 당사자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조정기능 없음
운영 기관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 (지방)17개 시도	한국환경공단	LH	LH

자료: 국토교통부

향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관련 ADR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원화 또는 간소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무국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필요

가. 개 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은 주택 등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 분쟁조정사건 조사 · 심의 · 조정, 분쟁 상담을 위한 콜센터 · 홈페이지 운영 및 임대차분쟁조정제도 홍보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3억 2,600만원 중 64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87.5%)되고, 9억 1,800만원이 불용되었음.[29)]

[2024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임대차분쟁조정 위원회 운영	7,326	7,326	-	-	7,326	6,408	-	918	6,49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6개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산하 2개소, 한국부동산원 산하 10개소가 각각 운영되고 있음.[30)]

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위원 수당을 지급하여 비상근 인력으로 운용되는 반면,[31)] 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 지원하기 위

29) 일반회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034-320)(주택토지실)

3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이라 한다)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6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조정위원회를 두는 기관에 따라 공단 이사장, 공사 사장, 감정원 원장 또는 조정위

해 설치하는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과 심사관 및 조사관은 상근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32)]

이에 2024년도 예산산출내역을 살펴보면,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심사관·조사관 등 인건비 40억 7,400만원, 홍보비 등 직접경비 22억 4,700만원, 상담센터 등 위탁용역비 6억 9,000만원, 일반관리비 3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4년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세부내역]

○ 법정민간대행사업비(320-08) : 7,326백만원 가. 인건비(4,074백만원, 66명 인건비) 나. 직접경비(2,247백만원, 12개 사무국 운영비) 다. 일반관리비(315백만원, 약6%미만) 라. 위수탁용역비(690백만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비)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별 업무량 격차가 상당하고 사무국의 직원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연례적으로 인건비가 불용되는 등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경직적 운영과 예산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표적인 업무실적 지표로서 지사별 조정접수 건수를 살펴보면, 2024년 기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서울지사는 674건, 한국부동산원 소속 인천지사는 201건인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속 제주지사는 15건으로 최대 4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 2024년 기준 1인당 업무 처리건수로 환산하더라도, 서울 1인당 74.9건, 인천 40.2건, 제주 1인당 5건으로 1인당 업무량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원회를 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7조(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출석한 조정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공단, 공사 및 부동산원의 지부, 지사 또는 사무소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접수 건수 및 인원 현황]

(연말 기준, 단위: 건,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A)	현원(B)	1인당 건수(A/B)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709	729	786	797	**674**	**9**	**74.9**
	수원	446	469	490	381	326	6	54.3
	대전	234	264	293	301	259	5	51.8
	대구	345	297	355	337	334	7	47.7
	부산	158	220	166	190	196	6	32.7
	광주	126	149	146	166	124	4	31.0
한국부동산원	서울	8	106	225	148	197	6	32.8
	경기고양	-	49	204	109	92	5	18.4
	경기성남	-	13	25	128	132	3	44.0
	인천	28	98	85	209	**201**	**5**	**40.2**
	세종	-	18	31	34	44	2	22.0
	전북(전주)	3	49	35	22	27	3	9.0
	경북(포항)	-	23	33	35	35	1	35.0
	울산	-	9	51	34	31	2	15.5
	경남(창원)	13	72	49	51	68	3	22.7
	강원(춘천)	1	10	10	17	16	2	8.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	4	28	24	10	18	3	6.0
	제주	-	8	28	14	**15**	**3**	**5.0**

자료: 국토교통부 및 법무부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정위원회(2개소)는 한국부동산원 조정위원회(10개소)에 비해 조정접수 1건당 예산투입액이 약 3배에 이르고 있음.

[2024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업무량 분석]

(연말 기준, 단위: 백만원)

	접수(건)	집행예산	인원(명)	건별 예산	처리건(1인당)
한국부동산원	843	5,656	32	6.7	26.3
LH	33	752	6	22.9	5.5

자료: 국토교통부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서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두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결과,[33] 업무량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인

건비와 운영비가 경직적으로 지출되기 때문임.

또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심사관을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34] 강원·경북 등 지방 사무국의 경우 변호사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최근 4년간 약 37억원의 인건비가 불용되었으며, 직접경비 및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총 불용액은 약 66억원 수준임.

[최근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8,538	8,538	8,538	5,844	68.4	68.4	-	2,694
2022	7,134	7,134	7,134	5,433	76.2	76.2	-	1,701
2023	7,134	7,134	7,134	5,789	81.2	81.2	-	1,345
2024	7,326	7,326	7,326	6,408	87.5	87.5	-	918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조정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인력구조와 자격요건에 대한 중요성이 조정위원회보다 덜하고, 유사 사례로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사무국 운영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점[35]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인력과 자격을 직접 규정한 시행령은 조직의 경직적 운영과 예산 불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도 인건비가 경직적으로 편성·집행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무국별 조정접수 실적에 따라 예산을 배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향후 국토교통부는 사무국의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사별 업무량 ·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인력 관리와 예산 배분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3) 국토교통부는 각 사무국별로 정원을 두지 아니하고,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각 1인씩 배치하고 조사관은 업무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배분하고 있다고 설명함

34)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공단의 지부 등에 두는 조정위원회 사무국)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3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3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지원 · 보조하는 등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사무국의 조직 · 인력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보증료 환불 대상자에 지원한 보증료 환수 필요 등

가. 개 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12억 6,800만원 중 66억 1,600만원이 집행(집행률 58.7%)되고, 46억 5,200만원이 불용되었음.[36]

[2024년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보증료지원	11,780	11,780	-	△512	11,268	6,616	-	4,652	11,78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서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증료의 90%~100%(최대 40만원)[37]를 환급해주는 사업임.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으로 보증료를 지원받은 수혜자가 이후 보증을 취소하고 보증료를 환불받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이들로부터 보증료 지원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발급 이후 보증금액 감액·보증취소 및 보증해지 등으로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부 환불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6) 일반회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1034-322)(주택토지실)

37) 청년·신혼부부는 100%, 그 외 90%

보증료 지원금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수혜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구체적으로 이 사업 지원대상(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보증가입자의 보증료 환불건수 및 금액 현황을 보면, 2022년 29,457건, 4억 8,600만원, 2023년 14,394건, 8억 3,900만원, 2024년 17,822건, 11억 9,1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61,673건, 25억 1,6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환불건수 및 금액]

(단위: 건)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환불건수	29,457	14,394	17,822	61,673
환불금액	4억 8,600만원	8억 3,900만원	11억 9,100만원	25억 1,600만원

주)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자(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로 한정한 통계임
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신청자가 보증료 지원요건(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저소득층 또는 신혼부부)에 해당하면 보증료를 지원하고, 이후 수혜자의 보증취소 · 보증료환불 등 보증을 유지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위 환불건수 및 금액 중 사업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금액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사업수혜자의 보증보험 유지 또는 환불실적을 파악하는 것은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면서, 보증금가입에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수혜자가 보증료 지원을 받은 후 반환보증을 환불받은 현황을 파악하고 과다 지급된 보증료를 환수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집행 저조 개선을 위해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예산 규모 조정방안과 실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3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의 실집행률은 23.7%로 사업 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자체 사업 담당자가 HUG로부터 보증가입자 정보를 넘겨받아 신청서류[38]를 간소화하는 한편, 2024년 3월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소득 기준과 대상 보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음.[39]

38) 보증가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소득금액증명

39) (소득 기준)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대상 보증) 신청년도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집행률이 2024년 27.0%, 2025년 6월말 기준 32.0%로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2023~2025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D)	집행률 (C/B)	실집행률 (D/B)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3	6,100	6,100	-	6,100	5,630	1,446	92.3	23.7	470
2024	11,780	11,780	△512	11,268	6,616	3,181	56.2	27.0	4,652
2025	11,780	11,780	△4,680	7,100	7,098	2,275 (6월기준)	100.0	32.0	-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이 사업의 집행 실적을 반영하고 사업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차년도 예산안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정책 수요자 관점[40]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방식으로 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40) 부산시가 2024년에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증 미가입 사유는 가입요건 미해당(32.2%), 제도 미인지(19.5%), 보증기관 거절(11.8%), 임대인의 구두약속(6.1%), 보증료 부담(3.1%) 순으로 나타났음

10.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선로사용료의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일반철도시설의 점검・보수・교체 등을 통해 시설의 기능과 성능을 유지시켜 열차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109억 9,100만원 전액이 집행되었음.[41]

[2024년도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위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510,991	510,991	-	-	510,991	510,991	-	-	598,27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구체적으로 5,109억 9,100만원은 인건비・경비・보수비 등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 총액(2024년 기준 9,145억 2,100만원) 중 선로사용료 4,035억 3,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임.

선로사용료 징수체계를 보면, 철도공사는 공단이 투자한 고속철도의 경우 영업수입 대비 34%, 전액 국비로 건설한 일반철도의 경우 정액제(4,035억원)로 납부하며, 공단은 이를 건설부채 상환 또는 유지보수비에 충당하고 있음.

㈜SR의 경우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영업수입의 50%를 선로사용료로 책정되어 있음.

[선로사용료 징수체계]

구분	고속철도	일반철도
철도공사	영업수입 대비 요율제: 34%	정액제: 4,035억원
	※ 철도공사의 경우 제도도입 후 산정기준 1차례 변경('15년부터 적용) ☞ (고속) 영업수입의 31% → 34% / (일반) 유지보수비의 70% → 정액제(운임인상 연동)	
SR	영업수입 대비 요율제: 50%	

자료: 국토교통부

41) 일반회계-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2731-301)(철도국)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부터 SR이 공단에 납부하고 있는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유지보수비에 추가 편성·집행하고 있는데, 사업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음.

2023년 9월부터 SR이 일반철도 구간(경전·동해·전라선)에 대한 운행을 개시하면서, 공단은 SR을 대상으로 선로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음. 공단이 2023년부터 SR로부터 추가로 징수한 선로사용료는 2023년 19억 5,600만원, 2024년 45억 1,500만원, 2025년 45억 1,500만원임.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현황][4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3.9~)	2024년	2025년
일반철도 선로사용료 징수	합 계	405,486	408,045	408,045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1,956**	**4,515**	**4,515**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편성	합 계	403,530	408,045	410,001
	철도공사	403,530	403,530	403,530
	SR	-	4,515	6,471

주) 2025년 SR 유지보수비(6,471백만원) = 2023년 징수액(1,956백만원)+ 2025년 징수액(4,515백만원)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공단은 매년 SR로부터 징수받은 선로사용료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해당 연도 유지보수비에 편성하거나 수익으로 인식 후 차년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는 등 임의적으로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 2024년 징수분은 2024년 유지보수비에, 2023년 선로사용료는 2024년에 수익으로 인식 후 2025년 유지보수비에 편성·집행하였음.[43]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은 인건비·경비·보수비에 대한 실소요액을 산출한 후 선로사용료를 차감하여 지원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은 유지보수비와 선로사용료 수입만큼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이 감소하게 되며, 정산 차액만큼 재원이 낭비되거나 국고가 과다 지원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

42)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에 「철도시설 사용료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①코레일-SR 공용노선 · 차량과 ②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자를 대상으로 단위사용료를 일부 도입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음.

43)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23년말에 SR 열차가 신규 투입됨에 따라 유지보수 물량이 적고 당초 계획된 유지보수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2025년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 못함.

향후,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출연금 지원 규모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로사용료를 유지보수 예산 편성시 반영하도록 일반철도시설 유지보수위탁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11.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가. 개 요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화되어 안전이 취약한 일반철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하여 철도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조 4,380억 2,200만원 중 1조 4,379억 6,500만원을 집행(집행률 99.9%)하고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44)]

[2024년도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1,445,566	1,445,566	0	△7,544	1,438,022	1,437,965	0	57	804,83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 사업은 노후도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순위가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제1차 철도시설 유지관리 기본계획(2021 ~ 2025년)」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장애 빈도 등을 정밀 분석하여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장애 시 피해가 큰 시설물에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이에 따라 선로시설은 선로유지관리를 통한 레일마모량·통과톤수·승차감 및 물리적 상태 등이 반영되어 우선순위가 산정되고 있으며, 주요 시스템 설비(전철전력·신

44) 일반회계-일반철도안전 및 시설개량(2731-302)(철도국)

호・통신) 또한 노후도・동작 횟수(70%) 및 통행량・설치장소(30%) 기준으로 평가 점수를 산정, 그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음.

[선로시설(레일 중량화 및 장대화) 우선순위 선정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중요도	(배점)
안전성	물리적 상태평가 결과	불량(정부정책, 시급개소, 안전대책등)	1	100	(50)
		미흡	2		
		보통	3		
		양호	4		
		우수	5		
내구성	레일 마모량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90% 이상	1	50	(15)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80%~90% 미만	2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70%~80% 미만	3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60%~70% 미만	4		
		레일마모 기준치 대비 60% 미만	5		
	레일 종류	37kg	1	20	(6)
		50kg	3		
		60kg	5		
	열차 통과 톤수 (누적)	6억톤 이상	1	30	(9)
		5억톤 ~ 6억톤 미만	2		
		3억톤 ~ 5억톤 미만	3		
		1억톤 ~ 3억톤 미만	4		
		1억톤 미만	5		
사용성	승차감 〔궤도검측차 선로품질지수(TQI)를 사용〕	TQI 점수 2.3 이상	1	70	(14)
		TQI 점수 2.2~2.3 미만	2		
		TQI 점수 2.1~2.2 미만	3		
		TQI 점수 2.0~2.1 미만	4		
		TQI 점수 2.0 미만	5		
	레일에 의한 고장, 장애 횟수	연 4회 이상	1	30	(6)
		연 3회	2		
		연 2회	3		
		연 1회	4		
		무	5		

자료: 국토교통부

[시스템 설비(선로전환기개량) 우선순위 선정기준]

구 분	평 가 기 준	점수
노후도 (50점)	내구연한 초과 10년 이상 또는 동작횟수 20만회 이상	50
	내구연한 초과 8~10년 미만	42.5
	내구연한 초과 5~8년 미만	35
	내구연한 초과 3~5년 미만	25
	내구연한 초과 3년 미만	12.5
동작횟수(20점)	환산: 동작횟수/200,000회×20점	20
열차 통행량 (20점)	일 150회 이상(20), 일 100~150회미만(15), 일 30~100회미만(10), 일 30회미만(5)	20
설치장소(10점)	본선(10), 부본선(8.5), 측선(7), 차량기지(5), 조차장(2.5)	10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우선순위 선정결과 중 선로시설개량 중 레일장대화 부문의 경우 당초 2024년 사업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던 분당선(야탑-정자), 전라선

(익산-동익산), 태백선(석항-예미) 구간이 가장 시급한 개량대상이였던 분당선(수서-가천대) 구간 등보다도 우선하는 것으로 순위가 변경되었음.

[선로시설개량(레일장대화) 우선순위 변경 사례]

구간		2024년 우선순위 (최초)		2024년 우선순위 (최종)		변경 사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분당선	수서-가천대1	1	79.8	20	79.8	차단일정 변경 및 보선장비 운용일수 부족에 따라 재료구매로 변경
분당선	수서-가천대2	2	79.8	21	79.8	
분당선	한티-개포1	3	78	22	78	
분당선	한티-개포2	4	78	23	78	
분당선	대모산-수서1	5	75.6	24	75.6	
분당선	대모산-수서2	6	75.4	25	75.4	
경원선	외대앞-석계	7	68	26	68	
분당선	야탑-정자	-	53.8	17	53.8	노후레일 마모발생 개소 레일교체 시행
전라선	익산-동익산	-	53.8	18	53.8	
태백선	석항-예미	-	53.6	19	53.6	

자료: 국토교통부

전기설비개량 중 연동장치 부분 또한 경전선 예당역 등 후순위에 있던 사업이 100위권 이상 조정되어 우선사업으로 추진되었음.

[전기설비개량(연동장치) 우선순위 변경 사례]

선별	역명	2024년 우선순위 (최초)		2024년 우선순위 (최종)		변경 사유
		순위	점수	순위	점수	
호남선	황등	108	81	8	81	단종 부품(relayless) 발생으로 장애예방을 위해 우선 반영
경전선	원창	174	78	9	78	
경전선	예당	175	78	10	78	
경전선	조성	176	78	11	78	
경전선	벌교	177	78	12	78	
경전선	득량	178	78	13	78	
경전선	보성	179	78	14	78	
경전선	명봉	180	78	15	78	
경북선	점촌	181	78	16	78	
우암선	우암	182	78	26	78	

자료: 국토교통부

문제는 위와 같은 우선순위 변경이 선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재산정하는 등 계량화되지 않고 순위조정으로 이루어져 비합리적이라는 점임. 예상하지 못한 마모가 발생하거나 단종 부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변경이 폭넓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계량화된 근

거가 없는 과도한 순위조정은 우선순위에 따른 개량계획 수립의 신뢰를 저하하고, 당초 우선순위권에 있는 시설물의 적기 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해 사고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투자 우선순위 변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 철도사고조사 : 연례적인 국외교육여비 내역변경 개선 필요

가. 개 요

‘철도사고조사’ 사업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선진 철도사고 조사 및 분석 능력을 구축하여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유사 철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억 7,000만원 중 1억 5,100만원이 집행(집행률 85.1%)되고, 1,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700만원이 불용되었음.[45)]

[2024년도 철도사고조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철도사고조사	171	171	6	-	177	151	19	7	171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국토교통부는 철도사고조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외 전문교육 여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연례적으로 국외업무여비로 내역변경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2024년 이 사업에는 철도사고조사관의 국외 전문교육 이수를 위한 국외교육여비(220-03)가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를 국외업무여비(220-02)로 변경하고 국외교육여비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음.

[2024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불용액
	본예산	추경				예산현액	집행액	
국외업무여비(220-02)	9	9	11	20	20	20	20	-
국외교육여비(220-03)	13	13	△13	-		-	-	-

자료: 국토교통부

45) 일반회계-철도사고조사(2731-307)(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와 같은 국외교육여비 내역변경(감) 및 미집행 사례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였음. 2022년에는 국외교육여비 1,300만원 중 600만원을 국외업무여비로 내역변경(감)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 처리하였음. 2023년에도 국외교육여비 1,300만원 중 800만원을 내역변경(감)하였고, 실제 사업목적에 따라 국외교육여비로 집행한 금액은 480만원에 불과하였음.

[2022, 2023년 국외여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2	국외업무여비(220-02)	9	9	6	15	14	1
	국외교육여비(220-03)	13	13	△6	7	-	7
2023	국외업무여비(220-02)	9	-	8	16.6	15.6	1
	국외교육여비(220-03)	13	-	△8	5.4	4.8	0.6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매년 철도사고조사관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국외 전문교육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국제철도 안전협의회(IRSC)[46] 또는 철도사고조사 국제포럼 참석을 위해 연례적인 예산 내역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이는 국토교통부가 수년간 국외 전문교육이수보다 철도 안전 관련 협의회 또는 사고조사 포럼 참석 등 국제적 안전 협의업무를 우선시한 결과, 당초 사업목적에 맞지 않게 국외교육여비를 집행하였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연례적인 예산 내역변경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도사고조사관의 전문 교육 및 국제업무 필요 수요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한 규모의 국외교육여비 금액를 예산에 편성하여 각 세목의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할 것임.

46) IRSC (International Railway Safety Council)는 매년 세계 16개 국가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운영기관의 철도안전전문가가 참석하여 철도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을 논의하는 국제포럼임.

13.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법적 근거가 미흡한 차입 부적정

가. 개 요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사업은 항공안전기술원의 고유업무 및 정부위탁사업(항공인증, 항공안전관리, 무인항공안전증진, 도심항공교통, 국가비행시험시설운영사업) 수행을 위한 기관운영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56억 4,7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47]

[2024년도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5,647	5,647	-	-	5,647	5,647	-	-	6,50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액은 항공안전기술원 총지출 442억 4,700만원 중 자체수입 386억원을 제외한 56억 4,700만원이 기관운영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항공안전기술원법」에서는 항공안전기술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차입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부차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 「항공안전기술원법」제12조 및 정관에 따르면, 항공안전기술원은 사업 재원을 출연금과 수입금으로만 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8]

---

47) 일반회계-항공안전기술원출연(3732-307)(항공정책실)

48) 「항공안전기술원법」
제12조(재원) 기술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 제6조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그런데 항공안전기술원은 2021년 4월 정부 예산 교부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이사회 의결만을 거쳐 10억원을 차입한 적이 있으며, 최근 2024년에는 10월 드론인증센터 구축[49] 관련 시공사 공사중단 및 타절 등 분쟁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10억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외부 차입은 사업의 전 시공사 분쟁으로 공사 기간이 지속 연장될 우려가 있어 연내 신속한 준공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진된 사항이며, 前 시공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2024. 7월)하였으므로 소송 결과에 따라 차입금 및 이자 등은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그러나 시공사를 상대로 최종 승소하여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연 3,000~4,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시공사의 재정여력과 그에 따른 원금 및 이자회수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임.

[항공안전기술원 차입 현황]

구 분	2021년	2024년
차입규모	1,000백만원	1,000백만원
차입기간	2021.4.22~2021.10.21.	2024.10.31.~2025.10.31.(기간 연장 가능)
이자율(%)	2.94%(변동금리)	4.17%(변동금리)
납부이자(총액)*	14,585천원	27,323천원
차입사유	정부예산 교부 지연으로, 기관운영비 조달 위해 차입	인천 드론 인증센터 구축 관련 시공사 타절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등 확보
상환시기	2021.10.21.	2027년도 예상

주) 2021년도는 상환 시까지 납부한 이자 총액이며, 2024년도의 경우 2025.7까지 납부한 이자총액임
자료: 항공안전기술원

또한 연내 사업추진 등 부득이한 외부 차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차입절차 또는 차입한도에 대한 근거 규정 없이 허용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와 경영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음.

49) [드론 인증센터 구축사업 개요]

ㅇ (추진체계) [총괄]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주체] 항공안전기술원
ㅇ (과업기간) 2019.03.27. ~ 2024.10.31.
ㅇ (목적) 드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 인증인프라 및 인증체계 구축
ㅇ (예산) 332.29억원(구축), 6.1억(운영)
ㅇ (규모) 인증시설・이착륙장 등 건축연면적 : 4,534m2 (활주로) 200m×10m
① 이착륙장 및 이동통제실 등 시험비행 인프라 구축
② 드론 인증을 위한 인증 시험장비 구축
③ 인증 기술기준 및 시험절차 개발

이와 관련하여 항공안전기술원과 같이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국토교통부의 유사 공공기관의 경우 차입금에 관한 근거를 기관 설립 근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항공안전기술원은 향후에는 차입금을 활용한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외부 차입이 필요한 경우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차입금 활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할 것임.[50]

50)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자금의 조달 등)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
2.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여 생긴 수입금
3. 차입금(외국에서 차입한 자금 및 들여온 물자를 포함한다)
4. 자산 운영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국가철도공단법」
제17조(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철도시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4.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점용료
5. 제7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6. 자산 운영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지급 · 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 서울시 등 지자체 추진사업과의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은 가스·통신 등 관리 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지하시설물 정보와 지하구조물, 지반정보를 통합한 지하공간통합지도 및 활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9억 7,600만원 중 77억 2,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9%)되고, 2억 4,800만원이 불용되었음.[51)]

[2024년도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지하시설물 전산화	13,188	13,188	-	-	13,188	12,940	-	248	11,925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7,976	7,976	-	-	7,976	7,728	-	248	6,72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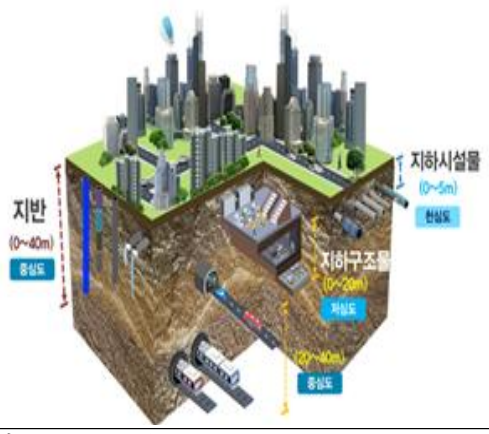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 사업과 서울시의 지반침하지도 사업 간 중복 투자·운영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구분하고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2014년 서울 송파·인천 등의 지역에서 연쇄적 싱크홀(지반침하) 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정보(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였고, 2023년부터 정확도 개선을 위한 수정·갱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51) 일반회계-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4270-504)(국토도시실)

그러나 현재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반침하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싱크홀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이력, 공동정보, 건설공사 정보, 홍수·범람 이력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지반침하와의 상관관계 분석 등 지반침하 위험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하겠다고 발표하였음.[52][53]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 통합지도]

<table>
<tr>
<td> 
</td>
<td>(지하시설물 7종) 상수도,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지하구조물 6종) 지하철, 공동구, 보도, 차도, 상가, 주차장

(지반정보 3종) 시추, 관정, 지질</td>
</tr>
</table>

자료: 국토교통부

한편 서울시는 2024년 8월 서대문구 연희동 성산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 후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지반조건 · 지하시설물 · 침하이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구간별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었음.[54]

또한 서울시는 2025년 4월에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곳의 정보를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 안전지도에 지하 매설물 · 지하수 및 상세한 지질정보 등에 관한 항목들을 포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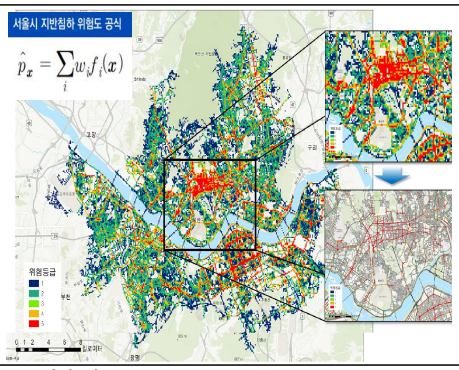
52) 국토교통부, 「’25년, 5,800억 원 규모 공간정보 정책사업 “공간정보 인공지능(AI) 적용, 트윈국토 조기실현”」, 2025.5.2.

53) 참고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사업에 12억원이 증액 의결되었음.

54) 「서울시, 연희동 사고 관련 지반침하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 발표」, 2024.9.4.

55) 서울시 설명자료, 「현재의 우선정비구역도는 GPR탐사 우선순위 선정 등에 활용되는 참고자료이며, 향후 市는 굴착공사장을 중심으로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우선 제작·공개를 검토」, 2025.4.10.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지하시설물 6종) :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난방열관, 전력관

(지반조건 5종) : 점토 두께, 침적토 두께, 모래 두께, 자갈 두께, 풍화토 두께

자료: 서울시

현재 구축된 국토교통부의 지하공간통합지도와 서울시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포함정보나 방법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반침하 방지라는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복 투자가 우려됨.

[지하공간통합지도 우선정비구역도 비교표]

구분	국토교통부 지하공간 통합지도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공목적	지하의 개발·이용·관리에 활용	GPR 탐사 우선순위 검토
포함정보	지하시설물(7) : 상 · 하수도, 전력, 통신, 가스, 난방, 송유관 지하구조물(6) : 지하철, 공동구, 지하보도,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상가 지반정보(3) : 시추, 관정, 지질 정보	지하시설물 6종의 직경과 선밀도 :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난방, 전력 지반조건(5) : 점토 두께, 침적토 두께, 모래 두께, 자갈 두께, 풍화토 두께
포함방법	3차원으로 위치정보 및 속성정보 (시설종류, 관리자, 관경, 관재질 등)	우선정비구역(5등급으로 표시)
구축지역	전국 (229개 시군)	서울시
제공대상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및 굴착 10m 이상의 지하개발사업자	서울시 해당 업무 담당자
제공형태	종이도면 제공	서울시 내부 행정망으로 접근가능한 “통합지하안전관리시스템” 안의 기능 중 하나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반침하 안전지도와 구별된 내용과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56]

56)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체 1,209개 사업에 약 5,838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고, 그 중 중앙정부(104개 사업)에서 약 3,819억원, 자자체(1,105개 사업)에서 약 2,019억원을 각각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15.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사업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의 비목 전환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 관리, 지하안전 관리, 기술인력 양성, 건축시설 안전점검 등을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43억 3,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57)]

[2024년도 국토안전관리원출연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토안전관리원 출연	84,336	84,336	-	-	84,336	84,336	-	-	86,86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총사업비 1,551억 5,600만원에서 자체수입 708억 2,0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기관운영출연금 344억 3,300만원과 사업출연금 499억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국토안전관리원은 사업출연금을 통해 기관의 경상경비를 우회하여 사용하거나 추가 수입을 활용하는 등 당초 편성된 경상경비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였으므로, 해당 예산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을 전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고,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 기관은 차년도 경상경비 예산액에서 0.5%를

57) 일반회계-국토안전관리원출연(4313-301)(건설정책국)

삭감하도록 하는 등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강한 통제장치를 두고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사업출연금에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가 포함된 경우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비목전환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58] 사업출연금을 통해 경상경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 기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출연금 499억 300만원에는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 49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에는 청사 임차료, 청사 관리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행사비, 피복비, 여비, 유류비, 임차료,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등 12개 부서 운영을 위한 경상비가 편성되어 있어 사업출연금의 성격이 상이한 것으로 보임.

[2024년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원)

세목	본예산(A)	변경예산(B)	결산(C)	차이(C-A)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575,749,600	486,238,089	484,976,864	△90,772,736
관리용역비(210-15)	1,500,834,000	1,527,566,695	1,527,566,665	26,732,665
국내여비(220-01)	39,067,200	23,176,662	23,176,207	△15,890,993
무형자산(440-00)	270,000,000	1,360,000,000	1,360,000,000	1,090,000,000
보수(110-01)	21,550,000	7,102,240	7,102,240	△14,447,760
복리후생비(210-12)	3,060,000	743,660	743,660	△2,316,340
시설장비유지비(210-09)	175,640,000	221,375,357	218,666,070	43,026,070
안전보건관리비(210-18)	24,926,800	31,132,885	31,104,865	6,178,065
유류비(210-08)	17,600,000	3,088,513	3,067,549	△14,532,451
일반수용비(210-01)	153,505,200	203,419,434	202,591,005	49,085,805
일반연구비(260-01)	605,000,000	608,517,000	603,306,970	△1,693,030
일반용역비(210-14)	11,000,000	94,800,000	94,800,000	83,800,000
임차료(210-07)	1,426,803,200	1,387,374,355	1,387,374,355	△39,428,845
자산취득비(430-01)	23,900,000	61,378,590	61,337,110	37,437,110
특근매식비(210-05)	6,464,000	3,529,260	3,475,360	△2,988,640
피복비(210-03)	3,900,000	8,050,000	7,950,000	4,050,000
행사비(210-19)	90,000,000	91,293,510	90,179,210	179,210
총합계	4,949,000,000	6,118,786,250	6,107,418,130	1,158,418,130

자료: 국토안전관리원

더욱이 이 내역사업은 2022년 32억원에서 2024년 49억원으로 예산이 급격히 증가되

5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58.

고 있어 경상경비의 과도한 지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이 최근 3년 동안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에서 발생한 추가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직원 사택 마련 등을 목적으로 약 57억원을 초과 지출하는 등 경상경비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은 2020년 지역본부 설립 이후 지방 근무 인원이 2020년 102명에서 2023년 406명으로 급증함에 따라 직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추가 지출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국토안전시설 지원 및 운영사업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합계
예산액(a)	3,210	4,646	4,949	12,805
집행액(b)	5,183	7,234	6,107	18,524
초과집행액(b-a)	1,973	2,588	1,158	5,719
초과 집행 비율(b/a×100)	161.5%	155.7%	123.4%	144.7%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은 2024년 6월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D등급을 받아 2025년도 경상경비 감액대상기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출연금으로 우회하여 경상경비가 추가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토교통부는 '국토안전 시설 지원 및 운영' 사업의 비목을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및 집행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6. 건설교통신기술 지정: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 적극 활용 필요

가. 개 요

‘건설교통신기술지정’ 사업은 민간이 개발한 건설교통분야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여 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기술개발자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4억 6,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59)]

[2024년도 건설교통신기술지정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건설교통신기술지정	1,468	1,468	-	-	1,468	1,468	-	-	1,462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건설 신기술의 신청건수 및 활용실적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신기술 활용 이후에 실시하는 사후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신기술이 현장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최근 건설 신기술 신청건수는 2019년 96건에서 2024년 56건, 활용금액은 2019년 5,289억원에서 2024년 4,123억원, 활용건수는 2019년 2,327건에서 2024년 1,621건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정건수 또한 20~30건 내외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음.

[건설 신기술 신규 신청 및 지정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설 신기술	신청건수	96	62	70	61	59	56
	지정건수	26	28	14	30	28	26

자료: 국토교통부

59) 일반회계-건설교통신기술지정(4315-302)(건설정책국)

[건설 신기술 활용실적 현황]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건설 신기술	활용금액(억원)	5,289	4,685	4,735	4,022	4,650	4,123
	활용건수(건)	2,327	2,301	1,936	1,726	1,978	1,621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에 있고, 최근에는 공모형 신기술 지정제도 도입, 건설신기술 시험시공 지원사업, 개발자-발주청 매칭 기술설명회 개최 등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기술의 보급이 여전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임.

[건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구분	혜 택
건설기술 진흥법령	ㅇ우수하면 우선사용 의무, 고의·중대과실 아니면 담당자 면책 ㅇ정책자금 우선지원 요청 가능 ㅇ신기술 부분 하도급 공사 참여 가능 ㅇ보호기간 지정(최초8년+연장7년) 및 기술사용료(3.5~8.5%) 징수 가능
계약, 입찰	ㅇ수의계약 가능 ㅇ신기술을 포함하여 일반경쟁시, 입찰공고 전 기술사용협약 체결 ㅇPQ평가에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평가(설계 5점, 시공 6점)
신기술 활성화 대책	ㅇ시험시공 지원(신기술 신청하려는 기술을 발주청이 현장제공, 비용 50% 지원) ㅇ국토청 특정공법 심의 우대(6개 공법 중 신기술 2개 이상 상정, 기술평가 가점 3점) ㅇ공모형 신기술 지정제도 도입('24.5), 발주청-개발자 매칭 기술설명회 개최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 신기술을 적용한 경우 공기단축 및 공사비 절감 결과 등이 포함된 사후평가서를 작성토록 하고, 국토교통부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60]

60)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 · 활용 등)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54조(신기술의 사후관리 등) ①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당해연도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준공한 때에는 준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자 또는 시공 책임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1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국토교통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술평가기관은 발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기술 활용 사례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를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신기술 적용을 희망하는 발주청 등에게 사후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며, 발주청 등이 실제 신기술을 사업에 도입 ·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향후 국토교통부는 발주청이 적극적으로 신기술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기술의 공사기간 단축, 시공성과 안전성, 공사비 절감 효과 등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평가서를 신기술의 현장적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평가서를 통보받은 기술평가기관은 이를 축적 및 분석하기 위해 건설신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 자동차안전도 평가: 자동차안전도 평가에 사용한 시험차 매각 대금의 차년도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은 국내에 시판되는 자동차를 대상으로 충돌시험 등을 통해 자동차 안전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보다 안전한 자동차 제작 및 구매를 유도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8억 3,5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61]

[2024년도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자동차안전도강화	16,446	16,446	-	-	16,446	16,446	-	2	18,304
자동차안전도평가	3,835	3,835		-	3,835	3,835	-	-	4,81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은 시험차 구매, 부품 및 평가시험, 평가장비 고도화, 안전도평가 홍보, 제도발전 및 연구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음.

[2024년 자동차안전평가 예산산출내역]

① 시험차 구매 : 1,408백만원
- 전기차 등 친환경차 구매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구매,
· 시험차(8차종) : 44백만원 x 8차종 × 4대/차종 = 1,408백만원
② 부품 및 평가시험 :1,503백만원
- 부품(보행자, 좌석 등), 시험준비, 소모품(센서 등) 등
· 평가차종 및 차량구매 대수에 따른 부품 및 시험소모품, 시험준비비 등 비용 산출
③ 평가장비 고도화 : 500백만원
- 차대차(car to car) 충돌안전성 평가(신규)를 2024년부터 시행함에 따라 충돌시험 시 인체모형의 거동 등 확인을 위한 고속영상 촬영을 위해 조명시설 구비를 위한 예산
④ 안전도평가 홍보 : 274백만원
- 안전도평가 결과에 대한 소비자 활용도 향상 및 안전도의식 제고 등을 위해 홍보 예산 반영

61) 일반회계-자동차안전도강화(4634-302)(모빌리티자동차국)

⑤ 제도발전 및 연구 : 150백만원
-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 등을 위한 비용, 고전원전기장치 BMS 평가 등 안전도평가방법 및 제도 고도화를 위한 제도연구 비용

자료: 국토교통부

나. 검토의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위해 구매한 시험차를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을 출연금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바, 매각 대금을 차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자동차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차를 구매하고 있고, 2024년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및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 8종 구매를 위한 예산 14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은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사용한 자동차와 부품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62)]

공단의 시험차 매각 수익을 살펴보면, 매년 약 1~2억원 내외로 최근 4년간 6억 3,500만원이 발생하였음.

[최근 4년간 시험차 매각대금]

연 도	매각 대금(원)
2020	148,390,000
2021	179,964,279
2022	173,888,000
2023	133,170,732
합계	635,413,011

자료: 국토교통부

그런데 매각 대금이 출연금 결산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에 따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임.

공단은 발생한 매각대금을 부족한 사업비에 충당하고 있어 목적 외 지출은 없다는 의견이나, 결산에 처리되지 않은 수입·경비 집행으로 인하여 결산상 수입지출 총량

62) 「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동차안전도평가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매각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과 집행잔액이 실제와 오차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투명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시험차 매각대금과 자동차안전도평가 사업예산 부족분 등을 예산편성시부터는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출연금이 보다 정확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도로계정)】

〈세 입〉

18. 법정부담금: 도로안전시설물 손괴 원인자 파악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필요

가. 개 요

‘법정부담금’ 은 「도로법」에 따라 타 공사나 타 행위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 2억 9,200만원 중 1,300만원이 수납(수납률 4.5%)되고 미수납액이 2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음.[63]

[2024년도 법정부담금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법정부담금	79	79	292	13	279	-	4.5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도로안전시설물이 손괴되는 사고가 발생된 경우 사고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인자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원인자 확인을 위한 노력을 통해 미수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도로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함)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함)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

63) 일반회계-법정부담금(59-593)(도로국)

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64]

그리고「도로법」제91조제1항에서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원인자에게 도로공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음.[65]

또한 같은 조 제5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등에게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66]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시설물 등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한 후 사고 원인자를 파악하지 못하여 2024년 기준 25건, 4억 1,100만원의 도로 복구공사 비용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원인자부담금 미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복구연도	도로시설물 종류	피해규모	복구비용	미징수 사유
수원	2024	중앙분리대	2경간	0.8	운전자 사망
수원	2024	가드레일	16경간	16	원인자 확인 불가

64)「도로법」
제35조(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65)「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66)「도로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이름(법인인 경우 법인 명칭) 및 주소
2.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3. 자동차등록번호 · 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 · 이전 · 말소에 관한 정보
4.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

(단위: 백만원)

기관명	복구연도	도로시설물 종류	피해규모	복구비용	미징수 사유
수원	2024	충격흡수시설	11개소	55	원인자 확인 불가
수원	2024	시선유도봉	625	18.8	원인자 확인 불가
수원	2024	충격흡수시설	6개소	2.8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충격흡수시설	9개소	90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중앙분리대	3경간	1.5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시선유도봉	7개소	0.24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가드레일	2경간	1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휀스	22경간	3.98	원인자 확인 불가
논산	2024	표지판	2개소	0.4	원인자 확인 불가
광주	2024	가드레일 및 지주 등	7경간	7.6	원인자 확인 불가
광주	2024	방음벽	2EA	20	원인자 확인 불가
광주	2024	충격흡수시설	9EA	7.2	원인자 확인 불가
광주	2024	표지판	2EA	20	원인자 확인 불가
전주	2024	차선분리대	20경간	4	원인자 확인 불가
전주	2024	표지판	1개소	20	원인자 확인 불가
남원	2024	충격흡수시설	1EA	2.7	원인자 확인 불가
남원	2024	터널 바닥 배수로	7경간	1.2	원인자 확인 불가
남원	2024	가로등 등주	1주	3.9	원인자 확인 불가
남원	2024	교량연석	2㎡	0.6	원인자 확인 불가
순천	2024	가드레일	15경간	4.5	원인자 확인 불가
순천	2024	충격흡수시설CC1	1EA	3.3	원인자 확인 불가
순천	2024	충격흡수시설CC2	6EA	26.4	원인자 확인 불가
순천	2024	차선분리대	10경간	2	원인자 확인 불가
영주	2024	방호울타리	234경간	98	원인자 확인 불가
합계				411.92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원인자 미확인을 이유로 징수하지 못한 복구비용은 2023년 4억 3,300만원, 2022년 3억 3,300만원 등 매년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도로시설물 손괴 원인자 확인을 위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미징수 금액을 최소화하여 징수 금액과 실적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

〈세 출〉

19. 항공기 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항공안전감독체계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사업은 항공기 안전성 인증, 항공분야 안전감독 수행 및 안전협력을 통해 항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2억 2,600만원 중 11억 7,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5.8%)되고, 5,100만원이 불용되었음.[67]

[2024년도 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	732	732	59	435	1,226	1,175	-	51	72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액은 항공안전감독관 인증 및 감독활동 운영비 1억 8,900만원, 인증 및 감독활동 여비 4억 1,400만원, 법령 개정안 마련 연구비 1억 2,000만원, 인증 및 감독활동 지원장비 구매비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가 사전예방적 안전점검보다는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응에 대한 비중이 높아 안전점검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 및 인력조정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67)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항공기안전인증 및 감독활동(3636-303)(항공정책실)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을 규정한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에 따르면,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사 '안전점검' (상시점검·특별점검) 외에도 각종 인가·증명·승인, 사고·준사고·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사실조사' 를 병행하고 있음.[68)]

그런데 감사원이 실시한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실조사가 항공안전감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69)] 감사원은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 및 해외 사례[70)] 등을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에게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사 상시점검 등 사전예방활동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 직무분석 등을 통해 업무범위·인력·업무수행방법 등을 조정·개선하여 항공안전감독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하도록 통보한 바 있음.[71)]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의 업무 중 사실조사 업무를 신설하고 2020년에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을 2명을 신규채용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인 사실조사 감독관 충원은 없는 상황임. 현재 항공안전감독관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은 2명이고 나머지 28명은 사전예방적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사실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중임.

---

68)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제9조(감독관의 직무) ① 감독관은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58조, 제60조, 제90조, 제97조, 제104조 및 제1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감항증명 : 「항공기 기술기준」 Part 21
2. 운항증명 :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3.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및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4. 정비조직인증 : 「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5. 사실조사 :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6. 안전활동 : 「항공안전감독관 업무매뉴얼」 등
제12조(상시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감독계획에 따라 필수점검, 위험기반점검, 계획점검 등의 상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점검)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실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에 소속된 항공종사자가 항공안전법령 또는 안전운항 규정 등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69) 항공사 안전점검 이외에 각종 인증·인가사항 검토 및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에 대한 사실검토와 사실조사 등으로 담당업무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안전과 관계된 이벤트 발생에 따른 사후적 대응이 우선시되어 안전점검이 소홀해지고 있으며, 전체 응답자의 89%는 사실조사로 항공안전감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감사원, 「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2018.12).

70) 미국은 안전감독부서와 사실조사부서를 따로 두고 사실조사 인력도 별도 채용하는 등 안전점검과 사실조사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71) 감사원, 「항공기 안전관리실태(인증·정비 분야)」, 2018.12.

[항공안전감독관 운영 현황]

분야	조종	정비	객실	위험물	운항관리	사실조사	계
인원(명)	9	12	2	2	3	2	30

자료: 국토교통부

사실조사는 항공안전장애 등의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항공사가 안전기준을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하는 안전점검과는 성격이 다르고,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항공안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운항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해 현장확인・관계자 면담・법령해석・적용 등을 거치게 되어 사실조사 착수부터 완료까지 평균 165일이 걸리는 등 장시간이 소요됨.

[최근 5년간 항공운항과 사실조사 현황(20년~24년), 완료건 기준 소요기간]

(단위: 명, 건)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B)	49	6	14	6	11	12
평균 조사기간	165	152	189	256	208	130
평균 투입인원	3	2	3	3	3	3

자료: 국토교통부

이와 같이 안전점검 담당 항공안전감독관이 사실조사 등 사후적 대응 활동을 병행할 경우 사전예방 성격의 항공사 안전점검 등이 위축되고 사실조사 또한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사실조사 전담 감독관 인력 충원 등 항공안전 감독체계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재난안전평가 결과 '미흡' 등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가. 개 요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전자항공정보관리체계 유지관리, 스마트 항공교통시스템, 국가공역분석시스템 유지보수, 첨단비행로 유지관리, 공역개선 관련 연구 등 항공안전증진 및 항행기술 발전에 따른 항공안전체계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89억 5,300만원 중 65억 5,200만원이 집행(집행률 73.2%)되고,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2억 8,100만원이 불용되었음.[72]

[2024년도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5,872	5,872	3,516	△435	8,953	6,552	120	2,281	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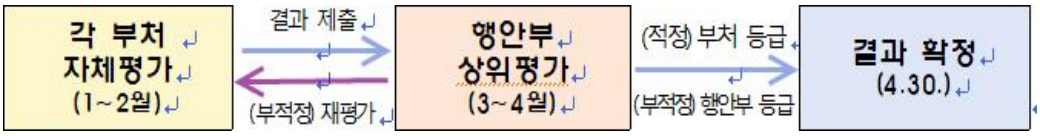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2년 연속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결과가 미흡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안전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평가방법 및 절차는 각 부처에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평가 과정 및 정확성을 점검한 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평가결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72) 교통시설특별회계-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3636-311)(항공정책실)



2024년 재난안전사업평가 결과 국토교통부는 27개 대상 사업 중에 4개 사업이 미흡 등급을 받았으며, 그 중에는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평가 결과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차년도 예산요구 시 지출구조조정(평가대상 사업비 총액 1% 감액) 대상에 포함됨.[73]

그런데 항공안전체계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상위계획과의 연계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에 따른 목적이 미흡하고, 사업방식 개선 노력이 미흡하며, 성과 활용을 위한 노력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2023년에 이어 20204년에도 재차 "미흡" 등급을 받았음.

[재난안전사업평가 주요 미흡 분야]

ㅇ (계획) 상위계획과의 연계, 재난안전관리 단계에 따른 목적 명시, 국민적 관심 및 사회적 이슈 연계, 전년 사업 평가 의견 반영 등 설명 미흡(17.3점/30점)
ㅇ (관리) 예산 집행율이 낮고, 예산집행계획 미준수, 이월 예산 발생, 예산집행률 제고 및 예산절감 노력 부재 등 사업방식 개선 노력 미흡(13.7점/20점)
ㅇ (결과) 사업성과 확산을 위해 제도개선, 성과 활용 등의 노력 부재(35점/50점)

자료: 국토교통부

특히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점)와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점) 항목에 대해서 2년 연속 0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하여 사업의 전년도 평가 결과에 대한 피드백(환류) 또는 사업성과 확산 노력에 대한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가 적시되어 있음.

73) 행정안전부, 「2024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2025.5.1.

[재난안전사업평가 0점을 받은 항목 및 근거]

①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

구분	2023년('22년 회계)	2024년('23년 회계)
ㅇ 전년도 평가의견의 사업계획 반영 정도(10)	0	0
- 평가의견	ㅇ 전년도 평가의견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고, 그에 관한 환류 계획을 검토한 실적이 없음 - 향후 평가의견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이 요구됨 - 특별한 평가의견 없이 우수라고 판정된 경우에도 검토 환류하는 과정이 미흡하여 "0점" 부여	ㅇ 전년도 평가의견 반영여부 확인 불가

②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

구분	2023년('22년 회계)	2024년('23년 회계)
ㅇ 사업성과 확산 노력도(10)	0	0
- 평가의견	ㅇ 사업성과 확산 노력에 관한 실적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ㅇ 성과확산을 위한 노력을 판단할 자료 없음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행안부 주관 컨설팅 참여,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사업관리 역량 강화, 각 사업의 추진 단계별 확인 점검 강화, 예산 집행 현황 확인 강화, 사업 성과 확산 노력 등을 검토 중임.

이 사업은 항공기 충돌방지 및 항공교통흐름 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적인 재난안전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국가항행계획,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 및 재난안전관리 단계와의 연계성을 명확히 하고, 수립된 계획이 확실히 이행되어 성과평가 결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21.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조류 충돌 등 위험요인에 대한 목표치 설정 필요

가. 개 요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사업은 국가항공안전데이터(12종) 수집·분석·연구·공유를 위한 인프라 확보, 분석시설 및 인력 운영 등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 7,500만원 중 15억 4,3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0%)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74)]

[2024년도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	1,575	1,575	-	-	1,575	1,543	-	32	1,687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액은 비행자료·레이더 수집·연계·분석, 시설운영 및 자료수집 등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항공안전기술원) 15억 6,000만원과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관계자 회의 및 워크숍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항공안전 의무보고자료의 분석결과 조류충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목표치 설정 없이 모니터링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전성과지표 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 제58조의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안전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가 항공안전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75)]

74) 교통시설특별회계(공항계정)-국가항공안전정보 수집분석(3636-340)(항공정책실)

75) 「항공안전법」

[2024년 안전성과지표 현황]

지표명	지표명
활주로이탈	회항
부적절한 활주로 접촉	항공기 간 접촉(충돌)
활주로침범	항공기-장비/차량 간 접촉
조정제어상실	분리치 미확보
기내여압관리 실패	항행안전시설 성능장애
순항 중 고도·경로 이탈	난기류 조우 부상
이착륙 중 고도·경로 이탈	운항지장 초래
유도로 오진입 이탈	고장 연기·화재
비행중 엔진정지	

자료: 국토교통부

또한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등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 수집·분석하여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도를 평가·관리하고 있음.[76)]

다만 최근 3년간 항공안전장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조류충돌이 2024년 기준 4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만 운항당 조류충돌 발생건수는 2020년 295건에서 2024년 779건으로 2.6배 증가하였음에도 그간 조류충돌 지표의 발생 경향성을 감시하고 감축 목표치는 설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감축에 대하여는 조류활동의 예측 및 통제가 어려워 안전성과지표 등에서 목표치로 설정하지 않고 모니터링 지표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의견임.

제58조(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 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 항공안전보증
4. 항공안전증진

76)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10.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의 운항 등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제61조의2(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와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수집 · 저장 · 통합 · 분석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전체 항공안전장애 TOP 5 발생유형]

순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유형 (비중)	1만운항당 발생률(건)	발생유형 (비중)	1만운항당 발생률(건)	발생유형 (비중)	1만운항당 발생률(건)
1위	조류충돌 (44%)	9.6 (461건)	조류충돌 (44%)	9.4 (635건)	조류충돌 (48%)	10.3 (779건)
2위	고장·결함·손상 (26%)	5.7 (272건)	고장·결함·손상 (22%)	4.6 (313건)	고장·결함·손상 (19%)	4.0 (306건)
3위	기타 (13%)	2.9 (140건)	기타 (15%)	3.2 (213건)	기타 (17%)	3.6 (276건)
4위	공중근접경보 (6%)	1.4 (67건)	공중근접경보 (9%)	1.9 (125건)	공중근접경보 (6%)	1.3 (98건)
5위	항행오류 (2%)	0.5 (23건)	항행오류 (2%)	0.4 (28건)	항행오류 (2%)	0.5 (40건)
	전 체	21.7 (1,040건)	전 체	21.4 (856건)	전 체	21.6 (1,634건)

자료: 국토교통부

최근 항공안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을 통해 수집·분석된 항공안전데이터가 단순히 동향분석이나 연구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안전성과목표 달성 등 실효적 안전관리 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안전장애 현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안전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22.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과도한 변경 지양 필요

가. 개 요

‘도시재생사업’은 인구감소·사업체수 감소 및 노후건축물 증가 등 도시 쇠퇴에 대응하여 노후 주거지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295억 7,900만원 중 4,247억 7,4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9%)되고, 2억 1,2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억 9,300만원이 불용되었음.[77]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도시재생사업	429,540	429,540	39	-	429,579	424,774	212	4,593	480,946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부적으로 보면 2024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계속지원 171곳 및 신규지원 20곳에 대해 4,197억 3,200만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원 3곳 지원을 위해 62억 4,800만원,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지원을 위해 25억 6,0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도시재생활성계획의 과도한 변경은 사업기간을 연장하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7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도시재생사업(5641-301)(국토도시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78)]

또한 계획의 목표 변경, 도시재생사업 폐지·신설,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을 평가하여 도시재생실무위원회를 거쳐 변경하고 있음.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기준]

구분			
구분	중대한 변경	○ 계획의 목표, 행위제한 적용 지역 변경 ○ 도시재생사업 폐지·신설 ○ 용도지역·용도지구 지정 · 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계획 변경 ○ 총사업비 10% 이상 증액 또는 감액 ○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면적 10% 이상 변경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경미한 변경	○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변경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현·타당성 평가 이행)	
		○ 중대한 변경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계획 변경	국토부 협의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국비지원 사업 191개소 중 24개소(약 13%)에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 내용을 변경하였음.

7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4년 도시재생사업 중 '중대한 변경'에 따른 계획변경 사업 현황]

연번	사업지	사업기간 (변경)	총사업비*(억원) (변경)	주요 변경사항
1	A	'21~'24 ('21~'26)	234 (250)	·오름길 생활가로정비 폐지, 숙등 뭐든지 공유센터 복합 조성
2	B	'20~'24 ('20~'26)	529 (438)	**·임대주택 폐지, 스마트주차타워 사업비 증액 (자체 지방비)반영**
3	C	'20~'24 ('20~'26)	446 (382)	·묵호텔 폐지, 문화발전소·문화공방·어울림센터 복합 조성
4	D	'21~'25 ('21~'26)	537 (459)	**·LH행복주택 폐지**, 삼대삼미 플랫폼 및 삼대 어울림한마당 위치변경
5	E	'22~'26 ('22~'27)	1,381 (1,178)	**·행복주택 폐지, 사업 기간 연장**
6	F	'21~'24 ('21~'25)	277 (323)	·한우왕조2000 철골구조에서 철콘구조로 조성방식 변경, **사업비 증가(자체지방비)**
7	G	'21~'25 ('21~'27)	265 (250)	·도계광업소, 도계급수탑, 까막동네 통합조성, **행복주택 폐지**, 오픈캠퍼스 신설
8	H	'21~'24 ('21~'26)	253 (365)	**·진안 참보배관 규모 증가 및 사업비 증가(자체지방비), 사업기간 증가**
9	I	'21~'24 ('21~'25)	243 (78)	·구조조정 및 재개발 접수에 따른 어울터, 어울로 규모 축소
10	J	'22~'24 ('22~'25)	217 (300)	·신규사업(부처연계) 추가로 영덕활력센터 사업 규모 조정
11	K	'21~'25 ('21~'27)	1,092 (735)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삭제** ·창업문화복합센터, 커뮤니티센터 복합 추진
12	L	'22~'26 ('22~'28)	704 (792)	·영스퀘어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폐지 ·영스퀘어 조성사업 건축규모 변경 및 사업기간 연장
13	M	'22~'24 ('22~'25)	54 (64)	·건축규모 증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사업비 변경(증 10.49억)**
14	N	'22~'25 ('22~'27)	398 (492)	·그린어울림센터 위치 변경 및 규모 조정(연면적 2,230㎡ →2,050㎡)
15	O	'21~'25	647 (461)	**·행복주택 건립 취소 및 삭제**에 따른 산업혁신 복합센터 건축방식(신축→매입,리모델링) 변경 **·지자체사업 추가 및 민간투자 삭제, 기간연장**
16	P	'21~'24 ('21~'26)	2,647 (2,557)	·구조조정에 따른 7개 세부사업 삭제(마중물 5개, 부처연계사업 1개, 지차체 1개) **·문현이음길 조성사업 사업기간 연장**
17	Q	'21~'24 ('21~'25)	434 (422)	·구조조정 및 재개발사업 입안에 따른 세부사업 폐지
18	R	'21~'24 ('21~'25)	816 (286)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감 530.6억) 및 거점시설(신삼마을 문화발전소) **사업기간 연장(+1년)**

연번	사업지	사업기간 (변경)	총사업비*(억원) (변경)	주요 변경사항
19	S	'21~'24 ('21~'25)	565 (687)	·돌봄방앗간과 사회혁신발전소를 통합하여 신복방앗간 조성 ·그린숲도서관과 그린예술발전소를 통합하여 그린숲발전소 조성 ·부처연계사업(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신설
20	T	'21~'24 ('21~'25)	351 (262)	·세대융합 창업공간과 지우산어울림플랫폼 및 주거복지 통합지원플랫폼을 통합하여 지우산어울림 통합지원 플랫폼 조성
21	U	'22~'27	6,323 (7,335)	·S타운과 I타운을 통합하여 G타운 조성 · '23년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비 감액(38.9억) · '24년 구조조정 대체사업으로 주차장 사업 신설(24.83억) ·민간사업(1건), 지자체사업(2건) 폐지 및 부처연계사업(3건), 지자체사업(1건) 신설
22	V	'23~'26	446 (448)	·구조조정에 따른 사업내용 조정 및 대체사업으로 "반려동물 야외 펫파크 조성" 신설
23	W	'23~'26	411 (415)	·노후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쉼터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주차장 조성 신설
24	X	''23~'26	338 (338)	·구조조정에 따른 글로컬 컨텐츠 캠퍼스 유휴공간 리모델링 사업비(25억)을 대체 신규사업(글로컬 콘텐츠 스토아 조성) 추가

*총사업비= 국비+지방비+자체지방비+부처연계사업비+공기업+기금+민간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러한 중대변경은 행정여건의 변동[79]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신청에 의해 검토되는 것으로 사업의 조속한 종료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이며, 중대변경 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계획의 과도한 변경은 사업기간을 늘이거나, 임대주택 또는 행복주택 건립 취소 등 당초 계획과 상이한 사업집행을 초래할 수 있고, 총사업비를 증액시켜 기존 사업계획 대비 예산의 초과 지출도 우려되므로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사업수행주체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과도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79) 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주민의견 반영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등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수　입〉

23. 기타민간이자수입: 기금 조성-운용금리 역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리조정 체계 개선 필요

가. 개　요

‘기타민간이자수입’ 은 국민주택건설을 위해 지원된 대출금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등 수요자에게 지원된 대출금의 이자수입 등을 계상한 것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3조 6,152억 7,700만원 중 3조 3,014억 900만원이 수납(수납률 91.3%)되고 미수납액 2,586억 3,200만원, 불납결손액 552억 3,600만원이 발생하였음.[80]

[2024년도 기타민간이자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민간 이자수입	3,597,673	3,597,673	3,615,277	3,301,409	258,632	55,236	91.3	3,699,992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2024년도 예산안 의결시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으나, 조성금리와 운용금리 차이가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기금 여유자금 감소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주체는 운용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예산안 의결시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간 차

80)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기타민간이자수입(54-544)(주택토지실)

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는 부대의견이 채택되었음.

그러나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조성·운용 금리차를 살펴보면, 조성금리 2.43%, 운용금리 1.93%로 오히려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음. 이는 기금의 운용 규모에 금리차를 곱한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주택도시기금 조성·운용 금리 추이]

(단위: %, %p)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조성	1.69	1.63	1.94	1.67	2.43
운용	2.44	2.05	1.09	2.05	1.93
금리차(운용-조성)	0.75	0.42	-0.85	0.38	-0.50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성-운용 금리 갭(조성<운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복합적 요인으로 역전 발생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2025년에는 국채 유통금리 인하세에 맞추어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하(30bp), 수요자대출 금리 효율화(수도권 금리 가산 20bp 등), 사업자대출 금리 현실화(2~30bp) 등을 이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기금 조성금리는 대내외 경제상황의 영향을 미치므로 예측 · 통제가 어렵고, 운용금리는 정부정책사업의 특징상 높게 책정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수 조원에 달하는 기금이 매년 운용되고 있으므로 0.1%의 금리가 수십 억원의 기금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조성-운용 금리차가 개선되지 못하고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은 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의미함. 국토교통부의 위와 같은 대응방식은 중장기 재무전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아닌 여건 변화에 따른 임기응변식 대응으로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무엇보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전년대비 약 9조원 감소한 10조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2024년 수익률은 3.35%로 벤치마크(5.40%) 대비 2.05%p 낮은 수준을 기록[81]하는 등 기금운용실적이 매우 부실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기금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81)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발생한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해외 대체투자 펀드 손실 등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6.98%로 저조한 것에 기인함.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및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여유자금규모	여유자금 운용현황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수익률)	기타(수익률)
2023	**19,251,290**	20,227,954 (8.26%)	383,601 (0.62%)	2,659,643 (5.74%)	17,184,710 (8.90%)
2024	**10,102,159**	18,836,429 **(3.35%)**	516,812 (0.74%)	4,541,714 (3.45%)	13,777,903 (3.52%)

주)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 총 규모임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운용-조성금리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금리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기금 운용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 출〉

24.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고금리 신종자본증권 발행 부적정

가. 개 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하 “공사”라 함)의 자본금을 확충하여 공사가 정책 보증사업 추진에 필요한 여건 조성 및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7,000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82)]

[2024년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	700,000	700,000	-	700,000	700,000	-	-	400,00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고 있는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어 형식적으로 부채비율을 감축시키지만 실질적으로는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게 되므로, 공사는 이러한 부채관리를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공사는 전세보증 사고 급증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이 급감함에 따라, 2024년 11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7,000억원의 채권형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였음.[83)]

일반적으로 신종자본증권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므로, 회사채 대신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경우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며,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장부상 이자로 표시되지 않아 회계상 경영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표시됨.

82) 주택도시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출자(1043-301)(주택토지실)

83) 만기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됨.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가지면서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HUG 신종자본증권 주요 발행조건]

구분		내용
증권 신용등급		▸ AA+ (※ 기업신용등급(ICR) AAA) - 신종자본증권 최고 등급(일반 공사채 대비 최소 1등급 이상 하락)
발행일		▸ '24.11.26.
발행금액		▸ 7,000억원
발행금리		▸ 4.10%
발행조건	만기	▸ 30년 (※ 발행사의 임의연장 가능하나 중도 상환조건으로 실질적 만기는 5년)
	중도상환(call-option)	▸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째 되는날 또는 그 이후의 각 이자지급 기일 ▸ 회계기준 변경으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시 ▸ 국내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론 변경으로 자본으로 인정되지 않을시 ▸ 세법 변경으로 이자의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을시 ▸ 대주주 변경사유(정부가 발행사의 최대 주주 지위 상실) 발생 시
	가산금리(Step-up)	▸ 5년 중도상환 미행사시 [재설정일 2영업일 전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 [가산금리]% + [1.00]% ▸ 대주주 변경 사유에 의한 중도상환의 미행사시는 발행금리 + [1.00]%
이자지급		▸ 3개월 후취 ▸ 발행사의 재량적 이자지급 연기 가능(이자지급 정지시 보통주 배당금지) ▸ 미지급이자 누적적 지급 (미지급이자에 대한 추가 이자지급-발행금리 3개월 복리 적용)
주관사		▸ NH투자증권
기타사항		▸ ESG 채권(사회적 채권)으로 발행 -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투자 유도 목적

자료: 국토교통부

그러나 신종자본증권은 청산 등의 잔여지분 변제 사유가 발생하면 보통주를 제외한 다른 채무보다 후순위로 취급받게 되므로,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은 일반 회사채에 비해 1~2구간 낮게 평가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금리를 지급하게 됨.

즉,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따라 지출하게 되는 고금리 이자금융비용보다 부채비율 개선에 따라 감소하는 조달금리 효과가 큰 경우 발행 유인이 발생하는 것임.

그런데 국내 신용평가사의 공사에 대한 신용등급은 AAA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얻는 조달금리 개선효과는 미미하고 이자금융비용만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제로 공사가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부담할 분기별 이자비용 72억원과 일반 회사채에 비하여 최초 중도상환시점까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을 계산하면 약 295억원이며, 발행수수료 13억 3,600만원까지 추가한 금액이 공사의 장기 부채로 반영될 것이며, 이는 실질적인 부채감축이 될 수 없음.

[일반 회사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시 이자비용 산출]

ㅇ HUG 신종자본증권과 근접한 시기('24.11.12.)에 발행한 한국전력(공공기관, AAA)의 '일반 회사채(5년물)' 금리(3.262%)와 비교 시, 연간 약 59억원*, 5년간 약 295억원 추가 비용 소요 예상 * 발행금액 7천억원 x (연이율 4.1%- 한국전력 회사채(AAA) 5년물 금리 3.262%)

자료: 국토교통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부채감축을 목적으로 관리비 절감, 투자비 축소 등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 없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고자 하였음.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고 추가적인 이자부담과 장기 부채부담을 증가시키므로, 공기업 부채관리의 취지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따른 2024~2028년 HUG 자구노력]

(단위: 억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자산효율화	1	-	-	-	-	1
자본확충	3,147	5,175	-	-	-	8,322
계	3,148	5,175	-	-	-	8,323

자료: 국토교통부

따라서 공사는 고금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보다는 자구노력을 통한 경비절감과 사업조정 및 자산매각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등 실질적 부채관리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는 공사의 부채관리 대책을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5. 통합공공임대 융자·출자: 주거안정과 손익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가. 개 요

‘통합공공임대 융자·출자’ 사업은 입주자격·임대료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024년도 계획현액 2조 6,174억 2,900만원 중 2조 852억 1,700만원이 집행(집행률 79.7%)되었음.[84)]

[2024년도 통합공공임대 융자 및 출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통합공공임대 융자	1,401,288	1,401,288	-	1,401,288	1,049,331	-	351,957	1,481,708
통합공공임대 출자	1,216,141	1,216,141	-	1,216,141	1,035,886	-	180,255	1,642,403
합계	2,617,429	2,617,429	-	2,617,429	2,085,217	-	532,212	3,124,111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통합공공임대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무안정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의 사업계획을 보류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공주택건설 등 정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의 유형과 권역별로 손익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사업손익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고, 손익목표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신규 사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등 4개 권역과 뉴:홈, 통합공공임대 등 8개 주택사업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손익목표를 정한 후 이를 관리하고 있음.

84) 주택도시기금-통합공공임대(융자)(1338-406)(주택토지실)
통합공공임대출자(1440-411)(주택토지실)

[신규 주택 손익목표]

구분	뉴:홈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행복주택 (신혼)	통합공공임대	
	일반형	선택형						소형	중형포함
1권역	4.2%	△6.8%	△10.8%	△28.7%	△41.0%	△28.4%	△36.4%	△29.7%	△31.9%
2권역	2.1%	△12.8%	△13.9%	△33.4%	△37.2%	△34.9%	△41.9%	△34.6%	△36.9%
3권역	1.1%	△14.2%	△14.9%	△35.1%	△38.2%	△38.6%	△45.6%	△37.5%	△39.7%
4권역	0.1%	△18.4%	△20.9%	△37.8%	△40.4%	△44.8%	△49.8%	△42.4%	△44.6%

주 1) [1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권역] 기타 수도권 지역(세종시 포함), [3권역] 광역시(군지역 제외, 1·2권역 이외 광역시), [4권역] 기타 지방도시
2) 통합공공임대: 소형 60형 이하/ 중형포함 60이상-85이하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런데 2024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지구를 대상으로 손실률을 분석한 결과, NPV지수가 △66.15%로 사업 손익목표(△37.5%)에 미달하는데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산 모라” 지구를 포함하여, 총 14개 지구(총 사업비 1조 8,688억원)에서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데도 보상에 착수하거나 공사를 발주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목표 대비 초과 손실액은 1,128억원으로 추정됨.

[손익목표 미달 통합공공임대 현황]

지구명	사업계획 승인일	가구수 (호)	총사업비 (억원)	NPV지수(%)			초과손실액 (억원)
				목표(A)	실적(B)	차이(B-A) (%p)	
부산모라 (복합,행복주택)	2024-05	94	542	-37.5	-66.15	-28.65	-155
경북영천 (마을정비형)	2024-11	110	514	-42.4	-47.17	-4.77	-25
전주동서학	2024-11	88	515	-42.4	-49.51	-7.11	-37
안산신길2	2024-12	442	1,526	-34.6	-35.24	-0.64	-10
시흥하중	2024-12	279	988	-29.7	-43.28	-13.58	-134
포천송우2	2024-12	754	1,675	-34.6	-36.11	-1.51	-25
고양탄현공원	2024-12	715	2,303	-29.7	-31.19	-1.49	-34
밀양부북	2024-12	318	1,205	-42.4	-48.60	-6.20	-75
광주송정역KTX	2024-12	300	715	-37.5	-39.60	-2.10	-15
행복도시	2024-12	340	1,054	-36.9	-40.38	-3.48	-37
행복도시	2024-12	1,327	4,599	-36.9	-40.33	-3.43	-158
행복도시	2024-12	328	780	-34.6	-42.72	-8.12	-63
아산온양	2024-12	318	1,001	-44.6	-53.44	-8.84	-88
서울영등포	2024-12	370	1,271	-29.7	-51.10	-21.40	-272
합 계		5,783	18,688			(평균 -8.0)	-1,128

주: 실적과 초과손실액은 모두 추정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공사는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지구라고 하더라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경영투자심사[85]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공사의 설명과 같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도 중요 사항이나, 사업 손익목표에 미달하는 위 다수 사업을 지속할 경우 공사의 재무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음. 2023년 1월 발표한 공사 혁신방안[86]에 따르면, 2026년까지 부채비율을 207%로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2024~2028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는 2026년 226%, 2027년 233%, 2028년 232%로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와 공사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구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더불어 규모 조정·취소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손익 목표관리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85) 사업비 예산을 수반하는 토지·주택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타당성 검토 및 투자여부 결정, 설계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공사 내부 심의위원회로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86) 국토교통부, 「국민 신뢰 회복과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LH 혁신을 추진합니다.」. 2023.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　입〉

26.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은 무보험 · 뺑소니 · 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구상하여 회수한 금액 등으로, 2024년도 징수결정액 3,140억 4,600만원 중 274억 2,500만원이 수납(수납률 8.7%)되고, 미수납액 2,689억 6,000만원, 불납결손액 176억 6,100만원이 발생하였음.[87]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계획액
	계획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당초	수정(A)						
기타경상 이전수입	20,574	20,574	314,046	27,425	268,960	17,661	8.7	22,110

주) 2025년도 계획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발생하는 가해자에 대한 구상채권의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수납률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재원으로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하여 보상금을 회수하고 있음.[88]

8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모빌리티자동차국)

그런데 최근 5년간 구상실적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미수납채권(기말구상미결금액 기준)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24년말 기준 2,689억 6,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수납률 또한 2024년 기준 8.7%에 불과하는 등 연례적으로 수납실적이 저조하며 불납결손액도 2024년 기준 176억원으로 나타났음.

[최근 5년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 및 구상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상액(백만원)	12,379	10,446	9,970	11,453	9,185
보상 인원(명)	3,018	2,568	2,164	2,586	2,683
구상 대상(건)*	44,335	44,742	41,598	40,249	39,192
구상 건수(건)**	8,561	8,618	10,367	14,324	14,095
구상액(백만원)	5,645	8,790	11,257	11,385	13,035
기초구상 미결금액(백만원)	315,550	310,665	283,985	274,169	264,934
기말구상 미결금액(백만원)	310,665	283,985	274,169	264,934	268,960

주 1): 구상 대상은 당해연도 기초 구상미결 건수
2): 구상 건수는 당해연도 환입 건수(사고 건수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당초	수정(A)							
2021	10,919	15,091	15,091	338,636	15,513	102.8	4.6	293,637	14,514
2022	16,885	16,885	16,885	314,259	20,582	121.9	6.5	274,576	19,101
2023	17,910	17,910	17,910	308,451	26,460	147.7	8.6	264,934	17,056
2024	20,574	20,574	20,574	314,046	27,425	133.3	8.7	268,960	17,661

자료: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보험 사고 가해자는 책임보험 가입 여력이 없을 정도로

8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2.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제39조(청구권 등의 대위) ① 정부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에서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행사(代位行使)할 수 있다.

변제 자력이 부족한 채무자들이 많아 구상채권의 상당수가 장기 채권이므로[89] 구상실적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임. 또한, 2020회계연도 결산 상임위 시정요구에 따라 2021년부터는 구상채권 미수납액 전액을 나타내기 위해 이를 징수결정액에 반영하여 계획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는 의견임.[90]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구상실적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구상업무를 보험사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한 후 진흥원에 채권 관리 전담부서(국가채권관리센터 16명)를 신설하였으며, 사업관리를 위해 매년 진흥원으로 구상업무 수수료를 지급(2024년 15억 700만원)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수실적을 보다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구상채권 징수실적을 제고하여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89) (2024년말 기준) 전체 채권 중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채권은 2,200억원임(81.8%)

90) [2020회계결산 상임위 시정요구사항]
- ㅇ (내용) 구상채권 미수납액이 존재함에도 결산서상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일치하도록 회계처리를 하고 있어 국가결산보고서에 미수납액이 명시적으로 표시 및 관리되지 않고 있음
- ㅇ (조치) 미수납액을 명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제 발생한 구상채권 미수납 전액을 징수결정액으로 반영

【기　타】

27.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토교통부에 대해 시정요구 159건(중복 9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43건·주의 60건·제도개선 65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43	60	65	9	159
예비비	-	-	-	-	-	-	-
합계	-	-	43	60	65	9	159

국토교통부는 시정요구사항 159건에 대해 122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6.7%)하고 37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159	122	76.7	37
예비비	-	-	-	-
합계	159	122	76.7	37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국토교통부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국토교통부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49) 국토교통부는 백령도, 울릉도 등 신공항건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50)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와 운용금리 간 차이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한다.
	(51)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제3자 전문가 검증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를 거쳐 전체노선을 확정한 이후 지체없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1) 정부는 항공기소음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3) 정부는 2024년 예산감액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3)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도심융합특구 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14)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상승으로 필수 공공 건설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비 재조정을 위해 노력한다.
	(31) 국토교통부는 8.8.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가격 상승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바,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해소하는 등 경기침체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
	(32) 국토교통부는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CTX-A 노선이 장래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3)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결산은 예산 대비 846억 1,900만원(735.4%)이 많은 961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4억 8,600만원(75.9%) 증가함.[1)]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4,819	4,819	54,640	49,821	11,507	11,507	96,126	84,619	41,486
총수입	4,819	4,819	54,640	49,821	11,507	11,507	96,126	84,619	41,486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결산은 예산 대비 7억원(△0.5%)이 적은 1,34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44억 6,300만원(△24.9%)이 감소함.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23,434	223,434	178,517	△44,917	134,754	134,754	134,054	△700	△44,463
총지출	223,434	23,434	178,517	△44,917	134,754	134,754	134,054	△700	△44,463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363억 300만원으로 2,210억 5,6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2,209억 2.200만원이 수납(수납률 99.9%)되고 1억 3,4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36,303	136,303	-	136,303	221,056	220,922	134	-
합 계	136,303	136,303	-	136,303	221,056	220,922	134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489억 2,000만원으로, 이 중 2,603억 9,900만원이 집행(집행률74.6%)되고 853억 3,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1억 8,6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124,796	124,796	-	-	-	124,796	124,796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136,303	136,303	87,821	±7,543	-	224,124	135,603	85,335	3,186
합 계	261,099	261,099	87,821	±7,543	-	348,920	260,399	85,335	3,186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자산은 전년 대비 481억 8,600만원이 감소한 2조 320억 1,700만원으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이 605억 8,000만원 감소하고 일반유형자산이 132억 4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2억 7,500만원 감소한 7,100만원으로 유동부채 2억 7,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79억 1,100만원이 감소한 2조 319억 4,600만원임.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프로그램순원가는 1,475억 2,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2억 4,00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777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1,800만원 감소하였음.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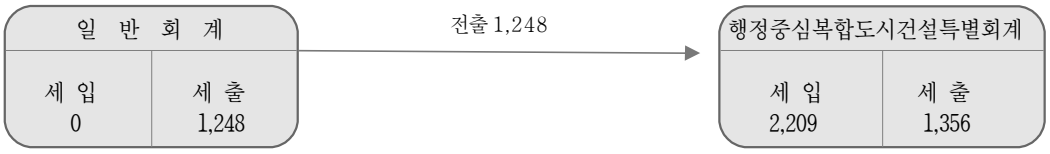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2,032,017	2,080,203	△48,186	△2.3
		유동자산	1,288	1,774	△486	△27.4
		일반유형자산	846,446	833,242	13,204	1.6
		사회기반시설	1,184,145	1,244,725	△60,580	△4.9
		무형자산	137	187	△50	△26.7
		기타비유동자산	-	275	△275	△100.0
	부 채		71	346	△275	△79.5
		유동부채	71	346	△275	△79.5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2,031,946	2,079,857	△47,911	△2.3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47,529	155,769	△8,240	△5.3
	재정운영순원가		177,712	186,830	△9,118	△4.9
	재정운영결과		177,712	186,830	△9,118	△4.9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결산은 일반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248억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체 수입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모든 세출사업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바, 회계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실질적 행정수도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33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건립되는 중심부를 실질적 행정수도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광역교통망을 확대하며 도심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4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재이월 및 재재이월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의 결산잉여금 처리에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셋째,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른 재원분담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광역도로의 사례에 따라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 출>

1.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이월규정 준수 필요

가. 개 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은 BRT 전용차로가 설치된 행정도시~대전유성 연결도로와 BRT 전용차로가 미설치 되어 있는 외삼동~유성복합터미널구간에 BRT 전용차로 운영을 위한 도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억원이 전액 집행되었음.[2)]

[2024년도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외삼~유성복합 터미널	300	300	-	-	300	300	-	-	1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685억원,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자치단체 보조사업 방식(보조사업자: 대전광역시, 보조율: 50%)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이 사업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현액 61억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연결도로(2032-318)(시설사업국)

9,700만원 중 19억 8,000만원, 2023년 예산현액 67억 1,600만원 중 21억 9,600만원, 2024년 예산현액 48억 2,0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이 각각 집행되었음.

[최근 3년간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2022년	5,000	5,000	5,000	1,197	6,197	1,980	4,216	31.9
2023년	2,500	2,500	2,500	4,216	6,716	2,196	4,519	32.7
2024년	300	300	300	4,520	4,820	1,595	3,225	33.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최근 3년 동안의 재이월 또는 재재이월 현황은 다음과 같음. 예를 들면, 2023년에는 2022년에 이월한 42억 1,600만원 중 21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20억 2,000만원이 재이월되었고, 2024년에는 이 중 15억 9,500만원만 집행되어 4억 2,500만원이 재재이월되었음.

[최근 3년간 외삼-유성 복합터미널 재이월·재재이월 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총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총계	올해연도 부분 (이월)	전년도 부분 (재이월)	전전년도 부분 (재재이월)
2022년	5,000	1,197	6,197	1,980	4,216	**4,216**	-	-
2023년	2,500	**4,216**	6,716	2,196	4,520	2,500	**2,020**	-
2024년	300	4,520	4,820	1,595	3,225	300	2,500	**425**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의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재이월 및 재재이월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법」(이하 “신행정수도법”이라 함) 제49조[3]에서는「국가재정법」 제48조[4]에도 불구하고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다만 재이월 이상에 대하여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국가재정법」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규정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허용하고 있음.[5]

이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대전광역시는 가로수 이식, BRT 정류장 위치 변경, 신호기 형식 변경 등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되어 실집행 부진으로 재이월 또는 재재이월 처리를 하였는데, 단순 협의 지연 사유는 지침에서 정한 재이월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재재이월은 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더욱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국가재정법」 및「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의 재이월 규정을 준수하고, 재재이월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세출예산의 이월)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4)「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5)「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행복도시박물관단지법 시행령」에 따른 잉여금 처리 규정 보완 필요

가. 개 요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어린이박물관 및 통합운영을 위해 법인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74억 8,1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6)]

[2024년도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7,481	7,481	-	-	7,481	7,481	-	-	10,92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부적으로, 전체 출연금은 국립박물관단지 통합운영지원센터 인건비 31억 7,800만원, 경상경비 19억 4,900만원, 사업비 26억 3,300만원에서 수입 2억 7,90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출되었으며, 기관운영출연금(350-01) 51억 2,700만원과 사업출연금(350-02) 23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음.

[2024년도 예산액 세부내역]

○ 인건비: 3,178백만원
- 기본연봉 2,661백만원(44명), 법정부담금(295백만원), 퇴직급여충당금(222백만원)

○ 경상경비: 1,949백만원
- 기관운영일반 794백만원, 공공부담 331백만원, 기타관리비 665백만원, 자산취득비 159백만원

○ 사업비: 2,633백만원
- (전시) 1,701백만원, (교육) 330백만원, (자료) 219백만원, (학술) 130백만원, (홍보) 115백만원, (보존) 138백만원

○ 수입: △279백만원 (임대료, 주차장 수입 등)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국립박물관단지 운영(1031-514)(시설사업국)

나. 검토의견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의 결산잉여금 처리에 근거가 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당 규정이 일반적인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를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통합운영지원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및 2024년도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발생원인에 따라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결산잉여금으로 처리한 후 차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하였음.

특히 2024년도 결산잉여금에는 집행잔액 중 인력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1억 3,900만원, 사업비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회계연도별 출연금 결산잉여금 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결산잉여금			비 고
	합계	2023년 출연금	2024년 출연금	
2023	1,297,995	1,297,995 ('23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	'25년도 세입으로 계상
2024	249,363	59,787 ('24년으로 이월한 예산 중 집행잔액)	189,576 ('24년도 출연금 집행잔액)	'26년도 세입으로 계상(예정)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러한 집행잔액과 결산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세입으로 계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7)]

그러나 위 시행령 제10조는 부채상환에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에 대하여 이월 처리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이고, 일반적인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 방식에 대한 내부 처리 규정은 미비하므로, 통합운영지원센터가 집행잔액을 차차년도 세입으로 계상한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음.

또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 정부출연기관

7)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잉여금의 처리) 통합운영지원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통합운영지원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은 자체수입 초과달성 ·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기관운영출연금의 집행잔액은 기관 세입에 계상할 수 있으나,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사업비 집행 잔액은 제외됨.[8)]

이 사업의 경우 출연금 집행잔액 전액이 결산잉여금으로 분류되고 다시 차차년도 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어, 인건비와 사업비 잔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는 않는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어려우며, 결산잉여금의 사용시기 및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립박물관단지는 일반적인 출연금 집행잔액 처리방식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거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조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음.

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o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발생한 결산잉여금(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은 제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23.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상기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3.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지자체와의 재원분담 필요

가. 개 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행복도시와 대전 지역간 급증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대전・청주 등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20억 1,0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9)]

[2024년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	-	2,010	-	2,010	2,010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를 처리할 목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7년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최초 수립하였고, 이후 2020년까지 3차례 변경하여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총 21개 노선 164km 중 12개 노선 89km를 개통하였고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공사 3개 · 설계 1개 노선, ‘25. 7월 기준),[10)]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추진 중인 4개 사업 중 하나로서 세종시 부강면(경부선철도 부강역)에서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경부고속도로 북대전IC)을 연결하는 12.88km 왕복 4차로를 신설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630억원,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9년까지임.

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면, 2022년 기본설계 결과 총사업비가 31.2% 증가하게 되어 2023년 4월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하였고, 2024년 7월 타당성재조사가 통과됨에 따라 202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재착수하여 2026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이후 토지보상 및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경 착공할 계획임.

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2032-329)(시설사업국)

10) (공사) 행복도시~공주, 외삼~유성복합터미널, 회덕IC / (설계) 부강역~북대전IC

나. 검토의견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른 재원분담 계획 및 현재 추진 중인 다른 광역도로의 사례에 따라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의 재원분담 비율은「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여, 2014년 2차 변경 당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국비 100%로 확정되었음.

그러나 이 사업은 2014년 분담비율 확정 이후 사업규모가 확대 변경되었고,[11] 2022년에는 총사업비가 30% 이상 재차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실제 정부의 사업분담 금액은 2014년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 예상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였음.

특히, 2023년말 수립된「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의 재원분담계획(2023년 12월)에 따르면, 지자체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비율은 같은 법에 따른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분담 비율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2]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3. 재원조달계획 가. 재원분담계획 ○ **지자체는** 지방행정시설 등 지자체 이관 공공시설 및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건설비용 일부를 부담** - 지자체 이관 공공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 50%를 분담하며, 광역교통시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분담 비율 확정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에 2025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 중에 있는 다른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국가가 50%의 비율로, 2026년 이후 추진 예정인 광역도로는 국가가 75% 수준에

11) 2014년 11월 당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는 부강역 연결도로 신설(2.25km, 815억원, 2019년 완료), 부강역-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2.81km, 642억원, 2021년 완료)을 포함하였음.

12)「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3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건설청장이 수립한다.

서 비용을 분담할 계획으로, 2023년말 마련된 재원분담계획 내용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에 따른 정부 부담분]

(단위 : 조원)

구 분			비용	비 고
정부	• 광역기반시설		2.40	
	- 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광역도로**	2.37	**지자체 분담**
	- 기타시설	환승주차장, BRT, 공공자전거 등	0.03	
	• 공공건축		4.90	
	- 국가시설		3.45	
	- 기타 공공시설	지방행정,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1.45	지자체 분담
	• 용지비		1.20	
	- 국가시설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및 법원/검찰청/경찰청/세무서 등	0.90	
	- 기타 공공시설		0.30	지자체 분담
	정부 부담 사업비용 합계		8.5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6년 이후 추진 예정인 광역도로 재원분담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국비 지원비율	총사업비(국비) (억원)
행복도시-공주 연결도로	'17~'27	50%	353(176)
외삼-유성복합터미널 연결도로	'14~'27	50%	1,583(791)
회덕IC 연결도로	'18~'27	50%	1,225(612)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26~'32	75%	1,800(1,348)
행복도시-탄천 연결도로	'26~'32	75%	4,364(3,274)
정안IC~내포신도시 연결도로	'26~'32	75%	1,822(1,367)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이 2014년 광역교통개선대책 당시에는 국비 100%로 확정되었어도,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 중으로 착공은 2027년부터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다른 광역도로 사업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통해 지자체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3)]

13) 참고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복도시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제4차 변경을 추진 중임(2025. 4)

4.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연말에 집중된 예산집행 부적정

가. 개 요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은 세종공동캠퍼스의 학습환경 구성을 위한 공용자산 구입 및 교사시설 운영·관리를 지원할 목적으로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6억 4,600만원 중 6억 800만원이 집행(집행률 94.1%)되고 3,800만원이 불용되었음.[14)]

[2024년도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	646	646	-	-	646	608	-	38	1,263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5)] 제63조의9에 따라 설치된 공동캠퍼스 운영·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2024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음.

2024년도 예산액 산출내역을 보면, 공익법인 운영을 위한 인건비·경상비·사업비 40억 300만원 중 자치단체(세종시) 보조금 20억 3,200만원, 자체수입 13억 2,500만원을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 운영(1031-515)(도시계획국)

15)「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9(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⑤ 건설청장은 공동캠퍼스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 등 지원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을 공동캠퍼스에 둘 수 있다. 이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 등기와 정관 및 사업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공익법인은 제5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관·단체·개인·법인 등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
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
4. 공익법인의 사업 수익금
5. 그 밖의 수익금
⑦ 건설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차감한 금액(6억 4,600만원)이 정부 출연금으로 편성되었음.[16)]

출연금의 세부내역을 보면, 기관운영출연금이 6억 800만원, 사업출연금이 3,8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어 있고, 이 중 기관운영출연금 6억 800만원만 교부되어 전액 집행되었음.[17)]

[2024 수입-지출 결산 총괄표]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분	예산액	결산액	구분	예산액	결산액
Ⅰ. 정부출연금	646,000	608,000	Ⅰ. 인건비	425,533	396,623
1. 기관운영출연금	608,000	608,000	1. 기본급	329,092	320,780
2. 사업출연금	38,000	-	2. 수당	27,500	21,544
Ⅱ. 지방보조금	2,032,499	1,425,045	3. 퇴직금	29,716	24,575
1. 민간이전(운영비보조)	1,500,000	1,225,804	4. 법정부담금	39,225	29,724
2. 민간이전(자본보조)	532,499	199,241	Ⅱ. 경상비	3,523,088	2,189,920
Ⅲ. 자체수입	1,325,122	739,240	1. 기관운영경비	1,864,484	1,250,977
1. 대학임대료	629,444	420,282	2. 시설비	-	157,835
2. 관리비수익	666,678	265,111	3. 자산취득비	1,658,604	781,108
3. 편의시설임대료	29,000	52,197	Ⅲ. 사업비	55,000	17,158
4. 중계기수익	-	1,650	1. 사 업 비	55,000	17,158
합 계	4,003,621	2,772,285	합 계	4,003,621	2,603,701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년도 결산결과 수입은 27억 7,200만원, 지출은 26억 400만원으로 1억 6,8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발생하였음.

나. 검토의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공동캠퍼스 공익법인이 연초 수립한 분기별 집행계획에 맞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공익법인이 2024년 8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제출한 출연금 교부신청서에 따

16) 동 사업은 2023년 최초로 9억 6,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동캠퍼스 개교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음

17) 사업출연금은 수시배정 미해소로 교부되지 아니함

르면, 공익법인은 출연금 교부액 중 2/4분기에 3.9%, 3/4분기에 67.6%, 4/4분기에 28.5%를 각각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연간 예산집행계획]

(단위: 천원)

구분		집행계획								
		계	분기별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수입계획		4,003,621	-	-	604,624	15.1	2,533,486	63.3	865,511	21.6
	정부 출연금	646,000	-	-	-	-	608,000	94.1	38,000	5.9
	지자체 보조금	2,032,499	-	-	604,624	29.7	1,100,372	54.1	327,503	16.1
	자체 수입	1,325,122	-	-	-	-	825,114	62.3	500,008	37.7
집행계획		4,003,621	-	-	154,598	3.9	2,708,037	67.6	1,140,986	28.5
	인건비	425,533	-	-	97,656	22.9	163,938	38.5	163,939	38.5
	경상비	3,523,088	-	-	56,942	1.6	2,544,099	72.2	922,047	26.2
	사업비	55,000	-	-	-	-	-	-	55,000	100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그런데 실제 공익법인의 4/4분기 집행액은 18억 9,092만원으로 전체 집행액의 72.6%에 달하였고, 2024년 12월 한달간 집행액은 10억 8,000만원으로 2024년도 전체 집행액(26억 400만원)의 3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4년 월별 예산 집행액]

(단위: 천원,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인건비	54,265	43,401	39,598	40,117	36,893	51,873	42,560	87,916	396,623
경상비	25,757	31,215	5,473	316,818	119,242	298,798	489,877	902,740	2,189,920
사업비	-	-	-	-	-	-	-	17,158	17,158
합계	80,022	74,616	45,071	356,935	156,135	350,671	532,437	1,007,814	2,603,701
비율(월별)	3.07	2.87	1.73	13.71	6.00	13.47	20.45	**38.71**	
비율(분기별)	5.94				21.44			**72.62**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공익법인은 2024년의 경우 캠퍼스 준공과 예산 당국의 수시배정 해소가 2024년 8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준공 이후에도 건축물 내 하자 보수 등이 지속 실시되면서 자산 취득

등 집행시기가 연말로 지연된 측면도 있다는 의견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은 수시배정 해소 시기와 같은 달인 2024년 8월에 집행계획을 제출하였으므로 집행 지연 요인을 집행 계획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며, 집행계획과 괴리되어 예산불용액 방지하려는 이유로 연말에 예산집행을 집중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다 지출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공익법인은 연말에 집중적인 예산집행을 지양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공익법인이 연초 수립한 분기별 집행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대해 시정요구 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3건・제도개선 1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3	1	-	4
예비비	-	-	-	-	-	-	-
합계	-	-	-	3	1	-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시정요구사항 4건에 대해 3건을 조치완료(조치율 75.0%)하고 1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	3	75.0	1
예비비	-	-	-	-
합계	4	3	75.0	1

국회가「2024년도 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4회계연도 본예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11) 정부는 세종공동캠퍼스가 차질없이 개교되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LH가 조성한 캠퍼스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캠퍼스 운영 및 관리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새만금개발청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20억 200만원(22.5%)이 많은 108억 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9,700만원(36.2%)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7,938	7,938	7,997	59	8,892	8,892	10,894	2,002	2,897
총수입	7,938	7,938	7,997	59	8,892	8,892	10,894	2,002	2,897

문의 : 윤희호 예산결산조사관 yoonhh@assembly.go.kr (02-6788-567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143억 9,200만원(△30.2%)이 적은 33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0억 700만원(△75.4%)이 감소함.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148,369	148,369	135,380	△12,989	47,702	47,702	33,310	△14,392	△102,070
총지출	148,369	148,369	135,380	△12,989	47,702	47,702	33,310	△14,392	△102,070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88억 9,200만원으로, 163억 4,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08억 9,400만원이 수납(수납률 66.6%)되고 54억 5,3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 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8,828	8,828	-	8,828	16,257	10,803	5,453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64	64	-	64	91	91	-	-
- 지역지원계정	64	64	-	64	91	91	-	-
합 계	8,892	8,892	-	8,892	16,347	10,894	5,453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86억 400만원으로, 이 중 333억 1,000만원이 집행(집행률 68.5%)되고 12억 2,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40억 6,5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47,702	47,702	902	128 △128	-	48,604	33,310	1,228	14,065
합 계	47,702	47,702	902	128 △128	-	48,604	33,310	1,228	14,065

주) 총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새만금개발청 자산은 전년 대비 480억 800만원이 감소한 1조 5,534억 700만원으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이 266억 6,600만원, 무형자산이 186억 6,400만원 감소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12억 1,700만원 증가한 30억 2,500만원으로 유동부채 12억 1,900만원의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492억 2,400만원이 감소한 1조 5,503억 8,2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613억 4,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768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1억 1,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무제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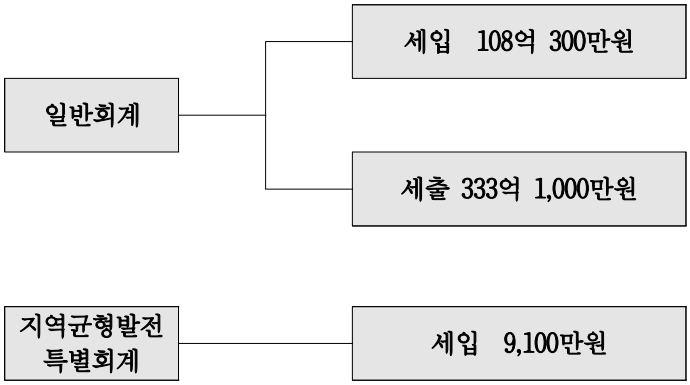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1,553,407	1,601,415	△48,008	△3.0 %
		유동자산	4,932	6,378	△1,446	△22.7 %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242,373	243,945	△1,572	△0.6 %
		사회기반시설	1,302,396	1,329,062	△26,666	△2.0 %
		무형자산	2,417	21,081	△18,664	△88.5 %
		기타비유동자산	1,289	949	340	35.8 %
	부 채		3,025	1,808	1,217	67.3 %
		유동부채	2,871	1,652	1,219	73.8 %
		장기차입부채	-	-	-	-
		장기충당부채	154	156	△2	△1.3 %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		1,550,382	1,599,606	△49,224	△3.1 %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61,341	49,102	12,239	24.9 %
	재정운영순원가		76,832	63,717	13,115	20.6 %
	재정운영결과		76,832	63,717	13,115	20.6 %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 새만금개발청 재정흐름도]



주) 총계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함에 따라 핵심 성장거점 육성, 성장기반 구축, 기업 맞춤형 투자환경 조성 등을 목적으로 총 17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지역간 연결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새만금개발청이 민간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에 따른 소송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출연금 내 세부 비목을 신설하거나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내역과 달리 집행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셋째,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 산단에 대한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책정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국비 지원 비율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토지대여료: 미납 사용료 회수 실적 제고 필요

가. 개　요

‘토지대여료’는 새만금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에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징수결정액 38억 7,100만원 중 13억 6,200만원이 수납(수납률 35.2%)되고 미수납액 25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음.[2)]

장기임대용지 입주기업에 부과하는 국유재산 사용료는「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8조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3)] 새만금산단 표준지공시지가에 임대료율(1%)과 국비비율(80%)을 고려하여 산정함(새만금산단 표준지공시지가 × 면적 × 임대료율 1% × 국비비율 80%).

---

2) 일반회계-토지대여료(51-511)(운영지원과)

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연구기관 (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또는 대부료는「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감면할 수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등) ②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국공유 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감면하는 그사용료등은 해당 국공유 재산의 가액에 100분의1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경우 국유재산의 가액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하고, 해당 국유재산 사용료등은「국가재정법」제6조에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2024년도 토지대여료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미수 납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토지대여료	1,728	1,728	3,871	1,362	-	2,509	35.2	1,86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최근 3년간 장기임대용지 사용료 미수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새만금개발청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 청구를 통한 미납 사용료 회수 등 징수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최근 토지대여료 결산액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22년 4억 200만원에서 2024년 25억 900만원으로 3년 동안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수납률은 2022년 74.0%에서 2024년 35.2%로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수납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임.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본예산	추경(A)						
2022	1,720	1,720	1,720	1,545	1,143	66.5	**74.0**	**402**
2023	1,720	1,720	1,720	2,068	1,280	74.4	**61.9**	**788**
2024	1,728	1,728	1,728	3,871	1,362	78.8	**35.2**	**2,509**
2025	1,868	1,868	-	-	-	-	-	-

자료: 새만금개발청

미수납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A사의 경우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사업계획의 이행) 위반[4]에 따른 위약금 미납으로 체납이 발생하

4)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4조(사업계획의 이행) ③ 입주기업 등이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제12조제3항에 따른 임대용지 재산가액에 100분의 5 이상의 사용료를 적용하며, 제13조제1항의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 국내기업의 투자금액 또는 임대계약한 부지의 재산가액의 2배 이상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다만 제19조에 따라 태양광발전사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11조제2항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사업건축물등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였고, 일부 기업은 계약체결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지 못해 현재까지 원금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토지대여료 체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기업명	미수납액	보증증권 여부	체납기일	비 고
1	A사	1,670	○	'24.11.~	회생개시('24.4.)
2	B사	40	○	'23.11.~	법원경매개시('24.3.)
3	C사	15	○	'22.11.~	'25.5. 보험청구로 전액 회수
4	D사	14	○	'23.11.~	사업자 폐지('24.9.) 회생개시·종결('21.6.~'24.6.)
5	E사	73	○	'23.11.~	-
6	F사	64	○	'23.11.~	-
7	G사	97	×	'22.9.~	파산개시('24.6.)
8	H사	326	×	'22.9.~	사업자 폐지('22.3.)
9	I사	98	○	'22.11.	'25.1. 전액 납부(97.6백만원)
10	J사	112	×	'21.4..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1.12.~'24.11.. 승소 확정판결)
합계		2,509			

자료: 새만금개발청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입주기업의 경영이 악화되어 미수납이 발생하였고, 사용료 미납 기업들 중 일부가 파산 및 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체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새만금 장기임대용지는 연 1%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0년간 사업부지를 제공하는 상당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5] 의무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나 사용료 장기 체납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증권 활용 및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징수사무 위임[6] 등 보다 적극적인 징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4. 사업계획상의 업종, 생산품을 제조하지 않은 경우

5)「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운영지침」
제12조(사용 (임대) 료의 산정) ① 임대용지 연간 사용료는 법 제58조제4항, 영 제41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한다. 다만, 사용료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며 지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재산정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국내기업: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연구기관: 해당 임대용지의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

6)「국유재산법」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사용료, 관리소홀에 따른 가산금, 대부료, 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연체료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국세징

〈세 출〉

2. 기본경비: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리 강화를 통한 소송수행비 최소화 필요

가. 개 요

‘기본경비’ 는 새만금개발청 기관 운영을 위한 경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39억 5,700만원 중 38억 5,700만원이 집행(집행률 97.5%)되고 1억원이 불용되었음.[7)]

[2024년도 기본경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기본경비	3,905	3,905	4	48	3,957	3,857	-	100	4.555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액 각목명세서에 따르면,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는 6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세목조정을 거쳐 6억 900만원이 집행되었음.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210-01]일반수용비		600,000	609,000
1. 사무용품 구입비	350,000원*14개과*12개월=	58,800	56,000

수법」 제10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중앙관서의 장(일반재산의 경우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등은 그 사무를 집행할 때 위임한 중앙관서의 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등에게 징수하게 할 수 있다.

7) 일반회계- 기본경비(7011-200, 250(운영지원과)

(단위:천원)

		예산액	집행액
2. 인쇄비		115,500	72,400
3. 물품구입비		168,100	111,170
4. 간행물구입비	50,000원*14개과*12개월=	8,400	10,800
5. 비품수선비	100,000원*14개과*12개월=	16,800	1,500
6.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00,000원*14개과*12개월=	16,800	25,800
7. 고문 변호사료 등 소규모 업무대행료	550,000원*12개월=	6,600	3,800
8. 강사료 및 위원수당 등	600,000원*8회*12개월=	57,600	37,200
9. 뉴스스크랩 저작권료	65,000,000원=	65,000	76,700
10. 업무용택시 및 기타경상경비 등	900,000원*12개월=	10,800	14,000
11. 기타현안소요(소송수행비 등)	**76,000,000원=**	**76,000**	**199,630**

자료: 새만금개발청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이 민간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취소에 따른 소송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모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일반수용비 내 소송수행비 등으로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그 2배가 넘는 1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는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해왔던 민간개발공모사업 중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개발사업과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와 관련된 소송비용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공모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2024년 민간개발 공모사업 관련 소송수행비 집행내역]

공모사업명	2024년	2025년
첨단복합	8,983만원	12,045만원
	-집행정지소송착수금(1,100만원) -가처분소송착수금(1,100만원) -본안소송착수금(4,950만원) -집행정지소송성공보수(733만원) -가처분소송성공보수(1,100만원)	-본안소송성공보수(7,425만원) -항소심착수금(4,620만원)

공모사업명	2024년	2025년
해양레저	6,600만원	9,735만원
	-본안소송착수금(4,950만원) -가처분소송착수금(1,650만원)	-가처분소송성공보수(2,310만원) -본안소송성공보수(7,425만원)
총계	15,583만원	21,780만원

자료: 새만금개발청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항소 등 장기화되면서 소송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며, 이외에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이견으로 사업이 4~5년 이상 지연되거나 취소된 민간개발사업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추가 소송 등 행정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새만금개발청 민간개발 공모사업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기간	사업규모 (억원)	사업지연 여부 및 지연사유	현황
2020	새만금 VR·AR 리조트 개발사업	20.5 ~25.12	813	**지연 - 사업계획 등 조정협의중**	사업추진 단계
2020	산업투자형 발전사업 (창업클러스터 구축 및 데이터센터 유치)	21.4. ~29.12.	21,000	-	사업추진 단계
2021	테마마을 개발사업	21.7. ~ '30.12	10,287	**지연 - 사업추진 방식 등 협상진행중**	사업추진 단계
2021	새만금 첨단산업중심 복합단지조성 개발사업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후 소송중 (1심 승소 후 항소 대응 중)
2021	챌린지 테마파크 개발사업	21.11 ~26.12	1,443	**지연 -사업시행자 경영악화**	사업추진 단계
2021	미래지향적 탄소중립산단 실현을 위한 첨단제조기업	-	-	-	사업취소 (기업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 포기)
2022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	-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취소 후 소송중 (1심 승소 후 항소 대응 중)

자료: 새만금개발청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은 민간개발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기한을 12개월(필요시 1회, 12개월 이내 연장)로 제한하는 등의 세부조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협상기한은 상호 구속력이 없고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협상 체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잦은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를 강화하는 등 공모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3.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당초 사업계획 대비 과도한 변경을 통한 집행 부적정

가. 개 요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은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6억 4,800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음.[8)]

[2024년도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 운영	4,648	4,648	-	-	4,648	4,648	-	-	3,22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4년도 예산액은 기관운영출연금 31억 4,800만원(인건비 20억 9,200만원, 경상비 10억 5,600만원), 사업출연금 15억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출연금 내 세부 비목을 신설하거나 과도하게 변경하는 등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내역과 달리 집행하는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4년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함)의 경상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박물관은 기념품 등 구입을 위해 일반수용비를 당초 예산(7,200만원)보다 5,200만원 증액한 1억 2,400만원, 직원 피복비의 경우 당초 예산 900만원 대비 1,1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포상금 비목으로 신설하여 일회성의 공로직원 격려금 성격의 금액 960만원을 집행하였음.

또한 명절선물이나 부서 운영비 등을 위해 기타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당초 계획

8) 일반회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5557-392)(개발사업국)

된 예산보다 증액 변경하여 집행하였음.

[2024년 국립 새만금 간척박물관 경상비 비목별 집행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국회확정)	예산액(B) (계획변경)	집행액(C)	집행잔액 (B-C)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4,648,000	4,648,000	4,590,841	57,159
경상비	계	1,056,000	1,056,000	1,032,521	23,479
	일반수용비	72,114	124,354	124,352	2
	공공요금 및 제세	278,400	173,000	158,510	14,490
	임차료	54,000	50,484	50,482	2
	유류비	4,800	3,920	3,849	71
	시설장비유지비	215,400	288,256	285,053	3,203
	일반용역비	12,000	13,200	11,660	1,540
	관리용역비	121,400	143,480	143,458	22
	업무추진비	27,200	27,200	27,180	20
	국내여비	60,112	47,192	45,605	1,587
	기타운영비	11,880	13,080	12,482	598
	복리후생비	27,450	30,170	30,148	22
	당직비	7,200	4,980	4,980	-
	특근매식비	15,120	15,120	14,448	672
	피복비	9,000	20,640	20,325	315
	자산취득비	139,924	91,324	90,389	935
	포상금	-	9,600	9,600	-

자료: 새만금개발청

박물관은 2023년에도 일반수용비를 당초 7,2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늘어난 1억 600만원으로 변경 집행하였으며,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 또한 예산액 대비 2배가 넘은 금액으로 변경 집행하는 등 연례적으로 비목별 예산 변경이 계획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음.[9)]

9) 참고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운영사업은 2025년에도 유물관리(1억 2,900만원), 정보관리(1억 5,400만원), 전시실 관리(1억 700만원)을 목적으로 총 3억 9,000만원을 전용 증액함(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사업을 전용 감액함)

[2023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비목별 집행액]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A) (국회확정)	예산액(B) (계획변경)	집행액(C)	집행잔액 (B-C)
경상비	계	842,820	842,820	842,498	322
	일반수용비	72,114	106,416	106,416	-
	공공요금 및 제세	165,750	120,301	120,301	-
	임차료	22,800	47,728	47,719	9
	유류비	2,400	2,400	2,399	1
	시설장비유지비	59,700	130,401	130,401	-

자료: 새만금개발청

이에 대해 박물관은 현재 개관(2023. 8월) 초기 단계로서, 개관 이전에 예상한 방문객 목표치(76,378명)를 초과한 방문 실적(140,800명)을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방문객 증가에 따라 방문객 안전과 편의를 위한 경비가 증가하여 당초 예산(사업계획)을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회계규정」 제18조(회계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 및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통해 변경 집행하였다는 의견임.

박물관이 자체 회계규정에 따라 비목을 신설하거나 비목간 이·전용을 통해 필요한 사업 수행 경비를 집행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직원피복비·포상금 등 집행에 대하여는 관람객 수요 증가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하여 신설 또는 증액 집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향후 박물관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당초 국회에서 확정된 세부내역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엄격히 허용·관리하여야 할 것임.

4.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이차전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은 다량의 용수를 사용하고 폐수 배출이 불가피한 이차전지 기업을 대상으로 용·폐수 공동관로를 신설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폐수 배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47억원 중 10억 6,200만원이 집행(집행률 22.6%)되고 5억 8,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0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음.[10)]

[2024년도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	4,700	4,700	-	-	4,700	1,062	580	3,058	25,539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국비 100%, 총사업비 302억원)으로, 이차전지 폐수처리대책 미흡에 따른 어민단체와의 협의 지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정지되어 2024년에 설계비의 일부만 집행되고 공사비 전액이 불용되었으며, 2025년 현재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연말까지는 착공할 계획임.

나. 검토의견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된 새만금산단에 대한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국비로 책정하였으나, 관련 법령과 지침을 고려하여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일반회계-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지원(5557-418)(개발사업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11]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원비율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새만금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었으며,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은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서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음.[12]

같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에서는 국비 지원비율에 대해 보다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제4조에서 기업의 투자규모 및 지역을 고려하여 총 사업비의 30~5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고, [별표 1]에서는 이차전지 비수도권(투자규모 10조원 미만)의 경우 국비지원비율을 40%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은 새만금개발청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위 지원기준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

---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가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5. 공동구,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1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인프라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
7. 폐수처리시설
11. 그 밖에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공공시설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설

[기반시설 지원 보조율(별표1)]

특화단지 투자규모별 구간*					비수도권	수도권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上 구간)	100조원 이상	30조원 이상	10조원 이상	5조원 이상	50%	40%
(下 구간)	100조원 미만	30조원 미만	10조원 미만	5조원 미만	**40%**	30%

1. 특화단지 투자규모는 부처 · 전문가 평가 후,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된 금액을 적용
2. 용수공급시설 등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 비용 분담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보조율 내의 금액에서 지원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대하여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정 이전에 편성되었고,[13]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출연금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므로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임.

비록 위 지원기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하는 특화단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고는 있으나,[14] 새만금개발청의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특화단지 또는 새만금산단 내 다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향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다만, 2023년 예산안 편성 당시 특화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기준을 보면, 총사업비의 30% 범위에서 건당 최대 250억 한도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정 이전보다 지원 비율이 낮음(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전략 마련-「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개최」, 2024. 3.)

14)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 지원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출연금 예산의 신청 · 편성 · 교부 ·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화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정부출연금"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반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화단지에 지원하는 국비를 말한다.

【기　타】

5.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 조치결과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새만금개발청에 대해 시정요구 4건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주의 2건, 제도개선 2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	2	2	-	4
예비비	-	-	-	-	-	-	-
합계	-	-	-	2	2	-	4

새만금개발청은 시정요구사항 4건에 대해 4건을 조치완료(조치율 100.0%)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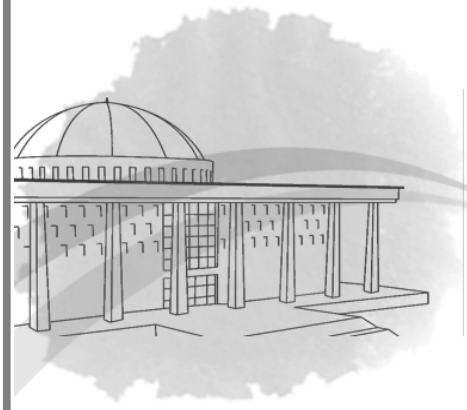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	4	100.0	-
예비비	-	-	-	-
합계	4	4	100.0	-

국회가 「2024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면서 채택한 부대의견 중 새만금개발청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부대의견은 아래와 같음.

[새만금개발청 관련 2024년도 예산안 등 부대의견]

구분	부대의견
2024년도 본예산	(52)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
2023회계연도 결산	(2) 정부는 2024년 예산감액으로 중단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Ⅰ. 개 관

1. 결산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516억 100만원(79.4%)이 많은 1,165억 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03억 2,700만원(152.0%)이 증가함.[1)]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26,776	26,776	12,779	△13,997	38,156	38,156	48,935	10,779	36,156
기 금	22,158	22,208	33,482	11,274	26,831	26,831	67,653	40,822	34,171
총수입	48,934	48,984	46,261	△2,723	64,987	64,987	116,588	51,601	70,327

문의 : 박민혜 예산결산조사관 pmh1117@assembly.go.kr (02-6788-570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금, 여유자금 운용 등)와 내부거래(회계 및 기금 간 전출입) 등을 제외하여 산출되며,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됨.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21억 6,000만원(△1.9%)이 적은 1조 6,539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34억 7,900만원(11.0%)이 증가함.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회계연도				2024회계연도				전년대비 (D-B)
	예산액		결산 (B)	예산대비 (B-A)	예산액		결산 (D)	예산대비 (D-C)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C)			
예 산	688,886	688,886	702,271	13,385	771,466	771,466	763,065	△8,401	60,794
기 금	841,347	841,347	788,176	△53,171	914,620	914,620	890,861	△23,759	102,685
총지출	1,530,233	1,530,233	1,490,447	△39,786	1,686,086	1,686,086	1,653,926	△32,160	163,479

나. 세입·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81억 5,600만원으로, 722억 7,0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489억 3,500만원이 수납(수납률 67.7%)되고 233억 3,600만원은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B)	세입 예산현액 (A+B)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본예산	추경 (A)						
일반회계	36,815	36,815	-	36,815	64,810	42,751	22,059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1	1,341	-	1,341	7,460	6,183	1,277	-
- 지역지원계정	-	-	-	-	807	807	-	-
- 지역자율계정	1,341	1,341	-	1,341	6,653	5,377	1,277	-
합 계	38,156	38,156	-	38,156	72,270	48,935	23,336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7,750억 9,700만원으로, 7,630억 6,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8.4%)되고 27억 6,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92억 7,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후증감액(B)			세출 예산현액 (C=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A)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일반회계	687,239	687,239	3,630	±716	-	690,870	679,559	2,761	8,5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4,227	84,227	-	-	-	84,227	83,506	-	721
- 지역자율계정	9,050	9,050	-	-	-	9,050	8,750	-	300
- 지역지원계정	75,177	75,177	-	-	-	75,177	74,756	-	421
합 계	771,466	771,466	3,630	-	-	775,097	763,065	2,761	9,27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9,915억 7,500만원으로, 1조 7,215억 7,5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1조 6,909억 4,800만원이 수납(수납률 98.2%)되고 306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수입 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당초	수정				
양성평등기금	820,868	820,868	1,444,034	1,421,691	22,343	-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170,707	277,541	269,257	8,284	-
합 계	991,575	991,575	1,721,575	1,690,948	30,627	-

주) 총계 기준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9,917억 5,400만원으로, 1조 175억 8,200만원이 지출(집행률 102.6%)되고 6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33억 3,2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B)	계획현액 (A+B)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A)					
양성평등기금	820,868	820,868	179	821,047	839,895	680	21,761
청소년육성기금	170,707	170,707	-	170,707	177,687	-	1,571
합 계	991,575	991,575	179	991,754	1,017,582	680	23,332

주) 여유자금운용 순계 기준

라. 재무결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여성가족부 자산은 전년 대비 591억 3,800만원이 증가한 3,496억 3,700만원으로, 이는 유동자산이 464억 4,300만원 증가하고 무형자산이 100억 4,300만원 증가한 데 기인함.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2,900만원 감소한 586억 8,900만원으로 기타비유동부채 35억 4,500만원의 감소에 주로 기인하고 있음.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596억 6,800만원이 증가한 2,909억 4,8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1조 5,560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49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6,596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5,500만원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무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4 (A)	2023 (B)	증 감	
					금액 (A-B)	증가율 (A-B)/B
재정 상태표	자 산		349,637	290,499	59,138	20.4%
		유동자산	159,490	113,047	46,443	41.1%
		투자자산	-	-	-	-
		일반유형자산	167,325	165,217	2,108	1.3%
		무형자산	17,483	7,440	10,043	135.0%
		기타비유동자산	5,339	4,794	545	11.4%
	부 채		58,689	59,218	△529	△0.9%
		유동부채	5,540	5,526	14	0.3%
		장기차입부채	20,100	17,100	3,000	17.5%
		장기충당부채	-	-	-	-
		기타비유동부채	33,048	36,593	△3,545	△9.7%
	순자산		290,948	231,280	59,668	25.8%
재정 운영표	프로그램순원가		1,556,066	1,401,097	154,969	11.1%
	재정운영순원가		1,524,785	1,415,721	109,064	7.7%
	재정운영결과		659,655	655,800	3,855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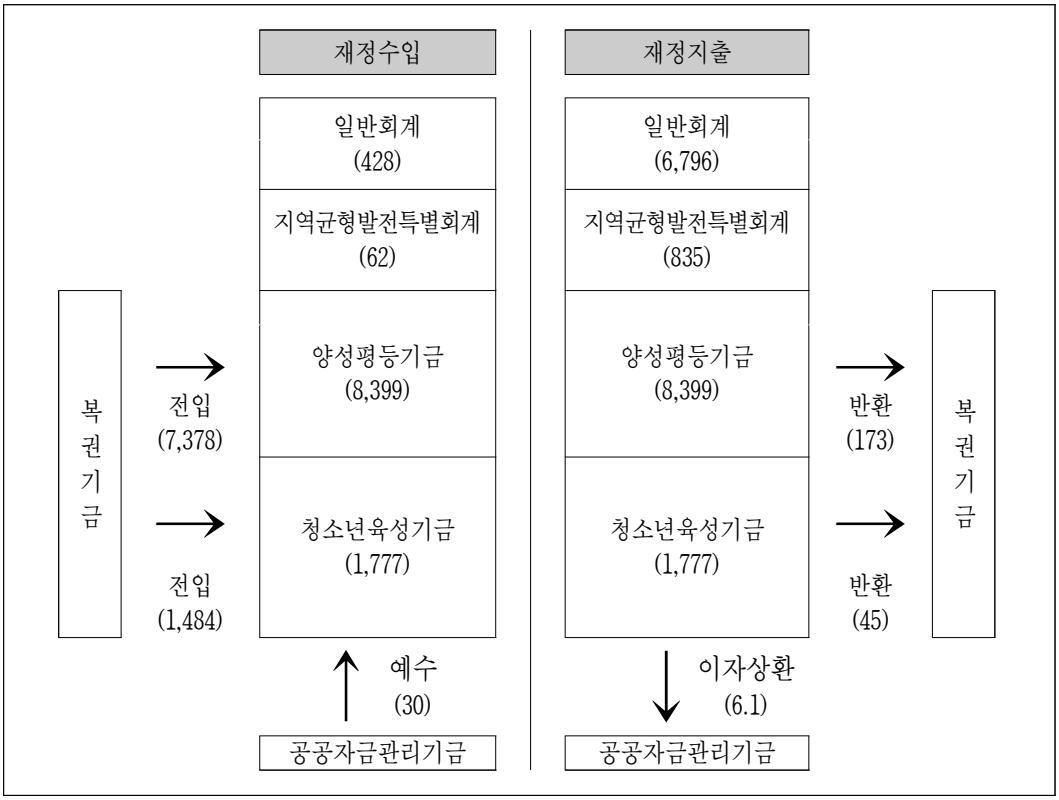
2. 2024회계연도 재정구조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개 회계와 양성평등기금 및 청소년육성기금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현황은 다음과 같음.

2024회계연도에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었음. 기금 간 거래에서 양성평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7,378억원을 전입받고 173억원을 반환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484억원을 전입받고 45억원을 반환하였음. 아울러 청소년육성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억원을 예수하고 이자 6억 500만원을 상환함.

[2024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3. 2024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4년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약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조성을 2024년 업무보고의 목표로 제시하고, 6개의 프로그램, 62개의 세부사업에서 아이돌봄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2024년도 여성가족부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과 영아종일제 이용가구 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부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아이돌보미 확보 및 지원대상 가구 수의 면밀한 추계 등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흡한 문제가 있으므로, 조속히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함.

셋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에 있어 구상권 청구 실적이 저조하며 채권의 누적 회수율이 낮으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구상권 청구업무 등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연구용역의 과다한 수의계약 체결 지양 필요

가. 개 요

2024년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용역 계약 건수는 36건, 계약금액은 72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수의계약 건수가 33건(91.7%) 수의계약 금액이 55억 1,400만원(75.9%)을 차지함.[2)]

[2024년도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계약체결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계약건수	비중	계약금액	비 중
전체 연구용역	36	100	7,267	100
수의계약	33	91.7	5,514	75.9
경쟁계약	3	8.3	1,752	24.1

자료: 여성가족부

나. 검토의견

여성가족부는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총 33건 중 22건의 계약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조항은 한시적 특례로서 일반 연구용역에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2024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연구용역 계약 33건(55억 1,400만원) 중 22건(49억 3,000만원)을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재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였음.

2) 일반회계-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성보호활동 지원(2137-322)(권익증진국)

[2024년「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근거한 연구용역 수의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과제명	공고일	계약금액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24.2.23.	2,033
2024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2024.4.15.	577
성희롱 실태조사	2024.2.26.	485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4.1.25.	38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2024.1.15.	383
2024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2024.3.6.	239
2024년 국민다문화수용성조사 연구	2024.3.11.	232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수립	2024.4.8.	72
제1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4.3.18.	6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2024.3.7.	62
양성평등 관점의 2025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연구	2024.7.16.	54
여성경제활동 실태조사 예비조사	2024.2.5.	45
여성가족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2023년도 경영평가 및 2024년도 평가편람 작성	2024.3.5.	45
2024년 지역성평등보고서	2024.5.20.	36
2024년 국가승인통계 개선방안 연구	2024.5.27.	36
2024년 국가 성인지 예·결산서 종합분석 연구	2024.4.15.	36
2024년 국가성평등보고서	2024.5.20.	27
2024년 지방 성인지 예산서 종합분석 연구	2024.4.15.	27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요 추계 연구	2024.5.8.	27
제5차 청소년보호 종합대책('25~'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2024.3.25.	27
인도네시아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 ('20~'24) 평가	2024.6.5.	22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2024.6.5.	18
합 계		**4,930**

주)「국가계약법 시행령」제27조제3항에 근거한 연구용역 수의계약 중 재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국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체결해야 하며, 일반경쟁이 아닌 제한경쟁이나 수의계약은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정되어있음.[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는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단일응찰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4)]

3)「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단일응찰에 의하여 유찰되자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유에 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당 규정은 재량규정으로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연례적으로 실태조사의 성격을 갖거나 지식기반의 정책적 연구용역은 그 계약의 내용·성질 및 용역수행자의 업종 등이 경제위기 극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 동 조항을 근거로 다수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은 재난 등 특정 목적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례조항의 취지와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예외적인 수의계약 사유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성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5)]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계약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의 재공고 등 절차를 생략한 수의계약이 과도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계약의 방법) ①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5)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해당 기획재정부 특례 고시는 계약의 내용·성격 및 수행자의 업종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의 연관성 구분 없이 모든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둔 고시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설명임.

【일반회계】

〈세 입〉

2.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수납률 제고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비목으로, 징수결정액 574억 6,000만원 중 374억 7,600만원이 수납(수납률 65.2%)되고 199억 8,400만원이 미수납되었음.[6)]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C/B)	
	본예산	추경(A)						
기타경상이전수입	33,873	33,873	57,460	37,476	19,984	-	65.2	30,00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이 저조하며, 특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지연으로 인하여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여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전년대비 9.1%p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65.2%으로 저조하며, 미수납액은 199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6억 3,000만원(증가율 139.2%)이 증가함.

6) 일반회계-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최근 기타경상이전수입 수납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10,124	10,124	10,124	7,877	2,796	27.6	35.5	5,082	-
2021	10,312	10,312	10,312	49,726	40,765	395	82.0	8,961	-
2022	12,425	12,425	12,425	32,665	29,820	240.0	91.3	2,845	-
2023	24,511	24,511	24,511	19,049	10,695	43.6	56.1	8,354	-
2024	33,873	33,873	33,873	57,460	37,476	110.6	65.2	19,984	-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 지연에 따라 미수납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미수납액은 197억 8,700만원으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전체 미수납액의 대부분(99.0%)을 차지하고 있음.

[2024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부내역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미수납액(C)	수납률(B/A)	미수납액 중 비율 (C/D)
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	47,508	27,721	19,787	58.4	99.0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9,930	9,741	189	98.1	0.9
소송비용 회수 등 기타	22	14	8	63.6	0.0
합 계(D)	57,460	37,476	19,984	65.2	100

자료: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이자 및 수익금을 반납하여야 하고,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7)]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의 발생 시기를 살펴보면, 2023년도 보조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중 189억 400만원이 미수납 상태이며 2022년 이전에 보조사업이 수행되어 아직까지 반납되지 않은 집행잔액은 8억 8,300만원에 달함.

7)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납부자(단체)	발생내역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지자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지방자치단체	202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869	19,965	18,904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8,639	7,756	883
민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민간	2023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548	5,548	0
		2022년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82	4,193	189
개인 등	개인	소송비용	22	14	8
합 계			57,460	37,476	19,984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잔액 반환에 필요한 금액을 세출예산이나 추경안에 편성하지 않아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사업담당자 교육 및 점검회의를 개최를 통해 반납을 독려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치단체의 자율적 반납에만 의존할 경우 반복적인 반납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신속한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임. 특히 반복적·장기적으로 반납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시정지·상계조치를 적용하는 등 반납의무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8)]

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세 출〉

3. 아이돌봄 지원 사업: 아이돌보미 확보를 위한 실효적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아이돌봄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광역·중앙지원 센터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예산현액 4,678억 6,600만원 중 4,678억 3,6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9)]

[2024년도 아이돌봄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아이돌봄 지원	467,866	467,866	-	±105	467,866	467,836	-	30	475,028
서비스지원	461,821	461,821	-	-	461,716	461,716	-	-	467,987
돌봄수당	384,222	384,222	-	-	384,117	384,117	-	-	384,637
광역지원센터 운영	4,697	4,697	-	-	4,802	4,802	-	-	5,194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역사업인 **‘서비스지원’** 사업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대금을 가구 소득유형별로 차등 지원하는 ‘돌봄수당(3,842억 2,200만원)’ 사업[10)] 등 총 3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분됨.[11)]

내역사업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조정, 아이돌봄서비스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광역지원센터(전국 17개소)의 운영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임.

---

9) 일반회계-아이돌봄 지원(2334-341)(청소년가족정책실)

10)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70%로 지원됨.

11) 내역사업인 ‘서비스지원’ 사업은 ‘돌봄수당(3,842억 2,200만원)’, 아이돌보미 양성을 위한 ‘아이돌보미 관리(572억 9,900만원)’, 아이돌보미와 서비스 이용가정을 연계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203억원)’ 총 3개의 내내역 사업으로 구분됨.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개요]

○ (목적) 만 12세 이하 자녀 대상 아이돌보미 파견을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기여
○ (사업내용) 영아종일제 돌봄(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 돌봄(만 12세 이하 아동)
- (영아종일제) 0~2세 자녀 대상, 월 최소 80시간 이상 이용, 월 200시간 한도
- (시간제) 취학 전·후 구분 지원, 1회 2시간 이상 이용, 연 960시간 한도
○ (정부지원) 이용가정의 소득 유형에 따라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

*2024년 기준, 시간당 이용요금 11,630원

유형	소득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 취학전		취학후		다자녀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9,886원(85%)	1,744원(15%)	8,723원(75%)	2,907원(25%)	본인 부담금의 10% 할인
나형	120% 이하	6,978원(60%)	4,652원(40%)	3,489원(30%)	8,141원(70%)	
다형	150% 이하	2,326원(20%)	9,304원(80%)	1,745원(15%)	9,885원(85%)	
라형	150% 이하	-	11,630원(100%)	-	11,630원(100%)	

자료: 여성가족부

나. 검토의견

첫째, 돌봄수당 사업은 아이돌보미 인력 확보에 대한 사업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2024년 예산을 확대하여 집행실적이 부진하게 나타났으므로,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돌봄수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실집행률이 95% 이상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에는 실집행률이 하락하였고, 특히 2024년도 실집행률은 71.7%로 전년 대비 10.6%p 감소하였음. 이는 2024년도 예산편성 당시 사업대상 가구 수를 확대 및 기준단가 인상으로 인하여 예산액이 전년 대비 대폭(1,023억 4,800만원) 증가하였으나,[12] 실집행액은 2,752억 1,200만원에 그친 것에 기인함.

12) 지원대상(가~다형): 2023년 85,367가구 → 2024년 110,000가구
시간당 기준단가: 2023년 11,080원 → 2024년 11,630원

[최근 5년간 돌봄수당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여성가족부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173,342	173,342	177,685	177,685	-	177,685	173,852	-	3,833	97.8
2021	180,158	180,158	184,338	184,338	-	184,338	182,451	-	1,887	99.0
2022	202,031	202,031	204,912	204,912	-	204,912	195,935	-	8,977	95.6
2023	281,874	281,874	281,874	281,874	-	281,874	231,883	-	49,991	82.3
2024	384,222	384,222	384,117	384,117	-	384,117	275,212	-	108,905	71.7

자료: 여성가족부

돌봄수당 집행부진의 구체적 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가구 수 대비 매칭가구 비율인 서비스 연계율이 84.7%에 그쳐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음. 대기 현황에 있어서도 대기가구 및 평균 대기일수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2024년 연말 기준 9,519가구가 대기 중이며 평균 대기일수가 32.8일에 달함.

[최근 3년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연계 및 대기 현황]

(단위: 가구, %, 일)

구분	연계 현황			대기 현황	
	신청가구	매칭가구	연계율	대기가구	대기일수
2022	86,465	63,898	73.9	14,745	27.8
2023	122,729	86,100	70.2	13,031	33.0
2024	139,508	118,126	84.7	9,519	32.8

주 1) 영아종일제, 시간제 서비스 및 단기, 기관연계시스템 포함
주 2) 대기가구 수는 해당 연도말 기준 대기 상태에 있는 가구 수 (2020년 3월부터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의 충분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2024년 예산확대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보미 목표 인원수는 35,000명으로 전년대비 목표 인원 수를 6,000명 확대하였으나, 실제 충원된 인원은 29,635명으로 충원률이 84.7%에 그침.

[연도별 아이돌보미 수 목표 대비 실적]

(단위: 명, %)

구 분	예산안 상 아이돌보미 목표 인원수 (A)	실제 아이돌보미 인원수 (B)	목표대비 편차 (B-A)	충원율 (B/A)
2022	33,000	26,675	△6,325	80.8
2023	29,000	28,071	△929	96.8
2024	35,000	29,635	△5,365	84.7

주) 실제 아이돌보미 : 해당 연도 내 1건 이상 활동 기록이 있는 아이돌보미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유입 증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 확대, 단축교육과정 신설 및 돌보미 처우개선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13]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의 퇴사 등으로 목표만큼 충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설명임.

아이돌보미는 일회성 고용이 아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인력이므로, 신규 유입뿐만 아니라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인력관리 방안 마련이 중요함. 특히 2024년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원대상 가구 수를 110,000가구로 확대하였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퇴사 등 인력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었음.

한편 2025년에는 120,0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의 신규 유입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실효적인 인력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둘째, 광역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지원법」상에 규정된 광역지원센터의 업무수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의 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해당 센터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함.[14]

---

13) - 양성교육기관 확대 : 47개(2024년 2월) → 57개(2024년 6월)
- 단축교육과정 : 돌봄관련 자격자(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는 필수교육(40시간)만 받고 아이돌보미 활동
- 시간당 돌봄수당 인상 현황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시간당 돌봄수당	9,890원	10,040원	10,550원	11,080원	11,630원	12,180원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도 지역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은 80.1%에서 91.4%까지 편차가 존재하며, 서비스 신청 가구에 대해 지역 내 돌보미를 직접 연계·파견하는 사업특성 상 광역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별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실정임.

[2024년 시·도별 돌봄서비스 연계율 현황]

(단위: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돌봄 서비스 연계율	80.1	87.4	89.3	85.4	91.4	85.2	90.8	83.9	81.2	85.6	84.9	83.9	88.8	86.5	86.8	88.2	80.6

주) 돌봄서비스 연계율: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 수 대비 이용가구 수 비율
자료: 여성가족부

특히 실집행 부진의 주요 사유인 아이돌보미 수급과 관련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은 광역지원센터의 주요업무로서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이돌봄 지원법」 상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업무 범위]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3.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4. 지역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5. 지역 내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 운영 관리·지원 및 서비스 홍보
6. 그 밖에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자료: 여성가족부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2024년 기준 시·도 구분 없이 전국단위로 통합된 목표치(35,000명)를 설정하여 인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광역지원센터로부터의 시·도별 아이돌보미수 목표인원 설정이나 수급계획 제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14)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조정,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운영관리·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아이돌보미 수에 비례하여 센터당 8명~13명의 인력이 배치됨.

[시·도별 아이돌보미 계획 및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24년 아이돌보미		구분	2024년 아이돌보미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서울	-	4,131	경기	-	5,923
부산	-	2,357	강원	-	1,227
대구	-	1,683	충북	-	837
인천	-	1,478	충남	-	1,226
광주	-	1,199	전북	-	1,210
대전	-	752	전남	-	1,179
울산	-	1,018	경북	-	2,763
세종	-	377	경남	-	1,917
			제주	-	358
합 계				35,000	29,635

자료: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는 지역별 연계시스템 및 인력 수급 여건 등 물리적 제약요인이 큰 사업인 만큼 아이돌보미 수급 관리도 지역단위로 이루어짐이 타당하고, 「아이돌봄 지원법」 상에서도 광역지원센터의 업무로서 아이돌봄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조정 등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광역지원센터가 지역별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등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돌봄수당 사업의 영아 종일제 이용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지원대상 가구를 과다 추계하여 집행이 부진한 문제가 있으므로,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영향과 이용가구 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아종일제 서비스 수요 감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원대상 가구 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돌봄수당 사업의 서비스 내역별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경우 예산액 279억 2,800만원 중 129억 8,200만원이 실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실집행률이 46.5%로 저조하게 나타남.

[2024년 돌봄수당 사업 서비스 유형별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예산액(A)	예산현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돌봄수당	384,117	384,117	275,212	71.6
영아종일제	27,928	27,928	12,982	46.5
시간제 등	356,189	356,189	262,230	73.6

주) 시간제 등 : 시간제・단기서비스 및 취약가정・청소년부모 추가지원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이는 계획상의 지원가구 수 대비 실제 이용가구가 저조한 것에 기인함.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계획가구 수는 3,981가구였으나 실제 이용가구 수는 1,025가구에 불과하였으며, 특히 2023년과 2024년 지속하여 이용가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영아종일제 계획 대비 이용가구 현황]

(단위: 가구, %)

구 분	영아종일제			
	계획 인원 (A)	이용 인원 (B)	편차 (B/A)	계획대비 이용률(B/A)
2020	8,000	2,722	5,278	34.0
2021	4,000	2,346	1,654	58.7
2022	3,588	2,543	1,045	70.9
2023	3,508	1,707	1,801	48.7
2024	3,981	1,025	2,956	25.7

주) 국비 지원대상인 소득 유형(가~다형)에 속하는 가구 수만을 포함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지원대상(생후 3~36개월)은 시간제 서비스(생후 3개월~12세 이하)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각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영아종일제 수요가 감소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선택적 이용 구조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2023년 및 2024년에 이용 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2023년 신설된 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 사업과 영아종일제 간의 중복수급이 불가한 점이 영아종일제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영아종일제는 시간제와 비교하여 지원 시간뿐만 아니라 정부지원 간 중복 금지 규정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특히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에 대한 중복지원 제한이 추가적으로 존재함.

[영아 대상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영아종일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주요 내용	○ (대상) 3개월 ~ 36개월 이하 ○ (지원) - 월 최소 80 ~ 최대 200시간 - 시간당 11,630원 사용료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3개월 ~ 12세 이하 ○ (지원) - 연 960시간 이내 - 시간당 11,630원 사용료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	○ (대상) 만 0세 ~ 2세 미만 ○ (지원) - 만 0세: 월 100만원 - 만 1세: 월 50만원
중복금지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아이돌봄)	보육료 및 유아학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시간 중 사용 불가) 영아종일제서비스(아이돌봄)	**영아종일제서비스(아이돌봄)**

주) 부모급여: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업으로 2023년 신설되었음

2024년 계획상의 영아종일제 지원가구 수는 전체 서비스 지원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과거 영아종일제 이용가구의 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된 것으로,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으로 인한 수요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15)]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영아종일제 서비스 수요가 감소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모급여 등 관련 정책의 영향과 실제 서비스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적인 지원대상 가구 수에 근거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5) 영아종일제 계획가구 추계 근거
3,981가구 = 11만 가구(2024년 총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 × 약 3.6%*
* 약 3.6% : 2021년, 2022년 전체 이용가구 대비 영아종일제 이용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반영

4.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 및 재조명하고 다양한 역사 인식의 확산을 위한 복합 전시·교육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16] 2024년 예산현액 37억 7,8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음.[17]

[2024년도 국립여성사박물관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여성사전시관	4,352	4,352	-	-	4,352	574	-	3,778	2,411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3,778	3,778	-	-	3,778	-	-	3,778	1,828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에 위치한 기존의 여성사전시관을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일대로 이전 및 확대하는 건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8년(2021년~2028년)이며 총사업비는 311억원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여성사전시관(경기 고양시)의 협소한 면적, 낮은 접근성으로 확대·이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
◦ 부지 :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일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생활관 부지)
◦ 총사업비: 311억원(국비 100%) (당초: 267억 7,700만원)
◦ 규모: 부지면적 2,000㎡, 건축연면적 7,000㎡
◦ 공간구성: 전시실, 수장고, 세미나실, 스튜디오, 사무실, 카페테리아 등
◦ 사업기간: 2021~2028년 (당초: 2021~2023년)

자료: 여성가족부

16) 「양성평등기본법」
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 · 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 · 운영할 수 있다.

17) 일반회계-여성사전시관(1232-332)(여성정책국)

나. 검토의견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관리대상 사업임에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 등 관련 절차 소요기간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2024년 예산 편성당시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문제가 있음.

동 사업의 연차별 결산 내역에 의하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집행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남. 2022년 및 2023년의 경우 총사업비 조정협의 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18] 2024년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로 인해 12개월 동안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총 37억 7,8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음.[19]

[2021년~2024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1	296	296	-	-	296	252	85.14	44	-
2022	1,289	1,289	44	-	1,333	415	31.13	866	8
2023	3,778	3,778	866	-	4,644	2	0.04	-	4,642
2024	3,778	3,778	-	-	3,778	-	-	-	3,778

자료: 여성가족부

동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 이상의 건축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하며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각각 조달청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고,[20]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기획재정부와 조정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21]

---

18) 2022년의 경우 기본설계 적정성 검토, 2023년의 경우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및 총사업비 조정협의를 주요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었음.

19) 2024년 예산액의 경우 공사비(35억 1,700만원)·감리비(2억 5,500만원) 및 시설부대비(600만원) 총 37억 7,800만원으로 구성됨.

2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중간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21)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최초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2년 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완료하고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으로 계획하였음. 동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서 기본설계(계획·중간) 및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최소 3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충실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실제로 동 사업은 적정성 검토 등 절차로 인하여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으며, 2025년 8월 초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조달청에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상황임.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 일정]

최초 계획 일정		변경 일정		관련 절차
2021	• 설계공모 • 설계용역 계약체결 • 기본설계	2021	• 설계공모 • 설계용역 계약체결	
2022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계약 체결 및 건설공사	2022	• 기본설계 (계획설계) • 기본설계 (중간설계) 착수	• 기본설계 (계획설계) 적정성 검토
		2023	• 기본설계 (중간설계) 완료	• 기본설계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조정협의
		2024	• 사업 중단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총사업비 조정협의
2023	• 건설공사 • 준공	2025. 5. ~	**• 실시설계**	**•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 총사업비 조정협의
		2025. 9. ~	• 공사계약 발주 및 체결	
2024	• 개관	2026. ~ 2028.	• 준공 및 개관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부터 총사업비 관련 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2024년 예산 편성 시에도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어야 하나, 2024년 예산 편성 내역 살펴보면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2023년에 편성되었던 1차년도 공사비 등 37억 7,800만원이 그대로 편성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음.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실시설계비	-	866	866	-	866	-	-	-	-	-
공사비	3,517	-	3,517	-	3,517	3,517	-	3,517	-	3,517
감리비	255	-	255	-	255	255	-	255	-	255
시설부대비	6	-	6	2	4	6	-	6	-	6
합 계	3,778	866	4,644	2	4,642	3,778	-	3,778	-	3,778

자료: 여성가족부

2024년의 경우 실시설계 및 적정성 검토를 수행해야 하며 이후 공사계약 발주 및 계약체결 등 후속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 편성에 있어 1차년도 공사비 전액을 편성하는 것은 연내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짐.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사업의 추가적 지연을 방지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유사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근거 법령 등에 따른 절차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양육비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자녀양육과 학업 및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현액 15억 9,600만원 중 15억 9,500만원이 집행(집행률 99.9%)되고, 100만원이 불용되었음.[22)]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족역량강화 지원	2,762	2,762	-	△654	2,108	2,046	-	62	2,102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2,250	2,250	-	△654	1,596	1,595	-	1	1,59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동 사업은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 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자녀 1명당 월 25만원을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필요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청소년부모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 (선정기준) 청소년부모 가구는 별도 가구로 보장하며, 지원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만 고려
*부모, 친척, 지인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도 별도 가구로 보장하여 청소년부모 가구의 소득만 파악

자료: 여성가족부

22) 일반회계-가족역량강화 지원(2332-321)(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인「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육비 지급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한부모와 달리,[23]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는 학업중단 및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별도 지원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음. 이에 따라 2021년 3월「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을 통해 한부모가 아닌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여성가족부는 2022년 7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부모에게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의 법적근거인「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은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법령상 현금성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태임.[24]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25]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부모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아동양육비

24)「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대하여 현금성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2024.11.11.) 되었으나, 현재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25)「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및 복지지원) ②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2.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연계 및 상담서비스 지원
3. 청소년부모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연계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부모의 성장과 그 자녀의 안정적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

근거 법률에 규정된 사업방식과 실제 사업 운영방식 간 불일치가 지속되는 경우 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음.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현행 법령과 부합하는 물품·서비스 방식으로 지원형태를 전환하거나, 청소년 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 고시하는 복지지원

6. 양육비이행 지원사업: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구상권 청구 업무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가. 개 요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은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사업 주체로 하여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하여 양육의무의 이행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21억 8,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26)]

[2024년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24,513	24,513	-	654	25,167	25,167	-	-	13,026
양육비이행 지원사업[27)]	11,530	11,530	-	654	12,184	12,184	-	-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1,601	1,601	-	-	1,601	1,601	-	-	-
양육비 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	-	-	654	654	654	-	-	-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내내역사업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은 긴급지원 요건 충족자에 대하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3개월 연장가능) 동안 긴급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16억 1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내내역사업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사업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이라 함)의 개정(2024.3.26.)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를 위한 것으로,[28)] 예산현액 6억 5,400만원 전액이 집행(집행률 100.0%)되었음.

---

26) 일반회계-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청소년가족정책실)

27) 「양육비이행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세부사업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2335-351)’ 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2335-352)’ 사업으로 내역 신설 및 이관

나. 검토의견

첫째,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의 2024년 구상권 청구실적이 저조하고 누적 채권 회수율도 18.48%에 불과하므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구상권 청구 등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하여 자녀를 실제 양육하는 부 또는 모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한 후 비양육 부 또는 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양육비를 회수하고 있음.

2024년도 긴급지원액은 15억 4,600만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나 구상권 청구액은 4억 8,200만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누적 지원금액 대비 환수금액 비율인 누적 회수율도 18.48%에 그침.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구상권 청구 및 환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지원금액		215	269	246	1,560	1,547	1,546
청구금액	당해	105	122	239	552	772	482
	누적(A)	274	396	635	1,187	1,959	2,441
환수금액	당해	1	17	39	92	150	150
	누적(B)	3	20	59	151	301	451
소멸금액		-	6	4	30	37	49
누적 회수율(B/A)		1.09	5.05	9.29	12.72	15.36	18.48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구상권 청구 담당 인력(1인)이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를 위한 경영 지원 업무에 투입되면서 안정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추진 과정에서 징수실적이 저조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29)]

---

28) 종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양육비 이행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양육비이행법」 개정(2024년 3월 26일)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여성가족부 산하의 공법상 특수법인으로 독립기관화 되었음.

29) - 1~2월 : 양육비 지급부서로부터 징수대상 이관 및 정리 작업
- 7~9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명의로 청구시 채권자 변경(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절차 복잡성 고려하여 청구를 유예
- 10월~ : 소송 당사자가 변경(한국건강가정진흥원→양육비이행관리원)됨에 따라 진행 중이던 구상 소송과 관련하여 구상금 채권 승계 안내, 당사자 변경 신청,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 등 업무 처리

그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양육비를 대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수하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음.[30]

특히 구상권 청구 자체는 환수 행위와는 별개로 채권 설정·납부고지 및 독촉 시 완료되는 정형화된 업무로서 인력 조정을 통해 기본적인 청구업무는 수행 가능하였을 것이며, 월별 청구실적을 고려할 때 독립기관화와 같은 일시적 행정절차 부담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2024년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월별 구상권 청구 실적]

(단위: 건, 백만원)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청구건수	-	-	29	-	85	△4*	-	-	-	-	-	64	174
청구금액	-	-	55	-	58	7	-	-	-	-	-	362	482

주) 청구건수 △4건: 양육비완납(1), 채무자사망(3)이 확인되어 심의를 통해 소멸결정 및 청구건수에서 제외
자료: 여성가족부

한편 2025년 7월부터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구상권 청구 및 환수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및 양육비 선지급제 사업 비교]

구 분	한시적양육비 긴급지원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중위소득 75% 이하, 질병·장애·주거환경 위태 등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기간	최대 1년 (9개월+3개월)	18세까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자료: 여성가족부

30) 「양육비이행법」상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범위

「양육비이행법」7조(양육비이행관리원)
⑥ 이행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양육부 · 모와 양육부 · 모의 양육비와 관련한 상담
2. 양육비 이행 촉진을 위한 비양육부 · 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지원
3.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4.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5.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및 양육부 · 모에게 양육비 이전
6.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7.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등 연구
8.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9.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양육비 채무 이행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따라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이행법」에 따른 구상권 청구 및 환수 업무 등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

둘째,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의 전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사업은 당초 2024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구축 등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서 6억 5,400만원을 전용(증)하여 신규로 편성 및 추진되었음.[31)]

[양육비 이행관리원 법인 신설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4.6.7.)	가족역량강화 (2332-321)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654	한국건강가정진흥원지원 (2335-351)	350-02 **(사업 출연금)**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설 (전산시스템 비용)

주) 가족역량강화 사업 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내역사업)에서 전용
자료: 여성가족부

「국가재정법」 제46조에 따르면,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사업 간의 유사성·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성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 경우에도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은 금지하고 있음.[32)]

---

3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세부사업인 가족역량강화 사업(2332-321)의 내역사업으로서, 대상 요건을 갖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임.

32) 「국가재정법」
제46조(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 진흥원 지원 세부사업(2335-351) 내 편성된 내역사업인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독립기관화를 위하여 예산 전용이 불가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산의 전용은 그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당초 예산에 계상된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법률지원서비스 및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등 특정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한정되어 있으므로,[33] 법인 신설 사업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나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예산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를 편성받고 국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34] 특히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그 집행잔액은 정산 후 국고로 반납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35] 연중(2024.6.7.)에 예산 잔액을 전용하여 신규사업에 사용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됨.[36]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당초 계상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33) 2024년 양육비이행지원사업 예산 편성 세부내역

· 양육비이행지원사업 1건×3,898백만원=3,898백만원 - 법률지원서비스 1,802백만원 - 양육비이행촉진서비스 120백만원 - 한시적양육비긴급지원 1,601백만원 - 양육비이행종합정보서비스 제공 및 운영 375백만원

34)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36)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국가재정법」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사전협의 및 승인 등의 예산 전용절차에 따랐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예비비 요건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였다는 설명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7. 가족센터 건립 사업: 건립 대상 선정 시 재정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가. 개 요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가족상담·부모교육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의 지역중심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90억 5,000만원 중 87억 5,000만원이 집행(집행률 96.7%)되고, 3억원이 불용처리되었음.[37)]

[2024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B)	이·전용 등(C)	예산현액 (A+B+C)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가족센터 건립	9,050	9,050	-	-	9,050	8,750	-	300	3,950

주) 2025년도 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하여, 기본형(508㎡)의 경우 10억원 이하, 확장형(759㎡)의 경우 15억 이하의 정액 자본보조금을 지원함.

[가족센터 건립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기초지방자치단체 신청 후 가족센터 건립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정

◦ 지원내용: 공간 유형별로 기본형(10억원 이하), 확장형(15억원 이하) 차등 정액지급
(단, 리모델링 건립시 신축의 80%)

세부구분	기본형(509㎡)	확장형(759㎡)
가족상담	ㅇ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ㅇ상담실(집단, 개인, 전화)
가족교육	ㅇ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ㅇ일반교육실, 언어발달교실
가족돌봄	ㅇ공동육아나눔터	ㅇ공동육아나눔터
가족소통	-	ㅇ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
사무공간	ㅇ가족센터	ㅇ가족센터

자료: 여성가족부

3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가족센터 건립(2333-334)(청소년가족정책실)

나. 검토의견

가족센터 건립사업은 지방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센터 건립이 지연되어 과다하게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며, 대상 센터 선정 시 재원계획 상의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동 사업은 대상지 선정 시 총 3개년에 걸쳐 건립공사를 수행하게 되며, 2024년의 경우 이월사업 30개소 및 2024년도 사업 13개소를 합하여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건립사업이 추진되었음.[38)]

2024년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이 지연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71.9%로 나타났으며 이월사업 외의 2024년 사업의 집행률도 46.5%로 저조한 수준임.

[2024년도 가족센터 건립 사업 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B/A)	이월액 제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D/C)
				예산현액 (C)	집행액 (D)				
8,750	23,962	32,712	23,508	8,750	4,070	8,057	1,147	71.9	46.5

자료: 여성가족부

집행이 부진한 사유와 관련하여, 2024년도 이월액이 발생한 센터 총 15곳 중 7건이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29억 4,4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 되었음.

[2024년 건립 지연 센터의 지연사유별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지연 사유	센터 수	2024년 관련사항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지방비 미확보	7	1,990	4,537	6,527	2,991	2,944
그 외 사유	8	4,050	4,781	8,831	3,718	5,113
합 계	15	6,040	9,318	15,358	6,709	8,057

주 1) 건립지연 센터 15개소: 서울 3, 부산 4, 대전 2, 경기 2, 강원 1, 충청 1, 전북 1, 경북 1 (개소)
주 2) 그 외 사유: 기자재 수급 지연, 현장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 변경 등
자료: 여성가족부

38) 2024년 사업 총 13개소는 1차년도 3개소, 3차연도 10개소로 구성됨.

동 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사업으로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시·도의 예산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요구내용의 적정성 및 조정방향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을 제출하게 됨. 이 과정에서 여성가족부는 「가족센터 건립사업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재원투자 계획상 지방비 확보 여부를 평가함.[39]

그러나 2024년도에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건립이 지연된 센터를 살펴보면,[40] 신규사업(1차년도)임에도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비 전액이 미집행되어 이월된 사례가 존재하여 지방비 확보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인지 점검이 필요해 보임.

2024년 사업 대상지인 A시 OO구 사례의 경우,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2023년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4년(1차년도)에 국비 3억원이 교부되었으나, 공사비·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총 3억원 전액이 미집행되어 이월 처리되었음.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의견을 기재부에 제출하되, 부처 자체에서 지자체 선정 및 금액 조정이 불가한 측면이 있으며, 동 사례의 경우 지방비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장기 소요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임.

그러나 해당 사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검토의견 제출 시 지방비 미확보에 따른 조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적되지 않았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재원 확보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41]

---

39) [2024년 사업 가이드라인 내 가족센터 선정 평가지표]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정량 평가 (70)	지역 여건	수요 현황 (수요확보 여부)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현황(입지여건)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 및 규모의 적정성
	사업 준비성	부지확보 여부
		안전관리 역량
정성 평가 (30)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투자계획
		사업추진효과(파급효과)
	사업 준비성	관리운영계획
		사업추진 의지

자료: 여성가족부

40) 2024년 지방비 미확보를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액이 발생한 센터 총 7곳은 1차년도(1개소), 3차년도(3개소), 4차년도(3개소) 사업으로 구성됨.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향후 가족센터 건립 대상지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비 확보 여부 및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절차 이행 여부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1) 「2024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43p. 예산안 편성 시 유의사항
2 사전 행정절차 이행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
■ 다만, '23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는 신청 가능

【기　타】

8.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개　요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여성가족부에 대해 시정요구 48건(중복 2건 포함)을 채택하였는데, 유형별로 시정 7건・주의 8건・제도개선 34건이었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계
결산	-	-	7	8	34	2	47
예비비	-	-	-	1	-	-	1
합계	-	-	7	9	34	2	48

여성가족부는 시정요구사항 48건에 대해 28건을 조치완료(조치율 58.3%)하고 20건을 조치 중인 것으로 보고하였음.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후속 조치결과]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사항(a)	조치완료(b)	조치율(b/a)	조치중(a-b)
결산	47	28	59.6	19
예비비	1	-	-	1
합계	48	28	58.3	20